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201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12.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유영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영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신인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두년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연구보조원: 김대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수빈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손누리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제1장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 인권통계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임. 인권통계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인권지표 및 통계를 발굴·제안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리·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인권통계는 인권현상을 계량화 혹은 수치화하여 표현한 것임. 이때 인권현상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의 도입과 운영, 그리고 인권실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지칭함
- 인권통계의 목적은 인권의 구조-과정-결과를 계량화하고 측정함으로써 비교와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임
- 인권통계는 인권현상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생태계에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화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인권통계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인권통계는 인권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음
- 또한 인권통계는 인권개선에 도움을 주는 연구활동 및 교육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인권보호와 보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범위

-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조사
 - 인권지표 및 주요 사회지표들에 대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하고 인권통계 체계 구축과 관련된 함의를 끌어냄
 - 캐나다 인권위원회, 덴마크 인권위원회,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장애인 NGOs 연합,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유엔인권최고대표부를 현지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전문가 조사
 - 인권연구자, NGO활동가, 정책입안자 등 전문가 집단 140여 명에 대해 두 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실시
 -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정당성 그리고 선별된 지표의 적실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
 - 선행연구검토, 해외조사, 전문가 조사를 종합하여 이행기제,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골격으로 한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
 -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보편적 인권색인을 변형·보완하는 방식을 택함
- 인권통계 지표풀 구축
 - 74개의 소분류 하에 배치되는 410개의 구조-과정-결과 지표를 발굴
 - 유엔조약기구의 최종견해 그리고 NGO 반박보고서의 우려사항들을 주요 인권이슈로 선정하고 이 이슈들에 상응하는 지표를 발굴하고 제안함
- 인권통계의 활용방안 모색
 -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검토를 통해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극대화

-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인권통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활용을 도모함
- 인권통계 이행 로드맵 구축 및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모색
 -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전환에 필요한 고려 사항들을(표집설계, 기간, 비용 등) 적시
 - 국가승인통계 생산기관과의 협력 및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모색
 - 인권통계 자료분석, 가공통계화, 및 새로운 「인권통계」 작성 제안

제2장 선행연구검토 및 해외조사

1. 선행연구

□ 국내 인권지표 및 통계

- 사회권지표: 사회권을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수준에 걸친 총 85개의 사회권 지표들을 제안함
- 국가인권지수: 국제인권원칙 및 제도를 근거로 국가인권지수를 구축했고,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위원회 최종견해를 지표화하여 장기 시계열(1990-2007년) 지수를 구성
- 국가기관인권지수: 주관적 차원은 내·외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측정하고, 객관적 차원은 주요 중앙행정기관들에 할당된 200여 개의 지표로 측정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지수: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된 지표체계와 연도별 측정결과를 제시했고, 영역별 지표 우선순위도 검토
- 인권통계: 2012년부터 발간되기 시작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내인권통계, 국제인권통계로 구분. 국내인권통계 부분은 총론 및 일반현황, 주요인권 취약계층별 통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하여 제시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과 관련된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2007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12년에는 2012-2016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수립

□ 국내 사회지표 및 통계

- 한국 사회통합지표: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로 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연계망 영역으로 구분된 프레임워크 제시
- 사회보장 통계관리 전략: 각종 사회보장관련 통계를 집대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원칙과 구조, 생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개인, 관계, 경제, 환경의 네 부문이 거시 수준과의 연계를 통해 영역별 지표들과 연계되는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종합모델 제시

□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 국제인권지수: 대표적인 글로벌 인권지수로 정치적 테러 척도, 자유지수, 인간개발지수, CIRI 인권지수, 인간개발지수 등이 있음
- 유엔인권최고대표부
 - 보편적 인권색인: 이행기제, 평등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그룹 권리 등 8개 대분류로 구성된 지표 체계 제시
 - 인권지표 가이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구조·과정·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와 영역별 사례 제시

- 유럽연합 기본권위원회
 - 아동 권리 지표: UN 아동권리협약을 개념적 프레임워크로 활용했고, 유럽연합의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 있는 영역의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했다는 특징이 있음
 - 장애인 정치적 참여 권리: 구조·과정·결과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장애인들의 정치적 참여 보장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 캐나다 인권위원회
 - 평등권 프레임워크: 경제적 웰빙, 교육, 고용, 건강, 주거, 정의와 안전, 정치적 개입과 사회 통합 등 7개의 주요 영역에 대해 주요 인구집단별 통계 측정
 - 여성권리 지표: 교육, 고용, 경제적 웰빙, 건강, 주거, 등 7개 영역별 여성통계 제시

2. 해외현지조사

□ 개요

- 유엔인권최고대표부를 비롯해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은 약 10년 전부터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망라한 인권통계와 지표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함
- 이러한 국제기구들과 인권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인권통계와 지표 수립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이해하고, 또한 이런 선진적 사례들의 한계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캐나다

- 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에 기반해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체계화한 “평등권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작성했고 이를 여성, 장애인, 원주민 평등권 보고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통계와 지표를 제시함
- 선구적으로 평등권 프레임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취약계층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삶의 질 문제에 과도하게 치중해 있고 실태조사 등 주관적 지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 덴마크

- 덴마크 인권위원회는 성별, 인종, 종족,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에 대한 감시와 평등권 증진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황금지표를 수립함
- 덴마크 장애인 NGOs 연합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지표체계를 개발하였음. 그러나 시민·정치적 권리 등 인권 핵심 분야가 누락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표풀이 충분치 않은 문제가 있음

□ 유엔인권최고대표부

-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인권지표 프레임워크는 구조·과정·결과 의 세 범주로 각국의 인권통계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통의 언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인권지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프레임워크는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체계적이지만 세계인권선언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 수년에 걸쳐 유럽연합은 물론 국제적·국내적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인권전문가, 통계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규범적, 이론적 인권 프레임워크를 구축
- 유럽연합 통계국과 협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객관적, 주관적 평가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함
- 그러나 과도하게 귀납적이고 특정 취약계층에 치우친 문제점이 있음

제3장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1. 프레임워크의 정당화: 전문가 조사 1차

□ 전문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 인권통계는 체계와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고, 표준화된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직관적 의견을 취합하고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조사함
- 전문연구자, 법조인/법대교수, NGO활동가,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약 140명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인권의 개념 및 분류체계, 하위요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선행연구, 해외조사 등을 통해 연구진이 잠정 구축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 및 정당성 검증이 1차 전문가 조사의 주요 목표였음

□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와 분류체계에 대한 평가

- 인권통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국제규범을 참조하여 구성된 인권 프레임워크, 즉 이행기제,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소수자 집단권리와 그 분류체계, 하위 지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어냄
- 인권의 내용 중에서 ‘결혼권/가족권’, ‘이름·정체성·국적을 가질 권리’,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 권리’, ‘인권활동가의 권리’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 자유권의 ‘정의로운 행정’, ‘구제받을 권리’간의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적 구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사법적 정의’로 통폐합함
- 또한 사회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범주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과 ‘사회보장권’으로 세분함
- 한국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권 지표들, 신체권의 ‘제노사이드’, ‘비사법적 살인’, 건강권의 ‘기대수명’은 제외하고,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들(‘정의로운 행정’, ‘자유 및 안보권’, ‘여성의 경제적 웰빙’ 등)을 수정하였음
-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추가해야 할 인권지표로서 ‘정보인권’과 ‘환경권’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포함시켰으며, 인권의 이행기제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관련 지표들을 발굴하였음

2.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

- 선행연구와 해외사례조사, 그리고 1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 포괄성, 보편성, 한국적 맥락성, 책임성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를 구성하였음
-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보편적 인권색인을 원용하되, 한국적 맥락에 맞게 수정·변형하는 과정을 밟았음
- 대분류는 이행기제,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 이행기제의 중분류는 국제규범, 국내법, 인권교육, 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있음. 대체로 구조와 과정에 해당되는 분류 체계임. 이행기제를 포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
- 평등권의 중분류는 차별일반과 차별요인이며, 취약집단들의 평등권 보장 및 차별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주로 결과에 해당되는 분류 체계임
- 시민·정치적 권리의 중분류는 신체권, 기본적 자유, 행정·사법적 정의, 참정권, 정보인권임. 주로 과정·결과에 해당되는 분류 체계임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중분류는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기업과 인권, 환경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로 과정·결과에 상응하는 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제4장 인권통계 지표폴

1. 지표폴의 정당화: 전문가 조사 2차

□ 전문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 5개의 중분류와 26개의 소분류 및 하위 지표로 구성된 시민·정치적 권리, 8개의 중분류 지표와 34개의 소분류 및 하위 지표로 구성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된 지표의 적절성과 대표성을 평가하게 함
- 제안된 지표폴 중 소수자 집단의 핵심적 인권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표를 제안하도록 유도

□ 인권지표폴의 적실성과 대표성에 대한 평가

-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프레임과 분류체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모두 90% 이상인 점으로 미루어,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부적절한 지표로서 합의 수준이 높은 ‘운수사고 사망 수’, ‘변호사 수입료 분쟁 현황’, ‘영양섭취 부족 및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의 비율’, ‘보훈연금·보훈급여·보훈수당’,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등은 지표 항목에서 제외됨
- 대표 지표로서 합의 수준이 높은 항목은 ‘사형 선고율’, ‘인신매매/성매매 현황’, ‘약취/유인 현황’, ‘방송심의 의결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민사 및 형사 법률 구조 현황’, ‘개인정보 침해 비율’, ‘정보격차 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 ‘노동조합 조직 현황’, ‘임산부 산전 수진율’,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동량’ 등임

- 소수자 집단의 핵심적 인권으로써 자유권에서는 ‘기본적 자유’를 중심으로 ‘신체권’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사회권에서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각 분류체계에서 하위 지표 항목을 평가하는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히 현황이나 실태를 기술하는 지표보다 일정한 기준을 전제하고 그것으로부터의 격차, 결핍, 제한 등을 의미하는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가령,
 - 집회시위 발생 현황 < 집회금지 통보 현황
 - IT이용(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정보격차 수준 등
-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여성의 ‘모성 건강’, 아동·청소년의 ‘안전할 권리’, 노인의 ‘소득보장’,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 난민의 ‘주거권’, 성소수자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등) 이외에, 소수자 집단의 참여 및 포용에 관한 지표(공공행정에 참여, 공공서비스 접근, 건강서비스 접근, 공정성 등)를 개발·발굴할 것을 제안함

2. 인권지표플 구축

□ 인권지표플 구축 전략

- 조약위원회에서 발행한 최종견해, 국내 NGO의 반박보고서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중요한 인권이슈 및 주제 선정
 - 최종견해는 규약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담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문서
 - NGO 반박보고서는 회원국 정부 공식 인권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NGO 입장에서 본 국가의 주요 인권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음

□ 인권지표플 활용 자료

- 최종견해: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3종),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3종), 인종차별철폐위원회(7종), 여성차별철폐위원회(7종), 아동권리위원회(3종), 고문방지위원회(2종), 장애인권리위원회(1종)
- NGO반박보고서: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2종),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2종), 인종차별철폐위원회(4종), 여성차별철폐위원회(5종), 아동권리위원회(3종), 고문방지위원회(1종), 장애인권리위원회(1종)

□ 영역별 지표플 구성

- 이행기제: 중분류 4개, 소분류 8개에 상응하는 총 30개의 지표로 구성
 - 국제규범: 국제인권법 준수(2), 국제인권기구 참여(5) (2개 소분류, 7개 지표)
 - 국내법: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3), 국가인권기구의 역할(6) (2개 소분류, 9개 지표)
 -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6), 기업·시민사회 인권교육 활동(2) (2개 소분류, 8개 지표)
 - 시민사회: 인권NGO 활동(2), 인권NGO 거버넌스 구축(4) (2개 소분류, 6개 지표)

- 평등권: 중분류 2개, 소분류 14개에 상응하는 총 45개의 지표로 구성
 - 차별 현황: 인권상황 평가(1), 차별 원인(1), 차별의 심각성(1), 차별 경험(1) (4개 소분류, 4개 지표)
 - 차별 요인: 인종·피부색·출신국가(8), 성별(12), 경제적 지위(2), 나이(4), 용모(2), 종교(3), 학력·학벌(2), 성적 지향성(4), 장애(3), 병력(1) (10개 소분류, 41개 지표)
- 시민·정치적 권리: 중분류 5개, 소분류 22개에 상응하는 총 132개의 지표로 구성
 - 신체권: 생명권(8), 사형의 제한(4), 고문 및 비인간적처우(6), 구금환경(13), 인신매매금지(3), 안전할 권리(15), 실종(3), 자의적 체포 및 구금(9) (8개 소분류, 61개 지표)
 -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9),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4), 의견과 표현의 자유(6), 집회의 자유(6), 결사의 자유(5), 사생활 보호권(6) (6개 소분류, 36개 지표)
 - 행정·사법적 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5), 사법적 구제(3), 피해배상 청구권(6) (3개 소분류, 14개 지표)
 - 참정권: 투표할 권리(4), 선출될 권리(2),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5) (3개 소분류, 11개 지표)
 - 정보인권: 정보접근권(7),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3) (2개 소분류, 10개 지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분류 8개, 소분류 30개에 상응하는 총 203개의 지표로 구성
 -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식량권(4), 주거권(9),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6) (3개 소분류, 19개 지표)
 - 사회보장권: 소득보장 (공공부조)(2), 빈곤/양극화(10), 사회복지(10), 사회보험(4) (4개 소분류, 26개 지표)
 - 노동권: 일할 권리(1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22), 노동조합권(6) (3개 소분류, 40개 지표)
 - 건강권: 건강 서비스 접근(7), 아동 및 모성 건강(9), 육체적 건강(5), 정신적 건강(5),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3) (5개 소분류, 29개 지표)
 - 교육권: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4), 교육 선택권(7), 교육의 질(6), 교육차별 및 불평등(7) (4개 소분류, 24개 지표)
 -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8),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4), 창작물에 대한 보호(2),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5) (4개 소분류, 19개 지표)
 - 기업과 인권: 국가의 보호(6), 기업의 존중(11), 구제(10), 환경보존 책임(8) (4개 소분류, 35개 지표)
 - 환경권: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4),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6),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1) (3개 소분류, 11개 지표)

□ 유형별 지표 현황(410개)

- 구조 지표(62개, 15%): 이행기제(4), 시민·정치적 권리(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56)
- 과정 지표(108개, 26%): 이행기제(26), 평등권(4), 시민·정치적 권리(4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32)
- 결과 지표(240개, 59%): 평등권(41), 시민·정치적 권리(8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115)

제5장 인권통계의 활용방안

1.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탐색

(1) 국가승인통계의 이해 및 절차

□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목적 및 유형

- 국가통계의 유사·중복 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 작성방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분류

□ 통계작성승인의 절차

-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하면 통계청 통계협력과에서 관련 내용을 접수하여 요건을 검토한 이후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며, 보완 요구를 이행한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함
- 통계작성승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설계 요약서”로서,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 표본배정방식, 추정식,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등이 포함된 표본설계 내역이 필요함

(2)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통계로서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검토

□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상의 주요 항목에 따른 검토

- 통계작성 승인절차 상의 주요 필요 항목들을 검토해보면 조사통계로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

□ 표본설계의 내용에 따른 검토

- 표본설계 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점검하여 보았을 때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의 산출과 관련된 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본설계 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다만, 향후 조사에서는 표본설계를 보다 엄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표집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승인 가능성 검토

□ 「인권통계」의 통계 작성유형

- 여러 국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종합한 가공통계가 될 것임

□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승인 가능성

- 가공통계의 요건: 수집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투입자료를 단순 분류하거나 수집 자료를 종합 수록하는 것은 가공통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계작성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통계청은 1979년부터 1년 주기로 생산된 「한국의 사회지표」는 1994년 가공통계로서 승인받았으나, 2009년 승인이 중지된 상태임

2.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

-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 관리수단으로서의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필수적임
-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책적 비효율성 극복 및 인권통계자료의 접근성 강화가 가능해 질 것임

□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목표 및 방향성

- 인권통계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료 생성·관리·사용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권통계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고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최종 전략목표로 수립함
-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존 인권관련 통계지표들을 재정비하고, 접근성과 활용성, 신뢰성을 높인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신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취합해야 하며 구축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조직해야 함

□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는 기획, 구조설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시스템 안정 및 유지의 단계를 통해 구축됨
- 기획 단계에서는 수요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성격, 마케팅 전략수립이 수행됨.
- 구조설계 단계에서는 계층형/네트워크형/관계형 모델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설계하고, 물리적으로 통계자료 파일의 저장 및 구조 형태를 결정함
- 제작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가공, 입력, 편집 작업을 수행하고, 검색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함
- 안정 및 유지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관리, 복구, 유지보수, 평가작업을 수행함

□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단계별 구축 방안

- 구축기반을 형성하는 준비단계에서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모델을 개발하고 항목분류를 통한 표준데이터를 생성함
- 시스템 고도화단계에서는 신규 인권통계자료를 추가하고, 데이터 간 연계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며, 시스템 안정화 단계에서는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와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인권통계데이터베이스의 허브기능을 강화함

제6장 인권통계 이행 로드맵

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개선방안

□ 조사내용의 다각화

-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이외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권상황실태조사」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필요 있음

- 조사내용을 보다 다각화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사회조사」,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사회조사인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조사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사내용이 통계청이 지정하는 표준분류체계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조사항목을 구성해야함
 - ※ 통계청 통계분류는 현재 경제부문(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사회부문(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보건부문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나뉘어져 있음
- 다양한 인권분야의 전문가와 통계·조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개편할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정해야 함
 - 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조사(pretest)나 가능하다면 예비조사(pilot test)등을 통해 조사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조사설계의 체계화

- 다양한 인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집단위를 가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최소 1만여 명(현재 1,500명)의 유효표본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 현재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는데 가장 큰 난관은 표본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명확한 조사대상의 선정과 함께 모집단 및 표집틀 설정, 표본추출방법, 가중치 설정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체계화해야 할 것임

□ 조사관리체계 구축

-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통계청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의 구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와 함께 각 분야의 인권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조사전문가를 포함시켜 조사설계, 실사과정,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 등 전 과정에 참여시키는 평가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승인통계 생산기관과의 협력 및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 및 통계 지표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한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인권통계」를 비롯하여 각종 통계지표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으나, 대부분 '원자료(raw data)'에 기초하기보다는 가공통계 또는 보고통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음
 - 이로 인해 인권과 관련된 통계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현재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각 기관에서 인권관련 통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음

□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 사례 검토

○ 조사통계의 사례

- 국토교통부가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통계로 지정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및 비율’의 경우 주거권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가구주, 조부모/손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장애인 가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표에서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일할 권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일할 권리’의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장애인 등의 고용 또는 실업상태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보고/가공통계의 사례

- 소득보장(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지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정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 이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조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생산하는 행정자치부와도 공조 역시 필요함

□ 국가승인통계의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 인권영역별 지표들의 인구집단 설정

- 국가승인통계를 인권통계 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인권영역의 소분류별 지표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인권취약인구집단을 설정하는 것임
- 다만, 이러한 하위인구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집단이 고려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오랫동안 고유의 방식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생산해온 경우에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
- 따라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하위인구집단을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관련 통계작성기관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해야 함
- 이때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 및 지표풀에서 제시한 취약계층별 주요 인권영역 및 이슈 그리고 전문가 조사에서 제시한 정보를 활용해야 함

○ 인권통계 생산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 접근

- 2015년 12월 현재 394개 기관에서 941개의 국가승인통계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되는 각 통계들을 인권친화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성인지통계」의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제3항에 기초하여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인권통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동 부서에서는 인권통계에 포함되는 자료들을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지속해나감과 동시에 인권과 관련된 조사 또는 보고/가공통계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생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함

3. 인권통계의 산출 및 확산방안

□ 인권통계의 산출

- 인권통계에 대한 합의 도출
 - (가칭) 범시민 인권통계 자문단을 구축하여 인권영역과 취약계층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상근자, 활동가, 학자들이 발굴·제안된 지표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보다 대표성이 높은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원자료 확보
 -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410개의 지표들에 대한 원 자료를 확보해야 함
- 통계치 산출과 가공
 - 원자료를 확보 후 이에 대한 분류와 가공, 그리고 통계치 산출 작업이 뒤따라야 함
 - 많은 지표들이 취약집단별 통계치 산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가용한 선에서 분류와 가공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권지수 산출
 - 새로운 통합 및 분야별 인권지수의 산출도 이 단계에서 가능해 질 것임

□ 인권통계 출판

- 인권통계 해설
 - 지표들의 통계치를 얻은 후에는 단순히 이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계치들이 인권보호와 보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설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함
- 「2015 인권통계」의 출판
 - 2015년 한국의 인권을 보여주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는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와 지표풀을 바탕으로 통계치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인권의 변화를 인과적, 정책적 관점에서 서술·해설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종합인권보고서’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
- 영역별 집단별 인권보고서 발간
 - 취약집단별 인권보고서의 제작과 배포 역시 필요함.
 - 모든 인권영역에 대해 모든 취약계층별 상세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취약계층 별로 모니터링이 절실한 인권영역에 집중하여 세부통계 작성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인권통계의 접근성 강화

-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인권지수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지표와 통계자료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음
- 인권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구축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정보공개가 뒤따라야 함
 - 이를 위해 독자적인 ‘인권포털 사이트’를 국가인권위원회 웹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의 통계자료 사이트, 특히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야함

□ 한국형 인권통계의 국제적 확산

- 본 연구의 요약본과 프레임워크, 지표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한국형 인권통계 번역본을 인권 가이드라인 후속판을 준비하고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에 즉각적으로 전달하여, 후속판에 한국형 인권통계가 사례로 실릴 수 있도록 로비를 진행해야 함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지표 및 통계가 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로비를 진행해야 함
 - 한국은 2016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됨. 따라서 국제인권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인권통계의 정의, 목적 및 중요성	4
제3절. 연구방법	6
제4절. 연구내용 및 범위	6
제5절. 인권통계의 활용대상	8
제6절. 인권통계 체계 구축의 원칙	9
제7절. 인권통계 체계 구축 전략	11
제2장. 선행연구검토 및 해외조사	3
제1절. 선행연구	15
1. 국내 인권지표 및 통계	15
2. 국내 사회지표 및 통계	23
3.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26
제2절. 해외현지조사	35
1. 인권선진국 사례	35
2. 국제기구 사례	63
제3장.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8
제1절. 프레임워크의 정당화: 전문가 조사 1차	87
1. 전문가 조사 1차의 목적과 내용	87
2. 인권전문가 POOL의 구축 과정	89
3. 전문가 조사 1차의 결과 및 합의	90
4. 인권통계 체계구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02
제2절.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103
1.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목적 및 필요성	103
2.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원칙	104
3. 인권위 인권통계의 문제점	105
4.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	106
5.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대분류 하의 중분류 및 소분류	110

제4장. 인권통계 지표폴	15
제1절. 지표폴의 정당화: 전문가 조사 2차	117
1. 전문가 조사 2차의 목적과 내용	117
2. 전문가 POOL의 보완	118
3. 전문가 조사 2차의 결과 및 합의	118
제2절. 인권지표폴 구축	133
1. 인권지표폴 구축 전략	133
2. 인권지표폴 활용 자료	134
3. 지표폴의 구성	134
제5장. 인권통계의 활용방안	19
제1절.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탐색	141
1. 국가승인통계의 이해 및 절차	141
2.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통계로서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검토	149
3.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승인 가능성 검토	154
제2절. 인권통계 DB 구축 방안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156
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	156
2.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목표 및 방향성	157
3.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159
4.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163
제6장. 인권통계 이행 로드맵	15
제1절.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개선방안	167
1. 조사내용의 다각화 및 체계화	167
2. 조사설계의 체계화	172
제2절. 국가승인통계 생산기관과의 협력 및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176
1. 국가승인통계의 개선 사례 검토	176
2.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안의 예	180
3. 국가승인통계의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192

제3절. 인권통계의 산출 및 확산방안	197
1. 인권통계의 산출	197
2. 인권통계 발간	198
3. 인권통계의 접근성 강화	199
4.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의 국제적 확산	200

참고문헌	203
-------------------	------------

부록

1.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	207
2.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222
3. 지표에 활용된 자료생산 기관과 자료명	223
4. 설문지	227
5. 소수자 집단의 핵심 권리	253
6. 소분류별 법적 정당화	255
7. 국가인권통계 지표 풀	345

- 표 목차 -

<표 1-1> 인권통계 구축 과정과 전략	21
<표 2-1> 사회권 지표구성(안)의 요약	5 1
<표 2-2> 자유권 규약 위원회 최종견해의 우려사항 (예시)	6 1
<표 2-3> 사회권 규약 위원회 최종견해의 우려사항 (예시)	6 1
<표 2-4> 국가기관 인권지수의 이론적 모형	71
<표 2-5> 시민·정치권 영역별 최종 지표 (2014년)	9 1
<표 2-6> 경제·사회·문화권 영역별 최종 지표 (2014년)	9 1
<표 2-7> 국가인권지수 국내사례 비교표	22
<표 2-8> 사회통합의 영역 및 지표	32
<표 2-9> 사회보장통계목록(안)	4 2
<표 2-10>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종합모델의 구성	52
<표 2-11> 국가별 인권지수 순위	63
<표 2-12> 덴마크 인터뷰 일정	83
<표 2-13> 인터뷰 요청 이메일	24
<표 2-14> 인터뷰 질문지	34
<표 2-15> 황금지표 운영위원회 (차별방지)	9 4
<표 2-16> 덴마크 통계청 장애인 서비스 현황 데이터베이스	15
<표 2-1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핵심영역(속성)과 지표그룹	4 7
<표 2-18> 가족 재통합 이후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규정의 존재	57
<표 2-19>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인권 프레임워크	97
<표 3-1> 1차 조사의 내용	88
<표 3-2> 응답자의 특성	09
<표 3-3>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7
<표 4-1> 2차 조사의 내용	7
<표 4-2> 응답자의 특성	8
<표 4-3> 제외·추가 제안된 지표(시민·정치적 권리)	81
<표 4-4> 제외·추가 제안된 지표(경제·사회·문화적 권리)	91
<표 4-5> 소수자집단의 핵심 권리	3
<표 4-6> 유형별 지표 현황	4
<표 4-7> 이행기제 지표 현황	3
<표 4-8> 평등권 지표 현황	3
<표 4-9> 시민·정치적 권리 지표 현황	7

<표 4-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지표 현황	3
<표 5-1> 통계작성기관별 지정 및 일반통계 작성현황	4
<표 5-2>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승인통계현황	4
<표 5-3> 작성방법별 국가승인통계의 현황	4
<표 5-4> 표본설계 요약서	4
<표 5-5> 통계작성 승인사항 심사 내용	7
<표 5-6>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문항수	15
<표 5-7> 표본설계의 검토내용	3
<표 5-8> 중앙정부기관의 가공통계 승인 현황	5
<표 5-9>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부적 하위 목표	8
<표 5-10> 데이터베이스 품질 기준 분류	8
<표 5-1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단계별 구축 방안	8
<표 6-1>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현황	7
<표 6-2>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조사내용	9
<표 6-3> ISSP의 조사내용 및 조사주기	10
<표 6-4>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향후 조사내용 및 조사주기(안)	17
<표 6-5> 제3차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	5
<표 6-6>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의 조사개요	8
<표 6-7>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및 비율」 발표 결과	8
<표 6-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개요	8
<표 6-9>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취업자수 및 고용률	8
<표 6-10>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의 보고통계 개요	8
<표 6-11>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의 결과보고 내용	9
<표 6-12> 인권영역별 취약인구집단	9

- 그림 목차 -

[그림 2-1] 지표의 선정	92
[그림 2-2] 지표의 맥락화	93
[그림 2-3]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94
[그림 2-4] 덴마크 통계청 입구 전경	94
[그림 2-5]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 전경	14
[그림 2-6]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의 Signe Højsteen	24
[그림 2-7] 인권통계의 인권증진에 대한 영향력	84
[그림 2-8] 캐나다 인권위원회 조직도	45
[그림 2-9] 캐나다 인권위원회 빌딩 및 인터뷰 대상자	55
[그림 3-1] 각 기관의 통계/조사자료 만족도(4점 기준)	19
[그림 3-2]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	9
[그림 5-1] 지정통계의 지정 절차도	8
[그림 5-2] 국가통계승인(협의) 마크	8
[그림 5-3]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9
[그림 5-4]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9
[그림 5-5]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9
[그림 6-1] 국가승인통계 성별구분실태 점검양식	7
[그림 6-2] 국가승인통계 중 조사통계의 성별 구분 제시안	8
[그림 6-3]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의 정확성 평가 기준	9
[그림 6-4]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기반 조사통계 현황표의 예	8
[그림 6-5]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조사표의 예	8
[그림 6-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공포내용(KOSIS)	581
[그림 6-7]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적사항 관련 조사표	8
[그림 6-8] 통계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공개현황	8
[그림 6-9] 통계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공개 형태	9
[그림 6-10]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공개 형태	9
[그림 6-1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	9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제1장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제사회에서 인권통계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생소하다. 2000년대부터 인권지표와 같은 유사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상당 정도 유엔 인권기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유엔 조약기구들은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보 제출을 가입국에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권지표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조약의무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지표의 작성과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역시 인권지표 및 통계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새로운 헌법 개정과 더불어 구축된 에콰도르의 국가인권지표는 실제로 보편적 정례검토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OHCHR, 2012).

각국의 법원들도 인권지표 사용을 독려했다. 캐나다 대법원의 경우 차별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립하는데 통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Potvin, 2005).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내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들의 권리증진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통계 형태로 요구한 바 있다(Rothring and Romero, 2008). 캐나다의 평등권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의 구축은 국내 법원의 지속적인 평등권 보호 요청이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0).

유엔인권최고대표부(Office of the Higher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가 「2012년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가이드」를 출판한 것은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지표라는 개념이 선호되고 있고 인권지표와 인권통계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최고대표부가 발행한 인권지표 가이드는 사실 ‘인권통계 가이드’에 다름 아니며,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원칙들은 최근 영국, 네팔, 멕시코, 케냐 등 세계 각국의 인권측정과 보호 노력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었다.

한국에서 인권통계의 시발은 사회권 지표 개발을 시도한 2008년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문진영 외, 2008). 이후 2011년에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고(구정우 외, 2011), 2012년에 같은 연구자들이 국가인권지수를 구성하여 국제학계에 발표하였다(Koo, Kong, and Chung, 2012). 인권위 주도의 국가인권지표 및 지수구성 노력 역시 2012년-201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김태홍 외, 2012, 2013, 2014). 이처럼 한국에서도 인권지표와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기초연구가 집적되었다. 인권위가 출간한 「2012 인권통계」, 「2013 인권통계」도 이러한 누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지표에 다름 아닌 인권통계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그간의 인권지표 구축 노력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다양한 인권지표들을 생성해 내는 목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인권지수라고 하는 추상성이 높은 평가 도구를 만드는데

경도되면서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보다는 일반 사회통계 중심의 추상적 지표들이 위주가 되었다. 추상성이 높은 일반적인 인권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집단, 소수자집단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지표들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인권통계의 의미는 축소되었다. 폭넓고 구체적인 인권지표들이 풍성하게 집적되어 통계적 토대가 탄탄해 졌을 때 비로써 생명력 있는 인권지수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긴 경험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부터 매년 「인권통계」를 인권정책, 인권상담,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협력 및 일반행정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과 관련된 정부의 노력과 인권현황 및 정부 조직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크게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인권보호와 증진정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점검, 정책의 발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지표 및 지수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인권통계」는 기초적인 분류체계 및 프레임워크를 갖추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지표에 대한 정의와 정당화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각 지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의 프레임워크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현 수준의 「인권통계」는 소위 행정적 보고자료 혹은 인권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적실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권통계 작성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인권지표 및 통계를 발굴·제안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편적 인권규범에 근거하지만, 국가통계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국가 인권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통계를 발굴·제안함으로써 검증하고 있는 인권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통계의 일부를 국가승인통계로 격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적인 인권보호와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인권통계의 정의, 목적 및 중요성

1. 인권통계의 정의

인권통계는 인권현상을 계량화 혹은 수치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뜻한다. 이때 인권현상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의 도입과 운영, 그리고 인권실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지칭한다. 다시 말해, 보편적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의 작동, 그리고 권리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이 취하는 정책적 개입, 인권개선을 위해 인권의 담지자 개인 및 집단이 취하는 개선 노력, 인권보장 현황에 대한 각종 보고행위,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되거나 제약되는 정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2. 인권통계의 목적 및 중요성

인권통계의 목적은 인권현상 즉, 인권의 구조-과정-결과를 계량화하고 측정함으로써 비교와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카운트 되지 않으면 주목받기 어렵고, 측정되는 것이 결국에는 행해진다는 실증주의적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타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권정책 역시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상을 설정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사이클이 잘 구축될 때 비로소 의도했던 이상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OHCHR, 2012).

인권의 구조-과정-결과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인권지표와 통계는 인권의 변화—즉, 후퇴와 개선—를 인권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제도·정책의 도입 및 운영, 그리고 다양한 인권현황 및 결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인권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인권이 미진한 분야 및 집단, 이러한 미진함의 원인과 책임주체, 인권이 남용되는 과정, 그러한 남용이 발생한 시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쇄사슬’을 정책의 효과성 및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연결시켜 사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생태계에 책임성과 투명성의 문화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권통계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공동체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 우선, 인권통계는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요 인권이슈들과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들을 보다 쉽게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영역 및 대상의 인권보장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행위자들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인권통계는 인권개선에 도움을 주는 연구 및 교육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전반적 인권옹호 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인권통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권침해자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루한 인권법령 속에 갇혀있는 의미 체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로 인권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역적·귀납적, 그리고 양적·질적 방법론을 포괄적으로 활용한다. 우선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인권규범 및 국제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중·소분류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연역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승인통계 특히 사회통계 및 지표폴로부터 소분류에 해당되는 지표폴을 발굴해 나가는 “귀납적” 접근방법도 활용한다. 인권개념이 갖는 역사성, 보편성, 철학적·이론적 논쟁을 고려할 때 연역적인 접근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인권통계 틀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귀납적인 유연함이 동시에 요청된다.

인권통계를 수집·발굴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적 접근법이 활용된다. 국가승인통계와 비승인 보고·가공·조사통계,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생산·집적하는 다양한 통계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양적인 분석이 주요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인권통계 담당자, 그리고 NGO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수정·변형하는 과정에서는 질적 방법론이 동반된다. 덴마크 인권위원회의 ‘황금지표’,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평등권 프레임워크,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인권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의 도전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성적인 접근법이 요청된다. 관련 NGO들이 정부기구의 인권지수, 통계 구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들이 바라보는 개선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며, 이것은 현지방문과 인터뷰를 통한 질적인 접근법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질적인 연구방법은 전문가 조사와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인권통계 분류법의 적절성, 발굴된 인권지표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인권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받을 수 있다. 인권지표들 간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은 그 보편성 못지않게 맥락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고, 이것은 자국 인권공동체의 문화, 체험, 경험에 근거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제4절 연구내용 및 범위

1. 인권지표 및 통계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인권지표 및 인권과 연관성이 높은 사회지표들에 대한 국내외 문헌들을 일별하고,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함의를 끌어낸다. 국내문헌의 경우 2008년 사회권지표 연구로 촉발된 국가기관인권지수, 국가인권지수, 인권통계 등 관련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다. 또한 사회통합지표, 사회보장통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등을 일별하면서 사회통계라는 보다 거시적인 영역에서 인권지표 및 통계가 갖는 위치를 가늠해 본다. 국외 연구로는 그간 많이 논의되었던 대표적 국제인권지표들 보다는 본 연구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덴마크의 황금지표, 캐나다의 평등권 프레임워크,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보편적 인권색인과 인권지표 가이드,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

권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의 아동, 장애인 권리 지표 등을 통해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구축에 대해 갖는 함의를 점검한다.

2. 국제사례 인터뷰 조사

인권통계 체계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에 있는 선진국 사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여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와 지표선정 및 DB 구축에 대한 함의를 끌어낸다. 조사 대상은 선진국 사례로 인권지표를 가장 선구적으로 도입한 캐나다의 인권위원회, 국제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덴마크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의 사례로 UN 인권이사회의 사무처 역할을 맡고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인권지표 구축 노력,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인권신장이라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지표 구축 현황을 현지조사 및 인터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밖에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장애인 NGOs 연합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인권통계의 필요성, 전략, 프레임워크 구성방법, DB 구축방법, NGO와의 협력, 지표 및 통계 구축 과정에서의 도전과 어려움 등에 관한 심층적이고 질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3.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는 인권연구자, 정책입안자, NGO 등 인권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며,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위해서, 2차 조사는 발굴·제안된 지표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획되었다. 단순히 통계자료에 대한 발굴·분류를 넘어 인권의 개념, 하위 요소의 구성, 선정된 지표의 적실성, 추가가 필요한 지표, 지표들 간의 비중 차이, 관련되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인권통계 체계에 반영한다. 인권통계 구축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 예외 없이 NGO 및 전문가들과의 정책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좋은 지표들이 제안되고 발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차례 모두 140여명 이상의 엄선된 인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60-70%에 이르는 응답률을 토대로 프레임구축과 지표 선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

어떤 종류의 통계이건 선결 작업은 통계 및 지표를 명확히 정의내리고 이에 따라 전체 지표선정·생산·가공 작업을 가이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인권통계의 범위 선정, 분류체계의 구축, 대·중·소분류 간의 논리적 관계 검토, 프레임워크의 구조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 OHCHR의 보편적 인권색인의 논리적 구조가 출발점이 되었고, 여기에 더해 OHCHR 인권지표 가이드의 원칙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한국의 헌법체계, 인권위의 NAP, 그리고 국제사례 인터뷰 조사들을 포괄적으로 참조하였다.

5. 인권지표플 구축

구축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특히 소분류에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인권지표들을 국가승인통계, 인권위실태조사, 정부의 보고통계와 가공통계, 민간부문의 조사통계 등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특히, 각 지표가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지를 지표발굴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필요한 지표들이나 자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통계생산을 제안한다. 지표명을 정하고, 지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지표의 출처를 정리하는 작업이 동반된다. 또한 각 영역별로 선별된 여러 지표들에 상응하는 취약집단별 지표를 발굴·제안한다. 인권지표의 가공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6. 인권통계 활용방안 및 이행 로드맵 모색

어떤 통계든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소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롭게 구축될 인권통계에 대한 치밀한 관리와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인권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경우 인권통계 DB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까지 견고한 DB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러 법적, 기술적, 재정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권통계 DB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실현될 경우 인권통계 DB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운영·관리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잘 짜여진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인 구축 방안, 인권의식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화 방안, 새로운 「인권통계」 발행 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제5절 인권통계의 활용대상

인권통계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헌신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 검찰, 경찰, 법원 등 법집행 국가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옹호기관, 그리고 인권활동가, 인권연구자, 인권교육자,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일상적인 활동에서 인권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모든 공적기관들 역시 인권통계가 타깃으로 하는 대상들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국가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와 차별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인권통계의 잠재적인 이용자가 된다.

인권보호 및 옹호의 책무를 직접적으로 지게 되는 공공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인권통계의 주요한 활용주체가 된다. 검찰, 경찰, 군대, 교정시설, 법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및 보호와 관련되는 부처들에 이르기까지 인권통계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은 물론

론, 인권통계의 주체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인권통계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권통계는 인권조약가입 의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의무를 지는 법무부, 외교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조약기구들은 비준국들이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조약기구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통계적 자료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약의무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도 통계적 자료들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가입 의무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정책 담당자들은 인권통계를 주요 가이드라인이자 매뉴얼, 그리고 자료의 보고로 활용할 수 있다.

인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기존의 통계체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들 역시 인권통계의 주요 이용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로서 인권이 갖는 속성상, 기존의 「사회통합지표」, 「사회보장통계」, 「성인지통계」, 「이민자통합정책지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성과지표」 등 다양한 주제별 지표, 지수, 통계가 작성되어 왔고, 자연스럽게 인권통계의 분야 및 영역과 중첩이 발생하게 된다. 인권통계와 이러한 분야별, 이슈별, 대상별 사회통계 작성 노력들이 얼마나 잘 조화될 수 있느냐에 인권통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사회통계 역시 인권적 프레임으로 구축된 통계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통계 생산·가공 주체들과 인권공동체의 사이의 토론과 상호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인권통계는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다.

제6절 인권통계 체계 구축의 원칙

1. 포괄성

기존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인권지표 및 통계가 자유권 혹은 사회권으로 치우치거나, 소수자 권리로 치우치는 등 필요에 따라 인권통계의 영역이 제한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형 인권통계는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따라 구획된 인권의 제 영역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따랐다. 즉,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이행기제라는 인권의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국제인권규범의 두 가지 축인 시민·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뿐 아니라 국내헌법의 최고 가치 중 하나인 평등권 즉,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독립적인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인권의 실질적 내용 뿐 아니라 인권의 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법적, 제도적 이행기제 역시 중요한 대분류에 포함시켰다.

2. 보편성

인권은 인종, 종교, 교육, 경제적 지위를 모두 넘어서는 전 지구적, 보편적 가치이다.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인권통계 발굴도 중요하고, 통계프레임이 모두 같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분류체계, 방법론, 자료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 및 보편적인 원칙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보편적 인권색인을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최고대표부의 「인권지표 가이드」에서 제안된 개념, 분류체계, 방법론을 적극 활용한 것도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려는 의도이다.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UN의 인권지표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도 국제적 추세를 적극 반영하려는 연구팀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레임워크에 따른 지표 선정 과정에서 규약위원회가 발행한 최종견해의 지적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배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비교까지 염두에 둔 인권통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한국적 맥락성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방식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자유권이 인권의 중심에 서는가 하면, 또 다른 사회에서는 사회권이 인권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사회는 인권에 대한 개인주의적 이해방식을 선호하는가 하면, 다른 사회는 인권에 대한 집단주의적 접근을 우선시 한다. 각 국가별로 통계를 생산하고 분류하는 방식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자료의 질이나 신뢰성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분단의 현실 앞에서 여전히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라는 맥락에서 인권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이다(정진성 외, 2014).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시민사회도 한국적 맥락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는 NGO의 반박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NGO 반박보고서는 조약가입의 의무로써 작성되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작성되며, 한국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국 인권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인권자료의 보고(寶庫)이다.

4. 연속성

한국에서 인권지표에 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도 8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8년 사회권 지표 구성을 시발로, 대학인권지표, 국가기관인권지표, 국가인권지수 등 많은 연구가 누적되었다. 2005년도에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가 수행되었고, 2011년에는 보다 체계화된 조사가 수행되면서, 주관적인 인권지표도 집적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인권통계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새롭게 구축될 인권통계 체계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결핍되었거나 미진했던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더욱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지표들을 발굴하고 제안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5. 측정도구의 다양성

지난 8년 간 한국형 인권지표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지만 대체로 기존의 국가통계를 변형 없이 가져다 쓴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로 숫자 형태로 직접 변환이 가능한 양적, 객관적 자료에 의존하였다. 기존 국가통계 중 인권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작업은 인권통계 작업의 가장 기본이 된다. 객관적 현실을 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의 중요성 역시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인권사회는 양적 도구에서 질적 도구로, 객관적 도구에서 주관적 도구로 관심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서베이 자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조약가입 및 유보, 국내법의 제정, 국제인권법 원용 등 법적 자료를 체계화하려는 노력도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 지난 10여 년 간 누적되어온 인권실태조사, 의식조사의 성과를 이어 받으면서, 다양한 측정 도구에 기반한 새로운 인권통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측정의 구체성

인권선진국들과 선진 국가인권기구들은 추상성이 높은 지표에서 소수자 및 취약 집단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지표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덴마크의 대표적 인권지표인 황금지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캐나다의 평등권 지표가 여성, 장애인, 원주민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 FRA의 자유권 지표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구성되었다는 점은 모두 인권지표가 소수자집단의 권익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층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인권통계는 인권의 실질적 영역(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을 중심으로 구성되긴 하지만, 각 실질적 영역에서 가장 침해 받기 쉬운 소수자 집단을 설정하여 이들의 인권증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거나 제안하고 있다. 즉, 각 인권의 항목에서 가장 취약하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있는 사회집단을 선별하고, 이 집단들 별로 세분화된 통계생산을 제안·지향하고 있다.

제7절 인권통계 체계 구축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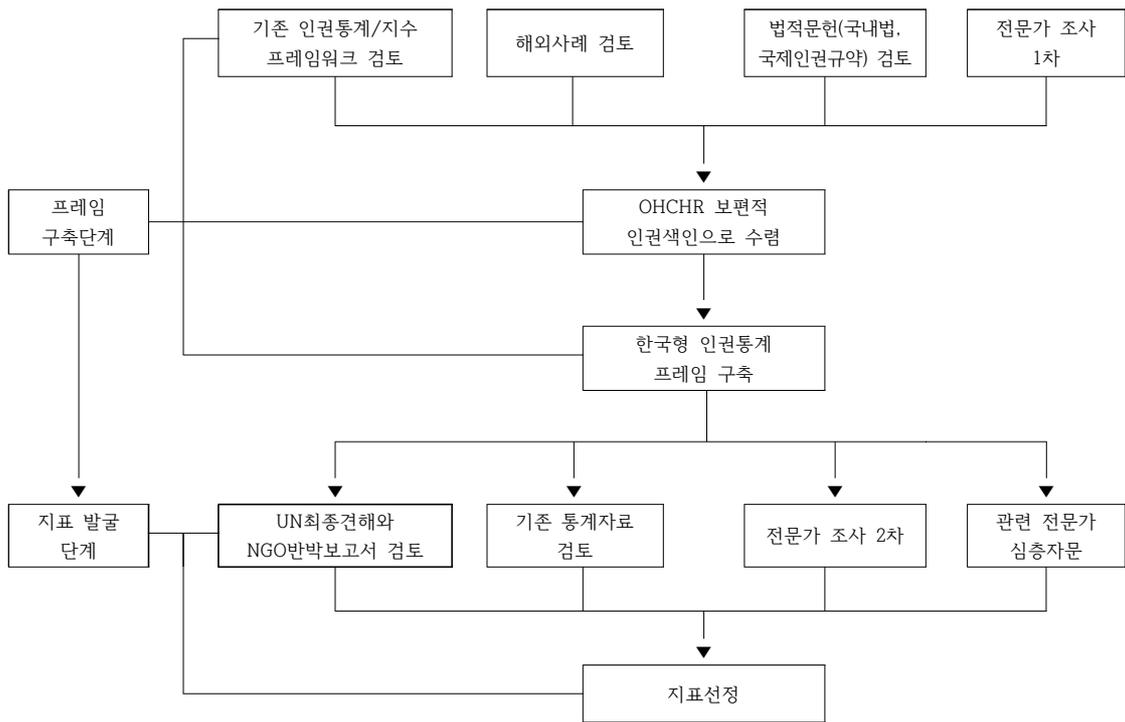
아래의 <표 1-1>은 인권통계 구축의 과정과 전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고 있다.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크게 프레임 구축 단계와 인권통계 구축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프레임구축 단계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1) 기존 인권통계/지수/지표 프레임워크 검토, 2) OHCHR 보편적 인권색인 중점 검토, 3)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축, 4) 1차 전문가 조사를 통한 프레임의 대·중·소분류 수정·보완의 네 개의 과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기간으로는 2015년 7월-9월 사이가 이에 해당이 되며, 이 기간 동안 연구진들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자문교수단 회의를 거쳐 프레임워크를 정교하게 구축하였다. 구글 드라이브에 국내외 문헌, 국제인권규약, 국내 관련 법체계와 NAP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의결과와 연구결

과를 공유하여, 연구진 간의 의사소통을 극대화하였다. 덴마크와 국제기구에 대한 현지 인터뷰 조사도 이 시기에 수행되었으며, 여기서 얻어진 정보와 자문을 바탕으로 인권프레임워크를 조정하였고, 정교화 하였다.

인권지표 발굴단계는 크게 1) 소분류에 상응하는 핵심인권이슈 선정, 2) 각 인권이슈를 측정하는 지표발굴, 3) 자문교수단 회의와 2차 전문가 조사를 통한 지표에 대한 검증, 4) 인권통계 DB구축 및 활용방안 제안 등의 세부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2015년 10월-12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지표 선정에 선행된 핵심인권이슈 발굴 과정에서는 한국이 가입한 7개의 조약기구가 지난 20-30년 동안 발행한 최종견해, 그리고 NGO가 발행한 반박보고서를 모두 검토하였으며, 이 자료들에서 언급된 한국의 주요한 인권이슈들을 주요 이슈 및 우려사항, 언급된 조항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이후 데이터베이스화된 인권이슈들에 적합한 자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국가승인통계 중 사회통계 주제 관련 주요 승인통계 200여종을 검토하였고,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수십 종이 넘는 실태조사를 모두 검토하였다. 또한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에서 집적한 법률 관련 DB들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와 더불어 소수자권리와 관련된 지표들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 환경, 정보, 정치/사상범 등)의 자문을 받아 그 신뢰성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다.

<표 1-1> 인권통계 구축 과정과 전략



제 2 장

선행연구검토 및 해외조사

제2장 선행연구검토 및 해외조사

제1절 선행연구

1. 국내 인권지표 및 통계

(1) 사회권지표

그동안 국가인권지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사회권 지표, 인권지수 개발 등 인권지표 및 인권통계 발전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다양한 사례 가운데 국가인권지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권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권을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의 5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수준에 걸친 총 85개의 사회권 지표들을 제안하였다. 소득보장 영역은 빈곤, 소득불평등,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 기타소득보장, 재분배효과 등 5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권 영역은 최선의 의료서비스, 안전작업 및 생활환경, 건강수준 등 3개 하위 차원으로 나뉜다. 주거권 영역은 주택의 적정성, 점유의 안정성, 주거권 실현과정 등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노동권 영역은 전체고용, 경제활동인구, 비정규노동인구, 노사관계 등 4개 하위차원으로, 교육권 영역은 중등교육, 평생교육, 소득격차 등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별 지표와 관련된 제도들을 제시하였고, 향후 정책 과제와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문진영 외, 2008).

<표 2-1> 사회권 지표구성(안)의 요약

영역	차원	지표구성 (예시)	
소득 보장 (20)	빈곤	빈곤율 (상대빈곤), 빈곤율 (최저생계비), 빈곤갭	
	소득불평등	5분위분배율	
	공적연금·공공부조	공적연금수혜율, 공적연금가입율, 공공부조수혜율	
	기타 소득보장	고용보험가입율, 산재보험가입율, 산전후휴가이용율, 상병급 여수혜율 (*제2수준 지표)	
	재분배효과	빈곤감소율, 빈곤갭감소율, 지니계수개선율, 5분위배율개선율 (*제3수준 지표)	
건강 (19)	최선의 의료서비스	건강보장사각지대인구비율, 건보본인부담율(보장율), 과부담 의료비지출가구비율, 소아예방접종율	
	안전작업·생활환경	식품미보장율, 상수도보급율	
	건강수준	출생시 기대수명, 총사망율, 영아사망율	
주거 (12)	주택의 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주거비 부담정도	
	점유의 안정성	홈리스 수, 강제퇴거가구 수	
	주거권 실현과정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받는 주민에 대한 주거보장	
노동 (20)	노동 시장	전체고용	고용율
		경제활동인구	실업율, 취업율
		비정규인구	한시적근로자비율
	노사관계	전체노조 조직율	
교육 (14)	중등교육	중등교육 탈락율	
	평생교육	평생학습참여비율	
	소득격차	연령집단별 소득격차, 학력별 소득격차	

출처: 문진영 외(2008, 149p)

(2) 국가인권지수

국제인권원칙 및 제도를 근거로 국가인권지수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대표적인 결과물은 구정우 등이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위원회 최종견해의 우려사항을 지표화하여 국가인권지수를 구성한 것이다. 최종견해에는 평가 대상 국가의 인권에 관한 우려사항과 권고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견해를 활용하여 인권지수를 구성하면 국제인권규범을 고려하여 한국의 인권을 평가할 수 있고, 권고 이행 여부를 토대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지표는 인권의 보편성과 한국의 맥락성이 잘 조화되어 있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통계 및 국가인권지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Koo et al, 2012).

<표 2-2> 자유권 규약위원회 최종견해의 우려사항(예시)

분야	우려사항
법/정책집행	고문과 범죄수사절차 개정을 감독할 독립기구의 필요성
수감자, 구금자	정치범의 형기 후에도 세 달마다 경찰에게 동향을 고지할 의무 문제
사상/신념/의견의 자유	사회안전법과 주민등록법과 규약 간의 일치여부
집회의 자유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한 허가 필요 여부(허가 거절 여부)
법집행관에 대한 제한	법관의 임기, 해고, 규율에 대한 법적 조항
사형제도	사형제의 존속
여성/아동	성매매의 범죄해당 여부
이주노동자/외국인/난민/ 기타 소수자	외국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국내법
법/의견보류	국내법에서의 규약의 지위

출처: Koo et al.(2012, 998-999p)

<표 2-3> 사회권 규약위원회 최종견해의 우려사항(예시)

분야	우려사항
법/정책집행	국내법에서의 규약의 지위, 국내법안과 규약 조항과의 조화 정도
노동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사회보장권	국민연금계획 실패(수급연령이 되었으나 가입기간 미충족 문제 발생)
가정지원/보호권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
주거, 식량, 생존권	주거문제에서 사회 특정계층 소외
건강권	정부의 낮은 보건 예산(1% 미만), 개인병원 비율
교육권	중고등 및 대학교육에서의 높은 남녀격차
국제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목표치가 국제 합의 목표치에 훨씬 낮은 수준인 점

출처: Koo et al.(2012, 1002-1003p)

(3) 국가기관인권지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2011년부터 본격화했는데, 구정우 외(2011)의 국가기관인권지수가 첫 번째 결과물이다. 본 연구에서 인권지수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은 국내와 국제의 두 가지 차원 그리고 인권지수, 유관지수, 공공기관지수 세 가지 차원이 교차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국가기관 인권지수가 왜 필요하고, 지수구성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시도되었다.

이론적 논의에 이어 국가인권지수의 이론적 모형과 그 구성요소를 구체화했다. 이는 주관적 차원, 객관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주관적 차원은 설문을 통해서 측정하며 내부자 평가와 외부자 평가의 세부 영역별로 지표를 배치했다. 객관적 차원은 정책적 노력과 결과에 적합한 지표를 발굴하였다. 500여의 관리지표 풀 가운데 최종적으로 19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17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관리지표를 할당하였다. 국가기관 인권지수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식, 계량, 비계량 관리지표들에 대한 평가/점수화 방식 등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통합 인권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였다(구정우 외, 2011).

<표 2-4> 국가기관 인권지수의 이론적 모형

차원	세부영역	지표
주관적 차원	내부자 평가	인권인지도
		인권보호수준
		인권경험 (침해 및 차별)
		해결기제/제도
		리더십
		인권교육
	외부자 평가	인권보호수준
		서비스 수혜자의 차별 경험
		리더십
		서비스 제공시 인권기준 고려
객관적 차원	정책적 노력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재정 투여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인력 배치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정책의 결과	관리지표의 개선 정도
		국민들(전문가 포함)의 정책노력 평가

출처: 구정우 외(2011)

(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지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부터 시도한 국가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은 2012년에도 이어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김태홍 외(2012)의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폴 등 기반 구축 연구>는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로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소수자권리로 구분된 안을 제시하였다. 시민·정치적 권리지수의 영역은 안전권, 적정절차 권리,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으로 구성하였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지수의 영역은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으로 구분된다. 한편 소수자권리를 별도 영역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과정, 성과지표로 구성된 지표 폴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의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지수를 권리 유형 및 분석기간에 따라 별도로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홍 외(2013)의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에서는 2012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국가인권지수를 산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도했다. 우선, 주요 국제인권지수와 지표 산정방법을 상세히 소개했고, 항목별로 한국과 주요국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인권 영역별로 지표 폴을 제시하였고, 항목별 추이를 검토하였다. 표준화 및 영역별 지표 값 산정 방안이 검토되었고, 영역별 인권지표의 우선순위는 계층적 분석법을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초로 지표별로 값 산정 산식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평가했다. 우선 연도별로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값 추이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영역별 인권수준의 변화와 특징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했고, 특히 인권관련 통계 생산이 필요한 지표들의 목록도 제시했다.

김태홍 외(2014)의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은 기존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전문가 조사결과를 기초로 영역별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신뢰성 검증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다양한 국제인권지수 및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은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별로 대표 지표에 대해 시계열 자료와 함께 추이 분석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국가인권지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지표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국가승인통계와 국가인권지수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을 위한 3년간의 작업은 광범위한 자료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권통계 및 지표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역별 지표 선정의 타당성에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제시된 인권지표의 프레임워크와 국제인권규범의 연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표 2-5> 시민·정치권 영역별 최종 지표 (2014년)

영역	지표
생명권	자살건수, 사형집행건수, 살인사건 수, 실종자수,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신체자유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군 영창 구금자 수, 노역장 유치건수,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 폭행 건수, 약취 및 유인건수
공정한 재판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형사보상 인용건수, 구속영장기각건수,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 정보통신의 개인권리침해율,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개인영상정보 설치 건수, 사생활보호 인식 수준
이동자유	저상버스 보급수, 특별교통수단 도입 수준,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 이동의 자유 인식수준
사상·양심·종교 자유	국가보안사범 기소유예 처분건수, 입영 및 징총거부자 형사처벌 건수,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종교관련 정부규제 수준
언론·출판·의사 표현	방송광고 심의건수, 인터넷 게시판 시정 요구건수,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정보격차 수준, 정보접근정도,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집회결사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집회신청 대비 금지통고율,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집회 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참정권	투표율, 국회의원 여성비율, 과장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공정한 선거 보장정도

출처: 김태홍 외(2014, 47p)

<표 2-6> 경제·사회·문화권 영역별 최종 지표 (2014년)

영역	지표
사회보장권	상대빈곤율,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수준, 지니계수, 소득 10분위 배율,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가입률, 보육시설 취원율
노동권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근로자 비율, 연간 실근로시간,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노동조합조직률, 산업재해율,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수준
건강·환경권	기대수명, 건강검진 수검률,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활동의사 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병의원 치료율, 환경성 질환유병률
교육·문화권	취학률, 학교 중퇴자 비율, 평생교육 참여비율, 특수학교 교원 법정 총원율,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중위소득가구) 월소득 대비 주거비, 주택 자가 보유율, 비주택 주거 가구 수, 주거환경만족도

출처: 김태홍 외(2014, 48p)

(5)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는 201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다. 수록하고 있는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내인권통계, 국제인권통계로 구분된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따라 인권정책, 인권상담,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협력, 일반행정으로 구성된다. 국내인권통계는 인권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이주자 관련 통계가 한 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기관 가운데 사법부, 법무부, 경찰, 학교, 헌법재판소 관련 통계가 취합되었다.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 발간 연감 및 백서이고 최근 5개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통계는 OECD 회원국과 G20에 포함되는 총 42개국의 자료를 제시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기구통계는 UN 및 전문기관, 인권조약감시기구, 지역인권재판소, OECD 통계 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였다. NGO 통계는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등 다양한 국제 인권지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술기관 통계로는 정치적 테러 척도(PTS), CIRI 인권지표 등이 제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2014년 발간된 인권통계는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이 변경되었다. 국내 인권통계를 총론 및 일반현황, 주요 인권 취약계층별 통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했다. 시민·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으로 분류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환경권, 교육권·문화권, 주거권으로 구분했다. 2014년 인권통계의 다른 특징은 새로운 지표들이 대거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 관련 통계의 경우,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성폭력 발생 및 검거 건수 현황,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대처 방법,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등의 지표가 새로 도입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6)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된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2007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12년에는 2012-2016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권고안을 작성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 국민 일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부 주도로 매년 자체 평가가 진행된다(대한민국정부, 20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인권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권통계 및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축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영역 및 대상은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으로 구분된다.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로 구분된다(대한민국정부, 201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보건 및 환경권,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은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2).

각각의 세부적인 인권 항목들에 대해 국내적 기준, 국제적 기준, 현황, 쟁점,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의 순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국내적 기준에는 헌법을 포함한 해당 권리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국제적 기준에는 세계인권선언, 각종 유엔 협약 등 국제법적인 근거가 요약되어 있다. 현황에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국내 현황, 국제인권기구의 주요 권고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핵심 쟁점과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도 정리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2).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부록에는 추진과제별로 소관부처가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2).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인권지수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누적되면서 초기에 비해 점점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권의 세부 영역별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여 인권상황을 측정하고 종합적인 지수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지수의 근거가 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가 부족하다. 관련된 국제인권규범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인권의 복합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국가인권지수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지수에서 강조되는 영역, 포함되는 지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선정, 지표별 산식의 확정 등 전체적인 과정에서 엄밀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2-7> 국가인권지수 국내사례 비교표

구분	영역	지표구성 및 특징
사회권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문진영 외, 2008)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	영역별로 차원을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수준에 걸친 85개의 사회권 지표 제안
국가인권지수 (Koo et al, 2012)	자유권 및 사회권의 주요 주제별로 분야 구분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위원회 최종 견해의 우려사항을 지표화
국가기관인권지수 (구정우 외, 2011)	주관적 차원, 객관적 차원으로 구분	196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17개 중앙행정기관에 할당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김태홍 외, 2012)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소수자 권리로 구분	각 영역별로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로 구성된 지표 풀을 제시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김태홍 외, 2013)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김태홍 외, 2014)	영역별 인권지표풀 가운데 계층적 분석법을 활용하여 최종지표 결정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김태홍 외, 2014)		<p>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신체자유, 공정한 재판, 사생활보호, 이동자유, 사상·양심·종교자유, 언론·출판·의사표현, 집회결사, 참정권</p> <p>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환경권, 교육·문화권, 주거권</p>
인권통계(2013)	국가인권위원회통계, 국내인권통계, 국제인권통계	통계청 등 국가기관 발간 연감 및 백서가 주요 자료 출처
인권통계(2014)	국내인권통계를 총론 및 일반현황, 주요 인권 취약계층별 통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	
2012-2016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으로 구성	세부 인권 항목들에 대해 국내적 기준, 국제적 기준, 현황, 쟁점,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순으로 정리

2. 국내 사회지표 및 통계

(1) 한국 사회통합지표

한국형 사회통합지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사회의 ‘통합’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과 영역을 지표화하는 작업은 인권통계 및 지수의 구축 과정에서도 참고할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통합지표와 관련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에 발간한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의 내용 가운데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연계망의 주요 정책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역별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단을 설정하여 절대적 박탈 및 상대적 격차의 발생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영역에 따라 대표적 지표를 선정하였다. 소득(빈곤율, 5분위 소득배율, 지니계수), 금융(가계대출금리, 가계대출연체율, 신용불량자 비율), 고용(고용율, 실업율, 임시·일용직비율), 교육(교육비 지출비중, 학력별 임금격차, 중도탈락율), 건강(의료소의 계층 비율, 주요 질환별 사망률, 의료비 과부담 가구율), 주거(5분위 재산배율, 주택전세가격 지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율), 가족·연계망(이혼율, 자살률, 사회적 연계망)이 그것이다. 결론에서는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통합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 및 통계생산방안, 사회통합지수의 생산 및 공표방안,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사회통합위원회, 2010).

<표 2-8> 사회통합의 영역 및 지표

영역	지표	절대적 박탈	상대적 격차	주요 집단
소득	빈곤율, 5분위 소득배율, 지니계수	빈곤	소득격차 중산층 비중 감소	노인과 아동 근로빈곤층
금융	가계대출금리, 가계대출연체율, 신용불량자 비율	신용불량	고금리 부담 상환 연체	고부채 실업자 신용불량자
고용	고용율, 실업율, 임시·일용직비율	실업자	비정규직 증가 임금격차 (성별 등)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
교육	교육비 지출비중, 학력별 임금격차, 중도탈락율	학교 미진학 중도탈락	사교육비 격차 학업성취도 격차	저소득층 자녀 (빈곤 대물림)
건강	의료소의계층 비율, 주요 질환별 사망률, 의료비 과부담 가구율	의료소의층 주요질환 사망률	의료비 과부담	건보 체납자 빈곤층 비수급자
주거	5분위 재산배율, 주택전세가격 지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율	주거상실	주거비 과부담 자산 격차	노숙자 저소득층 월세자
가족·연계망	이혼율, 자살률, 사회적 연계망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자본 격차	저소득 단독가구 (노인/청년층)

출처: 사회통합위원회(2010, 61-62p 내용을 토대로 작성)

(2) 사회보장 통계관리 전략

사회보장 통계관리 전략 연구는 기존의 사회보장 관련 통계들 간의 연계성과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인권관련 통계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개별적 진행하던 각종 사회보장관련 통계를 집대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사회보장통계들이 가진 한계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개념틀 및 지표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9>와 같다. 사회보장통계의 개념틀과 지표분류체계는 사회보장통계에 포함되는 영역을 설정한 후 각 영역별 기존 지표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최종 통계체계를 구축하는 상향식 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원칙과 구조, 생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므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외, 2012).

<표 2-9> 사회보장통계목록(안)

개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협의	사회복지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노령연금, 차상위, 공공부조 기타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기타
		사회서비스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사회서비스 기타
		사회보상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할린동포, 부랑인/의사상자, 사회보상 기타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자원봉사 및 기부, 사회복지일반 기타
	보건	보건의료	질병,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한방의료, 식품안전, 보건의료기타
		건강	건강증진, 구강보건, 모자보건, 정신보건, 공중보건, 건강기타
		보건산업	보건산업
		보건기타	보건기타
	광의	주거복지	임대주택
주거복지			국민주택기금, 주거복지
교육복지		미취학	유아교육
		학령기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복지 일반	평생교육, 특수교육, 교육기타
고용노동		고용	고용안정, 고용촉진, 고용평등, 고용기타
		근로사회/환경	근로자, 산업재해, 근로사회/환경기타
		노사관계	노사조합, 노사분규
		사업체	사업체
사회/환경		임금	임금, 퇴직연금, 임금기타
		사회안전	범죄, 실종
		사회/환경	사회/환경
문화/체육		문화/체육/예술	여가, 문화/체육예술 기타
		생활체육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성과, 생활체육 기타
재정		세출/재원분담	OECD SOCX, 사회예산, 사회복지분야 주체(중앙, 지방, 민간)별 결산액

출처: 보건복지부 외(2012, 77p)

(3)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통계들이 개별 기관의 관점과 수요에 따라 생산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통계의 중복 생산, 통계 작성의 기준 차이 때문에 통계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작 필요한 통계는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통계의 정의와 목적을 명시하고, 사회통계의 관심영역을 분류하며, 사회통계를 생산할 때 고려할 주요 이슈, 인구집단의 분류 등을 다룰 체계적인 총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인권통계도 일종의 사회통계라는 측면에서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취약인구집단을 설정해서 분리된 사회통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개인, 관계, 경제, 환경의 네 부문은 거시 수준과의 연계를 통해 영역별 지표들과 연계된다. 개인부문의 관심영역에는 건강, 교육과 훈련, 노동이 있다. 관계부문의 범죄와 사법정의, 공동체·시민참여·거버넌스, 가족과 가구,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인구로 구성된다. 소비와 자산, 주거 지표는 경제 부문을 대표하고, 환경 부문은 생활환경이 객관적 지표로 기능한다. 관심영역별 태도 및 가치, 주관적 웰빙은 모든 부문의 주관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사회통계의 총괄 프레임워크에는 통합 영역 쟁점으로 안전, 공공복지, 인권과 차별, 가치와 규범,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지속가능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인권과 차별에 대한 영역별 통합 쟁점으로는 학교폭력/가정폭력(범죄와 사법정의), 관용성(공동체, 시민참여, 거버넌스), 학생인권(교육과 훈련), 표현의 자유(여가와 커뮤니케이션), 부당노동행위(노동)이 제시되었다(이재열 외, 2014).

<표 2-10>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종합모델의 구성

부문	거시 수준	관심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개인		건강 교육과 훈련 노동	관심영역별 태도 및 가치 주관적 웰빙
관계	문화와 제도	범죄와 사법정의	
		공동체·시민참여·거버넌스	
		가족과 가구	
		여가와 커뮤니케이션	
	인구		
경제	경제구조	소비와 자산 주거	
환경	자연자원	생활환경	
		↓	
		웰빙 (삶의 질/사회의 질) / 지속가능성	

출처: 이재열 외(2014, 65p)

3.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1) 국제인권지수

다양한 국제인권지수들은 개별 국가의 인권준수 노력 측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통계 및 지수 구축의 기초가 된다. 대표적인 글로벌 인권지수로는 정치적 테러 척도(Political Terror Scale, PTS), 자유지수(Freedom House Index),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CIRI(Cingranelli and Richards) 인권지수 등이 있다. 우선 정치적 테러 척도는 1970년대 후반 퍼듀 대학의 정치학자들이 개발했고, 국가가 개인의 신체적 안전과 통합유지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고문, 실종, 정치적 구금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다른 인권지수에 비해 측정 대상과 범위가 좁은 편이다.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국제사면위 연례 인권보고서를 원자료로 5점 척도 평가가 이루어진다(정진성 외, 2010).

다음으로 자유지수는 미국의 시민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인권지수이다. 역시 1970년대 후반부터 매년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지표는 국가가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를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이 정치적 테러 척도와 차별점이다. 정치적 자유는 지도자 선출, 법안표결과정 참여 여부 등을, 시민적 자유는 프라이버시 보장, 공정한 재판의 과정에 참여 여부 등을 측정한다. 평가방식은 질문지를 활용한 전문가들의 동료 검증(peer review)을 활용한다(정진성 외, 2010).

CIRI 인권데이터는 정치학자 Cingranelli와 Richards가 주축이 된 빙엄턴 뉴욕주립대학교의 CIRI 그룹에서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인권관행의 세부적 차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적 테러 척도와 같이 개인통합권리를 측정 대상으로 하지만, 고문, 강제실종, 사법외적 살인, 정치적 구금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각각 0~2점을 부여하였다. 이들을 통합하여 신체적 통합권리지수를 발표하고, 역능권리,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를 발표한다(정진성 외, 2010).

마지막으로 인간개발지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측정하는 인권지표이다. UNDP에서 1990년대 이후 각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해왔다. 일인당 국민총소득, 출생 시 기대수명, 성인문해율, 취학률 등 네 가지 하위 지표를 활용해 각국의 발전 수준을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측정한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들을 가공, 합산하여 종합지수를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광범위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하나의 지수로 통합했다는 장점 때문에 국가의 종합적 발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정진성 외, 2010).

지금까지 살펴 본 대표적인 국제인권지수들은 모든 인권지표 및 통계 구축 작업의 이론적, 방법론적 전제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동일한 척도를 활용해서 측정하다보니 개별 국가의 맥락성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이 단순하므로 한 국가의 종합적인 인권통계 구축 작업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UN OHCHR, 유럽연합(FRA), 캐나다 인권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보다 구체적인 인권통계 및 지수 구축 작업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례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2) UN OHCHR

1) 보편적 인권색인

UN OHCHR은 홈페이지¹⁾에 보편적 인권색인(Universal Human Rights Index)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이미 발표된 가이드라인, 일반 논평, 최종 견해, 특별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지표의 방법론적 기본 원칙은 개별 국가의 모든 인권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활용한다. 따라서 조약 기구 및 특별 절차의 결론과 제안들은 주제가 아닌 권리 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최종 견해를 통해 조약 기구들이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둘째, 조약 기구에 따라 분류 기준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분류 과정에서 조약 기구들이 채택한 법적 접근법을 엄밀하게 따른다. 따라서 같은 주제가 서로 다른 항목에 분류될 수 있다. 셋째, 특정한 권리의 이행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이행 수단과 관련된 정보는 개별 항목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고문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적 수단은 처벌 금지 항목으로 분류하게 된다.

UN OHCHR에서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의 구조는 우선 8개의 대분류로 구성된다. 자결권, 이행기제, 평등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그룹 권리, 개발권, 헌신 및 팔로업이 대분류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자결권, 개발권, 헌신 및 팔로업은 한국의 국내적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분류는 세부분류로 다시 구분되고, 경우에 따라 세부 분류는 두 단계로 나뉜다. 가장 하위 항목의 분류 기준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이행기제의 경우 국내법/제도, 국제법/제도, 인권교육,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이 대표적인 세부 분류이다. 다음으로 평등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세부 분류가 불명확하다. 세부 분류 기준으로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외에 대분류와 동일한 평등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집단 권리 대상인 장애인 차별과 그밖에 모든 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기타 차별을 세부 분류 기준에 포함시켰다.

시민·정치적 권리는 신체권, 자유 및 안보권, 기본적 자유, 정의로운 행정, 구제받을 권리, 이름·정체성·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결혼권·가족권, 크로스커팅 주제로 구분된다. 신체권의 세부 분류에는 생명권, 제노사이드, 비사법적살인, 사형,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구금 환경, 노예 및 인신매매가 있다. 다음으로 자유 및 안보권은 자유와 안보,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 구분된다. 기본적 자유에는 이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생활권 등의 중요한 권리 항목들이 포함된다. 정의로운 행정은 재판받을

1) 아래의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고, 상세한 지표의 내용은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uhri.ohchr.org/search/guide>)

권리 및 공정한 재판과 법 앞의 평등권으로 구분 가능하다. 다음으로 구제받을 권리는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 피해자 보상과 회복, 불처벌(Impunity)의 문제를 포괄한다. 이름·정체성·국적을 가질 권리의 대표적 세부 항목에는 임의적 국적 거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체성 보호 등이 있다. 참정권 세부 분류에는 투표 및 선출될 권리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결혼권·가족권은 결혼 및 가족 구성권, 배우자 사이의 평등, 가족 보호 등이 중요한 세부 분류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크로스커팅 주제에는 인권과 반테러, 인권과 용병, 국제 인도적 법률 등이 있고, 비록 보편적 인권색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인권의 문제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Financial Credit) 권리, 문화적 권리, 크로스커팅 주제로 구분된다.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세부 분류 기준으로는 식량권, 적절한 주거권, 사회보장권, 빈곤,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가 있다. 노동권의 경우 일할 권리, 작업환경권, 노동조합권(Trade Union Rights)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사한 작업 결과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변용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Financial Credit)권리는 한국에서는 아직 낮은 개념인데, 주요 세부 기준으로 재산 및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취득명령(purchase orders), 축출, 재정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크로스 커팅 주제에는 비즈니스와 인권, 인권과 독성폐기물이 있고, 환경권의 경우에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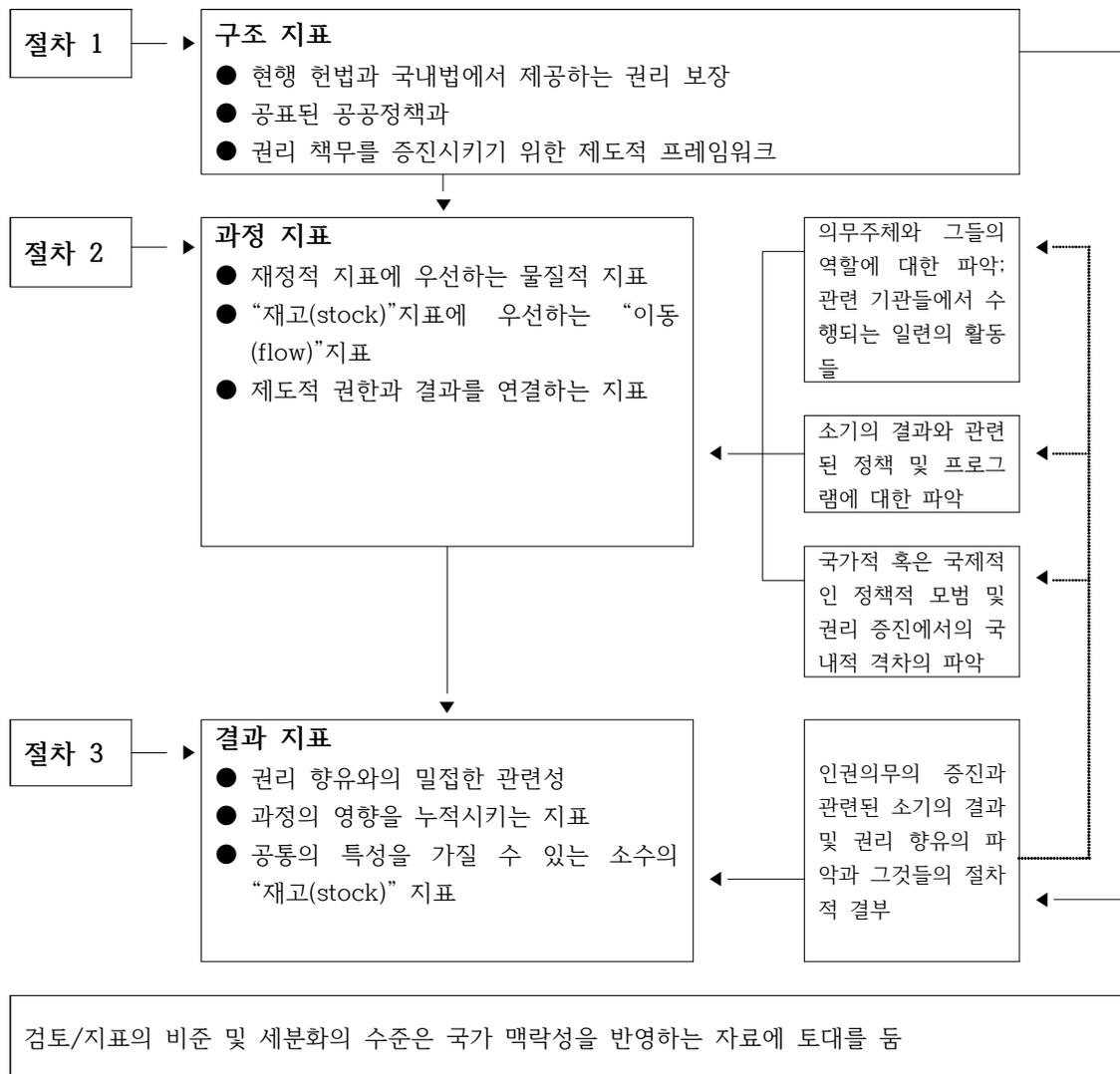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룹 권리는 주요 인권집단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 기타 소수자, 토착민, 이주민, 난민(국내난민 포함) 외에 인권활동가도 그 대상이다. 여성, 아동, 장애인의 경우 세부 지표들도 제시되어 있다. 여성권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별 기반 폭력, 아동권리는 아동권리의 일반 원칙, 가정환경과 대안적 돌봄, 착취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사법, 무력 분쟁과 아동으로 구분된다. 장애인권리의 세부 분류 기준은 장애인권리의 일반 원칙, 접근성·이동·착취, 폭력·학대로부터의 보호, 독립 및 포용,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와 안전, 레크리에이션·여가·스포츠가 있다.

UN OHCHR의 보편적 인권색인은 모든 인권지표 및 통계구축 사업의 출발점이 된다. 국제인권사회가 장기간 집적한 방대한 정보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국제인권 기준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인권 사회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여러 보고서 제출이 더 수월해진다.

2) 인권지표 가이드2)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인권지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인권통계 구축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OHCHR 인권 프레임워크의 일차적인 목표는 인권상황의 추이를 검토하여 국가가 인권증진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무 담지자인 국가의 존중, 보호, 실현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1] 지표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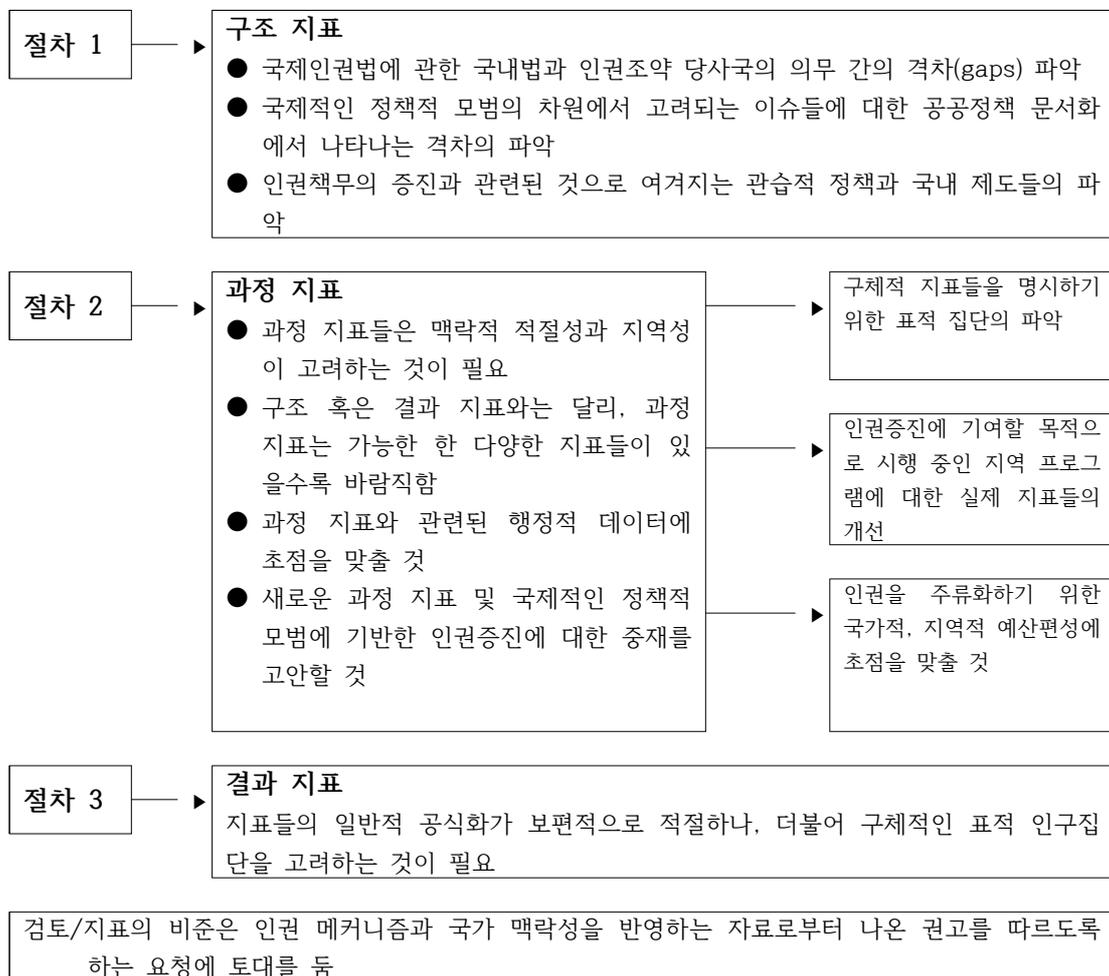


출처: UN OHCHR(2012, 78p)

2) UN OHCHR (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고, 상세한 지표의 내용은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OHCHR 인권지표 가이드에서는 시간에 따른 인권상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조, 과정,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구조 지표는 국가가 인권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한다. 특히 해당 권리와 관련된 국내법 및 정책의 도입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관련 정책의 도입이 구조 지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과정 지표는 인권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예산의 배분, 관련 기관의 기능에 대한 평가 등이 과정 지표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지표는 인권의 실제 변화 상황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 과정 지표와 결과 지표는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 특정 지표가 어떤 권리에 대해서는 과정 지표지만, 다른 권리에 대해선 결과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OHCHR 인권 프레임워크를 적절히 활용하면 기존과 같이 부문별 통계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과정-결과에 따른 영역별 지표 구분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지표의 맥락화



출처: UN OHCHR(2012, 87p)

(3) 유럽연합 기본권위원회

1) 아동 권리 지표³⁾

유럽연합은 2007년부터 아동권리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시작하였다. 리버풀대학교 아동, 가족과 법 연구소를 주축으로 15개월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아동권리 보호, 존중, 증진을 위한 지표개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표들은 유럽연합 기본권위원회(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가 아동권리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표들은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수집되었다. 첫째, UN 아동권리협약을 개념적 프레임워크로 받아들인다. 둘째, 유럽연합의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법과 정책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역의 지표들을 발굴한다. 셋째, 특히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집중한다. 넷째, 이 지표들은 아동의 '웰빙' 지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지표이다. 다섯째, 이미 존재하는 지표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표 선정 과정은 먼저 개념적 프레임워크 및 관련 지표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14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온라인으로 지표 구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초기 연구 결과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유럽연합의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전문가 16명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고, 이렇게 결정된 지표들에 대해서 최종 피드백을 실시했다.

이 지표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여러 원칙 가운데 참여(12항), 반차별(2항), 최선의 이익(3항), 생명, 생존 및 발전권(6항)을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조, 과정, 결과 지표로 구분되어 있다. FRA는 이 지표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며, 아직 검증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표들은 모두 네 개의 핵심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가족 환경 및 대안적 돌봄 영역이다. 그리고 이 영역은 가정 사법, 이주로 인해 가족들과 분리된 아동의 권리와 복지, 가족 재결합의 3개 지표군으로 구분된다. 둘째,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영역은 아동 인신매매, 성적, 경제적 착취,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구분된다. 셋째, 적절한 생활수준 영역과 관련된 지표들은 아동의 소득빈곤, 정부 대응의 영향, 아동의 주관적 지각과 소득 빈곤을 넘어서는 양상들의 3개 지표군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민권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군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 교육의 적응성, 자아개발, 시민권 및 참여가 있다.

유럽연합(FRA)의 아동권리 지표는 아동과 관련된 지표들을 단순 집적한 수준을 넘어서 포괄적인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지표들을 발굴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지표(군)이 국내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법률 및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의 어떤 조항과 관련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표(군)에 해당되는 가용한 자료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실제 유럽연합 각국의 아동권리 현황을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FRA. 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의 내용을 요약했고, 상세한 지표의 내용은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장애인 정치적 참여 권리4)

FRA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유럽 장애전문가 학술네트워크 (European Commission-funded 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 ANED)는 유럽연합 회원국 장애인들의 정치적 참여 보장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29항이 유럽연합 내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의의가 있다. FRA와 ANED의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접근 가능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환경에서 장애인들은 지역 사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정치적 참여 권리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셋째, 정치적 참여를 위한 장벽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위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섯 개의 핵심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치적 참여를 방해하는 법적·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둘째, 투표 절차, 시설, 선거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정치적·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다섯째,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원칙하에 모두 28개의 지표를 선정했고, 기본적 프레임워크는 구조-과정-결과 지표로 구성되었다. 구조 지표들은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고, 과정 지표들은 장애인들의 투표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결과 지표는 실제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경험을 드러낸다. FRA의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 권리: 인권지표」 보고서는 정치참여를 제약시키는 법·행정 장애물 해제,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 인식 증진,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투표 절차·시설·선거 자료 준비,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네 가지 주제별로 구조, 과정, 결과로 구분하여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치참여를 제약시키는 법·행정 장애물 해제와 관련된 구조 지표에는 투표권의 제한, 투표에 필요한 법적 사항, 도움제공 의무 등이 있다. 과정 지표에는 고소 사례, 항의 및 민원 사례, 국제항의 사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 지표에는 장애인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비율이 있다. 한편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 인식 증진과 관련된 구조 지표는 선거관리자들에 대한 훈련, 과정 지표는 투표소에 대한 가이드, 결과 지표는 선거관련 공지 접근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 권리라는 한정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표 및 통계 수집 작업에 앞서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과 관련된 핵심 원칙들을 도출했고, 인권지표 및 통계 구축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구조-과정-결과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원칙들과 지표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실제 통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여 학습 효과를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4) FRA. 2014.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indicators*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고, 상세한 지표의 내용은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캐나다 인권위원회

1) 평등권 프레임워크⁵⁾

캐나다의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인권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뢰할 수 있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평가를 위한 목적은 아니고, 가용한 데이터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은 국내적, 국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캐나다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두는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을 측정하는 공식 보고서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적절한 자료의 부재는 평등권의 문제에 대해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가 근거에 기반을 둔 개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낳는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인권레짐의 제안에 대해 대응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증진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프레임워크의 법적 기반은 캐나다의 법과 정책에 두고 있고, 평등을 목적에 들어맞고, 실질적이며, 진보적으로 이해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프레임워크 구축 작업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2006-7년까지 진행된 1단계의 주요 작업은 인권 및 통계적 관점에서 관련된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예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2단계 작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었고, 1단계 프레임워크를 125명의 전문가들이 심층 검토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지표들에 대해 통계기관들의 철저한 검증이 2010년 3단계 작업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물이 2010년 발간된 평등권 프레임워크 보고서이다.

원주민 정체성, 나이, 장애, 인종, 가족 상황, 결혼 상태, 국적(시민권),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의 11가지 기준이 평등권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인권의 핵심 집단으로 평등권 프레임워크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관련 있는 “웰빙”의 측면에 따라 구조화되었다. 경제적 웰빙, 교육, 고용, 건강, 주거, 정의와 안전, 정치적 개입과 사회 통합이 7개의 주요 영역이다. 각 영역별로 지표들을 선정하고, 국가 통계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웰빙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로는 수입 불평등(총수입), 저수입, 수입중양값(개인과 가구), 부가 있다. 수입불평등(총수입)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적 자료에는 최상위권5분위와 최하위 5분위 수입 분배 차이가 있다. 보고서에는 이 지표가 선정된 근거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또한 각각의 자료에 대해 핵심 집단 별로 가용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표기하고 있다.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5년 간 3단계의 작업을 거쳐 구축되었다. 또한 전체 인구 집단이 아닌 인권의 측면에서 중요한 집단별 통계의 구축을 강조한다. 한편 프레임워크의 법적 기반을 국제인권법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서도 찾고 있다. 이런 특성들은 한국의 인권통계, 지표 구축 작업 역시 지향해야 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5)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0)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고, 상세한 지표의 내용은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 권리 지표⁶⁾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2010년 평등권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이 틀에 따라 2012년에는 장애인의 평등권 보고서, 2013년에는 선주민의 평등권 보고서, 2014년에는 여성 평등권 보고서(*Report on Equality Rights of Women*)가 발간되었다. 이 가운데 여성 권리 지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성 권리 지표는 교육, 고용, 경제적 웰빙, 건강, 주거, 정의와 안전, 정치·사회적 통합 등 모두 7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교육 영역은 캐나다가 비준한 사회권협약 13조와 아동권리협약 28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0조에 근거한다. 세부 지표로는 교육 등록, 교육 수준, 고등학교 중퇴, 교육 보조에 대한 접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이 있다. 보고서에는 개별 지표에 대해 성별로 구분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고용 영역은 사회권협약 6, 7조의 일할 권리, 생계유지 기회, 우호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등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에는 노동력에서의 지위, 전문화와 고용 간의 관계, 일 관련 혜택, 일의 질, 소득 보조에 대한 접근이 있다. 가령, 일의 질 지표와 관련된 통계에는 업무 만족도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남·여 구분 통계가 있다.

한편 경제적 웰빙 영역은 사회권협약 6-11조의 공정한 급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사회적 안전, 적절한 생활수준 등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구 실소득액, 저소득, 부를 세부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별 통계를 제시하였다. 가구 실소득액 지표의 경우, 조정된 가구 실소득액 중간값과 분위별 조정된 가구 실소득액 중간값이 제시되었다. 주거 영역은 사회권협약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절한 주거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의 질과 구입 능력, 홈리스 상태, 주거에서의 차별 지표와 통계가 제시되었다. 건강 영역은 사회권협약 12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12조에 규정되어 있고,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체질량지수, 기대수명, 정신 건강, 보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노동에 대한 건강 상태의 영향, 공공 의료시설 또는 의료 종사자 관련 차별 등의 지표를 포괄하고 있다.

정의와 안전 영역은 범죄 및 사법 시스템과 접촉하는 사람도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지표들은 사법 시스템 경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경찰과의 접촉,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 및 법원 관련 차별, 가정 폭력, 증오 범죄, 범죄 피해자, 범죄에 대한 취약성, 보호소 이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참여와 사회 통합 영역의 근거는 캐나다 법률과 자유권 협약 25조, 여성차별철폐협약 7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 참여, 사회통합,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통계들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여성 권리 지표는 평등권 프레임워크를 주요 인권집단 가운데 하나인 여성에 적용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주요 인권그룹별 통계 구축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6)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2014)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고, 상세한 지표의 내용은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해외현지조사

1. 인권선진국 사례

(1) 인권선진국 선정 기준

인권통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통계를 생산, 수집, 관리하는 인권선진국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덴마크와 캐나다를 선정하여 이들이 실행하고 있는 인권통계에 대한 연구를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이들 두 국가를 선정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인 인권선진국이다. 인권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인권통계지수 중 하나인 CIRI Human Rights Index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의 1981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권지수(Physical Integrity Rights) 평균을 계산한 후, 이 평균값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위 20개국을 선정하였다.

둘째,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였다. 인권선진국의 대부분 국가들은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그 외에는 오세아니아에 2개국(뉴질랜드, 호주)이 있으며 북미, 중미, 아시아, 중동의 각각 한 국가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이들 국가 중 인구가 5백만 미만인 국가는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인구가 너무 적은 국가를 선택하였을 경우, 한국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인권통계나 인권지수를 생산, 수집, 관리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국가를 선택하였다. 만약 인권위원회나 정부에서 특별한 인권지수를 수집하고 있다면 한국은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현지조사 및 인터뷰가 가능한 덴마크와 캐나다를 대표 국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인권선진국 상위 20개국 중에서 인구 5백만 이하를 제외한 13개국 중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인권상황이 가장 좋은 국가에 해당한다. 다만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대신 덴마크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네 번째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한 것이다.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인권통계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인권통계와 지수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인 일본은 네 번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일본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며, 인권통계에 대한 노력이 괄목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는 캐나다가 인권선진국인 동시에 인권통계에 대해 노력을 해 온 점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표 2-11> 국가별 인권지수 순위

순위	국문명	영문명	지역	인구수	인권지수
1	아이슬란드	Iceland	유럽	319,014	8
2	룩셈부르크	Luxembourg	유럽	518,347	7.96774
3	노르웨이	Norway	유럽	4,953,088	7.93548
4	네덜란드	Netherlands	유럽	16,693,074	7.90323
5	덴마크	Denmark	유럽	5,570,572	7.87097
6	뉴질랜드	New Zealand	오세아니아	4,405,200	7.80645
7	벨기에	Belgium	유럽	11,047,744	7.77419
8	핀란드	Finland	유럽	5,388,272	7.74194
9	스웨덴	Sweden	유럽	9,449,213	7.6129
10	스위스	Switzerland	유럽	7,912,398	7.54839
11	독일	Germany	유럽	81,797,673	7.5
12	아일랜드	Ireland	유럽	4,576,794	7.3871
13	캐나다	Canada	북미	34,342,780	7.29032
14	일본	Japan	아시아	127,817,277	7.25806
15	코스타리카	Costa Rica	중미	4,737,680	7.19355
16	포르투갈	Portugal	유럽	10,557,560	7.19355
17	호주	Australia	오세아니아	22,340,000	7.12903
18	오스트리아	Austria	유럽	8,406,187	7.12903
19	오만	Oman	중동	3,024,774	7.03226
20	헝가리	Hungary	유럽	9,971,727	7

출처: CIRI Human Rights Index를 사용하여 직접 작성⁷⁾

(2) 인권선진국의 인권통계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캐나다와 덴마크의 인권통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덴마크 인권위원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인권지표와 함께 국가 및 지역의 인권통계를 구축하였다. 인권이행에 관한 측정을 기본으로 하여, 공식적인 책무, 시민 및 정치권에 대한 책무, 경제사회 문화권에 대한 책무, 성차별 근절에 의한 책무와 관련된 인권통계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김태홍, 2012). 이와 더불어 덴마크 인권위원회는 2014년 황금지표(Gold Indicator)라는 보다 세분화된 인권지표를 생산하고 수집하였고 2015년 황금지표를 완성하였다. 황금지표는 덴마크가 지향하는 새로운 인권지표와 통계자료의 대표적인 표본이 될 것이다. 차별(discrimination), 접근성(accessibility), 독립적인 삶(independent living), 교육(education), 직업(work and employment),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적절한 삶의 질과 복지(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security), 인식개선(awareness-raising), 건강(health), 인간적 진실성(personal integrity)이라는 10가지 분

7) CIRI Human Rights Index (www.humanrightsdata.com)

야에 대해 인권지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⁸⁾

2010년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CHRC)에서는 평등권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Documenting Equality Rights)를 시작하였다(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0). 이 프레임워크는 캐나다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인권통계를 구축하고, 캐나다의 인권법에 의거하여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권,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 부문이다. 각각의 부문에는 평등에 기반을 둔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참여, 사회적 포용성, 서비스에 대한 차별 등이 지표화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양적인 측정을 통해 인권통계를 생산하고 수집과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원주민의 평등권에 관한 보고서, 장애인의 평등권에 관한 보고서, 여성 평등권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이들 보고서에서는 대상에 대한 인권통계가 자세히 수집되어 있는 동시에 인권에 대한 개선점까지 제시되어 있다.

(3) 덴마크 사례 연구

1) 현지조사/인터뷰의 필요성과 전략

현지조사 및 인터뷰는 사전 조사와 사전 면담을 통한 준비 단계, 현지조사 및 인터뷰 실행 단계, 그리고 최종 정리의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 단계는 기존의 문헌, 인권통계 담당 부처 혹은 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메일 혹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인권선진국의 인권통계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인터뷰를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지조사 및 인터뷰 단계에서는 먼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 인권통계의 총책임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이러한 단계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인권통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수 있었다.

2) 인터뷰 준비 과정

① 인터뷰의 목적

현지조사 및 인터뷰가 필요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통계를 수집함에 있어 발생했던 한계점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인권통계 수집 과정 자체를 이해함과 동시에, 인권통계 수집 시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인권통계 자체가 가진 한계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특히나 비정부기구들은 공식적인 인권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지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둘째, 인권통계 수집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인권통계를 수집하여 왔다. 효과적인 인권통계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셋째, 인권통계를

8) 덴마크 인권위원회의 황금 지표에 관한 설명 참조

(<http://www.humanrights.dk/activities/our-work-denmark/disability/gold-indicators-crpd>)

이용한 보다 나은 인권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현지조사 및 인터뷰는 단순한 인권통계 수집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향후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해답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권선진국이 인권개선을 위해 인권통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②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선정, 소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덴마크와 캐나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인터뷰는 인권통계를 생산하는 주요 정부 부처 혹은 인권위원회의 전담 부서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각 국가의 인권통계에 관여하거나 인권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이하 NGOs)를 함께 방문하여 공식적인 인권통계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점도 함께 조사하였다. 덴마크의 경우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의 모임인 장애인을 위한 비정부기구 연합(Danske Handicaporganisationer-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Denmark)을 덴마크 사무소를 방문하여 국제적인 인권통계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덴마크 인권통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캐나다에서는 1964년에 설립되어 캐나다 국내 인권증진과 감시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 시민적 자유 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를 방문하였다.

덴마크의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이루어 졌으며 각 부서의 인권통계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대략 1시간에서 2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 2-12> 덴마크 인터뷰 일정

장소	출장자	인터뷰 일시	면담대상자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김영완	2015.8.18 12 pm	Hans-Otto Sano Senior Researcher Program Manager hosa@humanrights.dk Tel) +45 32698888 Wilders Plads 8 K DK-1403 Copenhagen, Denmark http://www.humanrights.dk/
덴마크 통계청 (Statistics Denmark)	김영완	2015.8.17 3 pm	Olav Grondal Head of Section ogd@dst.dk Tel) +45 39173109 Danmarks Statistik

장소	출장자	인터뷰 일시	면담대상자
			Sejrøgade11 2100Kbh. Ø Copenhagen, Denmark http://www.dst.dk/en
덴마크 장애인 NGOs 연합 (Danske Handicaporganiza- tioner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Denmark)	김영완	2015.08.17 10:30 am	Signe Højsteen Chefkonsulent, Senior Advisor sih@handicap.dk Tel) +45 24609923 Blekinge Boulevard 2, 2630 Taastrup, Danmark www.handicap.dk

인터뷰 대상으로 인권통계와 관련이 높은 세 단체를 선정했다. 우선,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국제연합의 파리선언(UN Paris Principles)을 준수하는 덴마크의 국가인권기구이다.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는 1987년 5월 5일 의회의 결정에 따라 덴마크 인권센터(Danish Centre for Human Rights)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는 덴마크 인권센터의 한 일부였으나 2012년 인권센터의 폐쇄로 인해 다시금 독립 조직으로써 탄생하였다.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식(Comprehensive approach)을 취하며,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에 정통한 약 110명의 직원들이 있다. 세계의 국가인권기구들 중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조직 중 하나이다.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에서 A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ICC의 의장을 맡기도 하였다.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법안의 초안에 대해 정부, 의회, 부처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인권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국외적으로도 전 세계의 인권확립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공헌하고 있다. 덴마크가 어떠한 인권정책을 통해서 인권선진국이 되었으며 인권통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Dr. Hans-Otto Sano로 정했다. 그는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통계에 가장 정통한 담당자로 알려져 있으며 20여 년 동안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에서 인권통계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는 현재 덴마크 인권위원회에서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Program Manager)으로 일하고 있다.

[그림 2-3]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그림 2-4] 덴마크 통계청 입구 전경



다음으로 덴마크 통계청은 덴마크 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덴마크의 통계에 관한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주요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덴마크의 인권통계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유지되며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덴마크 통계청은 1850년에 1849년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사회내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the Interior)의 산하기관으로 있다. 덴마크 통계청은 1994년 채택된 국제연합 공식통계 근본원칙(United Na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을 준수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통계 생산을 해오고 있다. 또한 1896년부터 매년 덴마크 통계연감(Statistical Yearbook)을 발간하여 덴마크 사회 전반에 대한 통계를 생산해 오고 있다. 인권에 대한 통계 역시 집계하고 있으며 필요시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인권통계 생산에 참가하고 있다. 덴마크 통계청에서는 부처 팀장(Head of Section)으로 재직하면서 인권통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Olav Grondal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Danske Handicaporganisationer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Denmark)은 33개의 장애인 관련 NGOs를 회원을 지닌 연합 NGO(Umbrella NGO)로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

고 있는 조직이다.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의 회원들은 덴마크 내에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은 이들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덴마크 정부와의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덴마크에 존재하는 여러 NGOs 중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이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NGOs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NGO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각각의 NGO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이다. 둘째, 덴마크 정부와 NGOs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NGO이기 때문이다. 덴마크 정부가 진행하는 장애인인권 관련 많은 사업에는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력과 갈등의 축을 이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황금지표를 비롯한 인권통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인권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황금지표에 덴마크 장애인 NGO는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황금지표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통계 사업에 NGOs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 그림은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이 있는 건물의 전경이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 NGOs이 민간과 정부가 합작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춰진 이 건물에 같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에서는 황금지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분야에 20여년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석고문(Senior Advisor)으로 일하고 있는 Signe Højsteen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5]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 전경



[그림 2-6]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의 Signe Højsteen



③ 인터뷰 대상자 접촉

현재 덴마크의 인권관련 기관에 대한 연락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기관을 선정할 이후 인권통계에 관여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먼저 기관에서 인권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아래 이메일의 내용은 먼저 인권통계 사업, 연구팀, 인터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인권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다. 연락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메일만으로는 어떤 기관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결국 유선으로 각 기관에 연락을 하였고 각 기관의 안내 데스크에서 담당자를 알려주었다. 이를 통하여 덴마크 인권위원회,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에서 근무하는 인권통계 담당자와 연락이 되었고 이메일을 통해서 세부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인터뷰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표 2-13> 인터뷰 요청 이메일

To Whom It May Concern,

Hello.

My name is Youngwan Kim, Assistant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a team member for the human rights statistics project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project is being officially conducted by NHRC of Korea. We a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human rights statistics in 2015.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statistics, we

want to conduct in-depth interview with staff in charge of human rights statistics at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If possible, I want to set up the interview with staff any time from August 17 to 18. Please do understand the short notice and availability due to time and resource constraint caused by long travel from South Korea.

Hope to hear from you as soon as possible.

Sincerely,

Youngwan Kim, Ph.D.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Language & Diplomac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el. 82-2-2173-8816 Cell. 82-10-3701-8511

Email: youngyoungwan@gmail.com; youngwan@hufs.ac.kr

④ 인터뷰 질문지 내용

인터뷰 질문지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인터뷰 대상의 활동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인권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에 대해 질문하였다. 어떻게, 왜 인권통계를 만들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인권통계의 어려움과 유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네 번째 부분은 인권선진국 혹은 인권국제기구로서 한국의 인권통계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 그리고 제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은 인권선진국인 덴마크, 캐나다, 그리고 국제기구인 유럽연합과 국제연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각각의 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질문들로 구성이 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4> 인터뷰 질문지

<<Human Rights Statistics Interview Questionnaire>>

1. Common Questions

- 1) Please explain your organization in general. What's the main purpose of the organization?
- 2) How do you define human rights? Do you have any viewpoint other than the on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reements?

- 3) What can be your framework for human rights statistics? How do you identify the components of your framework of human rights indicators? What do you think are the key aspects for understanding your framework?
- 4) We have an impression that your organization put an emphasis on some of human rights such as rights of women and rights of ethnic minorities. Do you think they are the most urgent human rights concerns in your country(region)? Or, do you think improvements of those rights bring another improvements?
- 5) Please explain why your organization focuses on specific rights rather than covers all sorts of human rights including rights in the traditional sense?

2. Human Rights Statistics Collection Questions

- 1) Do you think human rights statistics help countries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How can human rights statistics help countries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Can you tell me about your personal experience to assist a country if you have an experience?
- 2) What kinds of human rights are being monitored or should be monitored? What kinds of human rights statistics are being collected? Why do you choose specific statistics of human rights? For example, how can we monitor the basic rights of LGBT, roma, disabled, women, poor, powerless, immigrant, or refugee?
- 3) How do you monitor different kinds of human rights? Do you have any subtle strategies for monitoring a specific kind of human rights? For instance, how do you keep an eye on some delicate rights including freedom of thought or online privacy issues. How are you monitoring different kinds of human rights?
- 4) Do you have HR statistics data base? How precise your statistics can be?

3. Difficulties of Human Rights Statistics Collection Questions

- 1)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existing human rights statistics?
- 2) What is the main challenge or problems of collecting human rights statistics?
- 3) How can you collect human rights statistics when the government does not want to release or does not collect? For example, human rights statistic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 4) How do you converge different national human rights statistics from different nations?
- 5) SWOT of collecting human rights statistics
 - Strengths
 -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6) Do you think you do not need to worry about any human rights violation caused by the abuses of state power (in Denmark, Western Europe, Europe, EU)? If so, what can be the most serious violation? If not, how do you achieve it?

7) It seems that you overcome the problem with your own people. However, what about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s and refugee?

8) Do you ever suggest to make new statistics regarding human rights? Do you have any difficulties to work with other departments in your government?

4. Suggestion for South Korean Human Rights Statistics

1) What would you suggest for collecting human rights statistics in South Korea?

2) How can we make human rights statistics comparable to other nation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 How did you consult other nations such as Nepal, Ecuador, the UK, India, and Mexico for collecting human rights statistics?

4) Please tell us about your organizations' assistance and consultation of countries such as Nepal, Ecuador, the UK, India, and Mexico for collecting human rights statistics.

5.1. Denmark Specific

1) As we know, you are collecting gold indicator. Please explain about it.

2) How do you work with the government? Or monitor it?

3) Why do you focus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Will you develop other kinds of gold indicators?

4) Is it possible for other countries to adopt the similar framework of gold indicator?

5) How do you build up the data base? Do you have any plan to do it? How do you publicize your HR statistics?

6) Are NGOs in Denmark involved with the process of collecting human rights data? Do NGOs think that Danish government is producing human rights statistics correctly? Do NGOs provide statistics? Do NGOs suggest anything regarding human rights statistics?

5.2. OHCHR Specific

1) What is your further plan for human rights indicator project?

2) Are you planning to develop the present indicators for the comparison across countries? If you have a plan, please explain about your existing human rights indicator database?

3) Do you plan to change it to comparison among countries? For the comparison across countries, do you have any plan for further development of your existing human rights indicator database?

4) Do you collect your own human rights statistics by yourselves? Or will you use the current human rights statistics provided by each government? Or, do you request each government to provide statistics?

5.3. EU Specific

1) You're focusing on specific group rights such as LGBT. Why do you choose those groups? Why do you focus on them, rather than other groups? Why are they more important than other groups?

5.4. Canada Specific

1) Why and how did you develop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statistics?

2) Do you think that South Korea can also use the framework that your organization developed? If so, how can we do it?

3) 인터뷰 결과

① 인권통계에 대한 이해

인권통계에 대한 인터뷰 질문 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인권통계에 대한 필요성과 인권통계가 인권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었다. 인권통계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인권의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인터뷰가 이루어 졌다. 먼저 Dr. Sano는 인권통계가 가진 힘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권통계 구축은 인권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나라의 인권이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인권통계라는 것이다. 인권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덴마크도 정세의 변화와 국내의 상황에 따라 국내 인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인권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인권통계는 한 시점에서의 인권상황을 측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권이 증진되었는지 혹은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향상을 위하여 인권통계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인권이 어느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인권통계라고 하였다. 국내의 인권상황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인권통계이다. 만약 모든 국가가 비슷한 혹은 같은 방식으로 인권통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각국의 인권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인권증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져오고 중국에는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은 예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정도로 증진되었다. 하지만 아직 인권선진국인 덴마크에 비하면 그 상황은 열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다른 인권통계로서 비교가 가능하지만 덴마크와 한국이 비슷한 인권통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권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외적인 요인과 함께 보다 세분화된 집단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권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Dr. Sano가 지적하였듯이 덴마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많은 경우는 난민이나 이주민들이라는 특정한 집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의 인권은 덴마크 시민들의 인권보다 저급한 수준으로 그 기준이 맞춰져 있으며 덴마크 정부 역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 사회의 이런 외면된 집단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통계가 수집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인권향상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보다 나은 인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권통계가 인권증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인터뷰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모델로 나타내질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인권통계의 시작은 먼저 인권에 대한 상황 파악에서 시작된다. 인권상황 파악으로 인하여 인권통계 구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기별 인권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축된 인권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드러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견은 인권정책의 입안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권정책은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거나, 정책 이행이 미비할 경우에는 인권향상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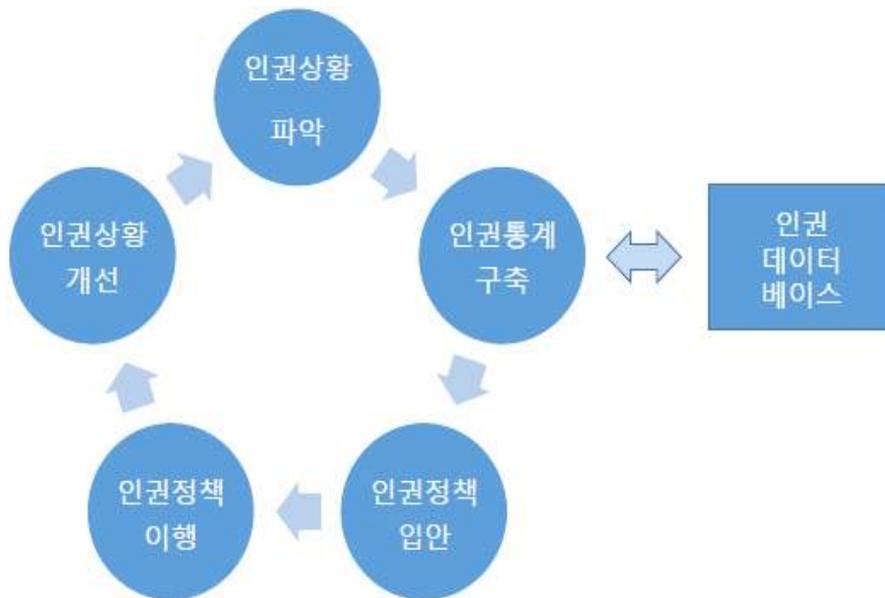
이 단계를 거치면 다시 인권상황에 대한 파악이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통계가 작성되는데 이러한 인권통계는 전년도 혹은 과거의 인권통계와 비교가 된다. 인권통계를 통하여 인권이 증진되지 못하고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전에 진행되었던 인권정책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인권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의 민주정부는 과거의 인권통계에 비해서 현재의 인권통계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정책이 수립된다고 모두 동의를 하였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여된 황금지표는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런 통계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얼마나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통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참정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보다 쉽게 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테면, 맹인을 위한 투표 방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이행을 통해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이클을 거치면서 한 국가의 인권상황은 서서히 개선되어 왔고 인권선진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덴마크의 인권상황은 과거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향상되었는데 이는 인권상황과 인권통계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7] 인권통계의 인권증진에 대한 영향력



출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덴마크 통계청의 Grondal은 통계가 가진 일반적인 영향력을 언급하였는데 인권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구축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책 입안자들이 통계를 사용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도 통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공고히 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형태의 정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통계는 때때로 왜곡되기도 하고 오용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통계기관의 객관성이 뒷받침된다면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② 인권통계에 구축에 대한 접근 방법

덴마크는 인권선진국인 동시에 인권통계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룬 국가이다. 특히, 최근 개발한 황금지표는 덴마크 내의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이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장애인 인권통계이다. 이 황금지표의 특이한 점은 정부 주도 하에 많은 인권관련 행위자들, 특히 장애인인권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10가지 황금지표 중 차별방지(Non-discrimination) 지표에 참여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단체들을 보여준다. 다른 황금지표들 역시 지표들의 특성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보통 운영위원회는 정부의 다양한 부처(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혹은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등), 연구기관(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NGOs(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Denmark), 민간 협회(Danish Deaf Association)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였던 Højsteen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10가지 황금지표들이 확정될 때까지 상시, 수시 회의를 거쳤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의 참여는 덴마크가 황금지표를 성공적으로 발주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황금지표가 정당성을 가지고 장애인 인권통계로서 활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표 2-15> 황금지표 운영위원회 (차별방지)

Andreas Jull Sørensen, Executive Secretary (The Danish Disability Council)
Hanne Stig Andersen, (Ministry of Social Affairs)
Hans Andersen, (LEV - National Association Denmark for person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eppe S. Kerchkoffs, (The Danish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asper Bergmann, (Danish Deaf Association)
Knud Christensen, (the Danish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Lasse Boje Nielsen, (Ministry of Justice)
Malene Damgaard, (Appeals Board, anti-discrimination unit)
Morten Engberg, (the Danish Parliamentary Ombudsman)
Signe Højsteen,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Denmark)
Sven Fandrup, (Rare Diseases Denmark)
Soren Buggeskov, (Ministry of Housing, Urban and Rural Affairs)
Soren Ginnerup, (SBI -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Thomas Holberg, (DUKH - The Independent Consultativ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출처: Decision on Gold Indicator of Discrimination-Article 5,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인터뷰 진행 중 인권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논의는 가장 심도 깊게 진행된 사항 중 하나였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인 인권통계를 구축할 수 없을뿐더러 인권통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답변하였다. 특히 Dr. Sano는 덴마크 인권위원회에서도 매년 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정작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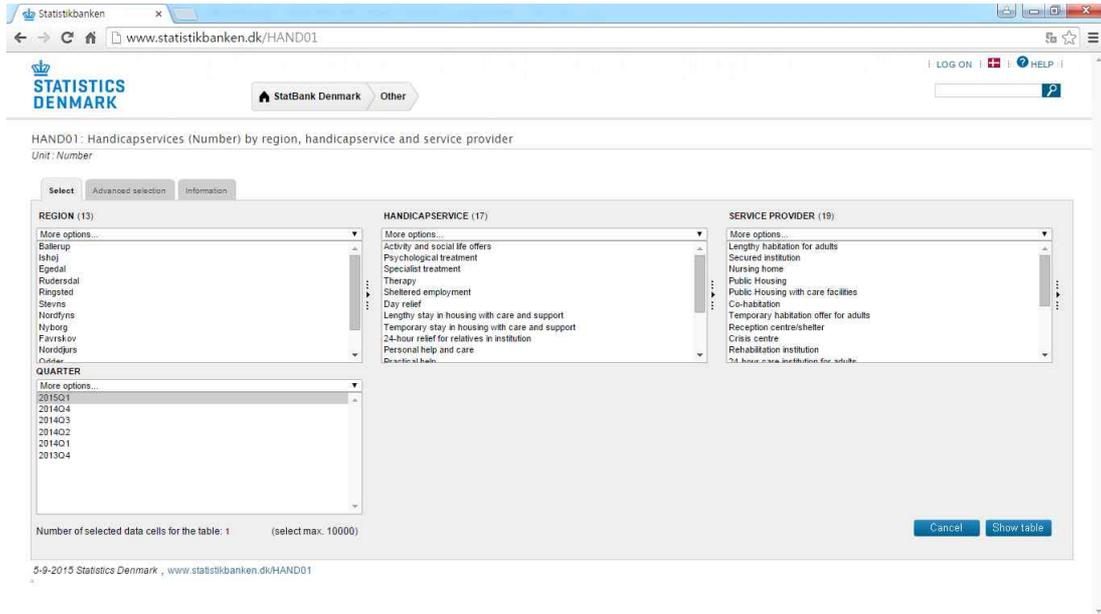
그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인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덴마크는 인권선진국이지만 인권위원회 내에서 아직 인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정책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언제, 누구든지 인권에 대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덴마크 통계청의 Grondal은 통계학자로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통계학자로서 인권통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덴마크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접근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 통계청은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하여 덴마크 통계청에서 별도의 요청 없이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일례로 덴마크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에 관련된 서비스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여 주었다.⁹⁾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권익 향상, 후생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집단의 상황과 실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인권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Grondal은 언급하였다.

9) 덴마크 통계청 장애인 서비스 현황 데이터베이스 참조 (<http://www.statistikbanken.dk/HAND01>)

<표 2-16> 덴마크 통계청 장애인 서비스 현황 데이터베이스



③ 인권통계에 대한 정부와 NGOs의 관계 및 입장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덴마크에 있는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NGO들의 연합 단체로서 많은 NGO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황금지표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인 NGO 연합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하여 매 회의마다 참석하여 의견을 내었고 이러한 과정은 문서화되어 있다.¹⁰⁾ 이 단체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주도하였고 황금 지표 탄생에 깊이 관여하였던 Højsteen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단체는 상당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황금 지표 탄생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많은 회의를 통해서 민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왔으며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다양한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장애인 인권지표를 만들 수 있다. 정부나 혹은 그 산하 기관이 장애인 인권통계를 주도할지라도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시 행정이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통계지표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둘째, 정당성(legitimacy)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민간단체의 참여는 장애인 인권통계나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수용한 통계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는 향후 정부에게 향할 수 있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인 것이다. 셋째, 민관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유동적인 인권통계 구축이 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정세 변화를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반영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관을 참여

10) 덴마크 인권위원회 황금지표 관련 자료 참조

(<http://www.humanrights.dk/activities/our-work-denmark/disability/gold-indicators-crpd>)

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정체를 반영할 수 있다.

인권통계의 민간 참여의 장점으로 Dr. Sano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민자와 난민들의 인권을 예로 들었다. 덴마크 인권위원회도 정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덴마크 정부는 이민자와 난민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들의 상황을 통계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의 인권 NGO들이 나서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덴마크 인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보다 정확한 인권통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이 나타난 바람직한 결과이며 이는 보다 나은 인권정책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덴마크 정부와 NGOs의 갈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갈등의 수준이 낮았다. NGOs 측과 정부 측 모두 두 행위자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였다. 특히나 장애인 NGO 연합의 Højsteen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제까지 정부와 NGO는 긴밀한 협동 체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미미한 정도라고 하였다. 하지만 인권통계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때때로 정부에서 파악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의 경우와 NGOs가 파악하는 것이 그 수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되도록 보수적인 지표나 측정(measurement)을 사용하여 통계를 만드는 반면 NGOs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는 통계와 NGOs의 통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중에서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로 교육의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 NGOs는 실제로 출석을 하는지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성취(performance)는 어떠한가까지 파악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통계의 차이를 가져오며 통계의 차이에서 오는 정책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는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다.

④ 한국 인권통계에 주는 함의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장애인 NGO 연합의 인권통계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인권통계에 대한 세 가지 주요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인권통계는 인권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번 인터뷰는 인권통계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인권통계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과연 인권선진국은 인권통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질문 중 하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인권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권

통계는 인권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중국에는 인권증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의 인권통계는 한국 국내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둘째, 인권통계는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인권통계의 수립과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 자원의 확보와 행정력으로 인하여 정부의 주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보다 나은 인권통계를 수립하기에 한계가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권통계에 연계하여 민간단체들을 활동을 강조하였다. 한국 역시 다양한 민간단체들, 즉 NGOs, 이익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권통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Dr. Sano는 덴마크뿐 아니라 국제연합의 인권통계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그는 인권통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하였다. 단기간 혹은 단 년의 인권통계 구축은 장기간 혹은 다년의 인권통계를 통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단지 예산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의 인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국 역시 인권통계 구축과 동시에 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통계는 인권증진을 가져오기 힘들고 단순한 상황설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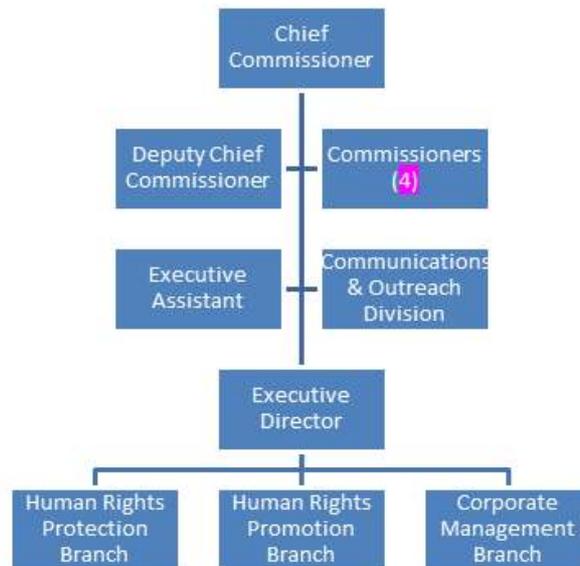
(4) 캐나다 사례 연구

1) 캐나다 인권위원회 소개

1978년에 설립된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호주 인권위원회에 더불어 1991년 파리원칙을 정립하고 이후 인권기구의 전 세계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구적인 인권기구로 알려져 있다. 유럽 식민지 이전부터 캐나다 지역에 정착해 살던 100개가 넘는 원주민들이 캐나다의 주요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소수민족과의 조화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구현을 국가적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연방 수준에서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비교적 오래 전에 설립될 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 2-8]은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조직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위원장 하에 부위원장 그리고 4명의 인권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이 세 개의 주요 부처(인권보호팀, 인권증진팀, 그리고 기업운영팀)를 관할하고 있다. 주 인터뷰의 대상이 된 대외홍보팀은 직접적인 인권조사 활동과 관계되기 보다는 인권위원회 전체의 홍보와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권위원장 직속의 기구로 운영된다.

[그림 2-8] 캐나다 인권위원회 조직도



[그림 2-9] 캐나다 인권위원회 빌딩 및 인터뷰 대상자¹¹⁾



2) 인터뷰 부처 소개: 캐나다 인권위원회 대외홍보팀

대외홍보팀(Communications and Outreach Branch)은 캐나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그리고 출판물을 통해 대중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연례보고서, 특별보고서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외홍보 및 소통 수단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며, 배포한다.

대외홍보팀은 보고서 작성, 출판, 미디어 분석, 자료배포, 인터넷 관리 등과 같은 폭넓은 활동을 통해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대외홍보팀은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각종 회합과 미팅, 이벤트를 지원하고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기능을 맡는다.

11) 좌측 사진: 캐나다 인권위원회 빌딩 전면. 344 Slater Street/344 rue Slater, Ottawa Ontario K1A 1E1, Canada

우측 사진: 인터뷰 진행자 구정우 교수(좌), 인터뷰 대상자 Eric Diotte(중), 한국 인권위원회 이성택 사무관(우)

3) 인터뷰 대상자

Eric Diotte: 캐나다 인권위원회 선임연구원. 연구 및 성과 측정팀 소속. 언어학 박사수료. 캐나다 평등권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임. 이후 장애인, 여성, 원주민, 시각장애인 평등권 보고서를 발행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

Maciej Karpinski: 캐나다 인권위원회 선임연구원. 연구 및 성과 측정팀 소속. 법학박사수료. 지난 수년 간 국가안보, 원주민, 장애인, 경제인구의 노령화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음. 최근에는 법무부 주도의 '사법적 정의 접근성 지수' 사업에 인권위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원회의 중재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진정서 처리 등과 관련하여 서베이 평가를 수행하기도 했음. 법학 박사 과정에서는 평등권의 법적 구조가 가치기반 논쟁들을 해결하는 개인의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음.

4) 인터뷰 진행상황 개요

캐나다 인권위와의 접촉은 인권위 홈페이지의 문의 링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11월 20일에 이메일을 발송했고, 다시 전화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다. 이를 뒤에 인권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Eric Diotte로부터 답신을 받았고, 12월 2일로 인터뷰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사전에 인터뷰할 질문지를 전송하였고, 인터뷰 전에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질문지는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구축한 평등권 프레임워크를 관통하는 주요 원칙, 프레임워크의 구조, 지표선정의 기준 및 과정, 참고한 해외사례, 인권DB 구축 경험과 계획, 그리고 향후 인권지표 관련 계획과 비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전 교신은 담당부서인 대외홍보팀(Communications and Outreach Division)의 팀장인 Sache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전문가인 Maciej Karpinski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해 주었으며, 또한 현재 한국 인권위원회에서 과건 중인 이성택 조사관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인터뷰가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한국의 인권통계 구축 프로젝트를 개괄하는 브리핑이 이루어졌다. 캐나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먼저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연구진이 중간보고회 이전 덴마크와 유럽연합 그리고 OHCHR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당시 보다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었고, 잠정적인 프레임워크와 지표선정의 1단계가 완료된 상태여서 한국의 인권통계 프로젝트의 동기, 이론적 배경,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 발굴 과정 등 전반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에 용이했다. 이렇게 한국의 인권지표 및 통계 사업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함으로써 캐나다 경험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우선 캐나다 측에서는 한국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포괄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행기제, 평등권, 자유권, 평등권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실제적인 지표선정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유럽연

합 기본권기구나 캐나다의 인권위원회의 인권지표 구축 노력이 인권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모니터링이 비교적 용이하고 정책적 효과가 큰 특정 영역 및 대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응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인권위가 주관하여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70년대에 두 차례 실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지속되지 못했고, 또 초기의 조사도 체계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특히 두 차례의 조사의 설문 문항 간에 연속성이 없었고, 따라서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사결과나 자료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권의식조사의 결과와 질문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캐나다의 경우 2005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인권지표 작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초기에 평등권 지표 수집을 체계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평등권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인권규범과 Canadian Act of Human Rights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으나, 이후 자료수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쳤고, 결과적으로 자료의 가용성과 성격에 따라 프레임워크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론했다. 캐나다의 지방분권적 성격 때문에 연방 수준에서 기능하는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각 주별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기제가 따로 있으며, 이들의 법적 권한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영역 전체를 다루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표선정과 수집과정에서 주로 캐나다 통계청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이 인권친화적인 국가통계 체계를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모든 문제가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통계생산 부처가 새로운 통계체계를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실태조사 하나를 하는데도 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 적은 예산으로 인권위 자체가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캐나다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모든 조사는 통계청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캐나다 인권위가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통계청, 법무부 등 인권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드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이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들이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들(가령 건강지표, 사법적 정의 지표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국가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캐나다의 인권 프레임워크 역시 유럽연합 기본기구나 마찬가지로 침해 가능성이 크고 정책적인 개입이 비교적 용이한 취약집단 혹은 소수자 집단을 중심으로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년 사이 원주민집단, 장애인집단, 여성, 시각장애인 네 가지 취약집단의 평등권 향유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왔다. 향후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좀 더 대중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숫자와 통계치를 넘어서 이러한 계량적인 수치들이 함축하는 바를 이야기와 서사로 정리하고 이를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인권지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평등권 프레임워크의 원칙과 구조

질문 1: 캐나다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지수가 목적이 아니라 지표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의 인권의 성취에 대해 “성적”을 매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다만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 체계를 통해 지수를 구축하고 또 공간적 시간적으로 한 사회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처음에는 우리도 비교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한 평가보고서(report card)의 개념으로 인권지표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우선 지표로서 서베이 자료를 여기 저기 활용했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각 주별로 집적된 객관적 자료들이 많은 경우에 다른 기준으로 집적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학업중단률의 경우 퀘벡주와 온타리오주가 각각 자료를 집적하는 기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하물며 국제비교는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질적으로 같은 자료 및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공통분모가 되는 지표들을 찾는다면 할지라도 추상성이 높은 수준의 지표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왜곡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가령 OECD가 서베이를 통해 회원국들 내의 장애인들의 권리 향유 수준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가 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 느끼는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국가별 비교 이전에 우선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이 인권을 얼마나 잘 향유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히 캐나다 인권위의 인권지표 작성 노력의 짙막한 역사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지표 관련 프로젝트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평등권 관련된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인권지표의 “규범적 원칙(normative principles)”을 확립했다. 이 규범적 원칙은 지속적인 수정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가다듬어졌다. 우선, 250여명의 학자, NGO 활동가, 정책입안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캐나다 통계청에 자문을 구했다. 이러한 규범적 원칙에 따라 선정된 지표들이 실제로 측정 가능한지, 이를 바탕으로 인권통계의 구축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다. 기본적으로는 통계청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많은 재원이 요청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설문조사 하나만을 수행하는 데에도 수백만 달러의 재원이 든다고 했다. 그리고 통상적인 설문조사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따라서 그만큼 비용도 커진다는 응답을 해왔다.

질문 2: 캐나다의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인간이 웰빙과 관련된 여러 개의 차원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과도하게 자료에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귀납적인 접근 방식 아닌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좀 더 연역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가령, 국제인권규약/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자료의 가용성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 규범적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가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경우도 자료에 따라 프레임을 변형한 측면이 크다. 그리고 평등권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주로 집단 간의 차이와 격차를 보여주는 결과론적 평등지표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평등권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들은 별로 없다. 기회의 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표를 찾기가 실제로 매우 어렵다. 우리도 우리의 평등권 지표들이 ‘최상’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향후에 평등권을 보다 이상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동일한 학력을 갖고 있는 남녀 간에 종사상의 지위를 비교해 보는 것, 즉 동일학력의 남녀가 유사한 위세를 갖는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국제법적 기준들을 조작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한다는 것이 즉각적인 국내법적 이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캐나다는 자체의 국내법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 인권위의 경우 관련 법적 근거 하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Canadian Human Rights Act가 그것이다. 그리고 각 주별로 설립되어 있는 인권위들도 자체의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질문 3: 캐나다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가 인권지수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원칙들을 따르고 있는가?

OHCHR의 법적 권한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넓다. 캐나다 인권위의 경우 Canadian

Human Rights Act가 허용하는 선에서만 법적 권한을 갖는다. 가령, 장애인의 이동권, 자국어를 향유할 권리, 토착민의 권리, 종교적 신념 등은 우리의 법적 권한 밖에 있는 인권이슈들이다. 이것들은 각 주별로 활동하는 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들의 권한 하에 있다. 따라서 OHCHR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질문 4: 캐나다 평등권 지표를 들여다보면, 주관적인 지표들이 꽤 있다. 특히 캐나다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차별 관련 항목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간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서베이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인권서베이 수행을 지원한 적이 있는가?

1978년 캐나다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79년도에 인권서베이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차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81년도에 두 번째 서베이를 실시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두 개의 조사 간의 공통점 및 일관성이 거의 없었다. 1990년대 후반 경부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서베이를 하고자 하는 정부기관들은 모두 캐나다 통계청을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겨났다. 따라서 정부기관들은 재원을 마련하여 통계청이 조사를 대행하도록 의뢰하는 관행이 생겨나서 지금에 까지 이르고 있다. 여성부가 조사를 실시하지만 통계청에 금액을 지불하고 조사를 한다. 장애인 담당 부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는 인권서베이와 같은 주관적인 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등권 상황을 보여주려 했다. 객관적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관적 자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

6) 캐나다 국가통계체계의 인권친화성

질문 1: 현재 캐나다의 국가통계체계가 어느 정도로 인권적 원칙에 따라 구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캐나다 통계청은 대부분의 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가 어떤 소수자집단인지를 표기하도록 한다. 이런 면에서 캐나다는 한국보다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문화주의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료집적 과정이 정치화되는 경향이 생겨나 간혹 소수자 집단 범주를 포함시키지 않는 조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소수자집단 범주를 포함시킬 때에도 늘 접근성이 떨어지는(hard-to-reach) 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무응답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질문 2: 현재 국가통계시스템이 인권친화적이지 않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들로 하여금 인권원리에 더욱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도록 설득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떤 종류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결국 예산문제로 귀결된다. 통계청을 설득해서 인권친화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려면 결국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집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캐나다 보건부(Public Health Canada)가 공동체 건강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CCHS))를 실시하기 전에 워킹그룹을 만든 적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했다. 여러 전문가들 및 NGO 활동가들과 조율하면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문제에 대해 묻는 1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5년간의 설득 끝에 CCHS에 이 10개의 문항이 포함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설문조사와 자료누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문항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적 정의 접근성 인덱스(Access to Justice Index) 프로젝트에도 인권위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시민권 접근성 인덱스(Access to Civil Rights Index)를 모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표들이 인권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과 관련된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헤이그 사법적 정의 접근성 모델(Hague Model of Access to Justice)을 참조하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주요 지표들을 발굴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여타 정부부처들의 인권관련 지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력

질문 1: 지금까지 인권DB 구축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이를 통해 집적된 자료를 대중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2005년경부터 평등권 프레임 작업을 시작했을 당시 목표는 DB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선, 인권위가 자체의 원자료를 생산하는 주체이고 또 소유하고 있으면 DB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체가 아니다. DB를 구축하려면 원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인권과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주체, 가령 통계청이 인권위가 DB형태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할리가 만무하다. 캐나다 통계청은 CANSIM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실 2007년도

에 통계청과 접촉하여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 DB에 인권관련 지표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재원의 문제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Cost-Recovery-Agency) 이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서 관련된 작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청이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캐나다 인권위 홈페이지에 DB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본적이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권위 자체가 생산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타 기관이 생산한 자료를 DB 형태로 인권위 웹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일종의 자료공개운동(open data movement)이 정부 내에 일어나서, 정부 부처가 생산하는 자료들을 대중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만들지 않은 타 정부 부처의 생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향후 '실천의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등의 이름으로 인권위 웹페이지에 DB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질문 2: 인권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도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인권위가 왜 이런 작업들(*평등권 프레임구축과 보고서 출판)을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보다 즉각적으로 중요한 인권이슈들이 있는데, 지표작업에 국가기관이 몰입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시각이다. 보다 즉각적인 인권이슈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의구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8) 향후 인권지표 관련 계획

질문 1: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인권지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팔이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캐나다 인권위원회도 유사하게 컨설팅을 제공한 것이 있는가?

코스타리카가 평등권 지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적이 있다. 그러나 추후에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진 않다. 이번 한국 연구진이 방문 한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향후 한국 인권지표 및 통계작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이다.

질문 2: 향후 지표관련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에 관한 보고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고, 내년 중에 출판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2010년 평등권 프레임 작성을 시발로 하여, 토착민, 여성, 장애인, 시각장애인 4개의 집단에 대한 평등권 보고서 작업이 마무리 되게 된다. 이 네 개의 집단은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에 언급된 4개의 소수자집단들이다. 평등권 프레임워크에서 12개의 집단을 일별하고 이들에 대한 평등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기계적으로 이 모든 집단에 대한 평등권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은 없다. 가령, 연령집단에 따라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평등권 보고서가 마무리 되면 향후 3-4년 동안 어떤 식으로 연구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평등권 프레임 Volume2를 만드는 것이다. 프레임워크도 가다듬고 지표도 새로 선정하고 뺄 것은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전 작업에서 취약한 부분들을 재검점하여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령, 최근에 환경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환경이슈가 토착민 등 소수자 집단의 권리 향유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새롭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시간적인 변화를 추적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나 이 두 번째는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그간 작성된 평등권 보고서들을 확산하는 작업이다. 현재 보고서는 사실 일반 대중들이 읽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요약본, 특히 자료를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와 서사의 형태로 풀어서 쓴 새로운 리포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누적된 작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읽히고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국제기구 사례

(1) 국제기구의 인권통계, 지표구축 사업

21세기를 맞아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의 부속기구와 전문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세계 각 나라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힘을 쏟고 있는 일이 인권통계와 지표의 구축이다.¹²⁾ 1960년대 이래로 국제인권조약이 체결되고 비준되면서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이 특정 인권규범의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와 검토, 그리고 해당 국가의 소명이라는 소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면,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실행되는 인권보호의

12) McNerney-Lankford, Siobhan, and Hans-Otto Sino.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in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Available at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LAWJUSTICE/Resources/HumanRightsWP10_Final.pdf.

노력은 이와 같은 소극적 접근을 넘어서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국내적, 국제적으로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때 어떤 구체적인 인권을 어떤 기준에 따라 향상시킬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실행하려는 시도다.¹³⁾

또한 인권 개념이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관심이 옮겨지고 여성, 아동, 소수민족의 권리 등 다양한 권리들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통계와 지수는 물론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수립한 통계와 지수들이 인권상황의 판단근거가 되고 인권향상 노력의 기준으로 사용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인권이 책임 있게 보호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0). 일례로, 2000년에 발의되어 2015년을 1차 시한으로 또한 향후 지속하는 계획으로서 구축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계획(MDGs)은 빈곤, 교육, 보건, 양성평등 등 인권의 중심 분야를 핵심적인 가치로 하여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해왔다. 이렇게 인류 공동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인권의 관점을 핵심적 요소로 설정함에 따라 인권의 관점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추상적인 규범과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의 개발, 성장, 발전에 집합 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한 평균적 수치가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왕에 사용되던 인권통계 및 지수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는데 첫째, 정보를 수집하는데 편향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둘째, 설문조사방법에 의존해 지수를 만든다는 단점이 있거나, 셋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세계 각 나라의 인권정보를 수집해온 기관으로는 미국 국무부와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 AI)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연례보고서가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이용해온 정치적 테러 척도(PTS)와 Cingranelli-Richard Index(CIRI) 지수의 원자료가 되어 왔다. 두 기관 모두 이념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보고된 정보와 해석에 차이가 있다.¹⁴⁾ 민간기관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매년 발행하는 Freedom in the World가 제공하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지수는 소수 전문가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만든 지수로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지수를 만드는 PTS와 CIRI와는 차이가 있다. 이 세 가지 지수 모두 국가, 즉 정부와 정부의 기구 및 관료가 위반하는 시민적·정

13) Landman, Todd, and Edzia Carvalho. 2009. *Measuring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14) Poe, Steven, Sabine C. Carey, and Tanya C. Vazquez. "How are These Pictures Different?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US State Department and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orts, 1976-1995." *Human Rights Quarterly* 23(3):650-677.

치적 권리에 한정된 인권만을 다룬다는 가장 큰 약점이 있다.

또한 기왕에 국제사회에서 이용되던 사회·경제 통계와 지표들은 인권통계와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먼저 국제인권조약이라는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비추어볼 때 어떤 인권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단순히 인권침해 사건의 부재로 측정 가능한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달리 인권통계와 지표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만큼 경주되고 있는지에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인권통계와 지표가 향후 어디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경제 통계와 지수의 인권통계, 지표로의 이용은 세심한 주의와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인권통계 구축 및 지표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온 유엔인권최고대표부(the United Nation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사례와 유럽 지역의 역내 국가들이 공통의 기준에 따라 생산하는 인권통계와 여러 국가에 걸친 샘플조사를 바탕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본 인권의 보호와 실현을 도모하려는 유럽연합 기본권기구(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의 인권보호와 확대를 위한 정보수집, 통계구축, 지표개발이 광범한 인권 개념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확인하고 그리고 각 기구가 추구하는 이론적 접근은 물론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지표들이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 변화를 포착하는 동시에 각 나라와의 비교가 가능한 보편적인 준거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되고 처리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2) 유엔인권최고대표부

1) 기구 소개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1993년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국제연합의 인권 전문기구다. 각국의 인권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이 해당조약의 내용에 국한된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기구고,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국제연합총회를 통해 선출된 47개 이사국 정부 간 협의체로 이루어진 반면, 인권최고대표부는 사무총장의 휘하에 인권분야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가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과 비준, 인권의 법제화,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활동에 기술적 훈련과 인력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사무국의 역할도 하면서 인권이사회의 보편정례검토 및 특별 절차, 청원 절차 등 인권감시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열 개의 기구들 또한 인권최고대표부의 지원 하에 활동하고 있다.

2) 통계, 지표 사업 소개

인권최고대표부는 인권의 보편성, 양도불가성, 상호관련성 및 의존성, 불가분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행으로 옮겨야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한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일하게 접근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기반하여 우리 시대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권 하나하나를 존중, 보호, 구제하기 위해 한 나라가 법적, 제도적인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구조 지표, 국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지를 보여주는 과정 지표,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얼마만큼 결실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결과 지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인권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고, 각 나라가 그러한 이론적인 틀에 따라 구체적인 통계 정보를 인권과 인권정책의 평가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표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¹⁵⁾

이에 앞서 인권최고대표부는 과거 유엔을 통한 인권상황의 감시와 검토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앞서 서술했듯 1993년에 발족된 인권최고대표부는 1965년에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된 이래 9개의 국제인권규약과 부속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들을 관찰하게 되었고, 지난 수십 년간 조약 비준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권상황을 검토한 결과를 수합하였다. 한국에 관련된 자료도 1979년 가입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해 1991년 유엔 가입과 함께 가입한 대부분의 국제인권규약의 이행에 대한 각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우리 정부의 소명, 시민사회의 NGO 등의 반박 의견이 실린 모든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부가 사무국의 역할을 맡는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정례 검토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인데 이러한 보편적 검토의 과정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인권통계와 지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인권최고대표부가 이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가 이루어질 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각 나라의 인권개선 계획을 구체적인 통계에 기반해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보건 불평등을 영아사망률과 기대수명의 수치에 근거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체코 공화국의 차별금지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낳는지 판단할 때 타당하고 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각국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하는 국가 주도의 통계수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각 국가의 통계가 인권최고대표부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을 공유하도록 하고 인권중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통계와 지표를 수립한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각국이 자국의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일,

15) United Nation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Human_rights_indicators_en.pdf.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및 다른 국제적인 장에서 보고하고 평가를 받는 일은 인권지표의 이용으로 인권개선에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적어도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는 인권현황 감시와 정책 수립, 평가에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게 된다. 일례로 인권최고대표부는 네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와 지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돕고 그에 따른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¹⁶⁾ 따라서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인권통계와 지표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과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각 나라의 국가주도 인권통계 수립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통계 구축과 지수개발을 위해 반드시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된다.

3) 면담자 소개

① 니콜라 파젤(Nicolas Fasel)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인권담당관으로 연구 및 개발권리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인권지표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의 대표 집필자 중 한 사람이다.

② 그레이스 사니코 스테판(Grace Sanico Steffan)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인권담당관으로 역시 연구 및 개발권리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의 대표 집필자 중 한 사람이다.

4) 인권지표 수립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 노력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각 나라의 인권상황을 논의할 때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등 모든 당사자, 관계자들이 인권통계와 지표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한 나라의 인권상황이 어떠한가, 얼마만큼 향상되었는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이 정책을 협의하는 모임에서 정부의 인권조약 이행을 모니터하고 분석, 평가하는 일에 인권지표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그 일을 인권최고대표부에 요구했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인권지표 수립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각국 정부가 인권지표를 수립할 때 이에 맞추어 지표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통계가 갖추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가 설정되면 좋겠지만 인권최고대표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 나라의 인권상황과 인권정책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시간에 따른 비교를 통해 국가의 이행과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16) United Nation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인권최고대표부는 국가의 총체적인 인권개선은 국가의 개선 의지(commitment), 개선 노력(efforts), 그에 따른 결과(results)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론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등 많은 종류의 인권에 관한 지표들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모든 분야의 인권을 망라한 것 혹은 모든 국가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인권이 더 논의되고 포함될 수 있고 각 나라도 제시된 이론적인 관점에 기초한다면 구체적인 통계와 지표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부의 역할은 공통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기구는 각 나라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따를 뿐만 아니라 프레임워크에서 권장되는 지표를 보고 각 분야의 인권을 나타내는 통계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세 가지 지표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의지를 나타내는 구조 지표(structural indicator)는 정부의 국제조약 가입/비준 여부, 인권보호와 증진 위한 기본적인 입법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내외로 인정되는 독립적인 인권기구의 마련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로 노력을 나타내는 과정 지표(process indicator)는 정부의 인권정책 일반은 물론 보다 구체적인 특정한 정부 조치들을 모니터한다. 정책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예산이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차별 금지에 관해 얼마나 많은 수사인력 및 교정인력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책임소재의 조사를 받았는가의 비율로 과정 변수를 삼을 수 있다. 노동권의 경우도 기업에 대한 노동 환경의 조사감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 지표(outcome indicator)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어떤 인권을 얼마만큼 향유하는가를 평가하는 척도다. 예를 들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그러한 처우나 차별이 발생해 보고된 건수로 나타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영유아의 백신 접종률은 국가의 노력을 측정하는 과정 지표로 설정될 수 있는 반면에 영유아 사망률은 결과 지표로 설정된다. 모든 인간이 생명권을 갖는다는 생명권의 정의에 따라 한 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은 국민의 건강이 현재 어느 상태인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나라 정부가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반면에 영유아 백신 접종률은 정책의 결과로 생명권이 보호되었는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얼마만큼 경주되었는지 나타내준다.

인권통계와 지표의 내용을 이루는 인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국제인권 조약이라는 규범적인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야만 한다.¹⁷⁾ 인권최고대표부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출한 12개 분야의 인권은 다음과 같다. 생명권(the right to life), 자유와 안전(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공공 업무에 참여할 권리(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the right

17) Interview with Mr. Nicholas Fasel and Ms. Grace Sanico Steffan.

not to be tortured; the right to health), 식량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food),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ousing), 교육권(the right to education), 사상과 표현의 자유(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a fair trial),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the right to social security), 그리고 노동권(the right to work)이다. 이렇게 생명권, 교육권, 노동권 등 국제 규범으로 확인된 인권들은 구체적으로 속성(attributes)이라고 표현된 구체적인 구성요소로 나누어진다. 노동권을 예로 들면 제대로 된 그리고 생산적인 일자리에 접근가능한지의 여부, 적당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훈련, 기술 개발과 전문성 개발, 그리고 강제 노동과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네 가지가 노동권의 속성으로서 노동권의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내용을 이루는 속성들은 명문화된 규정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에 따라 혹은 국제연합의 인권특별보고관의 세계 각국의 인권현황 조사에 따른 문제 제기로 시작된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인권의 속성을 정하는 데는 국제인권기구의 전문가, 학술연구자, 통계전문가, 시민사회 등 국제사회수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토론과 협의를 거친다.¹⁸⁾ 노동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최고대표부는 각각의 인권 종류에 대해 해당 인권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네 가지 정도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¹⁹⁾

한 가지로 분류될 수 없고 여러 영역에 교차되는 인권규범들은 지표화가 더 쉽지 않다.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와 같은 평등권의 문제는 한두 가지의 지표로 인권의 실현을 모니터링할 수 없고 가능한 모든 하위집단의 분류를 통한 통계 데이터 및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만 감시와 평가가 가능하다.²⁰⁾ 또한 하위집단(취약집단)에 대해 분석할 때 인권보호와 구제의 제도와 자원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취약집단이 그러한 제도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의 대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교육권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 뿐 아니라 일반학교의 접근성, 통학수단, 금융지원, 보조인력 등 현실적인 접근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영역에 교차되는 인권규범의 또 다른 예는 절차적인 권리와 실질적인 권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공공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측정하려면 한 나라의 어떤 인구집단이 의무담지자의 정책 결정과 이행에 참여했는가와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집단이 정책결정이 자신의 권리 향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판단하고 보고한 서베이 조사 결과를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²¹⁾

이렇게 범주가 나누어지고 속성이 구체화된 인권지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각국이 어떤 통계나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자국의 인권지표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

18) Interview with Mr. Nicholas Fasel and Ms. Grace Sanico Steffan.

19)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인권최고대표부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명시된 인권과 내용을 분석, 정리한 프레임워크가 소개되어 있다.

20) United Nation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21) United Nation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제에 직면할 때 또한 국내수준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 나라 전체 혹은 지역수준에서 인권기구, 통계부서, 국제인권조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는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등이 인권지표를 수립할 때 인권최고대표부의 프레임워크를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첫째, 각국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고, 모니터링, 팔로우업, 정보기록이 용이하게 하는 지표여야 한다. 둘째, 인권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기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인권기준과 의무는 생소한 것이 아니고 나라마다의 가치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증진의 매개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식이 없이도 인권의 속성과 기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인권지표가 나라마다의 발전과 훌륭한 통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복리에 인권개념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려 인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보편성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인권최고대표부는 각국이 처한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수한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²²⁾ 물론 신체와 정신의 보건,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들, 예를 들어 정치범의 수, 실종자의 수 등은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주거 등 사회권, 경제권은 그 핵심 사상은 보편적이지만 지표는 가변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여성권을 측정하는 지표를 선택할 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정치 분야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의 성차별의 개선을 보여주는 지표보다 여성권을 잘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 예상된다. 의료인, 법조인 등 전문직의 여성비율 증가를 여성 정치인 비율과 함께 지표로 택해 정치인 비율이라는 보편적 지표에 대한 보완적인 지표로 나란히 보여준다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여성권의 개선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녀 임금의 차이라는 또 다른 여성권 지표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선호직업이 차이가 심한 우리 사회의 문화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일 직종에서 임금의 차이를 보완적인 지표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통계, 지표의 수집, 분석, 관리

인권최고대표부는 통계, 지표의 수집, 분석, 관리에 대한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통계와 지표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그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다. 물론 인권최고대표부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이 제공하는 정기보고나 특별절차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놓고 정부는 물론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정보는 물론 국제연합 통계국에 제출된 각 나라의 인권관련 통계, 또한 각 나라의 자체통계 등 많은 정보들이 인권통계와

22) United Nation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지표 수립에 이용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지표보다는 한 나라의 인권개선을 위한 통계, 지표의 이용을 추구하므로 출처와 수집 및 처리 방법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각 나라가 결국 통계수집과 지표설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권최고대표부는 가능한 한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통계 출처, 수집, 처리, 이용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양한 국내외 집단이 정보를 갖고 통계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를 인권최고대표부를 비롯한 국제연합 기구들이나 각 나라의 정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²³⁾ 그러한 논의 자체의 중요성뿐 아니라 논의의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권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생산되었는지 설명해주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다량의 다양한 정보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²⁴⁾

인권최고대표부의 인권지표 담당자는 공통의 통계와 각국 인권현황의 비교가능성에 대해 먼저 인권최고대표부가 마련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공통의 통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데 그 “언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조, 과정, 결과의 세 범주와 각각의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유엔최고대표부의 프레임워크라고 확인한다.²⁵⁾

6) 각국과의 협력

인권최고대표부는 여러 나라의 정부와 지표의 설정부터 정책 수립, 평가까지 인권개선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에콰도르, 스리랑카, 네팔,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 영국 등의 국가와 협력했는데, 이번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구축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편적인 이론적 관점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인권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네팔은 인권최고대표부의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여 자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용할 지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나라들 중 하나다. 최고대표부는 네팔의 총리와 각료회의실이 파견한 인력과 협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을 포함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권 및 경제권 실현을 위한 지표설정과 발전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과테말라의 경우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기구에 정기보고를 제출할 때 인권최고대표부의 도움으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고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인권최고대표부는 대통령 직속 과테말라 인권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의

23) Interview with Mr. Nicholas Fasel and Ms. Grace Sanico Steffan.

24) Interview with Mr. Nicholas Fasel and Ms. Grace Sanico Steffan.

25) Interview with Mr. Nicholas Fasel and Ms. Grace Sanico Steffan.

인력 및 국제연합기구 사무소, 그리고 각국 국가인권기구 협의체로부터 인정받은 인권옴부즈맨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특별히 건강, 식량, 교육권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국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인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와의 협력 사례는 아니지만 인권최고대표부는 시민사회의 인권지표 이용이 인권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로 영국 북아일랜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인권운동의 예를 강조하고 있다.²⁶⁾ 북부 벨파스트 시의 주민들은 Participation and the Practice of Rights Project라는 NGO의 도움으로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한 주거환경에 관한 여섯 개의 지표를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의 지표로 삼고 정부 기관과 지속적으로 지표를 모니터링했다. 여섯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 비둘기 오물 처리, 어린이가 있는 가족의 수, 하수도 문제를 보고한 주민의 비율, 주거지의 침수나 곰팡이 문제를 보고한 주민의 비율, 보고한 문제에 대한 주거담당 행정부서의 응답에 만족한 주민의 비율, 주거담당 행정부서의 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주민의 비율이 있다. 언론의 관심과 정보접근권을 규정한 법령을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던 것과 맞물려 이해관계자들의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과 목표치를 설정한 행정부서의 실적 평가가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1) 기구 소개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2007년에 설립된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의 전문기구로 2000년에 채택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the 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에 보장된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유럽연합 28개국의 인권에 관한 자료, 통계, 지표를 수집, 분석, 구축하여 발표하고 유럽연합 각 기구에 제출하며 회원국 각국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인 인권조사연구기관이다. 1997년에 설립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감시센터(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가 전신이다.

2) 통계, 지표 사업 소개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조사연구기관으로 정책수립이나 인권현황 및 정책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기구 혹은 회원국 각국의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럽 전체의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럽연합기구, 각국 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니터링과 벤치마킹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업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2007년 설립

26) Interview with Mr. Nicholas Fasel and Ms. Grace Sanico Steffan.. United Nation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에도 소개되어 있다.

된 이래로 연례보고서를 통해 설정한 주요 의제에 관한 회원국 전체 현황과 추이, 각국의 상황,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그리고 불관용의 의제에 대해 각국의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정치인의 인종주의적 발언을 보고한다든지, 혹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종에 기반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럽 전체에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불관용과 관련된 범죄나 정치인의 태도, 국가기관의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고 각국의 상황도 또한 주어진 증거에 따라 기술한다. 그리고 나서 인권상황 분석에 맞추어 어느 곳에 주의가 기울여져야 하는지 분석하고, 어떠한 결과가 뒤따르게 될지 예상하고, 어떠한 정책이 요구되는지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 분석, 예상, 제안에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거나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evaluate)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가 인권지표의 개발이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유럽연합의 공동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연합 차원에서 혹은 각 나라 혹은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인권지표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제공하고 정책에 일관성을 제공함은 물론 정책을 실행하고 난 후 평가할 때 인권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²⁷⁾ 인권최고대표부와 달리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28개 회원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표를 추구하고 또한 공통의 설문조사 및 통계를 수집하고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인권지표 설정의 기준은 첫째 분명하게 인정받는 인권원칙에 기반할 것, 존중·보호·이행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원칙과 둘째 방법적으로 투명하고 통계적으로 적절할 것 등의 방법론적인 것, 셋째 이미 이용되고 있을 것,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을 것,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고려사항 등이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이에 더하여 유럽연합 기구들이 실제로 요구한 조건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 분화 연구가 가능할 것, 일관성 있고 널리 수용될 것, 적용에 융통성이 있을 것, 정책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의 네 가지다.²⁸⁾ 유럽연합 회원국을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인권최고대표부가 제시한 구조-과정-결과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인권지표를 설정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현재까지 아동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권지표들이 설정되었고, 로마(집시) 민족 통합 지표, 개인 정보 보호의 지표, 사법정의의 접근권에 대한 인권지표 설정을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연구 조사 중이다.²⁹⁾ 이 가운데 아동의 권리에

27)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뿐 아니라 역외국에 대해서도 인권지표가 사용된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이 대내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역외 행동에서 예를 들면 지원과 제재 문제에서 인권을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할 때 역외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28) Klaus Starl et al. 2014. Baseline Study on Human Rights Indicators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er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ETC, Graz). Available at <http://www.fp7-frame.eu/wp-content/materiale/reports/12-Deliverable-13.1.pdf>.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mmission)의 발의로 지표 설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15개월에 걸친 규범적,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검토 과정이 뒤따랐고, 유럽연합은 물론 다른 국제적, 국내적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아동권 전문가, 통계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검토되었다. 지표 선택의 과정은 전문가집단의 온라인토론, 자문회의, 선택된 소수 전문가와의 인터뷰, 피드백 제공요청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지표설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아동권 지표는 구조-과정-결과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준용하면서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내용에 기반했는데, 아동권 협약의 참여, 차별 금지, 최선의 이익, 생명, 생존, 개발의 권리가 기본원칙으로 인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유럽연합의 법제와 기구가 한정하는 영역 안에서 지표를 설정했다. 특징으로는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었고 아동의 권리를 표현하는 지표로 설정되었지 복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님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선정에 중요한 고비는 나이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그러한 데이터가 각국에 걸쳐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수집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었다.³⁰⁾ 이러한 과정에 따라 설정된 아동권의 핵심영역과 지표 그룹은 아래의 <표 2-17>과 같다. 지표그룹은 몇 개의 보다 구체적인 지표로 더 세분화되며 각각의 세분화된 지표에 들어맞는 통계 데이터가 기존의 통계자료 가운데 선정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의 수집이 권고되었다.

<표 2-1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핵심영역(속성)과 지표그룹

핵심영역	지표 그룹			
가정환경 및 보호대안	가정에서의 정의	이주로 인해 가정과 분리된 아동의 권리와 복지	가족의 재통합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아동인신매매	성적 경제적 착취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자 확인·보호 가해자처벌 재발방지	피해자 확인·보호 가해자처벌 재발방지	피해자 확인·보호 가해자처벌 재발방지	
적절한 삶의 기준	소득빈곤	정부 대응의 효과	소득빈곤 및 아동의 주관적 인식을 제외한 다른 측면	
교육·시민권, 문화적 활동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가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가	개인의 개발	시민권과 참여

29) Interview with Ms. Ursula Till-Tentschert.

30) 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Vienna: 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표 2-18>은 이러한 지표 그룹 가운데 가족 재통합 이후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규정의 존재 여부로 규정된 지표 그룹을 세분화한 내용이다. 2007년에 설립되어 설립 8년을 맞은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지표개발 사업은 아동의 권리와 장애인권리 두 가지 영역에서만 결과물이 나왔고 세 가지 영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며 다른 영역에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모든 지표작업을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³¹⁾ 물론 로마 민족에 관한 연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 통계의 수집과 설문 조사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매년 보고서를 내지만 그것을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지표로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하나의 인권에 대한 지표, 특별히 하나의 목표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인권지표를 완성하게 될 경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모든 지표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광범위한 인권의제들 가운데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며 실행 가능한 영역을 우선시한다고 한다. 인권지표 사업도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³²⁾

<표 2-18> 가족 재통합 이후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규정의 존재

지표 그룹	가족 재통합 이후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규정의 존재
지표범주	구조와 과정
유럽연합 적합성	· (유럽의회/이사회) 지시사항 2008/115 조항 5와 10 · (유럽의회/이사회) 지시사항 2003/86 가족통합의 권리
측정이 왜 중요한가	강제이주의 맥락에서의 아동의 가정생활이 확실히 중요하고 또한 가족의 재통합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법령은 가족의 재통합 혹은 강제이주 이후의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무를 회원국에 지우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여기 이 지표 그룹은 그러한 규정이 개별 국가 수준에서 존재하는지 혹은 장기적으로 아동들이 그들의 복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럽연합 수준에서 언급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지 점검할 것이다.
아동권 협약 준거	조항 2, 3, 6, 12(아동권에 관한 협약 일반 원칙, 특히 차별금지와 참여); 조항 10(긍정적, 인도적, 신속한 가족의 재통합); 조항 20(대안적인 가정환경); 조항 9(가족 별거시의 권리); 조항 13(아동

31) Interview with Ms. Ursula Till-Tentschert.

32) Interview with Dr. Andrey Ivanov; Interview with Ms. Ursula Till-Tentschert.

지표 그룹	가족 재통합 이후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규정의 존재
	의 정보권); 조항 7(부모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조항 8(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와 국가의 의무); 조항 16(사생활 존중); 조항 18(부모 양측의 공동 의무); 조항 24(건강권); 조항 27(적절한 생활 환경기준); 조항 28(교육권); 조항 30(언어소수집단을 포함한 소수집단의 권리); 일반논평 조항 6(2005) 출신국 밖에서 부모와 동반되지 않거나 별거중인 아동의 처우
세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재통합에 따른 아동의 복지를 모니터링하고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특수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여타 전문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존재 · 부모와의 가족 통합 후에 교육, 의료, 금융지원, 상담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의 존재 · 가족 재통합을 위해 출신국 혹은 제삼국으로 보내지는 아동이 처하게 되는 환경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국가적 규정의 존재
주요 데이터 2차 데이터	<p>능력 있는 중앙정부 사회복지부서의 정책과 관행</p> <p>Separated Children in Europe Programme의 국가별 평가</p> <p>International Social Service Network의 보고서</p>

3) 면담자 소개

① 안드레이 이바노프(Andrey Ivanov)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로마(집시) 민족/난민 통합 부서 책임자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정책자문관을 거쳤다. 불가리아 출신으로 폴란드와 모스크바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와 근대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적 개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의 틀로 로마 민족의 사회 내 통합 문제를 연구해 왔다. 저술로 At Risk: Roma and the Displaced in Southeast Europe 등이 있다.

② 마사 스티킹스(Martha Stickings)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평등권/시민권 부서 담당자로 장애인의 권리, 성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고 인권지표사업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③ 우르술라 틸-텐쉐르트(Ursula Till-Tentschert)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통계/설문 부서 담당자로 설문 방법, 통계 분석의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성차별, 사회통합, 여성에 대한 폭력, 로마 민족의 생활환경 등의 주제에 참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에서 빈곤, 노동 통계 등을 담당하여 연구했고, 정부대표로 여러 차례 유럽연합 통계기구(Eurostat)의 소득과 생활환경에 대한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다.

4) 인권지표 프레임워크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인권이 28개 회원국 내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침해의 증거 자료를 통계, 지표, 질적 자료 등을 망라해 발표하고 있다. 그 근간이 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2000년 유럽연합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1951년 파리 조약과 1957년 로마 조약 이후 유럽경제공동체(the EEC)의 구상과 설립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경제 통합에 인권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1977년부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연합 기구들의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고 1986년 채택된 유럽단일화협약에서부터 인권이 유럽 연합의 핵심 가치가 되면서 이를 명시할 규범적 선언 및 법적 조항이 필요가 생겼다. 이에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과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의 성립을 거쳐 2000년에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³³⁾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보호되고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할 인권을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특별히 유럽의 맥락을 고려하여 규정되었다. 헌장에는 서문과 일반 조항을 제외하고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시민권, 그리고 사법정의 여섯 개의 인권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³⁴⁾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이를 기본 프레임워크로 삼으면서 다시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 사법접근권·범죄피해자의 권리, 망명·이주·국경, 성차별, 증오범죄, 정보사회·사생활·데이터 보호, 성적 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인종주의와 그에 관련된 불관용, 아동의 권리, 로마(집시) 민족의 권리 등 대략 열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자신들의 인권통계, 지표 구축의 주요한 주제로 정하고 있다.

유럽 연합이 제시하는 기본 인권과 그 내용은 한국의 인권통계 및 지표 수립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이른바 인권선진국이라 손꼽히는 국가들이 속한 유럽 연합이 제시하는 기본 인권 개념과 그 측정방법이 역내를 물론 역외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인가, 우리가 당장에 수용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인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28개 나라라는 비교적 많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보편적 인권 개념과 측정방법, 나아가 실행방안을 논의할 때 전문가들과 각 나라의 대표들은 무엇을 보편적이라 생각하고 각 나라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의된 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수립하려는 인권통계와 지수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주요 주제로 자유, 연대, 시민권 등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은 아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인권을 모두 가

33) Klaus Starl et al. 2014. Baseline Study on Human Rights Indicators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Union.

34) European Union. 2000.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vailable at http://www.europarl.europa.eu/charter/pdf/text_en.pdf

장 훌륭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의 모든 권리가 모두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핵심 역할인 지표 구축에 있어서 경제·사회적 권리가 부각된 것은 특별히 인권개념에 기반한 지표를 만들어 인권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경제·사회적 권리 향상에 아주 유용하다고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⁵⁾ 인권의 규범적인 프레임워크는 무엇이 보호, 존중, 구제되어야 하는가를 명시하는 것이지만 통계와 지표 구축의 문제는 어떻게 명시된 것을 실행에 옮길까하는 문제와 더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행가능성이 더 큰 것에 관심이 더 먼저 간다고 한다.³⁶⁾

하지만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이미 선정한 십여 개의 주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를 포함한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기구들과 국제연합 기구들, 그리고 다른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이 논의하고 제시하는 새로운 주제와 이슈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록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러한 주제와 이슈들을 자신들의 사업에 새로 반영한다.³⁷⁾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을 유럽 이사회가 발의하여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에 요청했다. 이렇게 유럽이사회나 유럽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오고 특정한 사업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운영회는 각 회원국에서 임명한 독립적인 인물 28명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E)에서 임명한 독립적인 인물 1명, 그리고 유럽이사회에서 파견한 2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프레임워크를 연역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하지 않고 대신 운영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프레임워크의 설정과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에 이어 핵심 영역(속성)을 정하는 것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학술적 문헌 연구를 통해 해당 인권의 핵심 영역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고, 두 번째는 내부회의를 통해 정책적 연관성이 적거나 정책의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배제하는 절차다. 이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인권관련 의제들은 Fundamental Rights Platform(FRP)이라는 시민사회 NGO들의 network에 의해 논의되고 기본권기구와의 협의를 거친다. FRP는 유럽 전역에 걸친 대략 300개의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로 기본권기구로부터 직접 기구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연례 프로그램과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각 단체의 활동 영역에 따라 기본권기구의 특정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 FRP는 연례회의를 통해 사안을 토론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해 기본권기구에 조언을 제공한다.

35) 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5. Fundamental Right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2014. Vienna: 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vailable at http://fra.europa.eu/sites/default/files/fra-2015-annual-activity-report-2014_en.pdf

36) Interview with Dr. Andrey Ivanov.

37) Interview with Ms. Ursual Till-Tentschert.

<표 2-19>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인권 프레임워크

주제	기본권
존엄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보전,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처벌 금지, 노예제와 강제노동 금지
자유	자유와 안전, 사생활과 가족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혼과 가족구성,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정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예술/학문의 자유, 교육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사업운영의 자유, 재산권, 피난처를 제공받을 권리,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평등	법 앞의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종교/언어의 다양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 어린이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연대	노동자의 정보와 협의의 권리,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의 권리, 직업소개를 받을 권리,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공정하고 적절한 노동환경, 아동노동 금지와 미성년자의 보호, 가족생활과 직업 생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일반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서비스,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시민권	유럽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과 피선거권, 훌륭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 공공문서 접근권, 유럽연합 ombudsman 접근권, 청원권, 이동과 거주 자유, 외교적 영사적 보호
사법정의	효과적 구제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의 권리, 형사 범죄와 처벌의 적법성과 비례의 원칙, 동일범죄로 재처벌받지 않을 권리

5) 통계·지표의 수집, 분석, 관리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앞에서 언급한 주요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 통계 수집, 지표 작성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한다. 하지만 90명 정도의 인력으로 5억 명이 넘는 인구와 28개나 되는 회원국의 통계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기본적인 인구, 정치, 사회, 경제 통계자료를 유럽연합 통계기구(Eurostat)에 의존하고 있다.³⁸⁾ 유럽연합 통계기구는 회원국들에게 공통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개별국가는 통계기구의 요구에 따라 통계 데이터를 보내지만 이 과정에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통계기구나 개별회원국에 어떤 통계를 마련해달라고 직접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³⁹⁾ 하지만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유럽연합 통계기구가 생산해낸 각종 통계는 물론 원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개별 회원국에서 유럽연합 통계기구의 공통의 기준과 관계없이 생산한 통계 데이터는 보편성의 견지에서 보면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서 떨어지는 적절치 못한 자료지만, 특수한 맥락을 포함하는 더 많은 정보를 자료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 이용한다고 한다. 유럽연합 통계기구와 개별 회원국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유럽연합 전체와 개별 회원국의 인권현황 및 정책관련 정

38) Interview with Ms. Martha Stickings.

39) Interview with Ms. Martha Stickings.

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때는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생산한다. 주로 해당 이슈와 관련된 개별 회원국들의 목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통계를 만들고 지표화하고 있다고 한다.⁴⁰⁾ 설문조사는 전문가들을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얻는 전문가 조사나 회원국 국민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인권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관료, 인권전문가, NGO의 인권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만 그것은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에 그치고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시민권 정치권 지수를 작성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현시점의 인권상황을 과거에 비추어 평가하라는 설문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취약집단 설문조사에 인권 이슈에 관한 개인의 경험과 견해를 묻지만 인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가능한 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얼마나 객관성을 얻기 힘든지에 대해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인권지표 담당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권 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예로 들었다. 이 조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여성들에게 가정 폭력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를 묻는데 이 가운데 덴마크의 여성들이 가장 심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인권지표 담당자는 이는 덴마크가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평등이 어느 나라보다 잘 실현되어 있어 여성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설문에 말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덴마크의 세속적 문화 혹은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 문화가 여성이 가정폭력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덜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⁴¹⁾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현재 로마 민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 소수민족과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 반유대주의에 대한 설문조사 등 취약집단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유럽연합의 전체 인구를 모집단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차별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사법정의에 접근권이 있는지, 훌륭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등을 묻는 설문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시행하는 설문조사는 인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견해를 물을 때에도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⁴²⁾

먼저 목표집단에 대한 질적 연구와 심층면접을 하여 주거 및 기타 생활환경, 교육, 취업, 건강, 가정, 목표집단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관찰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듣고 그에 따라 목표집단의 인권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예를 들어 로마 민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위해 2011년에 파일럿 조사가 시행되었는데 급여 노동, 사회보장, 그리고 화장실과 상하수도 등 주거편의시설의 유무 등의 문제를 파일럿 조사에서 확인했다. 파일럿 조사는 이러한 이슈들을 전국 평균,

40) Interview with Ms. Ursula Till-Tentschert.

41) Interview with Ms. Martha Stickings; Interview with Ms. Ursula Till-Tentschert.

42) Interview with Ms. Ursula Till-Tentschert.

로마 민족, 그리고 비로마 민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것을 다시 로마 민족거주지, 혼합거주지, 비로마 민족 거주지로 나누어 비교했다.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는 설문지 문항을 만드는데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보다는 노동의 형태, 의료보험과 연금 등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형태와 향유 여부, 주거 환경을 질문해 최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개인의 경험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또 다른 예로 빈곤의 문제와 관련해 가구의 소득을 파악해 전국적 절대빈곤의 경제선보다 아래에 위치함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통계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보기 위해 “밤에 배고픈 채로 잠든 날이 며칠이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개인적 경험의 객관화를 통해 존엄, 생명권의 문제를 파악한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통계와 지표 사업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하위집단별로 분류한 데이터를 최대한 생산해 취약집단(목표집단)의 존엄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각한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주요사업으로 선정한 열 가지의 주제 중에 대부분이 취약집단, 소수집단과 관련된 문제다. 성차별, 난민, 성소수자, 아동, 장애인, 로마 민족 문제는 분명한 취약집단이 존재하는 문제고, 나머지 주제 가운데 사법정의의 접근권,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그리고 관련된 불관용의 문제도 다양한 취약집단이 존재하는 문제들이다. 인권지표 담당자는 이렇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집단을 목표집단으로 설정하고 인권보호를 꾀하는 접근방식이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라는 이념과 상충되는 점을 찾지 못하겠고 오히려 정책을 통한 인권개선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한다.⁴³⁾

문제는 하위집단으로 분류된 통계자료(disaggregated statistics)가 취약집단의 인권을 말하는데 필수적이지만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의 사회적 속성 및 지위(성별, 나이, 지역, 소득 등)은 비교적 하위분류가 쉽지만 인종, 종교 등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쉽지 않고 심지어 오류도 일어날 수 있다. 재일한인교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심지어 소수집단이 차별받는 상황에서 소수집단 출신인가를 묻는 질문 자체가 위협적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인정한 소수집단이 밖에서 인정한 것보다 항상 작은 집단인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소수집단에 속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 외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⁴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목표집단을 설정하는 접근법의 출발점은 모든 통계 데이터를 하위집단으로 분류해 생산하는 것이다. 차별금지와 관련해 성별, 나이, 경제·사회적 지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를 비롯한 신념, 출생국, 출생 사회, 재산, 출생, 장애, 건강, 국적, 혼인유무, 가족형태, 성적 취향 및 정체성, 거주지 및 그 밖의 지위 등이 의미 있는 분류로 예상된다. 해당 인권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 적절하게 취약집단을 설정하고 하위집단으로 분류된 통계 데이

43) Interview with Dr. Andrey Ivanov.

44) Ivanov, Andrey, Sheena Keller, and Ursula Till-Tentschert. 2015. “Roma Poverty and Deprivation: the Need for Multidimensional Anti-Poverty Measures.”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OPHI) Working Paper No.96. Oxford: OPHI. Available at <http://www.ophi.org.uk/wp-content/uploads/OPHIWP096.pdf>.

터를 얻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현재 노인집단이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러한 사회보장지원이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와 안정에 따라 어떻게 증가될지, 이것이 실제로 노인의 권리의 증진을 가져올지 등의 질문에 대해 사회·경제 통계를 연령별 인구집단으로 분류하여 생산함으로써 보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통계 생산과 지표 수립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유럽연합 통계기구 및 개별 회원국에서 생산한 통계는 물론 자체의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함으로써 유럽연합 내의 인권현황을 모니터링할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권지표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권을 모니터링할 때 단순히 특정 현상을 포착하는 통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의 질문을 먼저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제시해주는 통계나 기타 자료를 찾아내고 새로이 생산해내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인식한 데 있다. 적절하고 확고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만이 정책의 결과를 예상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⁴⁵⁾ 어떤 영역의 인권에 주목하는가? 누가 가장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가? 목표집단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정책 시행의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통계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에 선행되어야 한다.

(4) 결론

유엔인권최고대표부와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인권통계가 어떠한 목적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는 문헌조사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어떠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통용되면서도 구체적인 현실을 포착할 수 있는 통계를 수립하기 위해 국제기구 전문가그룹, 각 나라의 정부,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시민 사회에서는 어떻게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인권정책 결정자들과 개발정책 결정자들 간의 불일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좁혀지고 있는지, 인권통계를 수립하고 있는 각국과 협력할 때 부딪힌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등의 질문은 문헌조사만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우리가 우리의 인권현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인권개선 의지, 노력과 결과를 알리는 인권통계와 지수를 수립하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국제인권기구의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려 했다.

인터뷰를 통한 조사는 인권지표의 프레임워크 설정의 과정, 고려사항, 인권통계의 수집과 분석, 선택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문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특히 인권최고대표부의 담당자들과의 면담에서는 프

45) Ivanov, Andrey, Sheena Keller, and Ursula Till-Tentschert. 2015. "Roma Poverty and Deprivation: the Need for Multidimensional Anti-Poverty Measures."

레임워크의 구성부터 구체적인 지표 설정과 적절한 통계를 제안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국제기구의 인권전문가, 정부 정책결정자, 국가인권기구, 통계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보편적인 프레임워크는 물론 특수한 맥락에서 사용될 구체적인 지표와 통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는 인권지표와 통계의 구축과정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처럼 연역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가지 종류의 인권의 지표 구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인권지표를 개발한다는 점과 설문조사의 방법을 독특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정치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실무자들과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인권지표와 통계를 수립할 때 겪을 수 있는 갈등상황과 해결의 경험, 유럽연합의 인권전문가들과 개별국가의 대표의 갈등상황 등은 인권지표 담당자들로부터는 들을 수 없는 종류의 질문임이 밝혀졌다.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기구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비정치적인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와 분석에 몰두한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담당자 역시 자신들이 연구하는 주제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⁴⁶⁾ 향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인권통계와 지표 구축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전문가,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체에 걸쳐 보편적으로 타당성과 적절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권통계 및 지수를 찾아냄은 물론, 그러한 통계와 지수가 인권, 발전, 거버넌스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용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46) Interview with Dr. Andrey Ivanov.

제 3 장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제3장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제1절 프레임워크의 정당화: 전문가 조사 1차

1. 전문가 조사 1차의 목적과 내용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와 분류체계는 바람직한 인권통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매뉴얼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그들의 집단적인 사고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얻는다. 인권통계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그 체계와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어진 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통계가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특히 국제 인권사회가 한국의 인권에 대해 지적하고 우려하는 ‘인권의 핵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구촌 인권공동체가 공유하고 논쟁하는 인권의 핵심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전문가 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권의 개념, 하위 요소의 구성, 하위 요소간의 상관성 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권통계의 용어 및 개념,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 체계적인 분류 및 내용 구성, 지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지표들이 왜 ‘인권지표’가 되는지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인권의 하위 요소들을 짚어내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권전문가들이 그 중요도를 정하고 어떤 분류체계의 추구가 얼마나 바람직한가, 얼마나 실현가능한가,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를 조사한다.

또한 인권을 둘러싼 갈등적인 현실을 잡아내고 포착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적 틀로는 포섭되지 않는 인권주체들 간의 갈등과 관계의 역동성은 인권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의미와 영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의견대립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채널과 장(field)을 보여줄 수 있는 인권 분야와 내용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의해서 표출되는 맥락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예측되는 특정 인권의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전문가 조사의 내용은 <표 3-1>와 같이 인권통계의 일반적인 측면과, 프레임워크의 타당성과 분류 체계, 그리고 소분류에 해당하는 하위 지표의 타당성을 질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평소 통계의 이용수준과 인권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인권통계를 필요로 하는 주요 이용자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향후 인권통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이용을 위하여 생산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수준으로 구분한 후에 각 분류의 수준에 해당되는 권리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3-1> 1차 조사의 내용

분야	내용	설문문항
통계 및 인권통계 일반	인권통계 이용현황, 수요, 필요성	- 인권통계의 필요성 및 이용 현황 - 필요한 인권통계 분야
	인권통계의 생산·관리	- 인권통계의 생산·관리 담당 기관 - 인권통계의 기준 - 국가승인통계化的 필요성
	통계·조사자료	- 주요기관의 통계/조사자료 만족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인권프레임 및 하위 지표의 타당성	인권의 이행기제	- 국제법·제도(국제협약의 범위) - 국내법·제도(인권기구 및 제도) - 인권교육 - 시민사회와의 협력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 인종, 여성, 장애인 차별 - 기타 차별
	시민·정치적 권리	- 중분류: 신체권, 자유권, 기본적 자유, 정의로운 행정, 구제받을 권리, 이름·정체성·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결혼·가족권의 적절성 - 중분류의 하위항목(소분류)의 적절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중분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 권리, 문화적 권리의 적절성 - 중분류의 하위항목(소분류)의 적절성
	그룹 권리	- 여성, 아동, 장애인, 성 소수자 등 기타 소수자,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적절성 - 중분류의 하위항목(소분류)의 적절성
cross-cutting issue		- 반테러, 용병, 국제 인도적 법률, 정보권 - 기업, 독성폐기물, 환경권
한국 인권의 맥락성		- 한국 인권의 맥락을 반영하는 인권의 내용

2. 인권전문가 POOL의 구축 과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전문가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 패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전문가로서의 독립성, 적절성과 자질, 책임감 있는 참여, 개인적 특성에 의한 차이, 무반응 특성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심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pool을 구축하기 위해서 1) 질문에 응답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지식을 평균 수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2)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3) 조사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하고, 4) 조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간주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눈덩이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이용하였는데, 이 표집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정보원(informant)의 목록을 만들어 가면서, 그들로부터 또 다른 정보원의 명단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표집은 모집단에 속하는 연구대상을 찾아서 접근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때 사용한다. 또한 자료의 의미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 설명하는 질적 자료 수집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권, 인권통계라는 주제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숫자가 충분히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과 가용한 자원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표집 방법이다.

(2) 전문가 pool의 구축 과정

전문가 pool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의 손꼽히는 인권 전문 연구자를 접촉하고, 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다른 인권전문가를 소개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수집에 필요한 만큼의 표본수가 충족될 때까지 표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추천받은 전문가들의 현 지위나 소속단체, 영향력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인적 구성이 분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인권의 각 층위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였고 소수자 집단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의 활동가를 접촉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이념적,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NGO를 균형감 있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런 기준과 방침을 기반으로 하여 인권연구자 41명, 법조인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과대학 교수 28명, NGO 활동가 44명, 인권정책 관계자 24명, 총 137명의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pool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응답 완료율 기준으로 인권연구자 35%, 법조인 및 로스쿨·법과대학 교수 15%, NGO 활동가 35%, 인권정책 관계자 15%의 구성비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권연구자들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정학, 의학 등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연구자 및 교수들로 다양하고 폭넓게 구성되었다. 법조인들은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그리고 법무법인 변호사, 공익법 센터의 인권변호사를 망라하였다. NGO는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여성, 환경, 이주민, 난민, 장애, 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포괄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주목하고 인권침해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인권단체의 활동가들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정책 관계자는 가급적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한정짓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 경찰청 인권센터, 외교부, 법무부 인권국,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인권위원회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을 포괄하는 전문가 pool을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응답을 완료한 전문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권 전문연구자 22명(32.4%), NGO 활동가 26명(38.2%), 법조인/법과대학 또는 로스쿨 교수 11명(16.2%), 정책 관련자 9명(13.2%)으로서, 원래 목표로 삼았던 응답자의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인권연구자와 정책 관련자는 다소 적게 응답하였고 NGO 활동가는 목표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표 3-2>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

인권연구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법조인/로스쿨 교수	정책 관련자	합계
22(32.4)	26(38.2)	11(16.2)	9(13.2)	68(100.0)

3. 전문가 조사 1차의 결과 및 합의

(1) 인권통계 관련

1) 인권통계의 필요성과 이용 현황

(단위: %)

	긍정적 답변	부정적 답변
국내 인권통계의 필요성	100.0	0.0
평소 인권통계·조사자료 이용도	60.3	39.7

인권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4.1%일 정도로 인권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0% 정도의 인권전문가만 인권과 관련된 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불일치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인권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필요한 인권통계·조사자료의 부재, 특히 신뢰할 만한 객관적 통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체계적인 인권통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2) 각 기관의 통계·조사자료에 대한 평가

(단위: %)

통계·조사자료 평가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사용경험 없음
통계청	5.9	52.9	25.0	5.9	10.3
중앙의 각 부처	0.0	20.6	60.3	11.8	7.4
지방자치단체	1.5	16.2	41.2	20.6	20.6
국가인권위원회	1.5	38.2	42.6	8.8	8.8
국제기구	11.8	73.5	8.8	5.9	5.9
인권단체·시민단체	5.9	42.6	39.7	4.4	7.4

[그림 3-1] 각 기관의 통계·조사자료 만족도(4점 기준)



통계·조사자료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표준화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국제기구이며, 다음으로는 통계청, 인권단체·시민단체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보다는 만족도가 높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통계와 조사자료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39.7%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1.4%로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권통계를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평가는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문항에서 인권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응답이 많이 표출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인권통계의 관리

(단위: %)

	국가인권위	통계청	인권단체·시민단체	기타
인권통계를 주로 찾을 곳	35.3	17.6	23.5	6.6
인권통계의 접근성 가장 높은 곳	55.9	27.9	-	13.1
인권통계를 관리해야 하는 곳	55.6	7.4	-	23.3

통계·조사자료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권통계의 활용과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주체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인권통계의 접근성과 관리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인권전문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다. 인권통계의 개발·활용을 위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특히 각 부처의 인권통계 생산을 조정하고 취합하며,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인권통계의 구축

① 국가승인통계 인정의 중요성

(단위: %)

	매우 중요	약간 중요	중요하지 않음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인정	67.6	23.5	8.8

② 인권통계 구축의 기준

(단위: %)

작성 주기	%	고려사항	%
1년 이하	1.5	국가, 사회수준의 통계	14.7
1년	45.6	특정집단별 세분화된 통계	30.9
2년	39.7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	26.5
3년	13.2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통계	13.2
3년 이상	0.0	일정한 주기로 생산되는 통계	13.2

인권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매우 중요+약간 중요)하는 비율이 약 90%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국가승인통계의 기준과 요건을 고려하여 인권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통계의 생산 주기는 '1년'이라는 의견이 45.6%로 가장 많고, '2년'이라는 의견은 39.7%로서, 통계의 종류에 따라서 매년 또는 격년의 주기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인권통계를 생산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특정 집단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에 대한 요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확장과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으로의 분화된 관심,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의 지속적인 영향이 인권통계의 생산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와 하위 지표 평가

1) 인권의 이행기제 및 평등권

① 중분류 프레임과 지표 구성에 대한 평가

(단위: %)

대분류	중분류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부적절
이행기제	국제법·제도(국제협약의 범위)	73.5	26.5	0.0
	국내법·제도(인권기구 및 제도)	70.6	29.4	0.0
	인권교육	67.6	30.9	1.5
	시민사회와의 협력	63.2	35.3	1.5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종 차별	72.1	25.0	2.9
	여성 차별	77.9	19.1	2.9
	장애인 차별	77.9	19.1	2.9
	기타 차별	48.5	41.2	10.3

② 추가되어야 할 지표의 제안

이행 기제의 차원에서 추가되어야 할 지표로는 국제협약의 이행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지적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NAP과의 연관성, 국내 제도의 운영 현황, 정부 정책의 인권감수성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국제시민사회, 인권문화, 시민의식, 개인 당사자와의 협력 등도 제기되었다.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고 한다면 인권교육의 주요한 내용은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 인권적인 문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식 또는 인권문화와 관련된 지표와 통계가 필요하다.

평등권의 차원에서는 제시된 인종, 여성, 장애인 차별 이외에 학력·학벌, 연령, 성적 지향성, 지역, 고용형태 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학력차별’과 ‘연령차별’을 언급한 경우가 다른 차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학력차별과 연령차별은 고용형태 차별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점증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⁷⁾

2) 시민·정치적 권리

① 중분류 프레임과 지표 구성에 대한 평가

(단위: %)

대분류	중분류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부적절
시민·정치적 권리	신체권	79.4	19.1	1.5
	자유 및 안보권	66.2	23.5	10.3
	기본적 자유	73.5	22.1	4.4
	정의로운 행정	54.4	36.8	8.8
	구제받을 권리	77.9	22.1	0.0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58.8	35.3	5.9
	참정권	79.4	19.1	1.5
	결혼권·가족권	47.1	42.6	10.3

‘결혼권·가족권’의 항목에 대한 강한 동의가 50% 이하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의로운 행정’, 그리고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에 대한 강한 동의가 60% 이하로 나타나서 인권통계의 지표로서 적절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administrative justice를 의역한 ‘정의로운 행정’의 개념은 사법적 절차/과정에 관한 것인데 불구하고 행정부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어서 적절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유 및 안보권의 경우에는 ‘기본적 자유’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안보권(security)의 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

47)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은 2011년에 실시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정진성 외, 2011)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② 추가되어야 할 지표 제안

IT, 인터넷·SNS의 발달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듯이 정보인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감사·검열당하지 않을 권리 등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다.

한편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와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행정참여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권리 보호와 인권증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 및 행정에 대한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소분류 프레임과 지표 구성에 대한 평가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부적절
신체권	생명권	83.8	14.7	1.5
	제노사이드	57.4	36.8	5.9
	비사법적 살인	67.6	30.9	1.5
	사형	67.6	30.9	1.5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82.4	16.2	1.5
	구금 환경	76.5	22.1	1.5
	노예, 인신매매	75.0	23.5	1.5
자유 및 안보권	자유와 안보	60.5	28.9	10.5
	강제실종	60.3	35.3	4.4
	자의적 체포 및 구금	75.0	22.1	2.9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75.0	20.6	4.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83.8	16.2	0.0
	의견과 표현의 자유	82.4	17.6	0.0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79.4	19.1	1.5
	결사의 자유	82.4	17.6	0.0
	사생활권	73.5	23.5	2.9
정의로운 행정	재판받을 권리·공정한 재판	76.5	14.7	8.8
	법 앞의 평등권	75.0	19.1	5.9
구제받을 권리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	82.4	17.6	0.0
	피해자 보상과 회복	77.9	22.1	0.0
	불처벌 (Impunity)	60.3	38.2	1.5
이름·정체성·국적을 가질 권리	임의적 국적 거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72.1	26.5	1.5
	정체성 보호	63.2	32.4	4.4
참정권	투표 및 선출될 권리	75.0	23.5	1.5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76.5	20.6	2.9
결혼권·가족권	결혼 및 가족 구성권	61.8	36.8	1.5
	배우자 사이의 평등	61.8	33.8	4.4
	가족 보호	61.8	32.4	5.9

강한 동의가 60% 이하인 제노사이드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이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통계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다는데 강한 동의를 얻었다. 특히 신체권과 기본적 자유에 해당되는 항목들의 적절성에 대한 강한 동의의 비율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④ 추가되어야 할 지표 제안

행정의 투명성(정보 공개), 부당한 행정을 거부할 권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권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들은 과도하게 강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독립적인 사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어 수정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피해자 보상’이 아니라 ‘피해배상 청구권’, ‘정의로운 행정’의 범주 하에 사법부 관련 항목이 제시되었으므로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 및 안보권’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중분류의 하위 지표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① 중분류 프레임과 지표 구성에 대한 평가

소유권 보호의 권리·재무신용 권리의 적절성에 대한 강한 동의가 50% 미만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그 외의 다른 지표들은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유권 보호의 권리의 의미가 모호하고 권리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소분류의 단위에서도 소유권 보호 권리의 하위 항목들은 그 적절성에 대한 강한 동의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중분류 단위에서 교육권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강한 동의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는데, 소분류 단위에서는 교육권의 하위 항목들의 적절성에 대한 강한 동의가 50% 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높은 문해율과 진학률로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들이 의미 있고 필요하겠지만 한국사회의 교육권의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단위: %)

대분류	중분류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부적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7.9	19.1	2.9
	노동권	88.2	10.3	1.5
	건강권	88.2	11.8	0.0
	교육권	86.8	11.8	1.5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Financial Credit)권리	48.5	47.1	4.4
	문화적 권리	70.6	29.4	0.0

② 추가되어야 할 지표 제안

다수의 전문가들이 환경권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환경권을 포함하여 하위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③ 소분류 프레임과 지표구성에 대한 평가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부적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량권	76.5	22.1	1.5
	적절한 주거권	83.8	14.7	1.5
	사회보장권	79.4	19.1	1.5
	빈곤	73.5	22.1	4.4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73.7	23.7	2.6
노동권	일할 권리	83.8	13.2	2.9
	작업환경권	86.8	13.2	0.0
	Trade Union Rights	73.5	23.5	2.9
건강권	건강 서비스 접근	83.8	16.2	0.0
	아동 및 모성 건강	83.8	16.2	0.0
	건강 제한 조건	63.2	32.4	4.4
	기대 수명	57.4	38.2	4.4
	정신 건강	72.1	25.0	2.9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79.4	19.1	1.5
교육권	교육 보조 접근	63.2	35.3	1.5
	교육 성과	47.1	44.1	8.8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록률	51.5	39.7	8.8
	중퇴율	54.4	42.6	2.9
	문해율	58.8	38.2	2.9
	교육에서의 차별	83.8	14.7	1.5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채무신용 권리	재산 및 상속과 관련된 권리	51.5	38.2	10.3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취득명령(purchase orders), 축출, 재정착	48.5	44.1	7.4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72.1	26.5	1.5
	문화의 보존, 발전, 확산과 관련된 권리	67.6	30.9	1.5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63.2	33.8	2.9
	지적재산권의 보호	54.4	39.7	5.9

중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분류 항목에서도 소유권 보호 및 재무신용의 권리와 관련된 하위 지표들의 적절성이 다른 지표들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게 조사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권의 하위 항목으로서 교육 보조 접근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한 강한 동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양적인 측면의 교육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의 효과성이나 학생들의 행복감, 교육에 대한 흥미도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교육의 질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추가되어야 할 지표 제안

학령기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대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보육권·양육권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또한 문화권의 내용이 더욱 명료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다문화 보호), 문화혜택의 분배,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등을 지적하였다.

4) 집단 권리

① 중분류 프레임과 지표 구성에 대한 평가

인권활동가의 권리에 대한 동의가 매우 낮고, 아동, 장애인,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동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추가 되어야 할 집단으로는 노인, 비정규직, 북한이탈주민을 지정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HIV/AIDS 감염자 등과 같은 특정 병력(病歷), 청소년, 구금시설 수용자, 공공서비스 고위험직종 종사자(소방대원, 119구급요원, 인명구조요원 등), 소수 종교인, 피해자집단 등이 소수의견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소수자 집단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므로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단위: %)

대분류	중분류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부적절
집단 권리	여성	72.1	26.5	1.5
	아동	82.4	16.2	1.5
	장애인	85.3	13.2	1.5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70.6	23.5	5.9
	이주민	80.9	17.6	1.5
	난민	75.0	23.5	1.5
	인권활동가	34.2	45.6	22.1

② 소분류 프레임과 지표 구성에 대한 평가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부적절
여성	교육	66.2	29.4	4.4
	고용	79.4	19.1	1.5
	경제적 웰빙	41.2	48.5	10.3
	주거	60.3	33.8	5.9
	건강	64.7	30.9	4.4
	정의와 안전	67.6	25.0	7.4
	정치 참여와 사회 통합	73.5	22.1	4.4
아동	아동권리의 일반 원칙, 보호	79.4	17.6	2.9
	가정환경과 대안적 돌봄	78.9	18.4	2.6
	착취로부터의 보호	79.4	19.1	1.5
	청소년 사법	66.2	32.4	1.5
	무력 분쟁과 아동	61.8	32.4	5.9
장애인	장애인 권리의 일반 원칙	79.4	17.6	2.9
	접근성, 이동	80.9	17.6	1.5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보호	83.8	14.7	1.5
	독립 및 포용	75.0	23.5	1.5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와 안전	82.4	16.2	1.5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	64.7	32.4	2.9

장애인 권리의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동의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최근 장애인의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 또는 자립, 그리고 당사자주의, 자기결정권 담론의 영향으로 고용 또는 능력개발과 관련된 항목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아동의 권리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 항목 중에서 보호와 돌봄의 항목들은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아동의 교육권, 학습권 못지않게 여가권 또는 휴식권, 즉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도 있다.

한편 여성 권리에서는 경제적 웰빙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이며, 이외에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착취·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유사한 항목들, 예를 들면 ‘무력 분쟁과 여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

(3)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인권

1) 중분류 프레임과 지표 구성에 대한 평가

(단위: %)

대분류	중분류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부적절
시민·정치적 권리	인권과 반테러	57.4	38.2	4.4
	국제 인도적 법률	61.8	35.3	2.9
	정보인권	82.4	14.7	2.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비즈니스와 인권	60.3	38.2	1.5
	환경권	85.3	14.7	0.0

반테러의 항목은 적절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정보인권과 환경권의 적절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추가되어야 하는 권리를 질문하는 개방형 문항에서도 정보인권과 환경권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항목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2) 추가되어야 할 지표 제안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인권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지표로는 아주 다양한 응답이 분포되었다. 예를 들면 도시(생활)와 인권, 공공정책과 인권, 문화와 인권, 재난과 인권, 기업과 인권, 연대권(국제 및 국내 연대) 등이 거론되었다.

(4)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성에 주는 합의

1) 프레임의 전반적인 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권 프레임워크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몇몇 항목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매우 적절하다’는 강한 동의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적으로 50% 미만의 동의를 보이는 항목들은 인권의 하위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 중에서 ‘결혼권·가족권’(47.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에서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 신용 권리’(48.5%), 집단 권리 중에서 ‘인권활동가의 권리’(34.2%)는 인권규범 내의 논의와 국내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인권통계의 지표로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소분류 중에서는 교육권의 하위 지표인 ‘교육성과’(47.1%), 소유권 보호의 권리의 하위 지표들(48.5%)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강한 동의의 비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난 항목들도 하위 지표로서의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시민·정치적 권리로서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58.8%), ‘인권과 반테러’(57.4%), 신체권의 하위 지표인 ‘제노사이드’(57.4%), 건강권의 하위 지표인 ‘기대 수명’(57.4%), 문화적 권리의 하위 지표인 ‘지적재산권의 보호’(54.4%)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중분류 단위에서는 인권의 지표로서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위 지표의 적절성은 그에 상응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는 교육권의 하위 지표 항목들은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중고등 교육기관 등록률(51.5%)’, ‘중퇴율(54.4%)’, ‘문해율(58.8%)’은 국내의 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권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권 지표 이외에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의 교육권이 보장 또는 침해되는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교육의 결과성취’가 아니라 ‘교육의 질, 어떤 교육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한다. 한국사회의 교육은 No Left Behind와 같이, 학습이 뒤처지거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 교육의 공공성(전체 교육비 중에서 정부의 교육 예산의 비중), 교육격차 또는 교육불평등(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 학업 성취도의 격차 등) 등의 지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2)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지표

인권의 중요한 하위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의문이 제기되는, 따라서 인권의 지표로서 적절하다는 동의를 강하게 이끌어내지 못하는 항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권리로서 ‘경제적 웰빙’(41.2%)은 실제로 여성의 저임금을 포함하여 삶의 질,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웰빙이라는 용어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는 동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적 웰빙이 아닌 다른 표현이나 용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 자유, 자유 및 안보권은 자유라는 용어의 중복, 그리고 국가안보를 연상시키는 security의 번역어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부의 업무절차를 연상시키는 ‘정의로운 행정’도 administrative justice의 번역어로 인해서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행정의 하위 지표인 ‘재판받을 권리·공정한 재판’, ‘법 앞의 평등권’에서 보여주듯이 실제로는 사법 절차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사법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오인되었다.

3) 지표로서 추가를 고려하는 지표

인권전문가들이 추가해야 할 지표로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제기한 인권지표로는 환경권과 정보인권이며, 향후 인권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인권의 경우 디지털 경제, 정보사회로의 변화 과정과 이로부터 발견되는 다양한 현상들, 특히 부정적인 현상들이 인권침해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권은 기후변화로 이로 인한 재해, 인간다운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과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권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권의 이행기제의 하위 지표로서 인권교육의 적절성이 확인되었는데, 인권교육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그 목표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시민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고양일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관적인 측면인 인권의식을 하위 지표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4. 인권통계 체계구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 시민사회(인권관련 NGO)와의 교류와 협의

전문가 pool 작성을 위해 대표적 인권단체의 활동가와 접촉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동향을 이유로 협조를 받지 못했다.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응답할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소속 단체의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연유로 일부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지향이 진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결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에는 정부와 인권단체, NGO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한 협의를 거쳐서 인권통계를 생산,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1차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이 인권의 이행기제로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인권단체의 협의 통로를 마련하여 인권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인권단체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높이는 사전작업이 요구된다.

(2) 인권통계 생산·관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인권통계의 생산과 활용·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주문하였다. 주도적 역할이라고 함은 부처와의 관계에서 인권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부처와 조율하고 조정함으로써 부처가 생산해 내는 인권통계를 취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주도적 역할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권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분산형 통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담보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권의 관점에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계 생산의 기획은 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실제 통계생산(자료수집)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통계는 각 부처가 통계를 작성할 때 성별 동향, 여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중앙정부의 부처인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 기구인데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인지 통계를 구축해 온 여성가족부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제2절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구성

1.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바람직한 인권통계 작성의 가이드라인이자 매뉴얼,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계 프레임워크가 사회통계와 지표들을 집적, 추가, 탈락, 그리고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수미일관된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인권관련 통계들을 수집, 분류·재분류하며, 인권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통계가 무엇이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통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존 국가통계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되는 자료들의 부족과 결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향후 어떤 자료가 어떻게 집적·누적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늠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할 만하고 정당성을 확보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견고한 틀 하에서 인권통계의 발굴과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마련된 캐나다의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평등권의 증진과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그 필요의 근거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서 찾고 있다. 첫째,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웰빙과 관련된 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지만 인권적 관점에서 생산·집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이런 기존 자료들의 난점들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인권옹호기구들이 인권발전의 “추세를 읽어내고,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구획하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캐나다는 여타 인권조약 가입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compliance)할 의무를 지게 되고, 그 핵심이 인권현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행위(reporting)”이며, 따라서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보고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정책행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캐나다 평등권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은 한국의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015년 11월 현재 937종의 국가승인통계 중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웰빙을 측정하는 사회통계는 200여개에 육박하고 있고,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부기관들에 의한 실태조사도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원자료의 가공 및 재가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인권적 관점에서 관련 통계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인 가공·재가공을 거친 자료는 본격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인권보장 국가로써 한국이 갖는 위상과 주요 인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의 국제법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국제인권규범의 준수와 이에 따라 한국의 인권발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료와 근거에 바탕을 둔 보고행위는 매우 중요하며, 인권분야에서 국격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원칙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가 신뢰받을 수 있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주요 인권법과 규범,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담아야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 검토와, 해외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프레임워크 구축과 관련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었다. 앞서 1장에서 밝힌 인권통계 체계구축의 원칙들 중 “포괄성”, “보편성”, 그리고 “한국적 맥락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선진국과 인권기구의 심층 인터뷰 결과 선진사례들이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이나 집단으로 관심이 초점이 한정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모두 인권의 주요 분야 및 영역을 포괄하는 방식보다는 당장 보호의 필요가 높은 영역 및 집단에서 지표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나의 영역 혹은 집단에 초점을 맞춰서 잘 정립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가 다른 영역 및 집단에 대한 지표 구축 과정에도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과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을 간과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권리 등의 인권영역 및 내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구성은 포괄성이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보편성의 원칙하에 구성되어야 한다. 인권은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권리로 알려져 있다. 인종, 종교, 성별, 나이, 교육, 경제적 지위,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모두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계시민의 기본적 덕목이다. 따라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국제인권규범,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제공하는 관련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다른 국가 및 사회와 비교가능한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보편성은 비교가능성에 다름 아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보편적 인권색인, 인권가이드, 그리고 인권선진국의 인권프레임워크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편적 원칙에 따라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될 때 비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와 의무 이행이 가능해 진다.

셋째, 한국이 갖는 맥락성 역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각 국가별로 발전단계, 문화적 전통, 사회적 규범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인권 역시 사회적 구성물이자 정치적 산물이므로 각 국가 및 사회가 처한 맥락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인권지표 체계가 평등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면에는 다문화 사회로서의 캐나다의 오랜 전통과 사회적 규범이 자리잡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의 인권지표 체계가 인종·민족 문제를 중심적 범주로 다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오랜 정치적 권위주의 경험, 남북분단의 현실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유권적 인권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가이다. 돌진적 근대화와 산업화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이고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 역시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이다. 오랜 재벌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기업에 의한 인권침

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다.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한국적 맥락성을 설득력 있게 반영해야 한다.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책임성”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이래 인권보호와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갖는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지구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같은 새로운 의무담지자가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권보호와 책임의 궁극적 소재는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인권지표 가이드가 구조-과정-결과라는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제도의 구축 그리고 운영을 구조와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측정하고, 이를 결과 지표들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보편적 인권색인에 “이행기제”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인권법과 제도,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과 제도의 구비, 그리고 운영이 이행기제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인권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역시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행기제를 대분류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규범과 기준, 기대를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규범과 원칙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 역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적·공적 기관들이 인권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갖춘 사회는 인권존중과 보호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춘 사회이며, 인권실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인권정책 입안을 희망하는 많은 국가와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3. 인권위 인권통계의 문제점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우선 그 관심 영역과 대상을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2014년에 발간된 인권위의 2013 인권통계는 인권의 영역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그리고 인권취약계층의 권리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대체로 통상적인 인권 영역의 구분과 NAP의 영역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관행적인 구분을 따르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분류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논의는 거의 없다. 이러한 구분법이 어떻게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고 있으며, 점차 복잡해지는 인권환경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당화는 극히 부족하다. 특히, 인권을 측정하는 수준, 즉 인권제도,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권관행 및 현실에 대한 체계적 구분도 결핍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바람직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각 국가 및 사회가 처한 인권현실 및 맥락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 못지않게, 그 사회가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인권문제와 이슈들을 드러내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인권통계 체

계는 보편적 인권의 논리를 형식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한국 인권실현의 난제와 현주소를 반영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실정법으로써의 국제인권법과 국내인권법의 구조를 반영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실정법적 틀로 포섭되지 않는 인권주체들 간의 갈등과 관계의 역동성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새롭게 구성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인권의 보편성과 맥락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형식적 구조와 실질적 이슈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지표 작업이 검증될 거치지 않은 일국적 자료와 통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4.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골격이 되는 인권분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구축한 “보편적 인권색인”의 분류체계를 따르되, 한국적 맥락에 따라 변형하는 과정을 거쳤다. 보편적 인권색인은 유엔인권보호체계의 세 가지 핵심인 조약기구, 특별절차,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개별국가에 대해 제시하는 인권개선 권고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은 온라인 자료이다. 그 목적은 인권상황을 다루는 종합적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일국적, 지역적 인권발전에 대해 국제적 관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 가지 다른 절차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권고사항들을 일치(alignment)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진행되는 협력활동에 대한 리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각 국가의 권고사항 이행을 돕고, 단순화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UN의 인권관련 자료들을 보다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OHCHR은 우선 대분류로 1. 이행기제, 2. 평등권, 3. 시민·정치적 권리,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 집단권리, 6. 자결권, 7. 개발권으로 나누고 있다. 자결권과 개발권 등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관련되기 보다는 국가 혹은 민족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집단 혹은 소수자 권리의 경우 인권의 핵심을 이루는 권리이고, 한국의 NAP 등의 분류 방식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라는 두 가지의 실질적인 권리 내용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아동·청소년, 그리고 노인의 자살 문제는 취약계층의 중요한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류체계로 보았을 때 자유권의 신체권, 그 중에서도 생명권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여성, 장애인, 노인의 실업 문제 역시 취약계층의 생존 그리고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권이슈이지만 사회권의 노동권, 그 중에서도 일할 권리와 중복된다. 따라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에서는 실질적인 권리 내용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인권문제는 해당되는 권리 내용에 배치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특히, 소수자의 차별문제는 평등권 대분류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변형된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아래의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3>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이행기제	1.1. 국제규범	1.1.1. 국제인권법 준수
		1.1.2. 국제인권기구 참여
	1.2. 국내법	1.2.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1.2.2.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3. 인권교육	1.3.1.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1.3.2. 기업·시민사회 인권교육 활동
	1.4. 시민사회	1.4.1. 인권 NGO 활동
		1.4.2. 인권 NGO 거버넌스 구축
2. 평등권	2.1. 차별 현황	2.1.1. 인권상황 평가
		2.1.2. 침해 및 차별발생 원인
		2.1.3. 차별의 심각성 평가
		2.1.4. 차별경험 유무
	2.2. 차별 요인	2.2.1. 인종·피부색·출신국가
		2.2.2. 성별
		2.2.3. 경제적 지위
		2.2.4. 나이
		2.2.5. 용모
		2.2.6. 종교
		2.2.7. 학력·학벌
		2.2.8. 성적 지향성
		2.2.9. 장애
		2.2.10. 병력
3. 시민·정치적 권리	3.1. 신체권	3.1.1. 생명권
		3.1.2. 사형의 제한
		3.1.3.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3.1.4. 구금 환경
		3.1.5. 인신매매 금지
		3.1.6. 안전할 권리
		3.1.7. 실종
		3.1.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3.2. 기본적 자유	3.2.1. 이동의 자유
		3.2.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3.2.3. 의견과 표현의 자유
		3.2.4. 집회의 자유
		3.2.5. 결사의 자유
		3.2.6. 사생활 보호권
	3.3. 행정·사법적 정의	3.3.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3.3.2. 사법적 구제
		3.3.3. 피해배상 청구권
	3.4. 참정권	3.4.1. 투표할 권리
		3.4.2. 선출될 권리
		3.4.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3.5. 정보인권	3.5.1. 정보접근권
		3.5.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4.1.1. 식량권
		4.1.2. 주거권
		4.1.3.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4.2. 사회보장권	4.2.1. 소득보장(공공부조)
		4.2.2. 빈곤·양극화
		4.2.3. 사회복지
		4.2.4. 사회보험
	4.3. 노동권	4.3.1. 일할 권리
		4.3.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4.3.3. 노동조합권
	4.4. 건강권	4.4.1. 건강 서비스 접근
		4.4.2. 아동 및 모성 건강
		4.4.3. 육체적 건강
		4.4.4. 정신적 건강
		4.4.5.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4.5. 교육권	4.5.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4.5.2. 교육선택권
		4.5.3. 교육의 질
		4.5.4. 교육 차별 및 불평등
	4.6. 문화적 권리	4.6.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4.6.2.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4.6.3. 창작물에 대한 보호
		4.6.4.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4.7. 기업과 인권	4.7.1. 국가의 보호
		4.7.2. 기업의 존중
		4.7.3. 구제
		4.7.4. 환경보존 책임
	4.8. 환경권	4.8.1.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4.8.2.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4.8.3.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첫 번째 대분류인 이행기제는 국가의 책임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지, 국제법의 국내법적 이행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활동은 어느 정도 인지 등과 관계된다. 또한 인권교육의 수준,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역할이 포함한다. 인권을 구조, 과정, 결과로 나누어 볼 때, 인권의 구조 그리고 과정에 해당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법과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가와 관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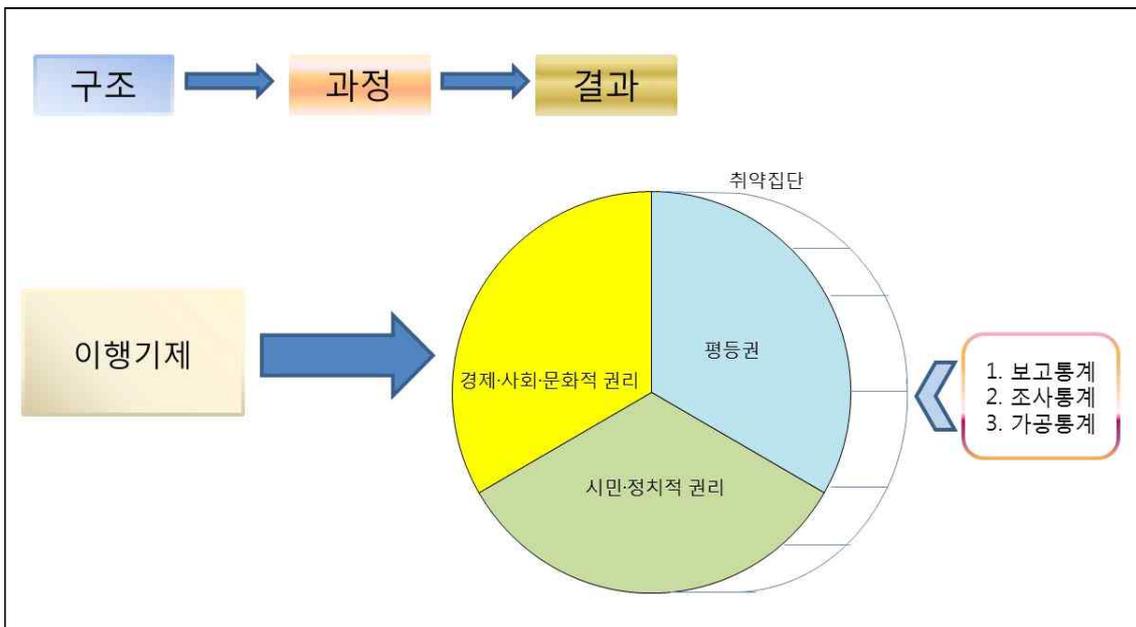
두 번째 대분류는 평등권이다. 이는 인간으로써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즉,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2011년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다루어진 주요 차별 요인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평등권은 기본 권리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기본권들의 보장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권 대분류 하에는 차별의 현황과 요인과 관련된 인권이슈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대분류는 시민·정치적 권리이다. 통상 자유권으로 불리는 권리의 조합을 뜻하며, 국가로부터 침해 받지 않으면서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 목록들을 통칭한다. 여기에는 중분류로써 신체권, 기본적 자유, 행정·사법적 정의, 참정권, 정보인권이 포함된다. OHCHR의 보편적 인권색인의 중분류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였으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정보권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중분류 항목들은 다시 소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표 3-4>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네 번째 대분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사회권으로 통칭되는 이 권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웰빙을 실현하는데 토대가 되는 권리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통용되는 자원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중분류로는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기업과 인권, 환경권이 포함된다. 기업과 인권, 환경권은 대체로 사회권과 유리된 채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이 두 권리 유형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갖는 친화성을 고려하여 사회권의 중분류에 배치하였다.

아래의 [그림 3-2]은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도식화하고 있다. 이행기제,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네 가지 대분류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축에서는 구조-과정-결과의 논리적 흐름이 제시되어 있다.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인권의 주요 영역에는 소수자의 권리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 프레임워크 구축 이후 이루어질 인권지표폴 구축 과정에는 보고, 조사, 가공통계와 같은 통계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3-2]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조



5.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대분류 하의 중분류 및 소분류

(1) 이행기제

이행기제와 관련된 중분류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제규범이다. 이는 소분류로 나누면 국제법과 국제기구와 관련된 통계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 간의 합의로 맺어진 국제인권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했는가, 유보는 없었는가 하는 정보를 담은 통계가 각국의 인권규범의 이행기제를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인정된 규범이 각국에서 이행되는지 감시와 평가를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와의 활동과 국제인권이사회의 보편정례보고 같은 활동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인권개선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였는가 등의 정보를 담은 통계다.

둘째는 국내법이다. 국내법 중분류는 다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제법의 법원의 하나가 되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 비준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인권보호의 의무를 어떻게 국내법으로 구체화하여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는가, 또 인권기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가 등이 이와 연관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인권통계와 지표를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이행도를 점검하고 있는지,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이행기제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중분류는 인권교육이다. 이는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그리고 기업 및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활용으로 세분화된다. 국가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평화, 관용의 가치를 증진하고 있는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의 정보가 담기게 된다. 좁게는 인권침해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영역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교정직 공무원들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넓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인권교육이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된 사람들에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기업과 시민단체에서 어떤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의 통계로 인권교육의 지표를 삼을 수 있다.

네 번째 중분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며, 이는 다시 인권 NGO의 활동, 그리고 인권 NGO 거버넌스의 구축 두 가지 소분류로 나누어진다. 정부의 인권보장과 보호의 기제나 사회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과는 관련이 적긴 하지만, 국제규범이 사회로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NGO)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국민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인권을 보다 더 향유하게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2) 평등권

평등권(Equal rights, 平等權)의 사전적 정의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

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불린다(위키백과, 2015).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명시하며 차별은 모든 영역에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음을 선포하였다.

차별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연관된 초기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으며, 학력 및 문화적인 인식으로 인해 단순 업무들을 도맡아 해야 되는 압력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였다(Koo, 2001). 한국사회의 차별을 주제로 집필한 다른 논문에서는 장애인과 학력차별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 차별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여성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직 종사자 일수록 차별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차별의 경험은 장애인과 성차별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과 연령에 대한 차별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박수미 외, 2004). 이와 다르게 2011년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지위와 학력/학벌이 차별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함을 지적하였다(정진성 외, 2011).

평등권 대분류의 중분류는 차별 현황과 요인으로 구성된다. 차별 현황과 관련된 소분류로는 인권상황 평가, 침해 및 차별발생 원인, 차별의 심각성 평가, 차별경험 유무가 있고, 이는 모든 취약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차별 요인 소분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에서 분류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종·피부색·출신국가, 성별, 경제적 지위, 나이, 용모, 종교, 학력·학벌, 성적 지향성, 장애, 병력 등이 있다. 이 소분류에 포함되는 각 지표들은 차별에 대한 주관적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는 질적 지표들을 사용하였으며, 대표적인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종·피부색·출신국가 소분류의 경우, 다문화,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 문제에 관련한 지표들을 다루고 있으며, 성별과 관련된 지표는 채용과정에서의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교정직 등의 남성중심의 조직들 내의 여성차별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나이와 관련한 지표는 노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이슈를 다루었으며, 종교에 대한 지표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 차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장애에 대한 차별지표는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로 다루었다.

(3) 시민·정치적 권리

세 번째 대분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앞서 밝힌 것처럼 신체권, 기본적 자유, 행정·사법적 정의, 참정권, 정보인권 다섯 가지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신체권, 기본적 자유 등의 전통적인 자유권 영역 뿐 아니라 급격한 세계화와 정보화에 발맞추어 각광을 받고 있는 정보인권도 하나의 중분류로 포함하여,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중분류는 다음과 같은 세 분류로 구분된다. 자유권은 중분류 5개, 소분류 22개로 구성된다.

우선 신체권 중분류는 생명권, 사형의 제한,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구금환경, 인신매매금지, 안전할 권리, 그리고 실종 8개의 소분류로 구분된다. 기본적 자유 중분류는 이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 등 6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행정·사법적 정의 중분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법적 구제, 피해배상 청구권 3가지 소분류로 구분된다. 참정권 중분류는 투표할 권리, 선출될 권리,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3개의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정보인권 중분류는 정보접근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2개의 소분류로 구분된다.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크게 8개의 중분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으로 이는 다시 식량권, 주거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로 나뉜다. 이 중에서 ‘식량권’은 아침식사 결식률, 최근 1년간 가정형편으로 인한 결식 비율, 아동무상급식 지원현황, 영양섭취부족,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 등을 통해 측정된다. 다음으로 ‘주거권’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비율,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적으로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BOD 발생 부하량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권」은 크게 4개의 소분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득보장(공공부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실업급여 수급자수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양극화’를 대표하는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국가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등이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수, 건강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 산재보험 가입률 등이 대표적인 지표라 하겠다.

「노동권」은 3개의 소분류로 나뉘는데, 우선 ‘일할 권리’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장기실업자의 비율, 잠재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수 등이 대표적인 지표라 하겠다. 그리고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은 근로형태별 주 40시간 실시 비율, 최저임금 미만을 등을 통해 측정된다. 또한 ‘노동조합권’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노사협의회 설치수,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신청건수 및 소송 처리건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파업권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건강권」은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건강 서비스 접근’은 시도별 의사수 및 부족율, 10만 명당 시도별 등록 병상 수, 시도 및 소득별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의료보장 적용인구, 성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아동 및 모성 건강’과 관련된 지표로는 미혼모 산전수진율, 저체중아 발생률,

조산을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육체적 건강’은 기대수명, 조사망률,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등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신적 건강’은 주요정신 질환 평생유병률,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인지비율, 우울감 경험률 등을 통해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지표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공공의료비 지출비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권」 역시 5개의 소분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은 시도 및 학교급별 취학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율 및 지원률 등이 대표적인 지표라 하겠다. 그리고 ‘교육선택권’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참여비율, 학업중단자 비율,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다문화 가구 아동 취학률, 미혼모 학업중단율 등의 지표가 있다.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학급당 학생수,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기간제 교사비율,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등이 있다. 또한 ‘교육에서의 차별/불평등’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저소득층 장학금수혜율,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 등이 대표적인 지표라 하겠다.

그리고 「문화적 권리」는 크게 4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GDP대비 문화예산, 여가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와 ‘창작물에 대한 권리’,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도 문화적 권리에 포함된다.

「기업과 인권」은 ‘국가의 보호’, ‘기업의 존중’, ‘구제’, ‘환경보존 책임’ 등 크게 4개의 소분류와 각각에 해당되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환경권」은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환경권 증진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는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소음·진동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을 통해 그 현황과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와 관련된 지표로는 환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환경보호지출액, 자연보호지역비율, 유해인자 측정 및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수, 멸종위기종 수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권 증진에 참여할 권리’는 행정구역별 재해위험지구 현황 등이 대표적이다.

요컨대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4개의 대분류, 19개의 중분류, 74개의 소분류로 구분된다. 인권지표 발굴 과정을 연결해주는 핵심 고리인 74개의 소분류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를 정당화 해주는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각각 소분류에 배치된 지표명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제 4 장

인권통계 지표POOL

제4장 인권통계 지표POOL

제1절 지표풀의 정당화: 전문가 조사 2차

1. 전문가 조사 2차의 목적과 내용

전문가 조사 1차를 통해서 제시된 인권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후에 프레임워크와 분류체계를 수정하였고, 정보인권과 환경권을 인권의 주요한 영역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분류 체계의 하위 지표 중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조언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선택적으로 제외 또는 수정하였다. 전문가 조사 2차에서는 <표 4-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수정된 프레임워크와 분류체계의 적절성을 재확인하고,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발굴, 개발된 지표 항목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소분류 수준에서 각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하위 지표의 통계 항목을 개발하여 그것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위 지표의 통계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인권의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를 질문하였다.

<표 4-1> 2차 조사의 내용

분야	내용	설문문항
시민·정치적 권리	프레임 및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정치적 권리의 분류체계의 적절성 (신체권, 기본적 자유, 행정·사법적 정의, 참정권, 정보권) - 보완·수정해야 할 사항
	하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지표 중에서 부적절한 항목 및 대표 항목 - 추가되어야 할 항목
	소수자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핵심권리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결혼이주만, 이주노동자, 난민, 노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군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프레임 및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분류체계의 적절성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기업과 인권, 환경권) - 보완·수정해야 할 사항
	하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지표 중에서 부적절한 항목 - 하위 지표 중에서 대표 항목 - 추가되어야 할 항목
	소수자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핵심권리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결혼이주만, 이주노동자, 난민, 노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군인)

이와 아울러 인권통계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인권의 취약계층인 소수자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권정책의 주요 목표집단이 되는 소수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중점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2. 전문가 POOL의 보완

(1) 전문가 pool의 보완의 필요성

전문가 조사 1차에서 138명의 전문가 중에서 소속 변경, 정보 오류 등의 이유로 아예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가 17명에 이르렀다. 2차 조사에서는 이들 17명을 전문가 pool에서 제외시키고 또 다른 22명의 인권전문가로 대체하여 전문가 pool을 보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구성은 전문연구자 43명, 법조계 37명, 시민단체 35명, 정책관계자 28명으로 총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에서도 응답 완료율 기준으로 인권연구자 35%, 법조인 및 로스쿨·법과대학 교수 15%, NGO 활동가 35%, 인권정책 관계자 15%의 구성비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종적으로 총 69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응답자 구성의 특성은 다음의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원래 목표로 삼았던 응답자의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2차 조사에서는 NGO 활동가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으며, 법조인·법대교수의 참여가 늘었으며, 인권연구자와 정책 관련자는 대략 목표한대로 조사되었다.

<표 4-2>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

인권연구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법조인·로스쿨 교수	정책 관련자	합계
23(33.3)	19(28.5)	19(27.5)	10(14.5)	69(100.0)

3. 전문가 조사 2차의 결과 및 함의

(1) 수정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평가

1) 프레임워크 및 분류체계의 구성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중에서 핵심적인 인권의 양대 축인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5개의 중분류 지표와 26개의 소분류 지표로 구성된 시민·정치적 권리, 그리고 8개의 중분류 지표와 34개의 소분류 지표로 구성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구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통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프레임워크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시민·정치적 권리	15.8	76.3	7.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4	80.6	0.0

또한 인권전문가들이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 내용들은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위 지표를 더 구체화시키거나 1~2개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 정도이다.

인권	보완 사항
시민·정치적 권리	- 신체권에 보행권 추가(21세기 선진도시가 지향하는 권리) - 참정권에 공무담임권이 빠져 있음 - ‘행정적 정의’ 용어의 적절성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에 여가/휴식 권리 추가 - 교육권에 특수교육(영재, 장애, 다문화가정 아동 등) 추가 - 문화권에서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를 더 구체화

(2) 시민·정치적 권리의 하위 지표 항목의 평가

프레임워크 및 분류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 시민·정치적 권리의 소분류 수준에서 하위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선택하게 하였고(여러 개의 응답선택이 가능한 중복응답형 설문), 또한 그 지표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대표 지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한 개만 선택 가능한 설문 유형). 구체적인 지표 항목의 예시들은 <부록4>에 있으며, 인권전문가들이 하위 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비율이 높은 항목들은 인권통계로서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대표 지표 항목들은 향후 인권상황의 개선과 증진을 위해서 집중적인 관리와 추적이 필요할 것이다.

1) 신체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⁴⁸⁾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생명권	임신 중절 현황, 운수사고 사망 수	9.1(3) 12.5(1)	1. 자살률 2. 살인 사건 수	55.3 23.7
사형의 제한	간접죄 중 사형/무기 징역 선고 비율	10.2(2)	1. 사형 선고율	94.7
고문·비인간 적 처우	수사관의 가혹행위 인식	5.7(5)	1. 고문·가혹 행위 진정서 현황 2. 고문·가혹 행위 관련 법집행관 기소/징계	36.8 28.9
구금환경	벌금미납에 의한 노 역장 유치인원 현황	5.7(5)	1. 교정시설 수용 현황 2. 구금·보호시설 상담건수 3. 수감시설 폭력건수	31.6 21.1 18.4
인신매매 금지	-	-	1. 인신·성매매 현황 2. 인신·성매매 기소/처벌건수	68.4 21.1
안전할 권리	범죄 두려움	8.0(4)	1. 범죄 피해자 현황 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57.9 31.6
실종	-	-	1. 약취/유인 현황	68.4
자의적 체포 및 구금	-	-	1. 구속사건 비율 2. 체포·구속 적부심사 처리 현황	44.7 28.9

신체권에서 통계지표로서 적절하지 못한 지표항목은 ‘운수사고 사망수’(12.5%) > ‘간접죄 중 사형/무기징역 선고 비율’(10.2%) > ‘임신 중절 현황’(9.1%) > ‘범죄의 두려움’(8.0%)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체권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는 ‘사형 선고 비율’(94.7%) > ‘인신·성매매 현황’(68.4%), ‘약취/유인 현황’(68.4%) > ‘범죄 피해자 현황’(57.9%) > ‘자살률’(55.3%) 등에서 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기본적 자유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이동의 자유	북한방문자 현황	9.3(4)	1. 국내인구 이동 현황 2. 체류 외국인 현황	42.1 21.1
사상,양심,종 교의 자유	종립학원 현황	10.7(2)	1.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2. 입영/집중 거부자 현황	63.2 28.9
의견과 표현의 자유	언론사 파업 현황	10.7(2)	1. 방송심의 의결 현황 2.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63.2 31.6
집회의 자유	시위중 부상자 비율	12.0(1)	1. 집회금지 통고 현황 2. 집회시위 발생 현황	47.4 28.9
결사의 자유	-	-	1. 결사체/NGO 현황	57.9
사생활 보호권	사생활 침해 경험	8.0(5)	1. 개인정보 침해 비율 2.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유출 현황	47.4 23.7

48) 부적절한 항목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중분류 체계에서의 순위를 의미한다(이하 동일).

기본적 자유의 제시하는 통계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은 항목은 ‘시위 중 부상자 비율’(12.0%) > ‘언론사 파업 현황’(10.7%), ‘종립학원 현황’(10.2%) > ‘북한 방문자 현황’(9.3%) > ‘사생활 침해 경험’(8.0%)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적 자유의 각 소분류에서 대표 지표로 지목된 비율이 높은 항목들은 ‘방송심의 의결 현황’(63.2%),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현황’(63.2%) > ‘결사체/NGO현황’(57.9%) > ‘집회 금지 통고 현황’(47.4%), ‘개인정보 침해율’(47.4%) 등이다.

3) 행정적 정의(administrative justice)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5.6(5)	1.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39.5
	국가소송 접수/처리건수	13.9(3)	2.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건수	21.1
	경찰 구속현황	11.1(4)	2. 구속사건 점유율	21.1
	변호사 수임료 분쟁 현황	25.0(1)		
사법적 구제	구속영장 기각률	5.6(5)	1.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65.8
피해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접수/처리 현황	5.6(5)	1. 국가배상 접수 및 처리 현황	44.7
	고문피해자의 국가구제조치 만족도	16.7(2)	2.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현황	34.2
사면 및 면책	사면실시 현황	5.6(5)	-	-

사법적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의미하는 행정적 정의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분쟁 현황’(25.0%), ‘고문 피해자의 국가구제조치 만족도’(16.7%)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13.9%), ‘경찰 구속 현황’(11.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 자유의 소분류 내에서 각각의 대표 지표로 평가된 항목은 ‘민사 및 형사 법률 구조 현황’(65.8%), ‘국가배상 접수 및 처리 현황’(44.7%), ‘국선변호사 선임비율’(39.5%)로 조사되었다.

4) 참정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투표할 권리	투표율	13.3(1)	1. 투표율	42.1
	공직자선거법 위반 현황	13.3(1)	2. 투표권 제한 요건	28.9
선출될 권리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10.0(4)	1. 피선거권 제한 요건	50.0
	5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13.3(1)	2.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31.6
	피선거권 박탈 현황	10.0(4)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	-	1. 행정민원 현황	57.9
			2. 국민참여 재판 현황	42.1
공공서비스 접근권	-	-	1. 행정정보 공개율	57.9
			2. 행정정보 비공개 현황	42.1

참정권의 소분류의 하위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는 ‘투표율’(13.3%)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현황’(13.1%), 그리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13.1%)이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 투표율의 경우에는 투표할 권리를 대표하는 항목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투표율은 세대별, 지역별 투표율의 격차, 그리고 선거의 정치역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다소 상반되는 평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참정권의 대표 지표로서 ‘피선거권 제한 요건’(50.0%), ‘행정민원 현황’(57.9%), ‘행정정보 공개율’(57.9%)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5) 정보인권

정보인권의 하위 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IT이용 교육’(25.0%), ‘뉴미디어정보심의팀 활동 현황’(25.0%)이 비교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표 지표로는 ‘개인정보 침해 비율’(55.3%), ‘정보격차 수준’(57.9%)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통신심의 의결 현황’(42.1%)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되어 대표 지표로 평가되었다.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정보사생활 보호권	-	-	1. 개인정보침해 비율	55.3
			2.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율	39.5
정보접근권	IT이용(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25.0(1)	1. 정보격차 수준	57.9
			2. 웹접근성	34.2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활동현황	25.0(1)	1. 통신심의 의결 현황	42.1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하위 지표 항목의 평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의 프레임워크 및 분류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 소분류 수준에서 하위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선택하게 하였고(여러 개의 응답선택이 가능한 중복응답형 설문), 또한 그 지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대표 지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한 개만 선택 가능한 설문 유형). 사회권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적절하게 일하고 휴식하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특정하고 나타내는 지표 항목들이 중요할 것이다.

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식량권	영양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의 비율	28.2(1)	1. 가정형편에 의한 결식률 1.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미달자	35.5 35.5
주거권	주택 외의 거처 가구 비율 1인당 주거면적	15.4(2) 10.3(3)	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64.5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오염/단수로 물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	10.3(3)	1. 상수도 보급률 2. 식수의 안전기준 초과하는 오염물질 3. 물부족 통계	38.7 25.8 22.6

식(食)과 주(住)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특히 음식, 깨끗한 물, 거주하는 집이 중요하다.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을 나타내는 하위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으로 ‘영양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의 비율’(28.2%)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15.4%) > ‘1인당 주거면적’(10.3%), ‘오염·단수로 물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10.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지방과잉 섭취는 불균형적인 식생활의 결과이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식량권의 의미를 불균형적인 음식 섭취로까지 확장한다면 전혀 적절하지 않은 지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면 소분류 내의 대표 지표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64.5%로 상당한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고, 다른 지표들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비슷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소득보장 (공공부조)	보훈연금·보훈급여·보훈 수당	42.9(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 2. 사회보장 예산 비율	54.8 32.3
빈곤 및 양극화	-	-	1.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	71.0
사회복지	-	-	1. 복지시설 지원 예산 비율 2.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	48.4 35.5
사회보험	-	-	1. 4대 보험 지급액 및 보장율 2. 4대 보험 가입 현황	41.9 35.5

사회보장권에서는 보훈연금/수당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2.9%로 높을 뿐이고 다른 지표 항목들은 부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표 지표 항목에서는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을 꼽은 비율이 71.0%로 매우 높고 다른 항목들은 대표 지표로서의 합의 의견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다.

3) 노동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일할 권리	잠재경제활동인구 실업대책 직업훈련 추진현황	14.3(2) 11.4(3)	1. 고용율	38.7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	-	1. 최저임금 미만을 2. 연간 실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무시간 3.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의 차이	32.3 19.4 16.1
노동조합권	노사협의회 설치 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14.3(2) 17.1(1)	1. 노동조합 조직현황	61.3

노동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17.1%)가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잠재 경제활동인구’, ‘노사협의회 설치수’가 각각 14.3%로 부적절한 지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대표 지표 항목은 ‘노동조합 조직현황’이 61.3%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항목들은 각 소분류의 대표 지표로 평가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건강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건강서비스 접근	-	-	1. 시도별 의사수 및 부족율 2. 의료 미충족율 2. 의료보장 적용인구	29.0 25.8 25.8
아동 및 모성 건강	흡연 및 음주율	21.2(1)	1. 임산부 산전 수진율	67.7
육체적 건강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12.1(2)	1. 만성질환 및 암/사망 현황 2. 기대수명	41.9 32.3
정신적 건강	-	-	1.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율	54.8
건강서비스의 차별	-	-	1.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2. 의료급여 본인부담율	48.4 45.2

건강권에서는 여성·아동의 ‘흡연 및 음주율’이 지표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21.2%)이 가장 많았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12.1%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항목들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대표 지표는 ‘임산부 산전 수진율’(67.7%),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율’(54.8%),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48.4%) 등의 항목만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항목들은 대표 지표로서 평가된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5) 교육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25.6(1)	1. 시도 및 학교급별 취학율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율 및 지원율	54.8 38.7
교육선택권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참여 성인비율	11.6(3)	1. 평생교육 참여율	51.6
교육의 질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14.0(2)	1. 학생1인당 공교육비	54.8
교육 불평등·차별	학업 중단율	11.6(3)	1.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2.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	45.2 38.7

교육권은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이 25.6%로 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학업중단율’(11.6%),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14.0%), ‘사이

버대학교/학점은행제 참여 성인비율'(11.6%)도 교육권의 내용을 제시해 주는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업중단율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아동, 난민 또는 불법체류가족의 아동, 장애아동, 학교폭력 등에 의한 부적응아동 등의 경우에는 교육권 침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 경우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율,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교육권의 하위지표 항목으로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교육권을 나타내는 소분류 내의 대표 지표로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54.8%), '시도 및 학급교별 취학율'(54.8%), '평생교육 참여율'(51.6%)은 교육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문화적 권리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	1. 여가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 GDP 대비 문화예산	45.2 19.4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정보문화향유권	21.1(1)	-	-
창작물에 대한 보호	-	-	1.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83.9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	-	1. 예술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61.3

문화적 권리는 다른 권리의 내용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지표 항목이 많지 않은 편인데, '정보문화향유권'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표의 부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문화적 권리의 대표 지표로서는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83.9%), '예술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61.3%)가 응답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재산권 등의 창작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숫자와 비율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주의를 보여주는 지표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7) 기업과 인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기업의 투명성과 형평성	공정한 인사관리	8.2(2)	1. 기업 내 성별/학력/근로형태/지역/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41.9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지수의 가입 여부	12.2(1)	1.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여부 2. 공정위 기간 내 하도급법 위반 횟수 2. 공정마케팅, 정보공개 준수 여부	32.3 19.4 16.1
지역사회 공헌	-	-	1. 지역사회 기부 규모 비율 2. 지역민 채용규모 비율	35.5 22.6
건전한 거버넌스	기업연계 NGO 숫자	8.2(2)	1.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유무	41.9
환경보존에 참여할 권리	-	-	1. 각 환경 인증제도 도입 여부	67.7

기업과 인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항목으로 ‘지속가능지수 가입’(12.2%) > ‘기업연계 NGO 숫자’(8.2%), ‘공정한 인사관리’(8.2%)가 꼽혔다. 대표 지표로는 ‘환경인증제도 도입 여부’(67.7%)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유무’(41.9%), ‘기업 내 성별/학력/근로형태/지역/임신·출산에 따른 차별’(41.9%)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른 항목들은 대표 지표로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별로 높지 않은 편이다. 기업과 인권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핵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은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환경권

(단위: %)

소분류	부적절한 항목		소분류 내의 대표 항목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의 천식 및 각종 암 발생률	10.0(1)	1. 지역별 도시공원 면적 및 공원율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3. 오염물질 허용기준 초과율	22.6 22.6 19.4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	-	1.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2. 지속성.환경성과 지수 국가 순위 2. 환경보호 지출액	32.3 22.6 22.6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	-	1. 자연재해 사망률 및 피해액	45.2
환경권 증진에 참여할 권리	-	-	1. 환경복지 예산 비중	45.2

환경권에서는 ‘취약계층의 천식 및 각종 암발생률’(10.0%)이 지표 항목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표 지표는 ‘환경복지 예산 비중’,

그리고 ‘자연재해 사망률 및 피해액’이 각각 45.2%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다른 항목들에 대한 평가는 30%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서 환경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제외·추가 제안된 지표들

1)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의 제외·추가 지표

인권의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된 항목, 그리고 제시된 지표 이외에 추가되는 것이 좋다고 평가된 항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적절한 지표에서 괄호안의 백분율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해당 지표가 인권통계의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체크한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5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합의에 이른 지표들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지표로는 ‘운수사고 사망자수’(55.0%), ‘변호사 수임료 분쟁 현황’(64.3%), ‘IT이용 교육’(75.0%),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활동 현황’(75.0%) 등인데, 이 중에서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수사고 사망자수’, ‘변호사수임료 분쟁 현황’을 지표 pool에서 제외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인권상황을 제대로 측정해 줄 수 있는 지표로 제안된 항목들은 <표 4-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들 지표 중에서 ‘사형 집행율’, ‘외국인 보호소 수용 현황’ 및 ‘공항 출국(송환) 대기실 수용 현황’,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여러 명의 전문가가 제안하였고, 통계적인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표 pool에 추가할 것을 고려한다.

<표 4-3> 제외·추가 제안된 지표(시민·정치적 권리)

	부적절한 지표	추가 제안된 지표
신체권	-운수사고 사망자수(55.0%) -간첩죄 중 사형/무기징역 선고 비율(45.0%)	-사형집행율 -외국인 보호소 수용 현황 -공항 출국(송환) 대기실 수용 현황 -독방징계 현황, -실종자 보호 전담 시스템 및 인원, 예산 현황
기본적 자유	-시위중 부상자 비율(45.0%) -종립학원 현황(40.0%) -언론사 파업 현황(40.0%)	-정부의 감청(도청) 현황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이주노동자 출입국 금지 현황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행정적 정의	-변호사 수임료분쟁 현황(64.3%) -고민피해자의 국가구제 조치 만족도(42.9%)	-사법대응 취약자 재판 현황
참정권	-	-개방형 공직자 임용비율 -비정규직(직장인) 투표(보장) 현황 -투표시간
정보 인권	-IT이용 교육(75.0%) -뉴미디어정보심의팀 활동현황(75.0%)	-차별과 혐오발언 고발 현황 -인터넷 실명제 현황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의 제외·추가 지표

전문가의 5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지표로는 ‘영양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의 비율’(64.7%), ‘보훈연금·보훈급여·보훈수당’(85.7%),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68.8%), ‘지속가능지수 가입여부’(60.0%) 등인데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양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의 비율’, ‘보훈연금·보훈급여·보훈수당’,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지표 pool에서 제외시킬 것을 고려한다.

또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인권상황을 제대로 측정해 줄 수 있는 지표로 제안된 지표 중에서 ‘건강수명’, ‘불안감’은 복수의 전문가가 제안하였고, 통계적인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표 pool에 추가할 것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인 가구 비율’, ‘양극화율(ER 계수)’, ‘파업에 대한 손배소 현황’, ‘중등학교에서 비전공교사로부터의 수업’, ‘1시간 이상의 통학거리 학생 수 및 비율’도 인권지표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4> 제외·추가 제안된 지표(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부적절한 지표	추가 제안된 지표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영양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의 비율(64.7%)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인 가구 비율
사회보장권	-보훈연금/보훈급여/보훈수당(85.7%)	-양극화율(ER 계수) -지역사회 복지지원의 수요-공급 비교
노동권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42.9%)	-파업에 따른 손배소 현황
건강권	-	-건강수명 및 불안감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 실질보장을 -신생아 사망률, 임산부 사망률, 신생아 발병률
교육권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68.8%)	-중등학교에서 비전공교사로부터의 수업 -1시간 이상의 통학거리 학생 수 및 비율
문화적 권리	-정보문화향유권(44.4%)	-다양성 영화 및 영화관 수(독립영화관 등)
기업과 인권	-지속가능지수 가입여부(60.0%) -공정한 인사관리(40.0%) -기업 연계NGO 숫자(40.0%)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서 조직의 유무 및 활동 여부 -기업의 인권현장 및 인권영향 평가 여부
환경권	-	-

(5) 소수자 집단의 핵심적인 권리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게 핵심적인 권리의 내용들을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민·정치적 권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되는 권리가 중요한 4개의 소수자 그룹이 있다. 즉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 북한이탈주민과 군인의 ‘사상·양심·종교

의 자유’, 성소수자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 등이다. 신체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중요한 소수자 그룹 및 해당 권리 내용은,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금지’,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소수자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경우 기본적 자유와 신체권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서는 건강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중요한 소수자 그룹이 있다.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 및 모성 건강’, 장애인, 결혼이주자 및 노인의 ‘건강서비스 접근’, 군인의 ‘정신적 건강’ 등이 그것이다. 각각 노동권과 문화적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가 중요한 소수자 그룹은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일할 권리’, 이주노동자의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 성소수자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군인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에서는 건강권을 핵심 영역으로 삼고, 노동권, 문화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하며 증진시켜야 한다.

<표 4-5> 소수자집단의 핵심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여성	인신매매 금지	안전할 권리 사생활보호권	아동 및 모성건강	일할 권리
아동/청소년	안전할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	아동 및 모성건강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장애인	이동의 자유	안전할 권리	건강서비스 접근	일할 권리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결혼이주자	공공서비스 접근권	안전할 권리	건강서비스 접근	문화생활에 참여
이주노동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
난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주거권	건강서비스 접근
노인	안전할 권리	정보접근권	소득보장	건강서비스 접근
성소수자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건강서비스에서의 차별
북한이탈주민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소득보장 주거권
군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정신적 건강	문화생활에 참여

(6) 인권통계 체계구축에 주는 함의

1) 지표 항목 평가 기준의 특성

전문가들이 지표 항목을 평가하는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현황이나 실태를 기술하는 지표보다는 어떤 이상적인 또는 일정한 기준을 전제하고 그것으로부터의 격

차, 결핍, 제한 등을 의미하는 지표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기본적 자유에서 ‘집회시위 발생 현황’보다 ‘집회금지 통고 현황’이 더 적절하고, ‘사생활 침해 경험’은 별로 적절하지 않지만, ‘개인정보 침해 비율’은 대표 지표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정보접근권의 내용은 ‘IT이용(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적절성이 떨어지지만 ‘정보격차 수준’은 대표 지표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 영향섭취 기준 미달자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등이 권리의 제한과 침해를 보여줌으로써 인권통계로서 타당성을 갖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발굴하고 기존 통계들을 재조정하거나 가공하여 인권통계로서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

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 및 분류체계의 기본틀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용어 사용의 문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항목으로의 세분화 등과 같이 기본틀의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런데 인권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수렴 또는 합의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권의 영역에서는 권리의 내용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항목, 권리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대표하는 지표로 꼽히는 몇 가지의 항목들이 수렴되는 반면 사회권의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의 응답이 수렴되는 정도가 더 약하고 분산적인 경향성을 보인다. 자유의 억압, 권리의 박탈 등과 같이 자유권의 내용은 비교적 인권의 현재 수준, 또는 인권의 침해를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사회권은 무엇이 인권으로서 보호 또는 보장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합의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서 부적절한 항목으로 지적되거나 대표 항목으로 평가되는 항목들로 의견 수렴되는 비율이 낮아서 이러한 인권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자유권에서는 가장 응답이 많은 1위 항목과 다른 항목 사이에 응답 비율의 차이가 나지만, 사회권에서는 1위 항목과 다른 항목 사이에 응답 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거나 몇몇 복수의 항목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의 소분류 내의 대표 지표로서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신체권에서 ‘사형 선고율’(94.7%), ‘인신/성매매 현황’(68.4%), ‘약취/유인 현황’(68.4%), 기본적 자유에서 ‘방송심의 의결 현황’(63.2%),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63.2%), 행정적 정의에서 ‘민사 및 형사 법률 구조 현황’(65.8%), 정보인권에서 ‘개인정보 침해 비율’(55.3%), ‘정보격차 수준’(57.9%)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64.5%), 사회보장권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71.0%), 노동권에서 ‘노동조합 조직 현황’(61.3%), 건강권에서 ‘임산부 산전 수진율’(67.7%), 문화적 권리에서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동량’(83.9%)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의 차이

권리의 내용을 측정하고 제시해 주는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인식 및 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은 대부분 부적절하다고 평가받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신체권에서 ‘수사관의 가혹행위 인식’, ‘범죄의 두려움’, 기본적 자유에서 ‘사생활 침해 경험’, 행정적 정의에서 ‘고문피해자의 국가구제조치 만족도’, 노동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건강권에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부적절하다고 지목된 항목들이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개인의 건강상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의 한 가지로 알려져 있다. 범죄의 두려움 역시 한 사회의 안전한 정도를 측정하는데서 핵심적인 항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현황보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면서 실제로 편리하다 또는 불편하다고 느끼고 평가하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통계라고 해서 반드시 객관적 실태와 현황에 한정지어서 측정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실제로 일상의 삶 속에서 개인들이 인권이 침해 또는 보장되는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여주는 주관적 인식 역시 인권통계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1차 전문가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인권의식의 고양인데, 이는 결국 한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보여주는 항목의 가치를 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소수자 집단의 참여 및 포용(inclusion)의 중요성

소수자 집단의 인권증진을 위해 핵심적으로 옹호해야 하는 권리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각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들을 지적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여성의 ‘인신매매/성매매 금지’,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아동 및 모성 건강’, 아동·청소년 및 노인의 ‘안전할 권리’, 노인의 ‘소득보장’,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 난민의 ‘주거권’, 성소수자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이주노동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일할 권리’ 등이 핵심적인 인권으로 제시되는 것은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지적이다. 군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는 인권상황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맥락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참여 및 포용과 관련된 항목들이 주목할 만한데, 소수자 집단이 정책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핵심권리로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자의 ‘공공서비스 접근권’,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일할 권리’, 장애인, 노인 및 결혼이주자의 ‘건강서비스 접근’, 군인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 이주노동자, 난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등은 소수자 집단이 배제되지 않고 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각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더하여 소수자 집단들의 활발한 참여와 포용도를 높임으로써 효과적, 효율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인권지표폴 구축

1. 인권지표폴 구축 전략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의 대, 중, 소분류를 구획한 후, 각 소분류에 적합한 지표들을 선정, 발굴, 제안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소분류에 해당하는 인권의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기 이전에 지표선정을 도와주는 중간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중요한 인권이슈들을 발굴하고 체계화하여 최종적인 지표발굴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럴 때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을 메울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권이슈들이 인권지표로 표현될 수 있다.

프레임워크와 지표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이러한 인권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규약위원회에서 발행한 최종견해, 그리고 국내 NGO의 반박보고서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중요한 인권이슈 및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최종견해는 규약위원회가 조약 가입국에 대한 권고 내용을 담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문서이다. 그리고 NGO 반박보고서는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인권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NGO 입장에서 본 한 국가의 주요 인권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통상 인권조약에 가입하는 정부는 규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때로부터 1년 안에 본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통상 4년 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규약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규약위원회 위원들은 가입국 정부가 제출한 인권상황보고서의 미진하고 불명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게 되며, 정부 대표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대표단은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속성상 가능한 각 국의 인권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려 하는 ‘전략적 태도’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의 인권단체들 혹은 NGO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해당 국가의 인권관행을 보다 충실히 드러내어, 규약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돕기 위해 이른바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NGO의 반박보고서, NGO 브리핑으로 대표되는 NGO 대표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정부보고서에서 다루지지 않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가입국의 인권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가입국의 인권현황이 어떠한지, 법과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인권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견해”라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건을 작성하여 공표하게 된다.

인권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의미와 영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의견대립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채널과 장(field)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채널과 장으로써 최종견해와 NGO의 반박보고서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 인권이슈들을 지표선정을 위한 ‘실마리’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2. 인권지표활용 자료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인권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해 최종견해와 NGO반박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최종견해는 규약위원회 별로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보고서 3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보고서 3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7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7건,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 3건,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 2건, 장애인권리위원회 보고서 1건 등 모두 29건의 보고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NGO반박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2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2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4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5건, 아동권리위원회 3건, 고문방지위원회 1건, 장애인권리위원회 1건 등 모두 18건을 참고하였다. 인권문서들의 상세한 목록은 아래의 <부록3>에 제시했다.

최종견해와 NGO반박보고서를 활용하여 발굴한 인권이슈들은 영역별, 중분류, 소분류 별로 분류하였다. 개별 지표에 대한 가용한 통계 정보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지표활용을 구축하였다. 자료의 출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행기체는 외교부의 조약정보 등 모두 6개 기관에서 생산한 8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평등권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등 4개 기관의 14개 자료를 지표 작성과정에 참고하였다. 한편 시민·정치적 권리는 검찰청에서 발간한 국가소송통계 등 36개 기관에서 발표한 51개의 자료를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25개의 기관에서 생산한 107개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지표에 활용된 모든 자료의 생산기관과 자료명은 대분류 별로 구분하여 <부록3>에 제시하였다.

3. 지표활용의 구성

최종견해와 NGO반박보고서를 활용한 인권이슈 발굴 단계와 가용한 통계 확인 단계를 거쳐 모두 410개로 구성된 지표활용을 구축하였다. 지표활용은 대분류별로는 이행기체 30개(7%), 평등권 45개(11%), 시민·정치적 권리 132개(3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03개(50%)로 구분된다. 한편 유형별로는 구조 지표 62개(15%), 과정 지표 108개(26%), 결과 지표 240개(59%)로 지표들을 분류할 수 있다.

<표 4-6> 유형별 지표 현황

대분류	구조	과정	결과	합계
이행기체	4	26	0	30(7%)
평등권	0	4	41	45(11%)
시민·정치적 권리	2	46	84	132(3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6	32	115	203(50%)
소계	62(15%)	108(26%)	240(59%)	410

대분류별 지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기제는 중분류 4개, 소분류 8개에 상응하는 총 3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제규범 중분류는 국제인권법 준수(2개), 국제인권기구 참여(5개) 등 2개 소분류의 7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법 중분류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3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6개)를 포함한 2개 소분류의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인권교육 소분류는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6개), 기업·시민사회 인권교육 활동(2개) 등 2개 소분류의 8개 지표를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소분류는 인권NGO 활동(2개), 인권NGO 거버넌스 구축(4개) 등 2개 소분류의 6개 지표가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구조 지표는 4개(13%), 과정 지표 26개(87%)였고 결과 지표는 없었다.

<표 4-7> 이행기제 지표 현황

중분류	소분류	구조	과정	결과	합계
국제규범	국제인권법 준수	1	1	0	2
	국제인권기구 참여	0	5	0	5
국내법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2	1	0	3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5	0	6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0	6	0	6
	기업·시민사회인권교육활동	0	2	0	2
시민사회	인권NGO 활동	0	2	0	2
	인권NGO 거버넌스 구축	0	4	0	4
대분류 총계(비율)		4 (13%)	26 (87%)	0 (0%)	30

다음으로 평등권은 차별 현황 중분류 하에 4개의 소분류, 차별 요인 소분류 10개에 상응하는 총 4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 현황의 경우, 인권상황 평가, 차별 원인, 차별의 심각성, 차별 경험 등 소분류들이 각각 1개의 지표를 포함한다. 차별 요인의 경우 소분류 별로 인종·피부색·출신국가(8개), 성별(12개), 경제적 지위(2개), 나이(4개), 용모(2개), 종교(3개), 학력·학벌(2개), 성적 지향성(4개), 장애(3개), 병력(1개)로 구분된다. 지표 유형별로는 구조 지표는 없었고, 과정 지표 4개(9%), 결과 지표 41개(91%)로 결과 지표의 비중이 높았다.

<표 4-8> 평등권 지표 현황

중분류	소분류	구조	과정	결과	총계
차별 현황	인권상황 평가	0	0	1	1
	차별 원인	0	1	0	1
	차별의 심각성	0	0	1	1
	차별 경험	0	0	1	1
차별 요인	인종·피부색·출신국가	0	2	6	8
	성별	0	0	12	12
	경제적 지위	0	0	2	2
	나이	0	0	4	4
	용모	0	0	2	2
	종교	0	0	3	3
	학력·학벌	0	0	2	2
	성적 지향성	0	1	3	4
	장애	0	0	3	3
	병력	0	0	1	1
대분류 총계(비율)		0 (0%)	4 (9%)	41 (91%)	45

한편 시민·정치적 권리는 중분류 5개와 소분류 22개에 상응하는 총 132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첫째, 신체권은 생명권(8개), 사형의 제한(4개), 고문 및 비인간적처우(6개), 구금환경(13개), 인신매매금지(3개), 안전할 권리(15개), 실종(3개), 자의적 체포 및 구금(9개) 등 8개 소분류에 61개 지표가 배치되었다. 둘째, 기본적인 자유는 이동의 자유(9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4개), 의견과 표현의 자유(6개), 집회의 자유(6개), 결사의 자유(5개), 사생활 보호권(6개)를 포함한 6개 소분류의 36개 지표가 포함된다. 셋째, 행정·사법적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5개), 사법적 구제(3개), 피해배상 청구권(6개)의 3개 소분류의 14개 지표를 발굴하였다. 넷째, 참정권은 투표할 권리(4개), 선출될 권리(2개),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5개)의 3개 소분류에 해당하는 11개 지표를 포함한다. 다섯째, 정보인권은 정보접근권(7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3개)의 2개 소분류의 10개 지표를 포괄한다. 지표 유형별로는 구조 지표 2개(2%), 과정 지표 46개(35%), 결과 지표 84개(64%)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중분류 8개와 소분류 30개에 상응하는 총 203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첫째,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은 3개 소분류, 19개 지표를 포함하고, 소분류별로 식량권(4개), 주거권(9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6개)로 구분된다. 둘째, 사회보장권은 4개 소분류에 26개 지표를 발굴했고, 소분류별로 소득보장(공공부조)(2개), 빈곤/양극화(10개), 사회복지(10개), 사회보험(4개)로 나뉜다. 셋째, 노동권은 일할 권리(12개),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22개), 노동조합권(6개) 등 3개 소분류에 해당되는 40개 지표를 포함한다. 넷째, 건강권은 건강 서비스 접근(7개), 아동 및 모성 건강(9개), 육체적 건강(5개), 정신적 건강(5개),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3개) 등 5개 소분류에 해당되는 29개 지표를 확인했다. 다섯째, 교육권은 4개 소분류에 해

당되는 24개 지표를 포함하고, 지표들은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4개), 교육 선택권(7개), 교육의 질(6개), 교육차별 및 불평등(7개)으로 나뉜다. 여섯째, 문화적 권리는 소분류별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8개),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4개), 창작물에 대한 보호(2개),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5개) 등 4개 소분류의 19개 지표로 구분된다. 일곱째, 기업과 인권은 국가의 보호(6개), 기업의 존중(11개), 구제(10개), 환경보존 책임(8개) 등 4개 소분류의 35개 지표를 발굴했다. 여덟째, 환경권은 3개 소분류에 해당하는 11개 지표를 포함하는데,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4개),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6개),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1개)로 구분된다. 지표 유형별로는 모두 203개의 지표 가운데 구조 지표 56개(28%), 과정 지표 32개(16%), 결과 지표 115개(57%)로 나뉜다.

<표 4-9> 시민·정치적 권리 지표현황

중분류	소분류	구조	과정	결과	합계
신체권	생명권	0	0	8	8
	사형의 제한	0	3	1	4
	고문 및 비인간적처우	0	5	1	6
	구금환경	0	10	3	13
	인신매매금지	0	1	2	3
	안전할 권리	0	2	13	15
	실종	0	1	2	3
	자의적 체포 및 구금	2	5	2	9
기본적자유	이동의 자유	0	1	8	9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0	3	1	4
	의견과 표현의 자유	0	3	3	6
	집회의 자유	0	1	5	6
	결사의 자유	0	0	5	5
	사생활 보호권	0	1	5	6
행정·사법적 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0	5	0	5
	사법적 구제	0	2	1	3
	피해배상 청구권	0	3	3	6
참정권	투표할 권리	0	0	4	4
	선출될 권리	0	0	2	2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0	0	5	5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0	0	7	7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0	0	3	3
대분류 총계(비율)		2 (2%)	46 (35%)	84 (64%)	132

<표 4-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지표현황

중분류	소분류	구조	과정	결과	총계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식량권	0	1	3	4
	주거권	3	2	4	9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3	1	2	6
사회 보장권	소득보장 (공공부조)	0	2	0	2
	빈곤/양극화	0	2	8	10
	사회복지	2	2	6	10
	사회보험	0	0	4	4
노동권	일할 권리	2	2	8	1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7	2	13	22
	노동조합권	4	0	2	6
건강권	건강 서비스 접근	1	1	5	7
	아동 및 모성 건강	0	2	7	9
	육체적 건강	0	0	5	5
	정신적 건강	1	0	4	5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1	0	2	3
교육권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0	1	3	4
	교육 선택권	2	0	5	7
	교육의 질	6	0	0	6
	교육차별 및 불평등	4	0	3	7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5	0	3	8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1	0	3	4
	창작물에 대한 보호	0	0	2	2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2	0	3	5
기업과 인권	국가의 보호	1	2	3	6
	기업의 존중	5	1	5	11
	구제	4	3	3	10
	환경보존 책임	2	4	2	8
환경권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0	0	4	4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0	3	3	6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0	1	0	1
대분류 총계(비율)		56 (28%)	32 (16%)	115 (57%)	203

제 5 장

인권통계의 활용방안

제5장 인권통계의 활용방안

제1절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탐색

1. 국가승인통계의 이해 및 절차

(1) 국가승인통계의 목적 및 유형

통계작성승인 제도는 유사·중복통계 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통계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는 모두 통계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처·청을 말하며,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속한다. 반면,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가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속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시·군·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통계작성지정기관에는 『통계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2015년 1월에 지정한 총316개의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이에 아래에 제시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처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승인통계 이외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생산하는 통계들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론,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가 통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정보이거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 해당되는 수량적 정보,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승인통계는 종류에 따라 지정통계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통계로 나뉜다. 먼저, 지정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료제

출 명령권, 실지조사권 및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의거하여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지정통계의 요건>	
①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②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통계
③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④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⑤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아래의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2015년 11월 현재 국가승인통계는 394개 기관이 937개의 통계를 작성 중에 있다. 이 중에서 91개(9.7%)만이 지정통계이며, 나머지는 일반통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지정통계는 정부기관(80.2%)에서 작성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 61.5%를 생산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44%를 작성하고 있다. 이처럼 지정통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 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5-1> 통계작성 기관별 지정 및 일반통계 작성현황(2015.11월 현재)
(단위: 개, %)

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종류별 - 지정		종류별 - 일반
			수	(비율)	
계	394	937	91	(100.0)	846
정부기관	303	771	73	(80.2)	698
- 중앙행정기관	43	342	56	(61.5)	286
통계청	1	58	40	(44.0)	18
이외기관	42	284	16	(17.6)	268
- 지방자치단체	260	429	17	(18.7)	412
지정기관	91	166	18	(19.8)	148
- 금융기관	8	23	10	(11.0)	13
- 공사/공단	27	45	0	-	45
- 연구기관	19	37	2	(2.2)	35
- 협회/조합	21	33	4	(4.4)	29
- 기타기관	16	28	2	(2.2)	26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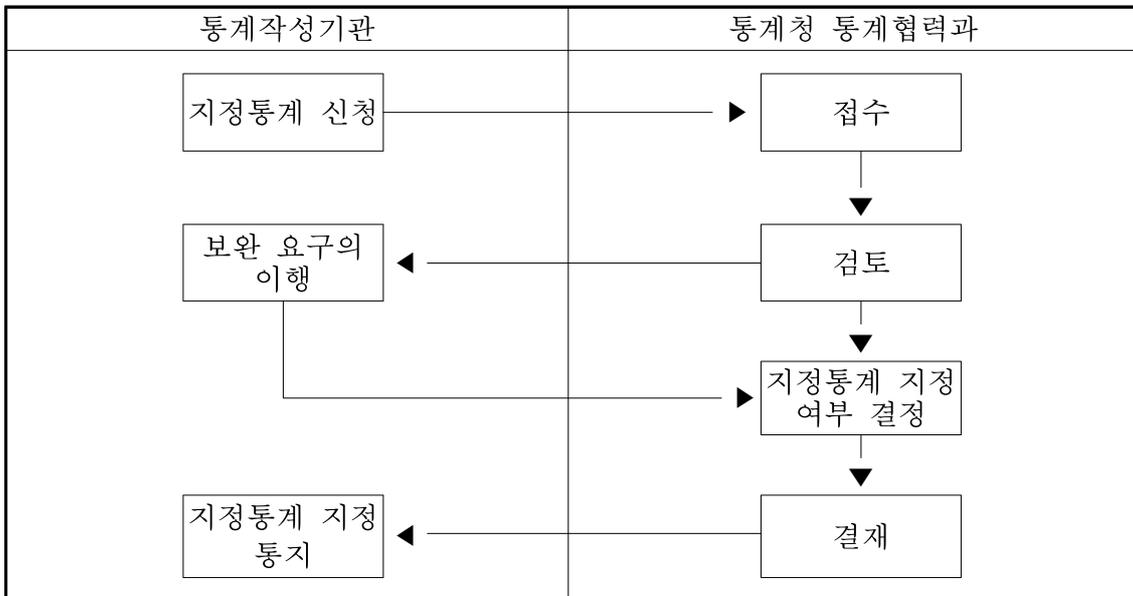
이 중에서 중앙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는 지정통계는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통계만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통계의 특성상 중앙정부 기관이나 통계청 이외의 기관에서 지정통계로 지정되는 것은 어렵다.

<표 5-2>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승인통계현황(2015년 11월)

기관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공정거래위원회	2	0	2	0	1	1
방송통신위원회	2	0	2	2	0	0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현황」.

[그림 5-1] 지정통계의 지정 절차도



출처: 통계정책관리시스템, 「통계조정업무 메뉴얼」

다음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작성방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조사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대상에 대하여 면접,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한 통계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표, 지수 등으로 작성한 통계 결과로, 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고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인·허가 면허, 보고 등의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통계결과로서 재정통계, 자동차면허상황 등이 포함된다. 2015년 11월 현재 937개의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조사통계는 413개, 보고통계는 446개, 그리고 가공통계는 78개에 이른다.

<표 5-3> 작성방법별 국가승인통계의 현황(2015.11월 현재)

(단위: 개)

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작성방법 - 조사	작성방법 - 보고	작성방법 - 가공
계	394	937	413	446	78
정부기관	303	771	311	401	59
- 중앙행정기관	43	342	170	140	32
통계청	1	58	41	2	15
이외기관	42	284	129	138	17
- 지방자치단체	260	429	141	261	27
지정기관	91	166	102	45	19
- 금융기관	8	23	9	6	8
- 공사/공단	27	45	19	24	2
- 연구기관	19	37	32	3	2
- 협회/조합	21	33	28	3	2
- 기타기관	16	28	14	9	5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현황」.

(2) 통계승인의 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작성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량적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는 모두 법적용에서 제외되며, 통계작성 목적이 아닌 행정업무 추진 및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집계하는 자료는 외부로 발표하더라도 통계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만족도조사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조사는 외부로 발표하더라도 『통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1년에 조사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가 이에 해당된다.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그림 5-2]의 지정통계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즉,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하면 통계청 통계협력과에서 관련 내용을 접수하여 요건을 검토한 이후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한 경우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결재의 과정을 거쳐 통계작성 승인을 통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승인과정은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하기 이전에 통계협력과와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통계승인을 위해서는 아래에 제시된 『통계법 시행령 제 25조』의 통계작성 승인사항을 갖춰야 하며, 승인된 사항은 통계청장의 사전 변경 승인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통계작성 승인사항>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다만, 작성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4. 통계작성의 대상(다만, 작성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따라서 국가승인통계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통계가 위의 승인사항에 해당되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승인신청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들이 필요하다.

<통계작성 승인 필요서류 목록>

- 통계작성승인 신청서식 : 별지 제7호 서식(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첨부서류
 -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 ⑥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표본설계 요약서 첨부
 - 표본설계 내용 및 검토기준을 기술한 세부내역서(명세) 첨부(예 : 표본설계 용역보고서, 표본설계 최종보고서 등)
- 통계작성의 승인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한 통계개요 첨부

그러나 첨부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설계 요약서”로서, 아래의 <표 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명, 조사주관, 표본설계방식, 조사목적 및 대상, 조사항목, 조사수집방법, 조사시기 등과 관련된 조사개요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 표본배정방식, 추정식,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등이 포함된 표본설계 내역이 필요하다.

<표 5-4> 표본설계 요약서

□ 조사개요

조사명	000 조사	조사주관	000 부
표본설계 방식	자체설계 ()	외부용역 (○) 【기관명 : 00 통계학회 000교수】 【전화번호 : 02-000-0000】	
조사목적	000 등을 파악하여 000 정책수립에 기여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의 인구		
조사항목	사업체현황(0개 항목), 근로자현황(0개 항목), 구인경로(0개 항목)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조사시기 (조사주기)	2009.10.1.~10.31. (매년)

□ 표본설계 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모 집 단 :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표본추출틀 :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목표오차 : 전국 3% 내외 - 표본규모 : 전국 5,000여 가구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표본추출방식 : 다단계층화집락추출 * 층화 : 16개 시도 * 1차 추출단위 : 표본조사구 2차 추출단위 : 가구
표본배정방식	- △△△△항목에 대한 네이만배분
추정식 (평균, 총합, 비율, 분산)	- 평균 : 층화집락추출에 의한 가중평균 추정식 - 분산 : 층화집락추출에 의한 가중분산 추정식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16개 시도별 주요항목 자료공표

이러한 신청서와 첨부자료들이 모두 제출되면 통계청 내 관련 부서, 통계조정심의회 또는 통계조정실무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이 크게 10개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다만, 통계작성승인 심사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그리고 가공통계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내용과 기준이 달라진다. 즉, 조사통계는 대부분 표본조사이고 조사결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본설계 내역에 대해 중점 심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조사통계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본설계내역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고통계는 통계법상 통계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반면, 가공통계는 기초 자료의 신뢰성 여부 및 가공기법 등을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가칭)인권통계」는 가공통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보다 엄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5-5> 통계작성 승인사항 심사 내용

구분	세부사항
통계명칭 및 유사중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승인통계와 명칭이 달라야 함 - 기존 승인통계와 작성대상 및 항목 등이 달라야 함 ○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시행령 제2조)은 통계가 아닌 수량적 정보에 해당 ○ 통계명칭이 유사한 통계가 있는 경우 유사중복 여부 심사 ○ 통계의 명칭은 이해하기 쉽고 통계내용을 잘 반영하여야 함
통계의 작성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이익 집단에 편중되지 않아야하며 개인 학술연구 목적이 아니어야함 ○ 작성된 통계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표하여야하며 통계이용자는 이해관계자 일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통계작성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목적에 맞게 항목이 구성되어야하며 내부이익을 위한항목은 없어야 함 ○ 주관적 인식·의식 등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서 안 됨 ○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
통계작성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표본설계, 표본추출방법, 표본오차, 신뢰수준 등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기준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실지조사기간과 기준시점 및 대상기간의 시차가 적정하여야 함 ○ 일정한 작성주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함

구분	세부사항
통계작성방법	○ 조사통계는 정형화된 조사표, 적절한 조사방법, 미응답처리방법 등 검증된 통계적 기법의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공통계는 수집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자료수집 체계	○ 작성기관이 자료수집 시 자체조직 및 인력의 부실 여부 ○ 위탁 시 위탁 받은 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분류를 사용하여야 함 ○ 특수분류를 사용할 경우 표준분류와 연계표를 작성하여야 함 ○ 표준분류가 아닌 경우 사전에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관련 서식	○ 조사표 표지 좌측 윗부분에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표시 ○ 표본설계 시 고려된 항목/분류와 조사항목에 근거하여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함 ○ 조사원 및 응답자를 위해 항목별 작성지침(조사기준 및 방법) 작성·제공
응답부담 경감 및 기타	○ 응답부담 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 모집단 및 표본에 관한 보완 및 정비여부

위와 같은 10개의 항목들에 대해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32조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국가승인통계 마크를 부여한다. 이 마크는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부착되는 것으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림 5-2] 국가통계승인(협의) 마크



하지만, ①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 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인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통계로서 국가승인통계 가능성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인이 인권에 대하여 갖는 의식·태도, 평가 및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권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며 나아가 인권 개선에 일조하고자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2011년에 실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엄밀한 조사설계를 토대로 수행된 조사는 2011년이기 때문에 이후는 논의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상의 주요 항목에 따른 검토

앞서 살펴본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통계조정업무 매뉴얼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크게 통계의 명칭과 종류, 통계작성 목적 및 작성 사항, 대상과 기준 시점, 작성방법, 작성체계, 결과의 공표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인 조사, 전문가 조사, 전문가 심층조사, 초·중고생 조사 등 크게 네 개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두 개의 전문가 조사의 경우 확률표집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일반인 조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①통계의 명칭’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승인을 받고자 하는 통계의 명칭을 기입하는 것으로 조사의 정식명칭인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승인받고자 하는 ‘②통계의 종류’는 일반통계에 해당된다. ‘③통계작성 목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이 인권에 대하여 갖는 의식·태도, 평가 및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권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며 나아가 인권개선”이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에 통계작성 및 공표와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④통계작성 사항’은 조사 또는 보고 항목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수를 기입하는 것으로, 2011년 조사의 조사 항목은 아래의 <표 5-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는 크게 인권의식 및 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 인권관련 현안 및 정책, 인권증진방안, 인권교육, 청소년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평가, 그리고 배경질문 등으로 구성된다.

통 계 작 성 기 관 명

처리기간
10일/7일

수신자 통계청장
(경유)

제목: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로 표시합니다. 처리기간은 조사·가공통계는 10일 이내, 보고통계는 7일 이내입니다.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통계 <input type="checkbox"/> 지정통계	
③ 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대상()		
	모 집 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		⑦ 조사 (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방법	작 성 형 태	<input type="checkbox"/> 조 사 <input type="checkbox"/> 보 고(업무) <input type="checkbox"/> 가 공		
	조사(보고)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전수 <input type="checkbox"/> 확률표본 <input type="checkbox"/> 유의표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 료 수 집 방 법	<input type="checkbox"/> 면접조사 <input type="checkbox"/> 전화조사 <input type="checkbox"/> 우편조사(팩스) <input type="checkbox"/> 배포(유치)조사 <input type="checkbox"/> 집합조사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방법()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⑫ 통계결과의 공표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기 관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표 5-6>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문항수

대분류		범주	문항수	
인권의식 및 평가		주요 인권문헌 인지	2	
		주요 인권상황 인지 및 평가	4	
		국제인권조약	1	
		기타	1	
		(소계)	8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별 인권 존중도	20	
		분야별 인권 존중도	10	
		인권침해자 및 침해근거	2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27	
		(소계)	59	
인권관련 현안 및 정책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1	
		신체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	1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3	
		집회·결사의 자유	1	
		참정권	1	
		(소계)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근로의 권리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건강권	1	
		환경권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1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2	
		(소계)	8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여성	2	
		아동, 청소년	1	
		장애인	1	
		외국인	1	
		난민	1	
		북한이탈주민	1	
		성 소수자	1	
		(소계)	8	
	대외협력 및 북한 인권	대외원조와 인권	3	
		(소계)	3	
	인권증진 방안		공공기관 평가	16
			인권보호·신장 방법	1
			홍보 매체	1
인권활동 참여			8	
(소계)			26	
인권교육		인권교육 경험	3	
		인권교육의 필요성	13	
		(소계)	26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10	
		(소계)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평가	5	
		(소계)	5	

다음으로 ‘⑤통계작성 대상’은 개인으로, 모집단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 및 규모, 그리고 대상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남녀’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⑥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은 2011년이며, ‘⑦조사(보고) 기간’은 2011년 7월 25일부터 동년 9월 5일로 ‘⑧작성주기’는 현재까지는 미정이나 약 5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그리고 ‘⑨통계작성 방법’은 크게 작성형태, 조사대상 선정, 자료수집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작성형태는 조사통계이며, 확률표본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한 이후에 한다. 그리고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통계자료는 조사구→조사대행기관→국가인권위원회로 이어지는 ‘⑩통계작성체계’를 거친다.

(2) 표본설계의 내용 검토

서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승인통계로 작성승인을 받기 위해 가장 면밀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표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표본설계에 대한 내용 검토는 아래의 <표 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6개의 항목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각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빠짐없이 기입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앞서 살펴보았던 <표 5-4>의 ‘표본설계 요약서’가 작성될 수 있다.

먼저,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사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15세 이상의 남녀를 모집단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표본추출틀이나 보조프레임의 사용 여부는 표집방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에 대한 정보이다. 이 역시 표집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목표오차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산출하였는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표본규모는 현재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표본추출방식 및 표본배정방식은 다단계 지역 집락 확률 표집방법(multi-stage area cluster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인구비례 확률로 층화된 지역별 집락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조사지점당 10명의 표본을 조사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150개의 조사지점을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단계로 내려가면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한다. 각 단계에서 조사지점은 각각 무작위로 추출되며 최종 조사지점이 선정되면 조사지점을 방문하여 총 몇 가구가 있는지, 주택 또는 상가인지 여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 살고 있다면 몇 가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가구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조사지점의 총 가구에서 조사대상 가구를 계통적으로 추출하면서 1가구당 1명을 조사하고, 가구 내에 2명 이상의 조사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일법(birthday method)을 통해서 최종 조사대상자를 결정하는 표집추출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조사자료에 대해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가중치, 무응답 및 사후층화 가중치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동 조사가 적용한 표본추출방식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동 조사에서도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향후 모집단 및 표집틀, 그리고 표본추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는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추출률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율, 무응답률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정량의 분산,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변경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와 신뢰구간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통계의 승인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5-7> 표본설계의 검토내용

구 분	검토 내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의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졌는가? - 표본추출틀의 구성가능성/포함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용가능한 보조프레임이 있는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오차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산출하였는가? - 주어진 예산과 현실성이 반영되었는가? - 표본크기 산출공식이 명시되었는가?
표본추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목적에 적합한 표본추출방식을 채택하였는가? -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채택하였는가? - 층화, 복합표본, PPS, 자체가중 등의 방식을 채택하였는가? - 효율적인 층화기준을 고려하였는가?
표본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층별 표본배정 방식을 채택하였는가? - 층별 또는 주요 범주별 최소표본수를 할당하였는가? - 층별 또는 주요 범주별 예상 상대표준오차를 제시하였는가?
추정식 (평균, 총합, 비율,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는가? - 무응답 및 사후층화 가중치를 고려하였는가? - 가중치 및 표본추출방식을 고려한 평균, 총합, 비율, 분산식을 채택하였는가? - 복합설계의 경우 선형화 또는 반복분산 추정방법을 고려하였는가?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항목별 공표범위를 제시하였는가? - 공표범위별 표본규모가 적절한가?

그리고 주요항목별 공표범위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각 문항별로 전체 인구집단의 평균, 빈도 및 비율만을 제시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별도의 집단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 국민들의 전체적인 인권의식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인권취약집단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결과보고에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본설계 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점검하여 보았을 때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의 산출과 관련된 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본설계 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조사에서는 표본설계를 보다 엄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표집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한다.

3.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승인 가능성 검토

다음으로 논의할 사항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축할 (가칭) 「인권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향후 구축될 (가칭) 「인권통계」는 여러 국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종합한 가공통계가 될 것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승인하고 있는 가공통계를 작성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5-8>과 같다. 이 중에서 사망원인통계, 지역소득, 국민대차대조표만이 지정통계이며 나머지는 일반통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처럼 승인받은 가공통계는 수집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투입자료를 단순 분류하거나 수집 자료를 종합 수록하는 것은 가공통계로 볼 수 없다고 통계청의 내부지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칭) 「인권통계」는 가공통계로서 승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등을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사회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한국의 사회지표」를 1979년부터 1년 주기로 생산해왔으며, 1994년 일반통계의 가공통계로서 승인받아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공통계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2009년 승인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처럼 통계청의 자체통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자료들을 단순히 분류하거나 수집한 형태의 자료인 (가칭) 「인권통계」는 가공통계로서 그 지위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가장 대표적인 가공통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통계」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계」역시 비록 다른 통계들에 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통계청으로부터 가공통계로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표 5-8> 중앙정부기관의 가공통계 승인 현황(2015년 11월 현재 32개)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종류	통계분야	승인일자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일반통계	기업경영	2003-03-24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석	일반통계	기업경영	2000-08-25
관세청	FTA특혜무역활용통계	일반통계	무역	2014-07-14
	무역경기확산지수	일반통계	경기	2013-03-21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일반통계	토지	2006-06-15
	주택보급률	일반통계	주택	2006-01-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일반통계	농림	1998-09-11
미래창조과학부	ICT수출입통계	일반통계	정보통신	2007-11-12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일반통계	정보통신	2003-12-02
	기술무역통계	일반통계	무역	2003-10-31
보건복지부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통계	일반통계	보건	2009-09-04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일반통계	복지	2009-04-27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일반통계	보건	2007-09-05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일반통계	보건	2012-12-0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통계	일반통계	무역	2006-12-06
통계청	대기배출계정	일반통계	환경	2014-12-09
	개인별주택소유통계	일반통계	주택	2013-12-24
	기업생멸행정통계	일반통계	기업경영	2012-12-22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일반통계	기업경영	2012-09-27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일반통계	고용	2012-04-23
	전산업생산지수	일반통계	경기	2011-06-02
	장래가구추계	일반통계	인구	2002-07-25
	사망원인통계	지정통계	보건	1999-12-15
	설비투자지수	일반통계	경기	1998-03-18
	생명표	일반통계	인구	1994-12-02
	장래인구추계	일반통계	인구	1994-12-02
	지역소득	지정통계	지역계정	1989-02-23
	경기종합지수	일반통계	경기	1981-02-26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인통계	일반통계	농림	2012-06-21
통계청,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지정통계	국민계정	1968-11-21
환경부	온실가스배출통계	일반통계	에너지	2005-01-11
	환경보호지출계정	일반통계	환경	1997-06-04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현황」.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따라서 향후 구축될 (가칭) 「인권통계」는 가공통계로서의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노력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통계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정보들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제2절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 관련된 하나 이상의 자료모음을 의미한다(McFadden, Hoffer and Prescott, 1999).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컴퓨터와 같은 전자장치로 자료의 검색과 갱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각 자료들의 분류 항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통합된 체계, 컴퓨터 활용도를 높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 단순한 입출력 자료에서 더 나아가 목적이 뚜렷하고 유연성 있는 자료체계, 다양한 조직의 사람들이 획득, 이용할 수 있는 자료체계, 개별 사용자들이 각자의 응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체계 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의 기반이다.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으로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인권은 국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정책의 영역에서 인권이 포함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 어려울 만큼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사회 전체의 인권현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통계 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현재 인권에 대한 통계자료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되고 있긴 하지만 작성기관에 따라 자료 항목에 대한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정책적 활용도와 유용성이 낮다. 개별 생산자를 중심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상호 유동적으로 교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인권통계가 기술 통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구체적인 인권현황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인권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권과 관련한 기초통계 자료들을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정책적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고, 분산되어 있는 통계체제의 조정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 분절화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인권관련 통계 자료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활용될 수 있다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통계조사의 결과 반영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지속적인 개발이나 유지 및 보수 작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됨으로써 통계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인권정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도 인권통계 자료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어져서 배포되고 있는 인권통계와 인권지수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외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통계나 인권지수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거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통합 제공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연구자, 시민단체 등에서 필요한 자료와 통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 내 인권과 관련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누구라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2.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목표 및 방향성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연구는 이것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이연희, 2013).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계 수요자의 욕구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는 첫째, 인권통계와 관련한 메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둘째, 인권통계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관리, 운영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규 통계 자료를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의 생산주기(일, 월, 분기, 반기, 년 등)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업데이트 되는 최신 통계자료들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료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통계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통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한 통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수요자는 정책 수립을 하는 정부부처 내 관계자일 수도 있고 정책과 관련된 연구 분야의 전문가나 학계 관련자, 일반 국민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통계 수요 집단의 특성별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통계 자료의 신뢰성이다.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은 통계자료는 정책으로의 확장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책 결정과정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내 취급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는 사실이 사용자들의 편의성이나 사용가치를 높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다(노홍승·김찬성, 2007). 따라서 신뢰성이 높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정책 결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요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수요 반영 및 신뢰성 있는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인권과 관련한 최신 데이터와 중장기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반작업과 표에 대한 웹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인권과 관련한 대내외 통계자료의 생성, 관리, 활용 단계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인권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 하위 목표를 가져야 한다.

<표 5-9>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부적 하위 목표

<p><최종 전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통계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생성-관리-사용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p><세부 하위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인권과 관련한 통계 지표들을 재정비하고 지표의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한 병합이나 재정비 작업을 지속할 뿐 아니라, 신규 통계 지표를 개발하여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 - 인권과 관련한 통계자료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통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정책 활용도와 관련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기반의 인권통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 웹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인권과 관련한 최신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관리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이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통합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조직한다. <p><추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통계 인프라 기반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3.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인권정책 수요에 대응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하게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신뢰성 있는 자료의 생산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참여한 전문가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은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및 유지 보수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본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실행해야 하는 업무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기획

기획 단계에서는 각종 항목 및 시장 수요 분석, 수요자들의 요구사항 및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와 성격 및 제공 서비스의 정의,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이루어진다. 수요자들의 정보 요구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요구하는 정보의 표현 형식, 정보의 검색 방식,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품질 정도,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각종 제약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마케팅전략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존재와 활용 가치를 사용자에게 알림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과 구축비용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심층적인 고찰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공표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의 저작권은 원 정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축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물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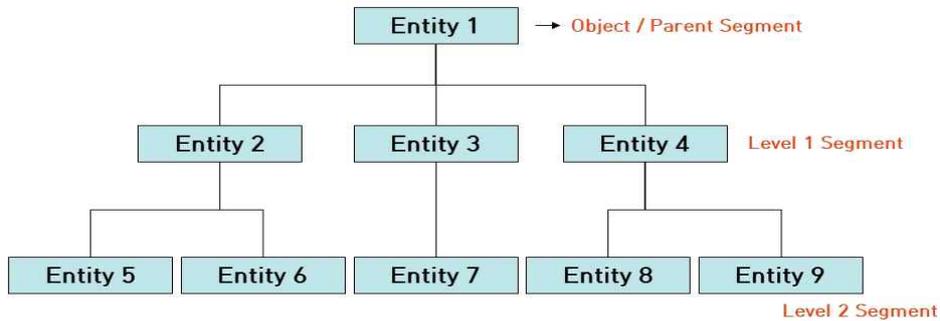
(2)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모델링을 통한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설계가 이루어진다. 개념적 모델 설계는 데이터베이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구조를 단순화하고 추상화시켜서 개념화작업을 하는 것이고, 논리적 구조 설계는 개념적 모델 설계를 통하여 얻은 개체로서의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구현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논리적 구조 설계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사용된다.

1)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Hierarchy Database Model)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계층을 분류하여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데이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각 계층 간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여 각 계층 간 데이터 관계 구조를 트리구조(tree Structure)로 형성한다. 현재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경우는 관료제 형 조직구조의 업무 처리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의 수평적 이동이나 흐름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 활용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적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단점이 발생하여 최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림 5-3]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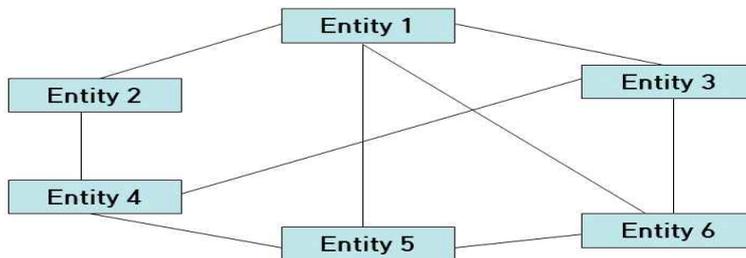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2)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Network Database Model)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는 각 데이터 자료들 간 계층을 구분하여 흐름에 따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각 자료 간 유동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데이터 분류 기준이 유사하거나 정형화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자료 간 호환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형태가 다른 베이스 간에서는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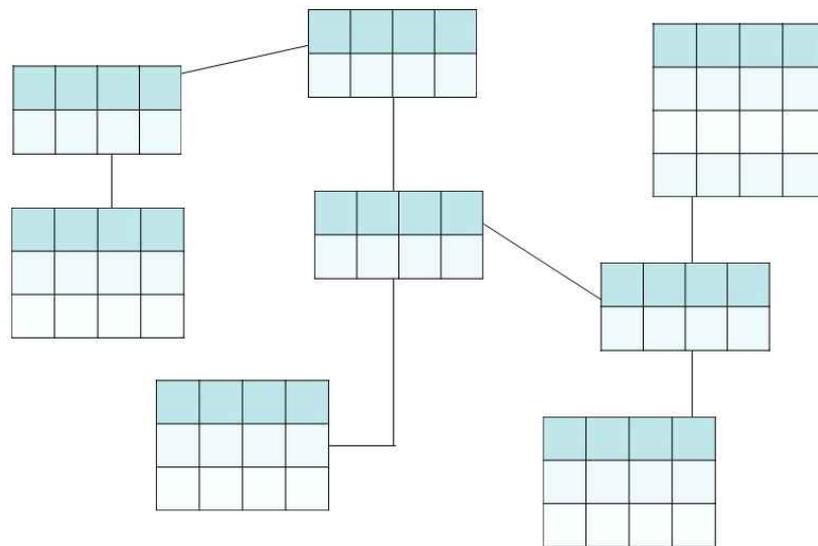
[그림 5-4]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E.F.Codd 박사가 1970년 제안한 것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표(table)’와 같은 형태로 관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이다. 이것은 문서에서 표의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2차원 형태 (Row와 Column)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가 용이하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테이블을 생성한 후 손쉽게 항목 추가가 가능하고, 자료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다.

[그림 5-5]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데이터모델 설계를 통한 논리적 구조 설계 후 이어지는 물리적 구조 설계는 논리적 구조 설계에 따라 자료를 입력할 테이블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테이블 내역, 컬럼 및 기본 활용 키(primary key), 인덱스 등을 설정하는데, 데이터 파일의 저장 구조 및 형태를 결정하고 레코드의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3)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현 단계

세 번째 단계인 구현 단계는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계획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류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가공과 입력, 편집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데이터를 보유한 사람들의 특성, 수집 방식과 수단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집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과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가공 작업을 통해 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일단 수집된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한 후, 각 정보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여 정보의 내용을 대표하도록 색인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면 검색 기능을 위한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저장하는 것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 때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이 검색이기 때문에 이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외주 용역을 맡기거나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다.

(4)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안정 및 유지보수 단계

마지막 단계인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구현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복구, 유지보수 및 평가 등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의 관리 는 사후 처리단계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각종 유지·보수 작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 과정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담고 있는 데이터 구조, 데이터 값, 데이터 표현의 3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품질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매체나 수단 등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와 감시가 필수적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었을 경우 복구나 회복 방법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나 보안 강화책, 유지 보수를 위한 매뉴얼 업데이트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 5-10> 데이터베이스 품질 기준 분류

구분	품질기준	핵심요소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 품질	정확성 (accuracy)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가 실제 값과 동일한지의 여부 (가공된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가 원시데이터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의 여부)
	완전성 (completeness)	표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객체들과 속성이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
	현행성 (currentness)	가장 최신 데이터로 갱신되었는지의 여부
	일관성 (consistency)	둘 이상의 데이터가 상충되지 않는지의 여부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베이스 서비스품질	검색성 (searching)	검색의 신속성과 정확성(검색명령어, 색인어, 키워드, 체계성 등)의 정도
	사용 용이성 (ease of use)	인터페이스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용이성과 산출정보 활용의 용이성 정도
	사용자 지원 (customer support)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훈련, 문서, 매뉴얼 서비스 등 정책, 기술, 제도적 지원의 적합성 정도

자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1998)

4.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단계별 구축 방안

통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임달오 외, 2013; 송태민 외, 2010; 전인우, 2009; 김용현, 2008).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구축 기반을 형성하는 준비단계, 시스템 구축 단계, 시스템 고도화 단계, 시스템 안정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단계상의 각 전략과 세부 추진방안은 이전 단계가 완료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표 5-11>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단계별 구축 방안

구축 단계	주요 전략	세부 추진 방안
1단계	구축기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환경과 현황을 분석한다. -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권통계 DB모델을 개발하고 인권통계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 통계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될 데이터 수집 하고 항목 분류를 통하여 표준데이터를 생성한다.
3단계	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 자료들의 품질을 관리한다. - 중장기적 통계 자료들을 확보하고 데이터 간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단계	시스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제공을 안정화하여 유관 기관들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체제가 구축된다(허브 기능 강화). -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완성한다.

(2)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

첫 번째로, 인권통계와 관련한 기존자료 업데이트와 신규 인권통계 개발 작업이다. 인권과 관련한 기존의 통계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내에 시계열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인권통계를 발굴하여 이 결과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내에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⁴⁹⁾ 또한 인권과 관련한 통계 범위와 종류를 확장하여 통계 정보의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작성된 인권관련 통계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하여 데이터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인권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집하는 지표의 근거와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49) 국가인권위원회 (2014)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권통계는 인권 취약계층별(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난민,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등) 현황자료가 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생명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환경권, 교육권, 문화권, 주거권)에 대한 통계자료, 그리고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학술기관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들이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은 인권 개념에 대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 규정, 정의되어야 하며 이렇게 수립된 인권에 대한 정의가 모든 인권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권개념에 대한 합의는 더 나아가 통일된 인권 보장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이상경, 2015).

두 번째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배포해야 한다. 인권관련 통계 자료를 발간하거나 인권지표에 대한 설명 자료 및 매뉴얼들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인권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일반 사용자 뿐 아니라 관련 부처들의 인권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인권관련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도 필요하다. 이것은 인권정책들의 수립과 이행, 평가 과정에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도록 만들어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인권의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사용자들의 접근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시민들로 위원단이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과정에서의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여 실질적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한 성과 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개발하여 각 단계 별 지표 달성 현황을 측정해야 한다. 성과지표는 신규 통계지표 개발건수나 데이터베이스 내 방문자 수, 페이지 뷰,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목표치를 구분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로 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 별 인과 관계 분석을 통하여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최종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것이 실질적인 인권보장 정책의 확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실질적으로 인권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관심도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에 대한 연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인권통계의 이행 로드맵

제6장 인권통계의 이행 로드맵

제1절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는 일부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국가승인통계 중 조사통계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실태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통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후의 논의에서는 조사내용과 표본설계 등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내용의 다각화 및 체계화

(1) 인권상황실태조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체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이외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실태조사들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실태조사들은 인권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의 인권침해·피해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조사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기성을 갖고 있기 보다는 당시의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다. 이 중에서 근로자들의 노동권이나 건강관 등을 중심으로 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들의 경우 특수 집단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라 하겠다.

<표 6-1>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현황

대상	조사명	실시연도
근로자/기업	B형간염 보균자 고용 차별 실태조사	200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2004년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년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2006년
	여성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조사	2006년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2007년
	유통업여성비정규직차별 및 노동권침해 실태조사	2007년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8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2008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년
	국내 주요 기업 인권정책 현황 실태조사	2009년
	간접고용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년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2013년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2013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2013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2014년

대상	조사명	실시연도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년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년
외국인노동자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2002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	2006년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7년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년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년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조사	2014년
군인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년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2004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5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군 구급시설 인권실태조사	2002년
노숙인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5년
운동선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8년
장애인	여성장애인 이중차별 실태조사	2002년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2002년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실태조사	2008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년
	중증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2014년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2014년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2015년	
교사/학생	교사 인권의식 실태조사	2002년
	중고등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년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7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보장 실태조사	2007년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0년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2012년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2015년
범죄/국보법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2년
	범죄수사절차 인권실태조사	2002년
	구급시설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2003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2004년
화교	국내거주 화교 인권 실태조사	2003년
기타	원폭 1세/2세 실태조사	2004년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2005년
	국내 난민 인권 실태조사	2008년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2008년
	북한주민인권 실태조사	2008년
	탈북 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9년
	지방의회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2007년
	여성연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9년
	야간노숙행위 금지 조치 관련 노숙인 인권실태조사	2011년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2011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5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저자에 의해 재구성

이처럼 인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대상별 인권상황에 맞게 특화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초에 그 해에 실시한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들은 조사대상의 맥락성으로 인해 확률표집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당수의 조사들이 비확률 표집방법인 임의적 또는 유의적 표집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거나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들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를 통합하는 것은 표본추출방법 등을 비롯하여 조사설계 전반에 걸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결국, 인권상황실태조사들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조사로 운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조사내용의 다각화 및 조사주기의 체계화

지금의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의 조사내용을 보다 다각화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 그리고 국가간 비교를 위한 사회조사인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을 들 수 있다.

먼저, 통계청의 「사회조사」 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다(통계청, 2012). 사회조사는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 의 주관적 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초기에는 총 8개 영역(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안)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08년 체개개편 이후 현재 전체 10개 영역(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에 대해 영역별 2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심수진·박주언·이희길, 2013).

<표 6-2> 통계청의 「사회조사」 의 조사내용

조사연도	가족	교육	보건	환경	안전	소득 소비	노동	복지	문화 여가	사회 참여
2008년	○	○	○	○	○					
2009년						○	○	○	○	○
2010년	○	○	○	○	○					
2011년						○	○	○	○	○
2012년	○	○	○	○	○					
2013년						○	○	○	○	○
2014년	○	○	○	○	○					
2015년						○	○	○	○	○

*주: 2011년 나눔문화 추가

이러한 조사의 주기성은 ISSP도 마찬가지이다. ISSP는 1984년부터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GSS(General Social Survey)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획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제조사협력 네트워크이다. 동 조사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거지역, 고용지위, 소득 등과 같은 필수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 이외에 아래의 <표 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주제모듈을 정하여 심층적인 조사항목을 구성 한 후 회원국들이 일시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설계되어 있다.

<표 6-3> ISSP의 조사내용 및 조사주기

조사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여가시간 및 스포츠	○									
종교		○								
사회불평등			○							
환경				○						
건강					○					
가족 및 성역할 변화						○				
국가정체성							○			
시민의식								○		
일지향									○	
정부의 역할										○

* 사회연결망: 1986년과 2001년에 조사했으며, 2017년 조사 예정

특히, 「사회조사」가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관적 지표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라는 것은 매우 큰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사되는 문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심도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비확정적이지만 조사주기도 5년으로 통상적인 반복조사의 주기에 비해 매우 긴 편이다. 이처럼 조사주기가 길 경우 인권실태의 동학을 시의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사회조사」처럼 조사내용을 다각화하고 조사주기도 2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조사내용을 보다 다각화함을 물론 해당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구성하여 약 2년 주기로 관련 내용들을 조사체계를 개편한다면 아래와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2016년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제3차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경우 중분류 및 소분류 수준에서 조사될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양자를 별도의 해로 구분하되, 상대적으로 관련 문항이 적은 이행기제와 평등권은 각각 위의 두 권리가 조사될 때 함께 조사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내용들은 소분류 수준에서 부족한 주관적 지표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보다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문항을 개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문항은 매년 조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조사에서처럼 북한인권이나 청소년 인권 등과 같이 인권취약계층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모듈을 구성하여 포함시키도록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주제 선정 및 운용방식은 앞서 살펴본 ISSP를 한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가 대표적이며, 이를 적절히 벤치마킹한다면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의식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의 대표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6-4>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향후 조사내용 및 조사주기(안)

조사내용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	○		○	
이행기제	○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
평등권		○		○
전반적 인권의식/평가	○	○	○	○
인권취약계층 인권	○	○	○	○

(3) 조사내용의 표준화와 전문성 확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내용의 다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조사내용의 표준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고, 지속적인 품질관리 평가를 통해 승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들이 통계청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통계청에서는 크게 경제부문, 사회부문, 보건부문별로 나누어 통계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분류 중에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경제부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부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한국표준교육분류’라 하겠다. 따라서 산업, 직업 및 교육과 관련된 조사항목들은 이러한 표준분류에 따라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권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통계 및 조사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개편할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번 구성된 조사항목을 이후에 수정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항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즉, 대부분의 대단위조사들이 본조사에 앞서 사전조사(pretest)를 통해 문항이 쉽고 응답자들이 이해 가능한지, 조사문항의 오류는 없는지,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조사는 본조사와 달리 조사대상을 대표하는 집단들을 선정하여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할 것을 권한다. 다만, 예산과 시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즉, 본조사와 동일한 조사문항을 이용하여 본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과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본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조사는 본조사와 같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예비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사전조사는 반드시 실시할 것을 권한다.

2. 조사설계의 체계화

(1) 조사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조사단가의 현실화

단순히 해당연도의 조사내용을 대략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사를 실시한 후 결과만 얻는 방식으로는 국가승인통계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즉,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사가 잘 수행되고 관리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계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통계법 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에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조사 예산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사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길 경우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될 경우 조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조사내용을 다각화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경우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시간은 조사비용과 비례의 관계에 있다. 즉,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동 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조사라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관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조사기관에 실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사 단가이다. 현재 수많은 전문조사기관들이 조사시장에 진출해있고 그들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조사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낮은 조사 단가는 양질의 조사결과를 얻는데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승인통계로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사 단가를 현실화하여 전체 조사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표본규모의 확대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예산확보의 문제와 더불어 현재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표본규모가 너무 작다는데 있다. 현재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것은 다양한 인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부족

한 표본수이다. 즉, 인구집단을 남녀, 연령, 고용상태, 교육수준, 장애여부, 소수자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이들의 모수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만큼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만여 명의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표본을 확대해야 한다.

(3) 조사관리체계 구축

앞서 논의한 것처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통계청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평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의 구성과 관리체계이다. 즉, 조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시급히 이러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인력은 비단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 다양한 주제와 조사대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담당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히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와의 조사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협력체계에는 각 분야의 인권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조사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앞서 살펴본 조사문항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표본설계, 실사과정, 조사결과의 분석 및 공표 등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조사전반을 설계, 평가 및 환류(feedback)할 수 있는 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제3차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

앞서 제시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2016년에 제3차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이전조사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본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조사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이다. 아래의 조사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 조직을 중심으로 인권 및 조사·통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전과 달리 조사 내용을 다각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표본설계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본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승인통계화될 경우 인구총조사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하여 표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표 6-5> 제3차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의 추진 일정

시기	내용	비고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전담조직 및 인력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통계 분야 외부전문가 채용 ▶기존 실태조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검토 ▶조사 관련 워킹그룹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조사·통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구성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승인 완료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설계(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사내용 개선(안) 마련 -조사경험과 역량이 우수한 외부 조사전문회사와의 계약 체결(조사설계 과정에 참여토록 함)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단, 표본단위, 목표표본수, 표본추출방법 등에 대한 표본설계 실시(외부 전문가에게 의뢰)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파악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조사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원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 및 중요성, 조사내용, 면접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원 교육 실시 	
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확률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관리 실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조사 및 확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모집단과 비교하여 조사가 미진한 대상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실제 면접원이 조사대상을 조사하였는가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확인조사(전화/이메일) 실시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의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자료의 입력과 함께 미완료된 응답, 불성실한 응답, 추가 정보가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한 보완조사 실시 ▶무응답 대체, 가중치 부여 등의 자료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항목무응답의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조사율, 단위무응답률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토록 함 -동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조사전문회사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토록 함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또는 통계DB 시스템 등에 공표토록 함 	

다음으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지속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할 경우의 로드맵에 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내용을 보다 포괄적이면서 다각적으로 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조직)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구성하고, 조사 주기도 2년으로 재설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이 되어 인권분야의 전문가, 조사 및 통계 분야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조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개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기존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조사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동 위원회를 통해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법률(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조사체계개편과 법률(안) 마련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조사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2016년 실태조사는 앞서 살펴본 과정과 동일한 조사과정을 통해 실시하되, 2016년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조사의 예비조사(pilot)의 성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국가승인통계 생산기관과의 협력 및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안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통계나 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다. 먼저, 「인권통계」는 주로 권고, 상담, 진정 접수 및 처리 등과 같은 인권위의 행정 실적 보고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인권지수 체계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구축된 국가인권지수에서는 전문가 조사나 전문가협의 등을 통해 인권관련 지표를 192개를 선정하였으나 자료 부족이나 불안정성 등의 문제로 84개의 지표만을 대표지수로 분류하여 지수화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인권관련 정부통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통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권관련 통계의 확대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05년에 실시된 인권관련 정부통계현황 조사의 경우 인권영역별 정부통계를 정리하여 제시해주고 있으나, 많은 부분 ‘원자료(raw data)’에 기초한 2차 자료가 아닌 ‘통계보고서’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통계를 발굴함과 동시에 현재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각 기관에서 인권관련 통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국가승인통계의 개선 사례 검토

(1)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위한 사례: 성인지통계

인권통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성인지통

계」를 들 수 있다. 성인지 통계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될 당시에는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한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어 오다가 2002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킬 것”이 추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 전면 개정된 통계법 제18조에서 여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성별 통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계작성의 승인사항에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통계 수준에서 성별 통계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으로 성별에 따라 구분된 성별통계와 성별수혜분석을 강조하고 있다(전기택 외, 2012).

이처럼 성인지통계는 성별 통계와 관련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통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계를 생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성인지통계가 구축되기까지 실시된 여러 노력들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장차 인권통계가 주요 국가통계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러한 노력은 국가승인통계에서 성별 구분실태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즉, 아래의 [그림 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승인통계 성별구분실태 점검양식’에 따라 성별구분실태를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실태 점검은 작성방법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되었다.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별을 구분하였는지는 먼저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각 문항 수준에서 성별구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보고통계는 보고양식이 조사통계의 조사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에 성별구분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공통계는 통계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지수, 지출, 계정 등 각 지표의 특성에 따른 성별 구분 가능 여부와 실제 구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6-1] 국가승인통계 성별구분실태 점검양식

기관 유형	작성 기관	통계 부문	통계명	조사표 구분	전체	문항			
					문항 수	성별구분 가능문항	미구분 문항 수	문항내용	성별 구분 여부
(예시)									
중앙	고용노동부	고용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 조사표	18	8	7	6.전체근로자수	2
.	6-1.장애인근로자수	2
.	6-2.외국인근로자수	2
.	13.고용형태별 근로자	1
.
.

출처: 전기택 외(2012), 여성가족부.

이와 함께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표의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성별 구분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항목과 응답자의 성별 구분이 잘 이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즉시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일련의 표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개별 통계 단위가 아닌 일괄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간단한 개선을 통해 응답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성인지 통계 생산이 가능한 사례로 국한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성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성별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 목적상 성별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별 구분 문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고통계의 경우 통계표 양식에 성별 문항이 포함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림 6-2] 국가승인통계 중 조사통계의 성별 구분 제시안

2. 사업체 개요 (2009.12.31 기준)	
≧ 본 문항은 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여부 : 본사·본점 홈페이지가 아닌, 귀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기입합니다.	
(1) 사업체명 <small>18-20</small>	(2) 전화번호 () - () - () <small>21-23 24-27 28-31</small>
(3) 대표자 성별 <small>22</small>	① 남 ② 여 ③ 남녀 공동대표
(4) 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small>28-29 36-38</small>
(5)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여부 <small>29</small>	① 보유 ② 미보유
(6) 창설년월	□□□□년 □□월 <small>40-43 44-45</small>
(7) 사업자 등록 번호	□□□ - □□ - □□□□□□ <small>46-48 49-50 51-55</small>
≧ (6) 창설년월 : '문 1. 관광객이용시설업 분류' 에서 응답한 업종을 시작한 시기를 기입해 주십시오.	

출처: 전기택 외(2012), 여성가족부.

하지만, 이러한 성별 문항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표본설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성인지 통계 생산의 출발점을 통계의 기획 단계로 보고, 이것이 생산될 통계의 성인지성을 근본적으로 결정함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사기획은 조사목적, 내용, 대상, 규모, 범위, 일시, 방식 등을 정하는 단계로 성인지 통계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있다. 물론 조사기획의 전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표본설

계에 있어 성별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즉, 조사표에서 아무리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도 표본설계 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표본크기가 작을 경우 남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직시한 것이다. 특히,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서 “조사목적, 공표범위 등에 적당한 표본규모로 설계되어 있는가?”를 통해 정확성을 평가하고, 이것의 평가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성별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6-3]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의 정확성 평가 기준

2-4. 조사목적, 공표범위 등에 적당한 표본규모로 설계되어 있는가?(정확성) 해당없음

조사목적, 결과분석(공표범위)을 고려하여 표본규모가 과소 또는 과대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

품질지표요소	지침
1. 표본규모 설계시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4) <input type="checkbox"/> 고려함(4) <input type="checkbox"/> 고려하지 않음(0)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지역, 직업, 연령,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본설계하였는지 확인
2. 표본추출방법을 고려했을 때 표본규모가 적정한지 여부(5) <input type="checkbox"/> 확률추출법의 경우 타당성 검토(5) <input type="checkbox"/> 비확률추출법의 경우 타당성 검토(5) <input type="checkbox"/> 확률추출법과 비확률추출법이 혼합된 경우 타당성 검토(5) <input type="checkbox"/> 타당성 검토하지 않음(0)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표본규모가 적정한지를 검토했는지 확인
3. 조사결과와 공표범위를 고려했을 때 표본규모가 적정한지 여부(5)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1. 공표자료의 상대표준오차에 의한 표본규모 적정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5%미만(5) <input type="checkbox"/> 5~10%미만(4) <input type="checkbox"/> 10~15%미만(3) <input type="checkbox"/> 15~25%미만(2) <input type="checkbox"/> 25~35%미만(1) <input type="checkbox"/> 35% 이상(0)	공표되는 자료의 수준에 따라(시도까지 공표하는 경우 시도자료, 중분류까지 공표하는 경우 중분류 자료) 상대표준오차를 점검하되 오차가 가장 큰 항목 기준으로 체크 작성기관에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연구진 또는 통계전문가가 직접 산출하여 확인

(평가) 측정점수 총 14점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측정점수	13점 이상	10~12점	5~9점	2~4점	1점 이하

출처: 통계청(2014),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이와 함께 통계청(2014)이 제시한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의 ‘품질관리기반 현황표’를 보면 조사통계, 보고통계, 그리고 가공통계별로 점검항목 및 결과보고 양식에 성별통계 작성여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성인지통계를 국가승인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그림 6-4]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기반 조사통계 현황표의 예

1. 통계명 * 통계청에서 승인받은 명칭		
2. 작성목적 * 통계를 작성하는 주요 목적		
3. 작성근거법령 *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		
4. 작성주기 *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에 체크(✓)	① 매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기타(주기:)	
5. 공표주기 * 보도 또는 간행을 발간 주기 체크(✓)	① 매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기타(주기:)	
6. 조사대상 * 모집단 : 통계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전체 * 조사대상범위 : 실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범위 * 조사규모 : 조사단위수 기입	조 사 단 위	① 개인 ② 가구 ③ 사업체 ④ 기타()
	모 집 단	
	조 사 대 상 범 위	
	조 사 규 모	① 전수조사() ② 표본조사()
7. 조사대상 기간 또는 시점	8. 조사기간 *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기간 ~	
9. 조사방법 * 자료 수집에 이용된 방법으로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	① 면접조사 ② 우편조사 ③ 전화조사 ④ 인터넷조사 ⑤ 기타()	
10. 조사직원 구분 * 조사담당 직원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	① 상용조사원(공무원) ② 상용조사원(공무원 외) ③ 임시 및 일용 조사원 ④ 기타()	
11. 성별통계 작성여부 * 성별 조사항목이 있는지 (조사원 사항) 통계표에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	조 사 항 목	① 있다 ② 없다(사유:)
	통 계 표	① 있다 ② 없다(사유:)
12. 공표시기 * 최근 보도 또는 간행을 발간 시기 기입	년 월 일	
13. 통계간행물명 * 해당통계자료가 수록된 주요 간행물명 및 웹사이트 주소 기입	① ② ③ 통계DB수록 사이트 : http://	
14. 통계작성체계 * 각 단계별 업무 담당 기관 또는 부서명 기입 - 한 단계에 여러 기관(부서)이 관여하는 경우는 상위기관부터 차례로 기입 - 직접수행과 용역수행 부분을 구분하여 기입	기관명(소속부서)	
		① 직접수행 ② 용역수행
	조 사 기 획	
	현 장 조 사	
	자 료 처 리	
결과분석·공표		

출처: 통계청(2014),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2. 국가승인통계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안의 예

이후의 논의에서는 현재 각 통계작성 기관별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검토해보고, 인권통계 친화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조사통계의 사례 검토

먼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중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에서 주거권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을 들 수 있다. 동 지표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승인 통계의 조사통계로 지정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되는데, 동 조사는 국민의 주거실태와 추이를 대면조사를 통해 조사, 파악하여 장기주택계획 및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6-6>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의 조사개요

구분	내용
통계작성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통계의 유형/공표주기	▶일반통계(조사통계) ▶공표주기: 1년
조사목적	▶국민의 주거실태와 추이를 대면조사를 통해 조사, 파악하여 장기주택계획 및 부동산 정책에 활용
조사대상	▶조사대상/단위: 가구/일반가구 및 가구의 가구(배우자)
표본의 특징	▶표본규모: 일반가구 20,000가구 이상/특수가구(장애인 5,000가구)
조사항목	▶짚수해: 일반가구 - 일반가구(2014년): 55항목(주택 및 주거환경 26항목, 이사계획 및 주거의식 17항목,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1항목, 개보수 2항목, 가구에 관한 사항 7항목, 배경문항 2항목) ▶홀수해: 장애인가구 - 장애인가구(2015년): 66항목 *가구주 설문 39항목: 주택 및 주거환경 27항목, 이사경험 2항목,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2항목, 개보수 1항목, 가구에 관한 사항 7항목) *개인 설문 27항목: 장애특성 및 편의시설 4항목, 주거지원프로그램 및 주거이동 18항목, 경제활동 3항목, 배경문항 2항목)

이러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2년 주기로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을 연구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와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표되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데 있다. 아래와 같이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통계뿐만 아니라 지역별(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그리고 소득계층(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및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별로 나누어 제시해주고 있다.

<표 6-7>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및 비율」 발표 결과

지 표 명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총가구대비 미달가구 비율, %)	268만 (16.6)	212만 (12.7)	184만 (10.6)	128만 (7.2)	98만1) (5.3)
	1인당 주거면적(m ²)	26.2	27.8	28.5	31.7	33.51)

출처: 국토교통부(20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만 감소, 1인당 주거면적 증가」. 보도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정보가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주거권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가구주, 조부모/손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장애인 가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표에서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조사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구에 관한 사항을 통해 가구주,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가구가 여성가구주, 조부모/손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등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가구 구성원 중 장애여부에 대한 문항을 통해 장애인가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여부 또는 그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정확한 가구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에 있어 이들에 대한 모집단가구 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표본추출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가구특성별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집단정보를 이용하여 사후가중치 부여할 수 있도록 조사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조사의 경우 총 33,000표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표본추출틀 17,738,831가구로 치환하기 위해 표본설계의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기본설계가중치를 구하고, 벤치마킹모집단 정보를 바탕으로 2차로 사후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차 사후층화가중치에 있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정보를 벤치마킹하여 점유형태, 주택유형, 면적만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층화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모집단의 추정치(규모, 비율)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설계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된 결과 역시 가구특성에 따라 공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5]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조사표의 예

가구현황

문47 현재 귀 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뿐만 아니라 군대 간 자녀, 유학한 자녀 등을 포함하여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있는 다른 구성원 모두에 대해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No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 참조)	출생연도	성별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실제 동거여부	장애여부
			① 남 ② 여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1~3급 장애인 ② 4~6급 장애인 ③ 비등록장애인 ④ 해당없음
1	① 가구주					
2						
3						
4						
5						
6						
7						
8						
9						
10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

문48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입니까?

① 예	→	문48-1 귀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입니까?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중 「노동권」의 ‘일할 권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들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월 통계청에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 중 지정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동 조사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6-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개요

구분	내용
통계작성기관	▶통계청(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통계의 유형/공표주기	▶지정통계(조사통계) ▶공표주기: 매월
조사목적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조사대상	▶조사대상/단위: 개인
표본의 특징	▶표본규모: 조사대상가구내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전국 3만 2천 가구)
조사항목	▶본조사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48개 항목 ▶부가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월·8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관한 사항 - (고령층 부가조사, 5월): 구직 및 취업경험, 장래 근로에 대한희망 등 - (청년층 부가조사, 5월): 최종학교 졸업시기, 취업관련 준비 등 -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8월):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창업자금규모

이처럼 매월 조사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수와 그 비율뿐만 아니라 고용률과 실업률 등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아래와 같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연령(5세 단위), 교육수준(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및 시도 단위 별로 나누거나 이들 특성들을 교차하여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일할 권리’의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장애인 등의 고용 또는 실업상태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원자료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 구입단가가 매우 고가이며, 구입한 이후에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잘못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림 6-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공포내용(KOSIS)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표 6-9>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14. 1			2015. 1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 전체(Both Sexes) >	42,304	24,759	58.5	42,775	25,106	58.7	471	347	0.2p
15~29세(years old)	9,530	3,891	40.8	9,482	3,918	41.3	-48	27	0.5p
· 15~19세(years old)	3,223	282	8.7	3,143	282	9.0	-81	1	0.3p
· 20~29세(years old)	6,307	3,609	57.2	6,340	3,635	57.3	33	26	0.1p
30~39세(years old)	7,775	5,691	73.2	7,681	5,674	73.9	-94	-17	0.7p
40~49세(years old)	8,450	6,637	78.5	8,443	6,610	78.3	-7	-27	-0.2p
50~59세(years old)	7,777	5,621	72.3	7,978	5,812	72.8	201	191	0.5p
60세이상(years old & over)	8,772	2,918	33.3	9,191	3,093	33.6	419	174	0.3p
< 남자(Male) >	20,688	14,518	70.2	20,931	14,631	69.9	243	113	-0.3p
15~19세(years old)	1,654	136	8.2	1,606	125	7.8	-48	-11	-0.4p
20~29세(years old)	3,103	1,762	56.8	3,127	1,763	56.4	25	1	-0.4p
30~39세(years old)	3,948	3,582	90.7	3,911	3,552	90.8	-36	-30	0.1p
40~49세(years old)	4,271	3,939	92.2	4,262	3,908	91.7	-9	-31	-0.5p
50~59세(years old)	3,889	3,327	85.5	3,997	3,412	85.4	108	85	-0.1p
60세이상(years old & over)	3,824	1,772	46.4	4,027	1,870	46.4	204	98	0.0p
< 여자(Female) >	21,616	10,241	47.4	21,845	10,475	48.0	229	235	0.6p
15~19세(years old)	1,570	146	9.3	1,537	158	10.2	-32	11	0.9p
20~29세(years old)	3,205	1,847	57.6	3,212	1,872	58.3	8	25	0.7p
30~39세(years old)	3,827	2,109	55.1	3,770	2,122	56.3	-57	13	1.2p
40~49세(years old)	4,179	2,698	64.6	4,181	2,702	64.6	2	4	0.0p
50~59세(years old)	3,888	2,294	59.0	3,981	2,400	60.3	93	106	1.3p
60세이상(years old & over)	4,949	1,146	23.2	5,164	1,222	23.7	216	76	0.5p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이처럼 ‘일할 권리’와 관련된 취약계층별로 통계를 생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을 쉽지 않다. 물론 관련 문항들을 조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구주의 취업상태와 고용률은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와 혼인상태를 통해 여성가구주를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모수를 추정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 6-7]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적사항 관련 조사표

I 인적사항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생년월일	4 교육 정도		5 혼인상태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5. 손자녀 6. 부모(장인·장모) 7. 조부모 8. 미혼형제·자매 9. 기타	1. 남자 2. 여자	1. 양력 2. 음력 [] [] [] 년 [] 월 [] 일	학 력 및 계 열 0. 무 학 4. 전문대(3년제, 2년·3년제 대학 포함) 1. 초등학교 5. 대학교(4년제 대학 포함) 2. 중 학교 6. 대학원(석사) 3. 고등학교 7. 대학원(박사)	수 학 여 부 1. 출 업 • 졸업년도: [] [] [] 년 2. 재 학 3. 중 퇴 4. 휴 학	혼인상태 1. 미 혼 2. 유배우 3. 사 별 4. 이 혼
			① 인문계열 ② 예술·체육계열 ③ 상농공수산계열등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계열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하지만 이러한 각 취약집단별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등에 대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는 매일 조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된 결과에 대한 사후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에서 조사된 전체조사구(표본조사구와 전수조사구 포함) 중에서 섬조사구와 시설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에 총조사 실시 이후의 신축 아파트(10.11.1. ~ 11.7.31.) 조사구 3,097개를 포함하여 생성한 광역조사구 18,934개, 일반조사구 305,779개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하여 추출되고 있다. 특히, 전국을 7대 시(특·광역시)와 9개 도(道)의 동부 및 읍면부 등 25개로 층화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게 되는데 어떤 특성에 치우친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광역조사구를 각 지역별로 15-29세 비율, 30-40대 비율, 60세 이상 인구비율,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대졸자 비율, 농림어가비율, 1인 가구비율, 자가비율, 전월세 가구비율, 주택유형, 농림어업취업자 비율, 광제조업 취업자 비율,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등 13개 변수 및 권역구분(시·군·구 특성에 따라 구분) 변수를 이용하여 각 층별로 우선순위에 맞게 정렬한 이후에 확률비례 계통추출법(PPS_SYS)을 적용하여 추출하고 있다(통계청, 2015).

이와 같이 표본추출방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구주의 고용률이나 취업률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에 이를 반영하여 이들이 표본에 추출될 수 있도록 층화기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통계청에서 생산하던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의 단위가 개인단위이기 때문에 표본설계 자체가 개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가중치 역시 이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단위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통계의 경우 표본의 단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것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모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즉,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의 분석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가구에 대한 모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모집단 자체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표본의 단위가 개인이기 때문에 동 조사를 통해 가구단위의 모수를 추정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승인통계를 인권통계 친화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조사통계의 경우 표본의 단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취약계층들이 하나의 중요한 표본설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2) 보고/가공통계의 사례 검토

다음으로 국가승인통계 중 보고통계를 보다 인권통계 친화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중 「사회보장권」에서 소득보장(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지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들 수 있다. 동 지표는 전체 인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동 지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이라는 국가승인통계 중 보고통계를 통해 매년 산출되고 있다. 조사 또는 보고 단위는 가구이며 보고 항목으로는 연령, 가구구성, 주거유형, 건축상태,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조사표가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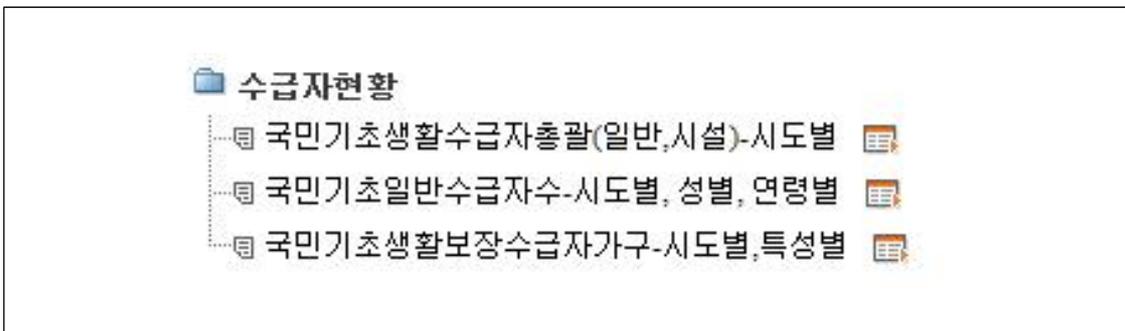
이렇게 조사된 정보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내부전산망(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보건복지통계연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익년 7월)라는 간행물로도 출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OSIS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으로 관련정보가 공개된다.

<표 6-10>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의 보고통계 개요

구분	내용
통계작성기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통계의 유형/공표주기	▶일반통계(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보고목적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보고대상	▶조사대상/단위: 가구
보고대상기간/ 보고기준시점	▶1월1일~12월31일
보고항목	▶연령, 가구구성, 주거유형, 건축상대, 소득 및 재산 현황 등

이렇게 집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이 KOSIS에는 아래와 같이 시도별, 성별, 연령별, 그리고 여러 가구특성별(가구원수, 세대구분, 가구구성, 주거유형, 보장기간, 소득수준, 재산규모 및 부양의무자 여부 등)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각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보도자료에는 각 특성들을 상호 교차하여 보다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8] 통계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공개현황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6-9] 통계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공개 형태

가구원수	계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2001년	698,075	172,715	90,771	130,417	21,764
2002년	691,018	169,017	88,115	123,327	29,014
2003년	717,861	163,610	88,740	124,965	38,925
2004년	753,681	158,263	89,131	132,175	49,276
2005년	809,745	154,359	90,888	144,002	64,988
2006년	831,692	143,069	89,849	150,029	79,373
2007년	852,420	145,977	89,645	152,606	93,224
2008년	854,205	132,701	85,958	149,063	104,397
2009년	882,925	123,182	92,584	152,311	116,850
2010년	878,799	113,930	83,520	145,931	121,057
2011년	850,689	102,471	76,609	134,450	120,533
2012년	821,879	93,369	70,430	124,439	120,646
2013년	810,544	86,822	66,177	118,397	123,812
2014년	814,184	82,068	62,185	114,909	128,148
1인가구	557,275	51,548	40,786	84,568	77,486
2인가구	141,821	20,154	11,691	15,937	24,598
3인가구	70,630	6,028	6,057	8,579	15,889
4인가구	30,632	2,836	2,652	3,875	7,042
5인가구	9,634	1,015	725	1,314	2,191
6인가구	2,824	315	199	391	660
7인이상가구	1,368	172	75	245	282

주: 임대주택 분류 통일에 따른 자료 보정(2009~)

이처럼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정보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래의 <표 6-11>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통계들이 최대 두 가지의 조건(예를 들어 수급자의 주거유형별×가구원수별)으로만 제공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조건에서의 수급자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더 추가적인 조건을 고려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청하면 된다.

<표 6-11>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의 결과보고 내용

- ▶수급자 현황 - 수급자 종류별, 시도별
- ▶일반수급자 현황 - 수급자 종류별, 월별
- ▶일반수급자 현황 - 수급자 성별, 시도별
- ▶일반수급자의 특례현황 - 특례유형별, 시도별
- ▶일반수급자 연령별 현황 (총괄) ·
- ▶일반수급자 연령별 현황 (남자)
- ▶일반수급자 연령별 현황 (여자)
- ▶일반수급자 취업현황
- ▶일반수급가구 가구원수별 현황
- ▶일반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 시도별
- ▶일반수급가구 가구구성별 현황 - 시도별
- ▶주거유형별 현황 - 시도별
- ▶주거유형별 현황 - 가구원수별
- ▶주거유형별 현황 - 가구유형별
- ▶주거상태별 현황 - 시도별
- ▶주거상태별 현황 - 가구구성별
- ▶주거상태별 현황 - 가구유형별
- ▶일반수급가구 보장기간별 현황 - 시도별
- ▶일반수급가구 보장기간별 현황 - 가구원수별
- ▶일반수급가구 보장기간별 현황 - 가구유형별
-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 시도별
-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 가구원수별
-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1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2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3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4인 가구)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5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6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7인 이상가구)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 가구원수별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 시도별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1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2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3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4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5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6인 가구)
- ▶일반수급가구 재산현황 (7인 이상가구)
- ▶일반수급가구 소득인정액 (평균) 현황 - 가구원수·시도별
- ▶부양의무자 현황
-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현황

하지만 문제는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산출할 경우에 발생한다. 산출식에서 분자는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수이지만, 분모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고하는 ‘주민등록연앙인구’가 된다.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중 일반통계의 보고통계로 매월 발표하는 통계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행정구역별로 집계된 인구수를 각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단위 등에 따라 크게 각 1세, 5세, 10세 단위로만 제공하고 있다.

[그림 6-10]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공개 형태

▶ 연령별 인구현황 (연간)

※ 매년 말일자 기준의 만 나이별 통계 현황(매년 1일 공표)

행정기관	구분				
		총인구수	연령구간인구수	0-9세	10-19세
전국	계	51,327,916	51,327,916	4,591,374	5,988,904
	남	25,669,296	25,669,296	2,363,080	3,130,485
	여	25,658,620	25,658,620	2,228,294	2,858,419
서울특별시	계	10,103,233	10,103,233	793,992	1,044,513
	남	4,979,768	4,979,768	407,662	541,899
	여	5,123,465	5,123,465	386,330	502,614
부산광역시	계	3,519,401	3,519,401	263,767	366,769
	남	1,740,417	1,740,417	135,643	193,460
	여	1,778,984	1,778,984	128,124	173,309
대구광역시	계	2,493,264	2,493,264	208,524	307,096
	남	1,241,119	1,241,119	107,712	163,373
	여	1,252,145	1,252,145	100,812	143,723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rcps.egov.go.kr>)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의 수를 여러 조건에 따라 제공한다고 하여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인구를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인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산출해낼 수 없다. 이처럼 보고통계가 여러 기관의 정보들을 활용해 재가공함으로써 제시되어야 할 경우 관련기관들의 공조가 없이는 해당 지표를 산출할 수 없다.

3. 국가승인통계의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1) 인권 영역별 지표들의 인구집단 설정

국가승인통계를 인권통계 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인권영역의 소분류별 지표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인권취약인구집단을 설정하는 것이다. 크게 인권지표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들과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특성, 소득수준, 지역, 인종, 국적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세분화된 하위인구집단별로 산출되어야 하는 지표들과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지표들은 현재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생산/제시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에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각 통계작성기관별로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조사 또는 보고/가공 통계 내에서 국민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각 통계의 목적에서 크게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통계작성기관이 인권통계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기존의 방식과 달리 하위인구집단별로 재생산/재가공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해야만 비로소 관련 논의라도 시작할 수 있다. 설령 인권통계의 목적과 정당성에 공감하더라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논의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위집단별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집단이 고려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후가중치에 이를 고려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히 하위인구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정확한 모수를 추정할 수가 없다. 새롭게 구축할 예정인 국가승인통계들인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지만, 오랫동안 고유의 방식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생산해온 경우에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며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권통계에서 필요한 모든 하위인구집단별로 통계를 재생산/재가공해 줄 것을 요청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하위인구집단을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관련 통계작성기관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력을 요청하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요구된다. 아래의 <표 6-12>는 각 인권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하위 인구집단들을 제시한 것이며, 본 연구가 발굴/제안한 지표폴 중 취약집단 인권지표들을 해당 인권영역에 상응하도록 배치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2> 인권영역별 취약인구집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집단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민	노인	군인	북한연락민	난민	기타	
1. 이행기제	1.1. 국제규범	1.1.1. 국제인권법 준수										
		1.1.2. 국제인권기구 참여										
	1.2. 국내법	1.2.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1.2.2.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3. 인권교육	1.3.1.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1.3.2. 기업·시민사회 인권교육 활동										
	1.4. 시민사회	1.4.1. 인권 NGO 활동										
		1.4.2. 인권 NGO거버넌스 구축										
2. 평등권	2.1. 차별 현황	2.1.1. 인권상황 평가	V	V	V	V	V				V	
		2.1.2. 침해 및 차별발생 원인	V	V	V	V	V				V	
		2.1.3. 차별의 심각성 평가	V	V	V	V	V				V	
		2.1.4. 차별경험 유무	V	V	V	V	V				V	
	2.2. 차별 요인	2.2.1. 인종·피부색·출신국가			V	V					V	V
		2.2.2. 성별	V					V				V
		2.2.3. 경제적 지위			V							
		2.2.4. 나이					V					
		2.2.5. 용모	V									
		2.2.6. 종교			V							
		2.2.7. 학력·학벌										V
		2.2.8. 성적 지향성										V
		2.2.9. 장애			V							
		2.2.10. 병력										V
3. 시민·정치적 권리	3.1. 신체권	3.1.1. 생명권	V	V	V		V	V				
		3.1.2. 사형의 제한									V	
		3.1.3.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V	
		3.1.4. 구금 환경						V			V	
		3.1.5. 인신매매 금지	V		V	V						
		3.1.6. 안전할 권리	V	V	V		V				V	
		3.1.7. 실종		V	V						V	
		3.1.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V			V	
	3.2. 기본적 자유	3.2.1. 이동의 자유		V		V					V	V
		3.2.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V							V
		3.2.3. 의견과 표현의 자유										V
		3.2.4. 집회의 자유										V
		3.2.5. 결사의 자유										V
		3.2.6. 사생활 보호권										V
	3.3. 행정·사법적 정의	3.3.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V			V
		3.3.2. 사법적 구제										V
		3.3.3. 피해배상 청구권										V
	3.4. 참정권	3.4.1. 투표할 권리		V			V					
		3.4.2. 선출될 권리	V	V								
		3.4.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V									
	3.5. 정보인권	3.5.1. 정보접근권		V								
		3.5.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V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집단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민	노인	빈민	농업민	난민	기타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4.1.1. 식량권			V								
		4.1.2. 주거권	V	V		V							
		4.1.3.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V				
	4.2. 사회보장권	4.2.1. 소득보장(공공부조)					V						
		4.2.2. 빈곤·양극화	V	V	V	V	V						
		4.2.3. 사회복지		V	V		V		V			V	
		4.2.4. 사회보험	V			V							
	4.3. 노동권	4.3.1. 일할 권리	V	V		V							V
		4.3.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V	V	V	V							V
		4.3.3. 노동조합권				V							V
	4.4. 건강권	4.4.1. 건강 서비스 접근					V		V				
		4.4.2. 아동 및 모성 건강	V		V								
		4.4.3. 육체적 건강					V						
		4.4.4. 정신적 건강			V								
		4.4.5.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V
	4.5. 교육권	4.5.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V	V								
		4.5.2. 교육선택권	V			V							V
		4.5.3. 교육의 질			V								
		4.5.4. 교육 차별 및 불평등	V		V								V
	4.6. 문화적 권리	4.6.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V								V
		4.6.2.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V
		4.6.3. 창작물에 대한 보호											V
		4.6.4.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V
	4.7. 기업과 인권	4.7.1. 국가의 보호											V
		4.7.2. 기업의 존중											V
		4.7.3. 구제											V
		4.7.4. 환경보존 책임											V
	4.8. 환경권	4.8.1.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V
		4.8.2.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V
		4.8.3.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V

(2) 국가승인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015년 12월 현재 394개 기관에서 941개의 국가승인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되는 각 통계들을 인권친화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지통계」의 경우에는 2005년 「UN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 등과 관련된 성별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국제적 근거와 함께 『여성발전기본법』의 제13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말에 수립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는 성별통계의 확립을 위해 국가생산통계 중 모든 인적 통계 성별분리를 하고, 통계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성별통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통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아래와 같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2조(사회보장통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통계를 생산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통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각 통계들을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조를 보다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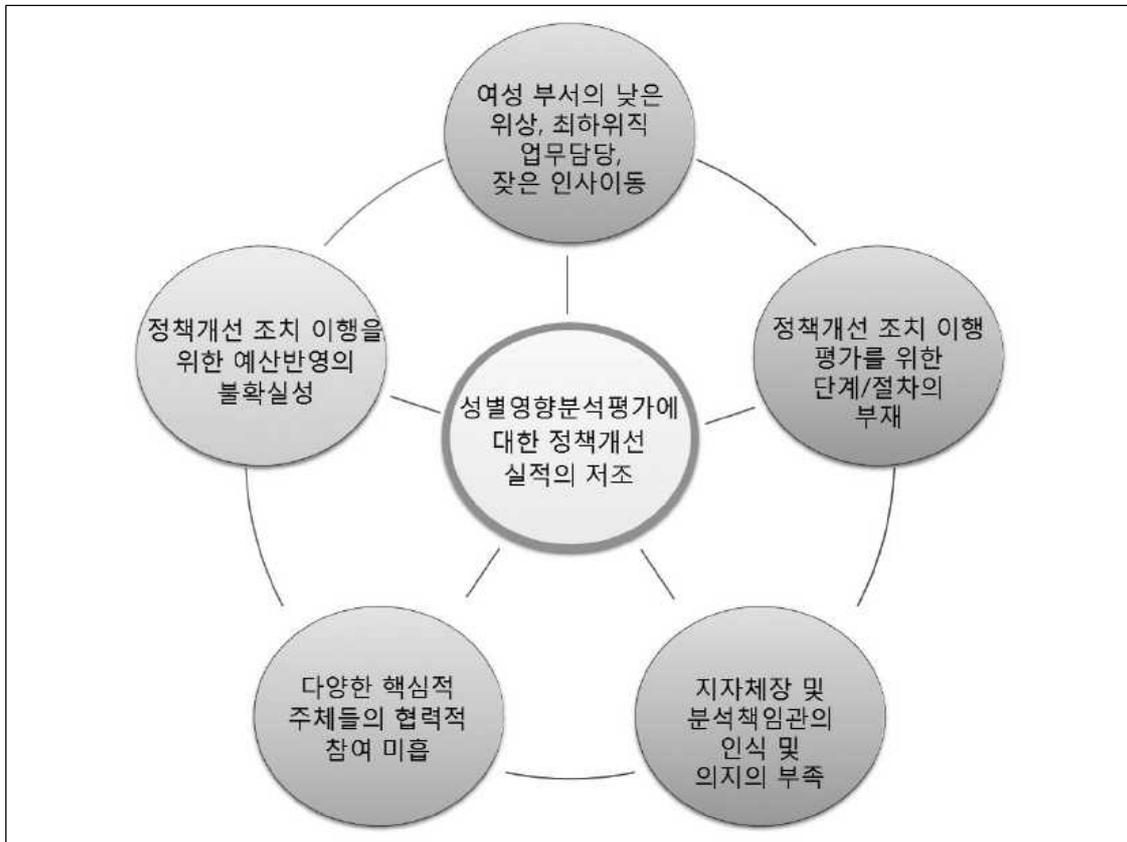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통계를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부서에서는 인권통계에 포함되는 자료들을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며, 정책연구,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상시적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기관에서 인권과 관련된 조사 또는 보고/가공통계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생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통한 정책적 개선실적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의 [그림 6-11]과 같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통계를 구축하면서 부딪치게 될 난관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통계를 구축하고자하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관련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난관들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림 6-1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



출처: 여성가족부(2014),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효율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모색」 자료집.

제3절. 인권통계 산출 및 확산방안

1. 인권통계의 산출

(1) 인권통계에 대한 합의 도출

본 연구는 4개의 대분류, 19개의 중분류, 그리고 74개의 소분류에 상응하는 410개의 인권지표를 발굴·제안하고 있다. 인권의 영역과 대상을 포괄적·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지표풀이 구축되었다. 2차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각 소분류를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했다. 소분류 별로 투표수가 가장 많은 두 지표를 대표 지표로 선정한다면, 약 150개의 지표가 보다 대표성이 높은 지표로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인권통계 및 지표가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NGO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청취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칭) 범시민 인권통계자문단을 구축하여, 인권영역과 취약계층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상근자, 활동가, 학자들이 발굴·제안된 지표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들 중 보다 대표성이 높은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원자료의 확보

모두 410개의 지표들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이 방대한 승인통계 및 비승인통계의 원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재정적·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얻어 원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국가기관이 그 원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승인통계의 경우 원자료 확보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나, 인권위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그 가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지표풀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주관적 지표들의 경우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을 통해 시행한 실태조사들에서 발굴된 것이므로 원자료에 대한 접근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3) 통계치 산출과 가공

원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이에 대한 분류와 가공, 그리고 통계치 산출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많은 숫자의 지표들이 취약집단별 통계치 산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가용한 선에서 분류와 가공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세분화 하여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다. 각 원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자료설명 및 코딩북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분류와 가공이 순조롭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각 자료에 대한 가공 작업은 적지 않은 시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각종 분류·가공표가 이 단계에서 형성될 것이며, 해석을 위한 충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고 세밀하게 통계치가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인권지수 산출

새로운 통합 및 분야별 인권지수의 산출도 이 단계에서 가능해 질 것이다. 2012-2014년에 걸쳐 구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지수는 비교적 적은 숫자의 지표로 많은 분야의 인권변화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아무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그리고 인권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입장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과학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정책적 입장과 즉각성을 띄는 현장의 요구 간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본 연구팀이 인터뷰를 실시한 인권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괴리와 거리감은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2. 인권통계 발간

(1) 인권통계 해설

지표들의 통계치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와 보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설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통계치에서 관찰되는 인권의 개선과 후퇴를 야기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구조-과정-결과 지표들 간의 인과적 상관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때 인권지표와 통계는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나 국제사면위의 인권보고서 모두 이러한 스토리를 만드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나 각국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치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는 각종 보고, 가공 통계를 비교적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설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2) 「2015 인권통계」의 출판

2015년 한국의 인권을 보여주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는 한국형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와 지표풀을 바탕으로 통계치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인권의 변화를 인과적, 정책적 관점에서 서술·해설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종합인권보고서’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각 지표의 정의, 자료원, 의의 등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지역별, 시기별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지표별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취약집단별 통계치를 제시하고,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취약집단의 인권현주소를 생생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보고서 형태의 인권통계가 작성되어 국민에게 공개되고 다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신력이 배가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인권보호와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영역별 집단별 인권보고서 발간

취약집단별 인권보고서의 제작과 배포도 필요하다. 본 연구팀은 모든 인권영역에 대해 모든 취약계층별 상세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조사 결과 자유권의 경우 신체권과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서, 사회권의 경우 노동권과 건강권의 영역에서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폴 구축 과정에서는 자유권의 경우 전문가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신체권과 기본적 자유 소분류, 그리고 사회권은 사회보장권과 노동권의 영역이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모니터링이 시급한 분야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여러 취약계층의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침해 현실을 잘 드러내 주는 인권보고서의 발간은 소수자집단의 인권을 돌아보고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침해 당사자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인권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등의 인권선진국과 국제기구는 인권지표의 최대의 효용으로 취약계층의 인권개선을 꼽았고, 이들의 인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의 작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2010년 구축된 캐나다의 평등권 프레임워크는 2012년 장애인 집단으로, 2013년에는 토착민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여성으로 그 범위가 확장 적용되었으며, 각 취약집단의 인권현황과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2016년에는 시작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보고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3. 인권통계의 접근성 강화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인권지수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지표와 통계자료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권 연구자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인권통계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연구와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정책의 목표 설정과 사업의 내용 및 정책 대상의 표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권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정기적으로 최신 자료로 갱신하고 분석하여 관련 시민단체나 학계에 배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한 인권 정보의 접근성 강화는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적실성 있는 방안 제시,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의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인권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온라인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인권포털 사이트’를 국가인권위원회 웹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 나아가 이렇게 구축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의 통계자료 사이트들과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이 우선적인 네트워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사이트에서는 인구/가구, 고용/노동/임금, 물가/가계 등 총 16개의 주제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권 정책과의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들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통계자료 제공 사이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이들 사이트로 접근한 사용자들이 인권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 비로서 신뢰성 있는 인권통계 자료 출처로서의 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에 대한 접근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인권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가통계포털과의 연계성 강화는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통계, 통계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기반으로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이슈나 쟁점에 관한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권실태와 쟁점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4.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의 국제적 확산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공동체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신뢰성 있는 인권통계 체계의 구축과 활용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본 연구의 요약본과 프레임워크, 지표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난 8년 여 동안 인권지표 및 통계와 관련된 선구적인 연구가 인권위 주도로 이루어져 왔지만 외국어 번역과 국제적 확산 노력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한 국제어 능력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번역 작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국형 인권통계 번역본을 인권가이드라인 후속판을 준비하고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부에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후속판에 한국형 인권통계가 사례로 실릴 수 있도록 로비를 진행해야 한다. 2012년 가이드라인에는 영국, 에콰도르, 네팔, 멕시코, 케냐, 인도의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국형 인권통계 등장의 배경, 원칙, 프레임워크, 지표표, 인권실태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1-2 페이지의 축약본을 만들어 최고대표부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축약본에는 한국이 유엔인권최고대표부를 방문하여 자문을 얻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형 프레임워크가 갖는 독창성과 장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왜 “한국형”인지가 충분히 부각되어야 한다.

한국형 인권통계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지표 및 통계가 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로비를 진행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한국

은 2016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 한국이 국제인권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책임문화 창출과 인권개선을 위한 인권지표 및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한국이 주도가 되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형 인권통계 체계의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국들이 UPR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지표 및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문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자문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문위원회에서 인권통계가 주요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로비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용주. 2008. “텔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수시과제보고서」 : 1-17.
- 구정우·공석기·박병진. 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우. 2013. “인권사회학 이론의 형성과 발전.” 정진성 외. 「인권사회학」 . 다산.
- 국가인권위원회. 2013. 「2012 인권 통계」 .
- 국가인권위원회. 2014. 「2013 인권 통계」 .
- 국토교통부. 20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만 감소, 1인당 주거면적 증가」 . 보도 자료.
- 김용현. 2008. “대구경북 통합 DB 구축 Master Plan.” 「대구경북 RHRD 연구보고서」 2006-01호.
- 김준우·이경상. 2006. “지역발전정책 개발역량의 개념정의와 지표구성.” 「한국사회학」 40(3): 155-182.
- 김태홍·윤덕경·김영택·주재선·배호중·김기곤. 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플 등 기반구축」 .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홍·윤덕경·김영택·주재선·배호중. 2013.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연구용역」 .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홍·김영택·주재선·배호중·임지봉. 201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 노대명·강신욱·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 사회통합위원회 2010-2.
- 노명선. 2013. 「검찰 인권지수 개발」 .
- 노홍승·김찬성. 2007. “국가물류 통합 DB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07-15호.
- 대한민국정부. 20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 문진영·김진욱·신영전·은수미·홍인옥. 2008. 「사회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 박수미·정기선·김혜숙·박건.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사회보장 통계관리 전략수립 방안」 .
- 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연구 I: 지표체계」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석현호·김석호·이희길·심수진·김대훈. 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석현호 외.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송대민·김태현·이중순·진달래. 2010.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 DB 구축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30-16호.
- 심수진·박주언·이희길. 2013. 「사회조사 항목개발: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 2014.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효율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모색」 자료집.
- 이상경. 2015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세계헌법연구」 21(1): 165-195.
- 이연희. 2013. “보건복지통계 DB 구축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3: 53-62.
- 이재열·한준·최문희·신인철·이희길·심수진. 2014.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 이정기. 2009.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례, 의견 표명문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4: 123-170
- 임달오·김지영·성연주·최광식. 2013. “2013년 보건산업 통계 DB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체-기타-2013-84호
- 전기택·문유경·주재선·한근식·박건표·동제연. 2012.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통계 생산 현황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전인우. 2009. “영세자영업자 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9-09호.
- 정병은. 2013. “인권의식조사.” 「인권사회학」. 다산출판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방송통계 DB 구축·운영.” 「정책자료」 13-08호.
- 정진성·공석기·구정우. 2011.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정진성·구정우·공석기·유기웅. 2014. “한국인의 인권인식과 태도, 2005~2011년.” 「사회와이론」 24: 401-445.
- 정진성·유성상·정병은·김두년·공석기. 2011.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호경. 2011. “공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에 관한 고찰-행정소송, 행정심판, 심사청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8권 3호.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https://www.narastat.kr/pms/index.do>)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현황」.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 통계청. 2014.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rcps.egov.go.kr>)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0. *Framework for Documenting Equality Rights*. (http://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11/ccdp-chrc/HR21-78-2010-eng.pdf).

Churchill, C. 1996. “Environmental Rights in Existing Human Rights Treaties.” In Boyle Alan and Anderson Michael(eds). *Human Rights Approache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89-108.

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Vienna: 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European Union. 2000.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http://www.europarl.europa.eu/charter/pdf/text_en.pdf).
- Ivanov, Andrey, Sheena Keller, and Ursula Till–Tentschert. 2015. *Roma Poverty and Deprivation: the Need for Multidimensional Anti–Poverty Measures*.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OPHI) Working Paper No.96. Oxford: OPHI.(<http://www.ophi.org.uk/wp-content/uploads/OPHIWP096.pdf>).
- Koo, Hagen. 2001.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oo, Jeong–Woo. 2015. “Human Rights Recession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Index.” Presented in the 2015 SSK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May 18th. Seoul.
- Koo, Jeong–Woo, Sukki Kong and Chinsung Chung. 2012. “Measuring National Human Rights: A Reflection on Korean Experiences.” *Human Rights Quarterly* 34: 986–1020.
- Koo, Jeong–Woo, Byeong–Eun Cheong and Francisco O. Ramirez. 2015. “Who Thinks and Behaves According to Human Rights?: Analysis of Korean Human Rights Opinion Poll.” *Korea Observer* 46(1): 53–87.
- Landman, Todd., and Edzia Carvalho. 2009. *Measuring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 Linstone, Harold A. and Murray Turoff(Eds). 2002.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Online book] (<http://is.njit.edu/pubs/delphibook/>)
- McFadden, F., J. A. Hoffer, M. B. Prescott 1999. *Modern Database Management (5th ed)*. Addison–Wesley Longman Publishing Co.
- McInerney–Lankford, Siobhan, and Hans–Otto Sano.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in Development*. Washington, D. C.: World Bank.
- Poe, Steven, Sabine C. Carey and Tanya C. Vazquez. “How are These Pictures Different?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US State Department and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orts, 1976–1995.” *Human Rights Quarterly* 23(3):650–677.
- Potvin, M. 2005. “The Role of Statistics on Ethnic Origin and ‘Race’ in Canadian Anti-Discrimination Polic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7(183): 27–42.
- Shelton, D. 2004. “The Link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arante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livered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on April, 16, 2.
- Soh, Changrok, Yooneui Kim, and Hannah June Kim. 2015. “The Human Rights

- Council Advisory Committee's Contribution to Global Human Rights." *Korea Observer* 46(1): 1–26.
- Starl, Klaus. et al. 2014. *Baseline Study on Human Rights Indicators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er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 (<http://www.fp7-frame.eu/wp-content/materials/reports/12-Deliverable-13.1.pdf>).
- United Nations.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Human_rights_indicators_en.pdf)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nd UNDP .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reports/261/hdr_2000_en.pdf)

부록

1.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

▷ UN OHCHR 보편적 인권색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행기제	국제법/제도	
	국내법/제도	
	인권교육	
	시민사회와의 협력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종 차별	
	여성 차별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신체권	생명권
		제노사이드
		비사법적살인
		사형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구금 환경
		노예 및 인신매매
	자유 및 안보권	자유와 안보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생활권		
정의로운 행정	재판받을 권리/공정한 재판 법 앞의 평등권	
구제받을 권리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 피해자 보상과 회복 불처벌(Impunity)	
이름·정체성·국적을 가질 권리	임의적 국적 거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체성 보호	
참정권	투표 및 선출될 권리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결혼권·가족권	결혼 및 가족 구성권 배우자 사이의 평등 가족 보호	
Cross-cutting issues	인권과 반테러 인권과 용병 국제 인도적 법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량권
		적절한 주거권
		사회보장권
		빈곤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노동권	일할 권리 작업환경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강권	노동조합권(Trade Union Rights)
		건강 서비스 접근
		아동 및 모성 건강
		건강 제한 조건
		기대 수명
		정신 건강
	교육권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교육 보조 접근
		교육 성과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록률
		중퇴율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Financial Credit) 권리	문해율
		교육에서의 차별
		재산 및 상속과 관련된 권리
	문화적 권리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취득명령(purchase orders), 축출, 재정착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의 보존, 발전, 확산과 관련된 권리		
Cross-cutting issues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룹 권리	여성	비즈니스와 인권
		인권과 독성폐기물
		교육
		고용
		경제적 웰빙
		주거
	아동	건강
		정의와 안전
		정치 참여와 사회 통합
		아동권리의 일반 원칙
		가정 환경과 대안적 돌봄
	장애인	착취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사법
		무력 분쟁과 아동
		장애인권리의 일반 원칙
접근성, 이동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보호		
기타 소수자	독립 및 포용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와 안전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	
	토착민	
	이주민	
자결권	난민 (국내 난민 포함)	
	인권활동가	
	개발권	
현신&팔로업		

출처: OHCHR Universal Human Rights Index Research guide (<http://uhri.ohchr.org/search/guide>)

▷ OHCHR 인권지표 가이드의 영역별 지표 구분 사례

부분속성	형사사건 체포/구금	행정부의 자유박탈	법원의 실질심사	법집행인력의 범죄/권력 남용으로 부터의 안전	
자유권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법원이나 행정부의 정책으로 현실화된 시점 -국제인권기구협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안전, 범죄 처리 및 법률 집행 남용에 대한 정책 및 행정 체계의 기간 및 범위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유엔 임의구금 조사위원회와 의견 교환한 비율/정부가 대응한 비율 -교정수감시설인력 중 인권교육 받은 비율			
	결과 지표	-10만 명당 수감인구의 비율 -자의적 신체자유박탈 보고건수	-구금상태에서 석방되는 사람들의 수/비율	-법원에 기록된 인신 보호영장 및 유사한 탄원서의 수 -10만 명당 체포, 재판, 유죄판결, 폭력범죄 복역을 겪은 사람의 수 -체포 구금 적부심 각 비율 -법률집행 인력으로부터 신체적/비신체적 해를 입을 경우의 보고 건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부분속성	영양상태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식량 존재여부	식량 접근가능여부	
식량권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과정 지표	-영양 및 적정 영양 기준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음식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농업생산 및 식량 활용성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범위 -가뭄, 홍작 및 재난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범위	
	결과 지표	-영양 교육 및 인지에 대한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표집단의 범위	-소비가 법정에 등록된 사건들의 처분비율 혹은 판결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1인당 관개경작 토지 -성별 및 목표집단에 따른 노동참여율	
부분속성	성적 건강, 생식 건강	유아사망률과 건강보호	자연환경, 직업 환경	질병예방 치료 통제	의료시설, 필수약품 접근가능여부
신 체 / 정신 건강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인구등록체계의 출생, 사망, 혼인률			
	과정 지표	-성적, 생식 건강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범위	-유아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결과 지표	-출산 전 건강관리 범위 -의학적 임신중절	-건강 및 영양 교육을 받은 취약 아동의 비율	-1인당 CO2 배출량	-질병 발견 및 치료율 -기초 건강보호 및 의약품에 대한 1인당 정부지출
부분속성	저체중 출생비율 출산전후사망률 산모사망률	-유아 및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불안정한 자연적, 직업적 환경에 기인한 사망, 상해, 및 장애의 성행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자살률	

부분속성	구속/수감자들의 신체보존, 정신 보존	구금환경	법집행인력의 물리적 사용	지역 및 가정 폭력
고 문 및 비도덕적 처우 금지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국제인권기구협약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독방 감금의 법적 최대한도 -구금 시설 및 감옥에서 시행되는 건강 정책의 기간 및 범위		-여성 및 아동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시설 수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유엔 임의구금 조사위원회와 의견교환한 비율/정부가 대응한 비율 -교정수감시설인력 중 인권교육 받은 비율		
		-경제처분 및 고발을 받은 수용소 직원에 대한 공식적 조사비율	-수감자 1인당 관리직원 및 그 외 담당인원의 적정 비율	-물리적/비물리적 학대 혹은 범죄에 대한 법률 집행관의 공식적 조사비율
결과 지표	-구속 수감 중 전염/비전염질환 사망률 -(장기)독방감금비율 -사형수의 비인도적 처우 -수감자의 영양실조비율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 중 보상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		-법률집행 담당자에 의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및 물리적 상해 건수	-학교 및 의료기관에서 물리적 처벌을 당한 학생 및 환자의 비율 (1,000명 당)
부분속성	입법, 행정 권력의 행사권	보통, 평등 선거	공직 접근권	
공 직 권리 참여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보통선거시점 및 시민권 설정, 영-주권자에 대한 제한 -국제인권기구협약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지역/국가 수준에서의 임명선출 및 총선의 주기		-차별 없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조항의 발효일 및 범위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전국/지방선거 횟수 -전국/지방 입법체의 입법 법률 수		
	결과 지표	-의회 내 여성 및 목표집단의 좌석 비율	-투표가능연령 인구 대비 투표인구의 비율	-성별 및 목표집단에 따른 평균 투표율(국가/지역 수준)
부분속성	보편 초등 교육	중등고등 교육 접근권	교육내용과 지원	교육의 기회와 자유
교육권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비용부담 없는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국가에서 채택된 조치의 기간과 범위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모든 수준에서 인권을 가리치는 교육기관의 비율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교육지출의 GNP에 대한 비율		
		-교육료 외의 부담금이 있는 공공학교의 비율 -공공 초등학교에 등록된 아동의 비율	-중등교육을 받기 위한 공공 지원 및 보조금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 -학년별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중퇴율(목표 집단에 따라)	-학교 교사들의 평균 급여 -초등/중등교육 및 공교육/사교육 영역에서 교사 대비 학생의 비율
결과 지표	-초등교육 수료비율 -취학연령아동의 미취학률	-1,000명 당 졸업자 수	-초등/중등/고등 교육 시설에서의 학생 밀집도	-전문 자격증 혹은 대학 학위를 이수한 여성의 비율
부분속성	거주적합성	공공서비스 접근권	주택비용 감당가능성	주거안정성
주거권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국제인권기구협약의체가 인정한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자연재해의 복구, 재정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거주안정, 균분상속 및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법률의 발효일 및 범위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용/정부가 옹한 비용 -주거에 관한 ODA의 공공지출이나 GNP에 대한 비용 -철거민에 대한 주거보호 건수 및 공공지출 -정책결정에 대한 목표집단의 주거권 만족도			
	-사회적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공공 경비분담	-수질이 개선된 식수, 위생시설, 전력, 폐기물 처리장을 활용하는 인구의 비율	-공공 주택 지원을 받는 가구의 비율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들 중 보상 및 재정착을 한 사람들의 비율
결과 지표	-충분한 주거공간에 사는 인구 비율 -건축법과 예규에 따른 내구성 있는 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 -위험한 환경 내에 혹은 그 가까이 사는 가구의 비율	-슬럼가에 살고 있는 도시인구의 비율	-연간 10만 명당 평균 무주택자의 수	-강제퇴거자의 보고된 사례 -토지 혹은 재산소유권을 가진 여성의 비율
부분속성	좋은 일자리 접근권	공정/안전한 근로환경	훈련, 기술 향상 및 직업적 발전	강제노동과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노동권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법률에 기재된 주당 최대근로시간 -직종별 고용 최저연령	-직업 교육 및 기술 향상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근로 기준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기간과 범위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용/정부가 옹한 비용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받은 목표 인구의 비율 -연간 취업 증가율(교육수준별)		
	결과 지표	-취업률(교육,성별,목표집단별)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인구에 대한 비율 -불완전고용(단기, 계절 고용 등)의 비율 -지니 계수와 5분위 최저/최고소득 혹은 소비지출	-슬럼가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 -적정수질의 마실 물, 위생 시설, 전기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기술 향상 및 기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의 근로자 고용률 -성별, 목표 집단 혹은 지역에 따른 장기 실업률
부분속성	근로자의 수입안정	의료에 대한 감당가능 비용으로의 접근권	가족, 아동 및 성인 피부양자 지원	목표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 보장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사회보장권에 대한 보편적 실시 시기		
		-보험 혹은 세금기반 사회 안전 제도의 발효일 및 범위	-법정상품을 포함한 약품정책의 기간 및 범위	-한부모 가족, 아동 등에 대한 공공 지원의 발효일 및 범위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용/정부가 옹한 비용 -사회보장 자격과 혜택에 대한 목표인구의 교육 비용 -사회보장에 관한 ODA의 공공지출이나 GNP에 대한 비용		
	결과 지표	-사회 안전제도 참여자로 등록된 노동자의 수	-기초건강 시설 및 필수 의약품에 대한 1인당 공공 지출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 및 얹혀사는 성인들에 대한 가구지출의 비율
	-사회보장제도에 참여중인 노동 인구비율 -사회보장혜택을 요구하고 받은 근로자 비율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의 비율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족, 개인, 아동 및 성인 중 실제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음식, 주택, 건강검진, 교육, 구호 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이를 제공받는 인구의 비율
부분속성	-사회이동 전후로 공식적/비공식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국가빈곤선 이하에 놓인 개인의 비율			
의사표현의 자유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언론인의 윤리강령이 시행된 시점		
부분속성	의사의 자유 및 정보를 공유할 권리	정보 접근권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르는)특별한 의무와 책임	

		- 명예훼손 및 비방의 비범죄화를 포함하는 미디어의 자유보호를 위한 법률의 발효일자 및 범위	- 정보 접근에 대한 법률의 발효일자 및 범위 -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 전쟁 목적의 프로파간다를 금지하는 국내법의 발효일자 및 범위 -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을 조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종교적, 인종적, 성차별적 혐오를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의 발효일자 및 범위		
	과정 지표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옹한 비율 - (유엔)특별보고관의 조사, 보고에 대해 정부가 옹한 비율				
	결과 지표	- 공적 혹은 사적으로 소유된 신문, 매거진,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 인터넷 사이트의 수와 시정률	- 100명당 인터넷 사용이 이루어지는 개인 컴퓨터 수 - 1000명당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의 수	- 명예훼손, 비방 등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사법처리의 비율		
	결과 지표	-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제재나 압력을 받았다고 보고한 언론인의 수	- 문서, 아카이브 및 행정적 혹은 기업의 공익적 데이터의 비공개 사례 - 상이한 언어사용 인구집단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미디어 방송에 접근하는 비율	- 명예훼손 및 비방의 피해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국가나 기타 행위자에 의해 기자, 인권 옹호자 및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살인, 실종, 구금 및 고문의 사례				
부분속성	법원/중재법원의 접근권과 법원에서의 평등	능력 있고 독립적인 법원의 공개심리	무죄추정원칙의 준수	어린이에 대한 특별보호	상급법원의 재심	
공정한 재판	구조 지표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과정 지표	- 법원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의 발효일자 및 범위	- 강탈, 뇌물수수, 부패 관련 사법처리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 특정 인구집단에 법적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 범죄아동의 사회부귀 시스템의 발효일자 및 범위	- 상급법원에의 호소 및 유죄판결과 형벌에 대해 개관할 수 있는 권리의 발효일자 및 범위
	과정 지표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옹한 비율 - (유엔)특별보고관의 조사, 보고에 대해 정부가 옹한 비율 - 관사, 검사, 변호사 중 인권교육 받은 비율				
	결과 지표	- 대안적 중재처리와 관련된 사례의 비율 - 경찰에 보고된 범죄율	- 군사법정 혹은 특별법정에 회부된 민간인의 수/비율	- 법적으로 명시된 체포와 공판 사이의 시간차를 초과하는 사례의 비율	- 투옥을 선고 받은 청소년의 비율	- 호소할 권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특정 법적 이슈들의 비율
	결과 지표	- 개인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대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빈곤층 피고인의 유죄판결 비율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공청회의 비율	- 질석 재판(부재중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는 비율	- 1,000명당 체포/구금되는 아동의 수 - 청소년 재범률	- 유죄판결 중 감형 혹은 형이 무효화된 비율
		- 임의적 구금의 사례 - 오심사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비율				
부분속성	성작·생식건강 및 해로운 전통 관습	가정폭력	직장 내 폭력, 강제노동, 인신매매	사회폭력, 범죄행 인력의 권력남용	폭력발생 후 응급상황	
여성에 대한 폭력	구조 지표	-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법원이나 행정부의 정책으로 현실화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과정 지표	- 법적으로 기재된 결혼 최저 연령	- 부부간 및 근친상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발효시일 및 범위	- 지정성희롱을 방지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간 및 범위	- 경찰력에 의한 폭력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기간 및 범위	- 갈등, 갈등이후, 혹은 비상상황을 예방 혹은 명시하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기간 및 범위
	과정 지표	-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옹한 비율 -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알리는 운동에 대한 공공지출 - 여성에 대한 폭력 가해자의 수				

		-18세 이하의 기혼여성 비율	-1,000명당 이용 가능한 주거지 및 은신처의 수 -가정폭력 금지조항의 수	-매춘업에 종사하는 이인자 비율	-경찰에 보고된 성범죄 비율	-적절한 의학적, 심리적, 법적 서비스에 접근하는 성범죄 및 기타 폭력의 피해자 비율
	결과 지표	-할례당한 여성의 비율 -출생시 및 5-9세의 남녀 성비 -산모의 사망률 및 위험한 낙태로 인한 사망률	-지난 1년/생애 전반에 걸쳐 최근 혹은 이전 배우자에게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당한 여성의 비율	-인신매매, 성적 착취,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은 남성/여성의 사례 보고건수	-공공장소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여성/남성의 비율	-갈등, 갈등이후, 혹은 비상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살해 등의 여성폭력의 사례 보고건수
		-여성 살해율 -연간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부분속성		법 앞의 평등과 인격 보호	공직자 및 민간인에 의한 직간접적 차별 적정 기준의 생활, 건강, 교육에 대한 접근	생계기회의 평등	정책결정 참여를 포함한 특별조치	
차별 금지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차별금지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가 시행된 시점 -차별금지의 권리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배포 그리고 그 정기성 -등록된 혹은 활발한 NGO의 수				
		-평등한 보호, 안전 및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간과 범위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간과 범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정책의 기간과 범위	-인권향유를 보장 혹은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간 및 범위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차별적 행동의 철폐를 위한 목표인구(법시행인력)의 교육여부				
		-차별 및 편견으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들 중 법적 지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는 공공 건물의 비율	-작장에서 차별 및 과다근로를 경험한 근로자 중 소송이나 행정 조치를 요구한 사람들의 비율	-모든 교육단계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인구집단들 간의 이해를 고취시키는 교육기관의 비율	
	결과 지표	-중요범죄, 가정폭력등 범죄의 목표집단별 발생수 빈도 -일상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목표집단의 고문, 구금, 실종 및 자의적인 살해 보고 건수 -개인번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대비 국선번호인을 선임한 빈곤층 피고인의 유죄판결 비율 -직간접적 차별과 중요범죄의 피해자 수 및 보상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비율				
부분속성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	실종	건강과 영양	사형제도	
생명권	구조 지표	-국제협약비준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국제인권기구협약의 국가인권제도의 형태				
		-검시관과 사인증명 시스템 제도의 기간과 범위	-헌법에서 인신보호영장 조항의 발효일과 범위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사형제를 폐지한 하위국가 행정단위의 수	
	과정 지표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사망 혹은 생명의 위협을 야기한 물리적/비물리적 학대, 범죄에 대한 법률 집행관의 공식 조사율	-법적 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공판 전까지 구금한 사례의 비율 -법원에 제출된 구금자 1,000명당 인신보호영장 및 유사한 탄원서의 수	-훈련받은 보건요원의 보조 하에 출산이 이루어진 비율 -식이에너지 소모의 최저기준 이하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균 시간 -성별, 연령, 국적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수		
	결과 지표	-인구 10만 명 당 살인 건수 -구금, 수감자 천명 당 사망자 수 -(유엔)특별보고관의 조사 등을 통해 보고된 자의적 생명 박탈과 그 위협 건수				
		-실종 보고 사례	-유아 및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사형선고자의 감형 비율 -사형 집행 빈도		

출처: UN OHCHR (2012)

▷ FRA 아동권 지표

핵심 영역	지표 그룹	지표 유형	예시
가족 환경 및 대안적 돌봄	아동을 고려하는 가정 사법 절차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 접근 및 유괴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게 연령 및 수용능력에 맞춘 즉각적 협의에 대한 법적 의무 -아동과의 독자적인 협의를 위해 가족 과정(family processes) 혹은 제공(provision)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전문 대리인을 제공할 법적 의무 -연령과 수용능력에 맞춰 아동들을 즉시 중재과정에 포함시키는 권고 및 의무 -가족 사법의 여건을 아동의 필요/권리에 맞춰 조정하는 법적 의무와 과정 -아동들의 다양한 필요사항(언어, 연령, 문화, 장애 등)에 맞춘 법적 전문가를 위한 아동 상담 전문가 교육제도
	양육권, 접촉권 및 양육비 제도의 집행	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결, 신속하고 경제적인 시행 절차 -법체제, 절차 및 언어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특정한 어려움을 명시하는 제언 및 정보의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한 전문적인 법적 조인과 규정 불이행 사례를 추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국경 밖으로 유괴된 아동 복지에 대한 감시 메커니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연령, 수용능력 및 언어적 필요에 맞춰진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는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법적 정보 -국제적 유괴 상황을 담당하는 당국들의 효과적인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유괴로 인해 부모/양육자가 부재한 아동과 지속적정기적으로 접촉할 안전하고 적절한 수단 -접근 가능한 긴급 지원
	이민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이민과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독자적인 합법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국내법의 존재 여부 -분리된 아동들의 합법적 의사표현이 권한부여 및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토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분리된 아동의 권리 및 욕구를 대변하는 개인들에 대한 교육 조항 -분리된 아동들에게 그들의 사회권 및 시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의 존재 여부 -합법적 의사표현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돕는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지원책의 존재 여부
	분리된 아동들의 취약성에 대한 이민 과정의 적응성	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연령, 성별, 언어 및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는 이민절차 -이민절차가 모든 측면에서 분리된 아동들의 최적의 이익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정기적 관찰과 검토 -아동의 이민자 자격을 결정하는 직원(법조인, 통역인, 관찰기관 임원 등)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규정 -아동의 망명신청 제출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기까지의 평균적 시일
	아동들에게 최적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가정 재결합 기회의 제공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학적 혈통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가족 구성원들과 아동의 재결합을 허용하는 법률/정책 -가정의 재결합이 아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명확한 지침(전체적인 위험 및 보안 평가를 포함하는)
	아동을 포함하는 가정 재결합 절차의 신속성	과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재결합을 시도하는 아동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정부 및 공공단체의 존재여부 -1년 간 아동을 포함하는 가정 재결합의 달성 비율(아동이 포함된 모든 신청 건수 대비)(아동의 연령/성별/국적에 따라 분류) -아동이 포함된 가정 재결합의 최초 신청으로부터 최종 승인까지의 평균 경과시간(아동의 연령/성별/국적에 따라 분류) -1년 사이 다른 회원국들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아동과의 재결합 비율(아동의 성/연령/국적에 따른 분류)
	가정 재결합에 따른 아동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구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가정 재통합에 따른 아동 복지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 혹은 기타 전문가 임명을 요구하는 법적 조항 -가정 재통합에 따른 (교육, 건강검진, 재정 지원, 상담 등의) 필수적 서비스들에 대한 아동의 즉각적인 접근 권리 -출생국, 혹은 제 3국으로 귀환하는 아동들의 수용 조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절차

핵심 영역	지표 그룹	지표 유형	예시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확인	구조/과정/결과	-연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일어나는 아동 인신매매의 전체 건수(인신매매의 형태 등에 따라 분류) -유괴된 아동의 신원파악을 위한 경찰, 청소년 복지 담당자 및 사회복지사, 의료 종사자, 난민과 이민 문제를 다루는 NGO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청소년 복지 당국, 경찰, 보호 시설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유괴 아동의 데이터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모든 분리된 아동을 위한 즉각적인 법적 후견을 제공하는 법적 조항 -유괴된 아동의 신원파악, 협조 및 알선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조회 시스템
	-피해자 보호	구조/과정	-경찰/법원과의 협력과는 상관없이 유괴 피해자들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항 -유괴된 아동들에 대한 행정적 구금/이송 때까지의 구금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 -유괴된 아동의 자국 귀환에 앞서 적절한 수준의 임시적 보호와 장기적 해결책의 결정 과정(위험 및 안전에 대한 평가 포함)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숙소,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 교육에 대한 접근 등)의 질적 평가 시스템(아동의 관점에 의한 평가)
	-가해자 고발	결과	-경찰에 보고된 사례들에 대한 연간/5년 간 아동 유괴 사례에 대한 유죄신고 건수(disaggregation) -연간 유괴된 아동들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금(disaggregation)
	-아동유괴 예방	과정	-지역 공동체 및 취약 집단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성적, 경제적 착취		
	-피해자의 신원확인	구조/과정/결과	-성적 아동착취: 성적 착취의 위험에 놓인 아동의 신원파악을 위한 데이터 컬렉션 및 탐지 메커니즘(disaggregation) -경제적 아동착취: 경제적 착취의 위험에 놓인 아동의 신원파악을 위한 데이터 컬렉션 및 탐지 메커니즘(disaggregation)
	-피해자 보호	구조/과정	-아동 성매매: -아동학대 영상: 아동 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영상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 정책 -아동학대 영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모바일폰 회사, 검색엔진 및 기타 관련자들로 하여금 아동 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 및 서비스를 당국에 보고하고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조항 -경제적 아동 착취: 전체 노동 사찰 방문 횟수 가운데 청소년 노동 방지에 초점을 맞춘 노동 사찰 방문의 횟수(disaggregation)
	-가해자 고발	결과	-성적 아동착취: '매춘 관광(sex tourism)'을 다루는 치외법 하에서의 고발 건수(disaggregation) -아동 학대 영상: 아동에 대한 가상 영상 및 성 착취적 표현을 통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영상의 생산, 배부, 수령 및 보유를 범죄로 지정하는 법적 조항
	-아동유괴 예방	과정	-아동 학대 영상: 의무적인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온라인 안전교육 시행 및 이를 통한 인식 고양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자의 신원확인	구조/결과	-아동폭력의 성행/규모/형태와 아동 서비스의 영향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해 지정된 국가 예산 -아동 복지 당국에 의해 보고된 방치 아동의 수 (아동 복지 당국에 보고된 아동 보호의 전체 사례 수 대비, disaggregation)
	-피해자 보호	구조/결과	-모든 장소(집, 학교, 보건시설 및 법률 기관 등)에서 훈육수단으로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조항 -보육시설, 초등 및 중등교육 내에서 고발 및 비밀 상담이 아동에 대해 갖는 이용 가능성 -아동폭력 및 착취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지원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조항
	-가해자 고발	구조/과정/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폭력 건수와 관련된 경찰에 의해 보고된 아동폭력 건수 -아동과 성별을 고려하여 아동 피해자/증인을 위한 법정 절차를 보장하는 법조항(지정된 집건실,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진술 등)
	-아동유괴 예방	구조/과정	-아동이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양육 교육 캠페인에 대한 공공 지원 정책의 입안의 근거 -미아에 대한 청소년 복지 당국, 경찰, 미디어 간의 구체적인 협력 정책 -학교로 하여금 아동 보호 방침(학교 내 집단 따돌림 개념의 명시와, 따돌림 방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 등)의 채택을 요구하는 법조항

핵심 영역	지표 그룹		지표 유형	예시
직접 한 생활 수준	아동의 소득빈곤	상대적 아동빈곤	결과	한계치 이하의 빈곤상황에 놓인 아동의 퍼센티지(표준화된 국가 중간소득의 60, 50, 40%) *구분(disaggregation)기준 -가구당 아동의 수 -편진 및 양친과 함께 사는 아동 -부모의 노동 강도 -민족적 출신
		관계적, 세대적 아동빈곤	결과	18세 초과 성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 대비 18세 이하의 전체 아동 인구의 상대적 빈곤
		빈곤격차	결과	빈곤 한계치 및 그 이하에 놓인 아동소득 대비 중간소득비율
		절대적 빈곤	결과	10/5/2유로 미만(민족 출신에 따라 소득수준 구분)의 소득을 받는 아동
		빈곤의 지속	결과	3년간의 빈곤 아동 퍼센티지로 측정되는 아동 빈곤률(아동의 민족 출신에 따라 구분)
	정부 대응의 영향	아동에 대한 상대적 공공지출	결과	가족/아동에 대해 기능하는 보조금 지출(사회 보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 전체인구 중 0-17세 아동의 지분으로 환산
		아동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정부개입의 효과	결과	아동의 빈곤위험 회피에 사회적 이전(연금 제외)이 미치는 영향(사회적 이전이 시행되기 전후의 아동 빈곤 회피율 비교)
		아동 복리후생	결과	종합지수(composite index) 로 측정된 국가들 간의 순위
	아동의 주관적 지각과 소득빈곤을 넘어서는 양상들	가족의 부	결과	가족의 부가 적은 아동의 퍼센티지
		아동의 교육용 소지품	결과	OECD의 교육용 소지품 척도(OECD-PISA)가 포함하고 있는 8개 항목(공부할 책상, 조용한 장소, 학업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계산기, 사진, 학교 교과서) 가운데 소지하고 있는 항목이 6개 미만인 아동의 퍼센티지
교육, 시민권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 대한 접근성	구조/결과	-이민 아동이 현지 국민들과 모든 수준에서 평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의무 -동일 연령대의 모든 아동들 중에서 가족 외부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동의 퍼센티지(ISCED level 0) -동일 연령대의 모든 아동들 중에서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의 퍼센티지(ISCED level 1, 2) -15세에서 19세 연령대의 모든 아동들 중에서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아동의 퍼센티지(ISCED level 3)	
	교육의 적응성	과정/결과	-외국인 아동의 연령, 성별, 문화 및 언어습득을 고려한 학교 내 전문적 지원 제공(재정적 지원, 이동 보조, 보충적 언어수업) -동일 교육 수준에 속한 모든 아동들 가운데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받는 아동의 퍼센티지(disaggregated) -동일 교육 수준에 속한 모든 아동들 가운데 정서장애, 행동장애, 학습장애로 인한 추가적 재원을 제공받는 아동의 퍼센티지(disaggregated) -동일 교육 수준에 속한 모든 아동들 가운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 환경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추가적 재원을 제공받는 아동의 퍼센티지(disaggregated)	
	자아개발/시민권 및 참여	과정/결과	-다음과 같은 교내 활동들에 참여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 □ 학교 혹은 학생 자문회의의 구성원 활동 □ 학급 반장 활동 □ 학생역할 혹은 학생모임 내에서의 활발한 참여 □ 또래 중재자로서의 활동 □ 학교 신문 제작의 공동참여 □ 또래 멘토 혹은 상담자 역할 -다음과 같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활동들에 참여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 □ 아동 혹은 청소년 포럼에의 참여 □ 아동 혹은 청소년 협회나 조직에의 참여 □ 아동 혹은 학생 자문회의의 대표자로서 참여 □ 지역 공동체 프로젝트에의 참여 □ 집단적 지지운동(서명운동 등) 참여 □ 시위활동 참여 □ 자원봉사 참여	

출처: FRA(2009)

▷ FRA 장애인 정치적 참여 권리 지표

구분	주제	지표
구조	정치참여를 제약시키는 법·행정 장애물 해제	장애인권리 위원회 29조항 - 정치, 시민사회 참여
		장애인권리 위원회 29조항 - 법 앞의 평등
		국가적 전략
		투표권의 제한
		투표에 필요한 법적 사항
		투표의 대안적 방법
		도움제공 의무
		항의/고소를 위한 법적 자격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 인식 증진	장애인권리 위원회 29조항 - 정치, 시민사회 참여
		장애인권리 위원회 9조항 - 접근성
		국가적 전략
		선거관리자들에 대한 훈련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투표 절차, 시설, 선거 자료 준비	장애인권리 위원회 9조항 - 접근성
		장기적 관리 기관에서의 투표
		인터넷 접근성
		오디오 비디오 접근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도움제공 의무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권리 위원회 29조항 - 정치, 시민사회 참여
	장애인권리 위원회 9조항 - 접근성	
	투표의 대안적 방법	
	인터넷 접근성	
	오디오 비디오 접근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과정	정치참여를 제약시키는 법·행정 장애물 해제	항의, 고소, 민원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
		고소 사례
		항의 및 민원 사례
		국제 항의 사례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 인식 증진	DPO 개입
		성명서 제공노력
		투표소에 대한 가이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투표 절차, 시 설, 선거 자료 준비	DPO 개입
		성명서 제공노력
		투표소에 대한 가이드
		항의, 고소, 민원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정치참여 기회 확대	DPO 개입
결과	정치참여를 제약시키는 법·행정 장애물 해제	장애인 국회의원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의원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권 인식 증진	인터넷 웹사이트 접근성
		텔레비전 접근성
		선거관련 공지 접근성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투표 절차, 시 설, 선거 자료 준비	투표소 접근성
		공공시설 접근성
		인터넷 웹사이트 접근성
		텔레비전 접근성
	정치참여 기회 확대	선거관련 공지 접근성
		장애인 국회의원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의원

출처: FRA (2014)

▷ 캐나다 평등권 프레임워크

영역	지표	구체적 자료
경제적 웰빙	수입불평등(총수입)	5분위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수입 분배
		고등교육과정 이수자의 국내외 수입에 대한 분배
	저수입	저수입에 대한 측정치
		저수입 차이
		지속적인 저수입
		정부 보조금이 주수입원인 비율
	수입중앙값(개인과가구)	특정 보고 기간 내 정부 보조금이 주수입원인 비율
		개인과 가구 수입 중앙값
	부	고등교육이수자들의 개인과 가구5분위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국내 외수입 중앙값
		가구의 순재산 중앙값(미혼 개인과 가족)
교육	교육 접근성	5분위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부 분배
		교육 접근성 비율(신체적 개선, 보조 서비스/장비 등-초등, 중등 교육졸업 장애인들의 교육 필요성 보고에 따른)
	교육적 성과(25-64세)	고등교육과정 이수자의 정부 교육 예산 사용 정도
		졸업 비율(고등학교 졸업, 학사, 석사, 박사)
	입학비율(중등, 고등교육 기관)	고등학교 입학 비율
		대학교 입학 비율
	학업 중도 포기 비율	중고등학교 중도포기 비율
		장애로 인한 학업 포기 비율
	식자(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등급	성인 식자 등급
	교육 차별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차별
인권위원회/재판소에 제출된 고소, 항의 비율		
고용	수입 지원에 대한 접근성	고용 보험 이용가능 비율
		모성, 육아 복지 이용가능 비율
	노동력 운용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률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비율
		능력이하 고용 비율(불완전 고용비율)
	평등 고용	진정, 고용, 승진 비율
	외국인의 능력에 대한 승인	능력과 직업의 적합성 비율
		대학교육 이수자들의 불완전 고용 비율
직업의 복지	노동조합비율	
	모성, 육아 복지 이용가능 비율	
	퇴직연금 이용가능 비율	
	장기장애에 대한 복지 이용 비율	
차별(고용현장에서의 성희롱 포함)	차별 경험 비율	
	인권관련 기관이나 재판소에 제출된 고소, 항의 비율	

영역	지표	구체적 자료
건강	건강관련 복지에 대한 접근성	건강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자기 보고 비율
	아이와 어머니 건강	출산전후 육아 사망률
	건강 제한 조건	에이즈 전염
		비만 비율
	기대 수명률	기대수명률
	정신적 건강	자기보고 정신 건강
		기분장애 비율
		자살률
건강복지에 대한 차별	건강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느낀 차별	
	인권관련 기관/재판소에 고소 비율	
주거	주거의 질과 주거 구입 능력	적절한 주거환경에 살지 못하는 사람 비율
		주거에 50%이상의 수입을 지출하는 가구 비율
	주거 접근성	집수정,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비율
	노숙	집이 아닌 보조 주거 장치를 사용 하는 비율
	주거차별	경험했던 주거 차별 비율
인권위/재판소에 보고된 고소 비율		
정의와 안전	법 집행의 공정성	구금
		유죄 판결
		형 선고
		죄수의 의견 진술
		소년범의 사형
	가족 폭력	배우자 폭력
	중요 범죄	자기 보고 증오 범죄
		증오범죄 사건
	폭력 범죄	폭행, 성범죄, 절도
		살인율
범죄 취약성	범죄 취약성에 대한 인식	
법 집행에서의 차별성	재판, 치안유지에서의 차별	
	인권위/재판소에 보고된 고소 비율	
정치적 개입 과 사회 통합	정치적 개입	투표자 참여율
		입후보 비율
		선거율
	사회통합	국가, 시, 지역에 속해 있다는 느낌의 정도
		봉사 비율
		시민 참여 비율
	특정 서비스와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 차별	특정 서비스와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 차별
인권위/재판소에 보고된 고소 비율		

출처: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0)

▷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여성 권리 지표

구분	지표	측정 사례	근거 조항
교육	교육 등록	고등학교 등록 고등교육 등록	교육권은 캐나다가 비준한 사회권협약 13조와 아동권리협약 28조에 근거함 여성차별철폐협약 10조는 교육 영역에서 모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교육 수준	최고 학력	
	고등학교 중퇴		
	교육 보조에 대한 접근	정부 후원 학생 대출 이용 정부 후원 학생 대출 유형 정부 후원 학생 대출 평균 금액 학생 대출 상환의 어려움 학생 대출 채납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고용	노동력에서의 지위	고용 지위 단수, 복수 문제 유형 및 산업 분야에 따른 고용 고용 유형 업무 위치 만성적 실업	사회권협약 6,7조는 일할 권리, 생계 유지 기회, 우호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함
	전문화와 고용 간의 관계		
	일 관련 혜택	고용주 후원 의료 보험 이용 가능성 고용주 후원 연금 보험 이용 가능성 고용주 후원 생명 보험 이용 가능성 노조 가입 및 단체 협약에 의한 보험	
	일의 질	업무 만족도 일과 생활의 균형	
	소득 보조에 대한 접근	고용보험 혜택 사회적 지원	
경제적 웰빙	가구 실소득액	조정된 가구 실소득액 중간값 분위별 조정된 가구 실소득액 중간값	사회권협약 6-11조는 공정한 급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사회적 안전, 적절한 생활 수준 등의 권리를 규정함
	저소득	저소득 상태 저소득층 평균 소득 격차 비율 지속적인 저소득 상태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정부의 개인 이전	
	부	순자산 중위값 분위별 순자산 중위값	
주거	주거의 질과 구입 능력	핵심적 주거 수요 수리가 시급한 주택 세전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에 지출 세전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에 지출	적절한 주거는 사회권협약 11조에 규정되어 있음
	홈리스 상태		
	주거에서의 차별		
건강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건 수요 미충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의사 접근성 의사 접근이 불가능한 이유	사회권협약 12조는 모든 사람이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여성차별철폐협약 12조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체질량지수		
	기대수명		
	정신 건강	생활 스트레스 업무 관련 스트레스 기분 장애 불안 장애	

구분	지표	측정 사례	근거 조항
	보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노동에 대한 건강 상태의 영향		
	공공 의료시설 또는 의료 종사자 관련 차별		
정의와 안전	사법 시스템 경험	사법 시스템과의 접촉 유치장 구금 사법 시스템에 의한 결정 가석방	인권은 구금, 체포, 기소, 선고, 수감 상태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 및 사법 시스템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함(UN, 2005).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경찰과의 접촉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 및 법원 관련 차별		
	가정 폭력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정서적 재정적 학대 지난 5년 동안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학대 과거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정서적 재정적 학대 지난 5년 동안 과거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학대	
	중요 범죄		
	범죄 피해자		
범죄에 대한 취약성	해가 진 후에 혼자 걸을 때 인식하는 범죄 취약성	해가 진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인식하는 범죄 취약성	
	저녁 또는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인식하는 범죄 취약성	범죄로부터의 개인 안전	
	주변 지역의 범죄율 변화		
보호소 이용			
정치 참여와 사회 통합	정치 참여		캐나다의 법률과 자유권 협약 25조는 투표권 및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여성차별철폐협약 7조는 여성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서 남성과 평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조는 여가 활동, 체육 등 문화적 측면에서도 남성과 동일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
	사회 통합	지역사회 소속감 자원활동 시민단체 활동 참여 인터넷에서 중요 또는 폭력 접촉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전반적 차별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차별 서비스 및 여가에서의 차별 거리에서의 차별 상점, 은행, 식당에서의 차별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캐나다 국경 출입 관련 차별	

출처: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4)

2.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구분	가입년도	보고서 기한	보고서 제출	NGO 반박보고서 작성연도	최종견해 공포년도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1990	1991	1991		1992
		1996	1997	1999	1999
		2003	2005	2006	2006
		2010	20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1990	1992	1993		1995
		1997	1999	2001	2001
		2006	2007	2009	2009
		2014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78	1980	1980		
		1982	1982		
		1984	1984		
		1988	1988		
		1990	1990		1991
		1992	1992		1994
		1994	1995		1996
		1996	1998	1998	1998
		2000	2002	2003	2003
		2002	2006	2007	2007
		2010	2012	2012	2012
2016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84	1986	1986		1987
		1990	1989		1994
		1994	1994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2002	2003	2007	2007
		2006	2007	2007	2007
		2010	2010	2011	2011
2015					
아동권리위원회	1990	1993	1994	1996	1996
		1998	2000	2002	2003
		2008	2009	2011	2012
		2017			
고문방지위원회	1995	1996	1996		1997
		2000	2004	2005	2006
		2012			
장애인권리위원회	2008	2011	2011	2013	2014
		2019			

3. 지표에 활용된 자료 생산 기관과 자료명

대분류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이행기제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UN인권최고대표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조약정보 인권통계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등 조약기구 정기검토 최종보고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등 조약기구 특별보고 대한민국에 관련된 보고서 목록 ICC Accreditation Report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여성가족부 통계청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경찰·소방·교정직여성공무원성차별개선을위한실태조사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연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시민·정치적 권리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 국방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법무연수원 국민안전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망원인통계 범죄통계 전국출산력 가족아동보건복지실태조사 사법연감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조사 및 구제 통계 인권상담통계 국감자료(이한성, 이병석, 홍일표 새누리당의원제출) 치료감호수용현황 범죄백서 국방통계연보 재해연보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분석 장애인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요보호아동발생 및 조치 현황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학대 통계

대분류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고용노동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의신문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헌법재판소 검찰청 지방변호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노인학대현황 내부자료(유대운의원청구자료) 해외이주신고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국내인구 이동통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통계 한국의 종교현황 등급분류통계 경찰통계연보 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 경찰백서 한국시민사회연감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안전행정통계연보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소송통계 2011 고문피해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검찰통계시스템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총람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현황 제출자료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방송통신심의백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교통부 통계청 법무부 환경부 한국고용정보원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OECD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거실태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임대주택통계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 수질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통계로 본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통계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장애인현황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대분류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p>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p>	<p>장애인 농가경제조사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예산안 (재정통계) 사회복지시설현황 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사회서비스 전자마우처 시스템 장애인실태조사 2013 한국통계연감 건강보험백서 보육통계 국민연금 통계연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통계연감 지역별 고용조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고용보험DB 고용노동백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산업재해현황분석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건강통계 의료급여통계 보훈병원 사업실적자료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인구동향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생명표 노인실태조사 정신질환 실태조사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살실태조사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기본통계 어린이집 이용자 통계</p>

대분류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유초등통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평생교육통계 청소년백서 Education at a Glance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통계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국가장학금 지급현황 특수교육통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문화체육관광예산 여가문화비 대비 가계지출비중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ISO 26000, UNGC 노동쟁의조정 사례집 기업 노동자 차별 권고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동반성장지수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차별 권고 내역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대한민국 지속가능지수 노사브라보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전자공시시스템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저작권법 위반 건수 기업의 인권위 권고 수용 비율 환경종합정보서비스 대중소탄소파트너십 사업 기업별 지속 가능 보고서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환경통계연감 도시계획현황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환경산업통계조사 환경보호지출계정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업환경관리 현황 국가재난정보센터

4. 설문지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인권과개발센터(센터장 구정우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뢰받아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권통계를 생산하고 발굴하는데 토대가 되는 인권프레임과 분류체계, 인권통계 pool 구성, 인권통계의 활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통계 구축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영역별·대상별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인권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그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해서 취합하는 조사를 통해서 1) 인권통계 분류 체계를 확인하고 하위지표와 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2) 인권의 하위지표와 항목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통계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첫 번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권프레임에 대한 평가와 하위지표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질문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성균관대학교 인권과개발센터

조사대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조사관련문의 : 김대옥 010-9907-****)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 인권통계

문1. 00님은 전반적으로 국내 인권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필요하다 | (2) 다소 필요한 편이다 |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2. 00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또는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인권통계는 어떤 분야/어떤 종류의 통계입니까?

문8. 인권통계의 개발, 생산,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맡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통계청 (2) 국가인권위원회 (3) 제3의 기구 (4) 기타_____

문9. 00님은 인권통계를 구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가 및 사회 수준의 통계 (2) 특정집단별로 세분화된 통계
(3)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 (4)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통계
(5) 일정한 주기로 생산되는 통계 (6) 기타_____

문10. 00님은 인권통계가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중요하다 (2) 약간 중요하다 (3) 중요하지 않다

※ ‘국가승인통계’: 통계청은 다양한 기관들이 생산하는 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인을 거친 기관만이 국가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문11. 00님은 인권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는 대체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1년 이하 (2) 1년 (3) 2년 (4) 3년 (5) 3년 이상

문12. 인권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I. 인권프레임과 하위 지표

※ 인권지표에 관한 선행연구와 OHCHR(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지침에 근거하여 인권통계의 전반적인 프레임으로서 1) 인권의 이행기제, 2)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시민·정치적 권리,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 집단 권리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분류	중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행 기제	국제법/제도(국제협약의 범위)	(1)□ (2)□ (3)□
	국내법/제도(인권기구 및 제도)	(1)□ (2)□ (3)□
	인권교육	(1)□ (2)□ (3)□
	시민사회와의 협력	(1)□ (2)□ (3)□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종 차별	(1)□ (2)□ (3)□
	여성 차별	(1)□ (2)□ (3)□
	장애인 차별	(1)□ (2)□ (3)□
	기타 차별	(1)□ (2)□ (3)□

문14. 이행 기제, 평등권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2. 시민·정치적 권리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분류	중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시민·정치적 권리	신체권	(1)□ (2)□ (3)□
	자유 및 안보권	(1)□ (2)□ (3)□
	기본적 자유	(1)□ (2)□ (3)□
	정의로운 행정	(1)□ (2)□ (3)□
	구제받을 권리	(1)□ (2)□ (3)□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1)□ (2)□ (3)□
	참정권	(1)□ (2)□ (3)□
	결혼권/가족권	(1)□ (2)□ (3)□

문16.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분류	세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신체권	생명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제노사이드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비사법적살인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사형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구금 환경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노예, 인신매매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자유 및 안보권	자유와 안보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강제실종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자의적 체포 및 구금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의견과 표현의 자유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결사의 자유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사생활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정의로운 행정	재판받을 권리/공정한 재판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법 앞의 평등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구제받을 권리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보상과 회복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불처벌 (Impunity)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임의적 국적 거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정체성 보호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참정권	투표 및 선출될 권리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결혼권/가족권	결혼 및 가족 구성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사이의 평등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가족 보호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문18.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중분류의 하위지표로서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 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분류	중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노동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교육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 (Financial Credit)권리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문화적 권리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문20.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 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분류	세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량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주거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빈곤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노동권	일할 권리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작업환경권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Trade Union Rights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건강 서비스 접근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아동 및 모성 건강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건강 제한 조건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기대 수명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정신 건강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교육권	교육 보조 접근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교육 성과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록률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중퇴율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문해율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교육에서의 차별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중분류	세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채무신용(Financial Credit)권리	재산 및 상속과 관련된 권리	(1)□ (2)□ (3)□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취득명령 (purchase orders), 축출, 재정착	(1)□ (2)□ (3)□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1)□ (2)□ (3)□
	문화의 보존, 발전, 확산과 관련 된 권리	(1)□ (2)□ (3)□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1)□ (2)□ (3)□
	지적재산권의 보호	(1)□ (2)□ (3)□

문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
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4. 집단 권리

문23.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집단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분류	중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단 권리	여성	(1)□ (2)□ (3)□
	아동	(1)□ (2)□ (3)□
	장애인	(1)□ (2)□ (3)□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1)□ (2)□ (3)□
	이주민	(1)□ (2)□ (3)□
	난민	(1)□ (2)□ (3)□
	인권활동가	(1)□ (2)□ (3)□

문24.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집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분류	세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여성	교육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고용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웰빙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주거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건강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정의와 안전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정치 참여와 사회 통합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아동	아동권리의 일반 원칙, 보호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가정 환경과 대안적 돌봄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착취로부터의 보호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사법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무력 분쟁과 아동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장애인 권리의 일반 원칙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접근성, 이동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보호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독립 및 포용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와 안전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문26.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에서 세분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집단	1순위	2순위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		

Ⅲ.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의견

문28.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인권항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분류	중분류	(1) 매우 적절하다 (2) 비교적 적절하다 (3) 전혀 적절하지 않다
시민·정치적 권리	인권과 반테러	(1)□ (2)□ (3)□
	국제 인도적 법률	(1)□ (2)□ (3)□
	정보인권	(1)□ (2)□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비즈니스와 인권	(1)□ (2)□ (3)□
	환경권	(1)□ (2)□ (3)□

문29. 문28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문30.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2순위	

※ 다음은 단순히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S1. 성별 (1) 남성 (2) 여성
- S2. 연령대 (1) 30대 이하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 S3. 학력 (1) 대학교 이하 (2) 대학원 이상
- S4. 소속 (1) 대학 교수 (2)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원
(3) 인권단체/시민단체 활동가 (4) 변호사/법조인/법학 교수
(5) 정책입안자 (6) 기타
- S5. 관심 있는 인권분야 1순위 2순위
- S6. 주된 활동지역 -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2) 중소도시 (3) 시군구
- S7. 주된 활동지역 - (1) 서울 (2) 인천/경기 (3) 강원 (4) 호남권
(5) 충청권 (6) 영남권 (7) 제주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자유권)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인권과개발센터(센터장 구정우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뢰받아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권통계를 생산하고 발굴하는데 토대가 되는 인권프레임과 분류체계, 인권통계 pool 구성, 인권통계의 활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된 인권프레임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분류된 하위지표와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질문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성균관대학교 인권과개발센터
(연구문의: 김대옥 조교 010-9907-****)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 인권프레임 평가

※ 인권프레임은 I. 인권의 이행 기제, II. 평등권, III. 시민·정치적 권리, IV.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V. 소수자 권리의 대분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시민·정치적 권리는 5개의 중분류 지표와 26개의 세분류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정치적 권리의 각 분류 체계와 하위 지표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하다 (2) 대체로 적절하다 (3) 적절하지 않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시민·정치적 권리	신체권	1. 생명권 2. 사형의 제한 3.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4. 구금 환경 5. 인신매매 금지 6. 안전할 권리 7. 실종 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기본적 자유	1. 이동의 자유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3. 의견과 표현의 자유
		4. 집회의 자유
		5. 결사의 자유
		6. 사생활 보호권
		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행정적 정의	2. 사법적 구제
		3. 피해배상 청구권
		4. 사면 및 면책
		1. 투표할 권리
	참정권	2. 선출될 권리
		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4. 공공서비스 접근권
1. 정보사생활보호권		
정보인권	2. 정보접근권	
	3.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2. 시민·정치적 권리의 프레임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II. 시민·정치적 권리의 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1. 신체권

1. 신체권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생명권	자살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살인 사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아사망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성사망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임신 중절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운수사고 사망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형의 제한	사형 선고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간첩죄 중 사형/무기징역 선고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형 선고자 사면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문 및	고문·가혹 행위 진정서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인간적 처우	고문·가혹 행위 인권위 상담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문·가혹 행위 관련 법집행관 기소/징계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승인 없는 구금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사관의 가혹행위 인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금환경	구금·다수인 보호시설 상담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부 의료시설 이용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감시설 내 사망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감시설 폭력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금시설 의료인력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집행 정지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정시설 수용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찰유치장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치료감호소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치료감호소 수용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용감방 구금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신매매 금지	인신/성매매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신/성매매 신고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신/성매매 기소/처벌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할 권리	자연재해 피해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범죄 피해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 안전(야간보행의 안전)에 대한 인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범죄 두려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종	약취·유인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약취·유인 검거, 입건, 기소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구속사건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군 영창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판 전 구금기간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긴급체포 후 영장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포·구속 적부 심사 처리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신체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지표 항목
1. 생명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사형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구금 환경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5. 인신매매 금지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6. 안전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7. 실종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기본적 자유권

1. 기본적 자유권의 세분류 체계 및 하위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이동의 자유	해외이주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북한방문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류외국인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내인구 이동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입영/집중 거부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립학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립학교 의무예배시간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견과 표현의 자유	방송심의 의결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상물 등급분류 위법 판결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 추천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언론사 파업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회의 자유	집회시위 발생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회금지 통고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위 중 부상자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야간시위 처벌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사의 자유	정당조직 및 가입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사체/NGO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무원노조 조직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원노조 조직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언론노조 조직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생활 보호권	개인정보 침해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개인정보 누출 및 유출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CTV 설치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생활 침해 경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기본적 자유**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이동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의견과 표현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집회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5. 결사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6. 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행정적 정의(administrative justice)

1. 행정적 정의의 세분류 체계 및 하위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재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즉결심판 청구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속사건 점유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찰 구속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수입료 분쟁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상담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진정서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법적 구제	수사기관·수소법원 구속기간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속영장 기각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해배상 청구권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가배상 접수 및 처리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문피해자의 사법구제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문피해자의 국가구제조치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면·면책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면실시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행정적 정의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사법적 구제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피해배상 청구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사면 및 면책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참정권

1. 참정권의 세분류 체계 및 하위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투표할 권리	투표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형자의 투표참여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선거법 위반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투표소의 물리적 환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투표권 제한 요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선출될 권리	국회및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선거권 제한 요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선거권 박탈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국민참여재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정민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공서비스 접근권	행정 정보 공개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 비공개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참정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투표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선출될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공공서비스 접근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5. 정보인권

1. **정보인권**의 세분류 체계 및 하위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정보사생활보호권	개인정보침해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신제한/사실 확인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보접근권	정보격차 수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T이용(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웹접근성(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통신심의 의결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뉴미디어정보심의팀 활동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허위사실 형사소추사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게시판 시정요구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터넷상 명예훼손고발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정보인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정보사생활보호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정보접근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정보화의 역기능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Ⅲ. 시민·정치적 권리와 소수자 집단

1. 다음의 각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각 소수자별로 한 개 이상 응답 가능)

권리	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난민	노인	성소수 자	북한이 탈주민	군인
신체권	생명권	<input type="checkbox"/>									
	사형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input type="checkbox"/>									
	구금 환경	<input type="checkbox"/>									
	인신매매 금지	<input type="checkbox"/>									
	안전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실종	<input type="checkbox"/>									
자의적 체포 및 구금	<input type="checkbox"/>										
기본적자유	이동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의견과 표현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집회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결사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									
행정적징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사법적 구제	<input type="checkbox"/>									
	피해배상 청구권	<input type="checkbox"/>									
	사면 및 면책	<input type="checkbox"/>									
참정권	투표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선출될 권리	<input type="checkbox"/>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공공서비스 접근권	<input type="checkbox"/>									
정보인권	정보사생활보 호권	<input type="checkbox"/>									
	정보접근권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사회권)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인권과개발센터(센터장 구정우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뢰받아 [인권통계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권통계를 생산하고 발굴하는데 토대가 되는 인권프레임과 분류체계, 인권통계 pool 구성, 인권통계의 활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된 인권프레임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분류된 하위지표와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질문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사주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성균관대학교 인권과개발센터
(연구문의: 김대옥 조교 010-9907-****)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 인권프레임 평가

※ 인권프레임은 I. 이행기제, II. 평등권, III. 시민·정치적 권리, IV.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V. 소수자 권리의 대분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께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1. 아래와 같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8개의 중분류 지표와 34개의 세분류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각 분류 체계와 하위 지표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하다 (2) 대체로 적절하다 (3) 적절하지 않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1. 식량권
		2. 주거권
		3.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1. 소득보장(공공부조)
		2. 빈곤/양극화
		3. 사회복지
		4. 사회보험
	노동권	1. 일할 권리
		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3. 노동조합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건강권	1. 건강 서비스 접근
		2. 아동 및 모성 건강
		3. 육체적 건강
		4. 정신적 건강
		5.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교육권	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2. 교육선택권
		3. 교육의 질
		4. 교육에서의 차별
		5. 교육 불평등
	문화적 권리	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2.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3. 창작물에 대한 보호
		4.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기업과 인권	1. 기업의 투명성과 형평성
		2.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3. 지역사회 공헌
		4. 건전한 거버넌스
		5. 환경보존
	환경권	1.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2.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무		
3.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4. 환경권 증진에 참여할 권리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프레임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II.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식량권	가정형편에 의한 결식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복지시설의 급식비 기준 및 지원금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미달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양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과잉 섭취의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택의 강제철거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인당 주거면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상수도 보급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수도 보급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식수의 안전기준 초과하는 오염 물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물부족 통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오염 또는 단수로 물 사용하지 못한 일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식량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사회보장권

1. 사회보장권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소득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훈연금/보훈급여/보훈수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 예산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빈곤 및 양극화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득 5분위 배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니계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사회복지 생활시설수 및 생활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이용시설수 및 이용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4대보험 가입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대 보험 지급액 및 보장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사회보장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소득보장(공공부조)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빈곤/양극화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사회보험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노동권

1. **노동권**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일할 권리	고용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취업자의 고용형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기실업자의 비율(12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잠재경제활동인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직단념자수(NEET 수 및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업대책 직업훈련 추진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연간 실제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최저임금 미만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산업재해율 및 직업관련 유병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정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의 차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권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 조직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조파업 및 지속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사협의회 설치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당노동행위 신청건수 및 소송 처리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파업권 규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노동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일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노동조합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건강권

1. 건강권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건강 서비스 접근	시도별 의사수 및 부족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만명당 시도별 등록 병상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도 및 소득별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료 미충족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료보장 적용인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동 및 모성 건강	임신부 산전 수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저체중아 발생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산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흡연 및 음주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육체적 건강	기대수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사망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성질환 및 암/사망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신적 건강	주요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별 정신보건시설수 및 이용자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정도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진료 횟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우울감 정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살충동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공의료비 지출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건강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건강 서비스 접근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아동 및 모성 건강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육체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정신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5.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5. 교육권

1. 교육권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시도 및 학교급별 취학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율 및 지원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 선택권	평생교육 참여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업중단자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안학교수 및 학생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이버대학교/학점은행제 참여 성인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의 질	학급당 학생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생 1인당 공교육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사의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교내 비정규 고용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수법향상 연수 교사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 불평등·차별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업교육 육성 및 개선용 예산지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업 중단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고교생 학비 지원금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교육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교육선택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교육의 질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교육 불평등·차별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6. 문화적 권리

1. **문화적 권리**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 항목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예술 관람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가활동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GDP대비 문화예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여가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수 및 공공체육시설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학교 문화예술 수혜학교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정보문화향유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창작물에 대한 보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예술 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화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문화적 권리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창작물에 대한 보호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7. 기업과 인권

1. 기업과 인권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항목
기업의 투명성과 형평성과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기업내 인권담당부서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SO26000, UNGC 가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가인권위 기간 내 차별권고 횟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기준법의 휴일 연차보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내 성별/학력/근로형태/지역/임신·출산 차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 재무현황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투명성과 형평성과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공정한 인사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정위 기간 내 하도급법 위반 횟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불응 횟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분쟁조정기구 운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 소비자 교육 정책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간 내 소비자 관련 계류 사건 횟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간 내 소비자 차별 권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업무관련 인권정책·절차교육 이수한 보안담당자 숫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정마케팅, 정보공개 준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	지속 가능 지수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민 채용 규모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부 규모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민 교육프로그램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간 내 지역사회 총 투자액 규모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전한 거버넌스	뇌물·부패 방지프로그램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횟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간 내 지적재산권 분쟁 횟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권위 권고 수락 여부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 연계 NGO 숫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보존에 참여할 권리	각 환경 인증제도 도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오염측정기록보고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관리계층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탄소파트너십 성과 보고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개발 정책 홍보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기업과 인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기업의 투명성과 형평성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지역사회 공헌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건전한 거버넌스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5. 환경보존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8. 환경권

1. 환경권의 세분류 체계 및 지표 항목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2. 각각의 세분류 안에서, 해당 세분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선택)

세분류	지표의 항목	1. 부적절한 항목	2. 세분류 내의 대표항목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오염 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오염 처리시설 설치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인당 도시공원면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별 도시공원 면적 및 공원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천연가스 전환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녹색교통(자전거, 대중교통, 보행전용도로) 설치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녹색교통의 교통수단 분담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오염물질 허용기준 초과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오염 관련 민원발생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의 천식 및 암 발생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환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보호 지출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토대비 환경보호지역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생태 건강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지속성·환경성과 지수 국가 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자연재해 취약 지역 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 취약 계층 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 취약지역 내 취약계층 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해가스 누출건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 사망률 및 피해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의 재해사망을 및 피해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증진에 참여할 권리	환경복지 예산 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 분야 주민참여예산 비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간 단체 환경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인권관련교육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정보 공개 청구 건수 및 공개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보호 관련 주민자치조직 운영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환경권**의 각 세분류 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지표 항목 이외에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세분류	추가되면 좋을 통계/항목
1.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2.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무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3.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4. 환경권 증진에 참여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있다 (무엇?:) <input type="checkbox"/> 없다

Ⅲ.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소수자 집단

1. 다음의 각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각 소수자별로 한 개이상 응답 가능)

권리	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난민	노인	성소수자	북한이 탈주민	군인
적절한 생활수 준향유	식량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물과 위생에 대 한 권리	<input type="checkbox"/>									
사회 보장권	소득보장	<input type="checkbox"/>									
	빈곤/양극화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input type="checkbox"/>									
노동권	일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공정한 노동조 건 향유	<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권	<input type="checkbox"/>									

권리	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난민	노인	성소수자	북한이 탈주민	군인
건강권	건강 서비스 접근	<input type="checkbox"/>									
	아동 및 모성 건강	<input type="checkbox"/>									
	육체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정신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건강 서비스에 서의 차별	<input type="checkbox"/>									
교육권	교육지원에 대 한 접근	<input type="checkbox"/>									
	교육선택권	<input type="checkbox"/>									
	교육의 질	<input type="checkbox"/>									
	교육에서의 차 별	<input type="checkbox"/>									
	교육 불평등	<input type="checkbox"/>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 여	<input type="checkbox"/>									
	과학의 발전을 향유	<input type="checkbox"/>									
	창작물에 대한 보호	<input type="checkbox"/>									
	문화적 다양성 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기업과 인권	기업의 투명성 과 형평성	<input type="checkbox"/>									
	공정거래와 소 비자보호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	<input type="checkbox"/>									
	건전한 거버넌 스	<input type="checkbox"/>									
	환경보존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건강한 연환경 을 누릴 권리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을 보 호할 책무	<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로 부 터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증진에 참여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소수자 집단의 핵심 권리

▷ 소수자 집단의 핵심적 시민·정치적 권리(숫자는 우선순위를 표시)

권리	소수자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난민	노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군인
신체권	생명권		5				4	3			4
	사형의 제한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3
	구금 환경										
	인신매매 금지	1	3			3					
	안전할 권리	2	1	2	2			1		3	
	실종		4								
기본적 자유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이동의 자유			1		2	2	3		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	1	1
	의견과 표현의 자유		2						1		5
	집회의 자유								5		
	결사의 자유						3				
행정·사법적 정의	사생활 보호권	2			4		4		2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4	1	1			5	2
	사법적 구제						3				
	피해배상 청구권										
참정권	사면 및 면책										
	투표할 권리										
	선출될 권리	4		5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4		5	4					3	
정보권	공공서비스 접근권			3	1	3		3		5	
	정보사생활보호권								5		
	정보접근권			3		5		2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4		

▷ 소수자 집단의 핵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숫자는 우선순위를 표시)

권리	소수자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난민	노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군인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	식량권										
	주거권	4		5		3	1	4	3	2	
사회보장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소득보장			4			4	1		2	
	빈곤/양극화							3		5	
노동권	사회복지										
	사회보험					4					
	일할 권리	2		2	3	1	3		3	1	
건강권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	3				1			5		
	노동조합권					5					
	건강 서비스 접근			1	1	4	2	1	5		5
	아동 및 모성 건강	1	1								
교육권	육체적 건강										3
	정신적 건강				5			2			1
	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5		5			2	
문화적 권리	교육선택권										
	교육의 질		3								
	교육 불평등 차별		3								
	문화생활에 참여		3	2	2		5	4	5		1
기업과 인권	과학의 발전을 향유										
	창작물에 대한 보호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3				1		
	기업의 투명성과 형평성										
환경권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공헌										
	건전한 거버넌스										
	환경보존										
환경권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4	2								3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무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환경권증진에 참여할 권리										

6. 소분류별 법적 정당화

중분류	(1.1.) 국제규범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유엔헌장 전문). -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유엔헌장 제2조 제2항). - 유엔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유엔헌장 제4조 제1항). - 모든 유엔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유엔헌장 제93조 제1항). - 유엔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유엔헌장 제94조 제1항). - 유엔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유엔헌장 제103조).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2항). -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킨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1항 (d)호). -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그들의 헌법에 따라 본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한다(인신매매방지협약 제27조). -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a)).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중분류	(1.1.) 국제규범
세분류	(1.1.1.) 국제인권법 준수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 -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직접 관련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의 사본을 국제연합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명시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2항 (b)호).
중요성 및 측정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보장과 보호는 한 나라의 국내적인 법률과 정치체도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국제인권조약과 기구의 역할이 크다.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고 국가들 간에 서로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국제인권레짐에 가입하는 것이 인권의 보장과 보호의 시작이 된다. - 정부의 인권보호 노력만이 아니라 국민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한 인권보장과 보호의 중요한 축이므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조약비준현황 →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중분류	(1.1.) 국제규범
세분류	(1.1.2.) 국제인권기구 참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도록 한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9조 제1항).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체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킨다(자유권규약 제3조 (b)항).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c)항).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44조 제6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레짐은 국제인권조약으로 규범을 국제법화했을 뿐 아니라 조약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각국의 인권보호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 정부가 세계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인권이사회 또한 조약기구들과 더불어 국제인권규범의 중요한 실행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국제인권기구에 어떻게 얼마나 잘 참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지표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정례보고 및 특별보고 참여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정례보고 및 특별보고 참여도 평가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내 우리 정부 및 전문가의 활동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된 시민단체의 보고 및 개인 청원현황 및 결과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인권보호노력 평가
----	--

중분류	(1.2.) 국내법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후단).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 -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제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국제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다(국제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2항).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9조).
--	---

중분류	(1.2.) 국내법
세분류	(1.2.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 -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9항). -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 -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어선법 제6조). - 양성평등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6호). -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이 국내사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국내법으로의 입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행정기관의 노력, 판단하는 사법기관의 적용 모두 필요하다. 국제규범이 국내법으로 법제화되어 행정기관이 실행하고 사법기관이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이행기제가 존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표	→ 국제조약의 법제화 →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의 국제인권규범 원용 → 헌법의 인권보장조항에 대한 국민의 태도

중분류	(1.2.) 국내법
세분류	(1.2.2.)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내법적 근거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회를 둔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 -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한 나라가 인권보호를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갖느냐 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중요한 이행기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여부와 활동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인

	<p>권 측정의 중요한 부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기구의 재정, 인력의 전문성, 진정서 처리 현황 등의 객관적인 조건 뿐 아니라 특히 국민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독립성과 신뢰성 판단여부도 중요하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평가등급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작성 및 인권상황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및 인력 현황 → 국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 및 신뢰도 → 법무부 인권국 재정 및 인력 현황 → 공공기관의 인권보장노력에 대한 평가

중분류	(1.3.) 인권교육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 교육은 인간성의 원숙한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지향하여야 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제5조 제1항 (a)호).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에 목표를 지향하는데 동의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b)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5항). -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6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

	<p>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6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정신보건법 제6조의2 제1항).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담당(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9 제1항).
--	--

중분류	(1.3.) 인권교육
세분류	(1.3.1.)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3항). -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4항).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향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함은 물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인권존중의 문화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반국민, 공무원, 인권 관련종사자들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취약집단 중 하나인 군의 인권교육이 시행되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일반 공무원 집단을 물론 교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교육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집행공무원의 인권교육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 전국 초중고대학교의 학생 및 교원(교수) 대상 인권교육 → 공무원 및 인권관련종사자의 인권교육 → 군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현황 → 국민의 인권교육 경험

중분류	(1.3.) 인권교육
세분류	(1.3.2.) 기업·시민사회 인권교육 활동
국제법적 근거	-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 유네스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인권책임과 관련해 직장 내 인권침해 요소 뿐 아니라 상업적 거래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구성원 모두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인권교육, 특별히 소수자 인권은 해당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인권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인권교육 → 시민단체(NGO)의 인권교육

중분류	(1.4.) 시민사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71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c)항).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44조 제6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6조 제1항).

중분류	(1.4.) 시민사회
세분류	(1.4.1.) 인권 NGO 활동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71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c)항).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44조 제6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시민사회단체는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6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관한 학술적 연구들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록 국가의 인권수준이 향상된다고 보고한다. 어떤 시민단체가 어떤 인권이슈에 관해 어떠한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 등록된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중분류	(1.4.) 시민사회
세분류	(1.4.2.) 인권 NGO 거버넌스 구축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 71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 7조 (c)항).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44조 제6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1조의2 제2항 제2호) - 시민사회단체는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6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개선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문제 파악과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 여론 환기 등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인권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따라 인권의 더 큰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정부가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책, 법령, 제도수립에 시민단체를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국민 또한 시민단체에 참여함으로써 혹은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 예산 →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정부법령 및 정책 수립 참여 → 국민의 인권시민단체 참여 경험 → 국민의 인권시민단체 지원 요청 경험

중분류	(2.1.) 차별 현황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전단).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전단).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 당사국은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국내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중분류	(2.1.) 차별 현황
세분류	(2.1.1.) 인권상황 평가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16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1항). -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 문항 이외에도 3년 전과 대비한 한국의 인권상황 평가, 다른 나라와 대비한 한국의 인권상황 평가 결과와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음
지표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 및 인권관련 분야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

중분류	(2.1.) 차별 현황
세분류	(2.1.2.) 침해 및 차별발생 원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 당사국은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주요 인권 침해자가 누구이고, 인권침해의 발생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측정하여 향후 인권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표	→ 인권침해나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분류	(2.1.) 차별 현황
세분류	(2.1.3.) 차별의 심각성 평가
국제법적 근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자유권규약 제26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인권 관련 진정·민원사항 처리(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피해자인권과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4항) -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경찰, 군대, 검찰, 방송, 국가정보원, 구급시설, 기업, 복지수용시설, 학교 등 주요기관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며, 주요 영역별 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지를 측정
지표	→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차별 요인별 차별문제의 심각성 정도

중분류	(2.1.) 차별 현황
세분류	(2.1.4.) 차별경험 유무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추구할 책임을 진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2조 제1항).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5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제3항 제1호)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군인이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군인사법 제51조의4)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해 직접, 간접 경험 유무, 대처방안 및 대응방안과 함께 무대응의 원인을 확인하여 차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지표	→ 차별경험 유무: 각 요인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

중분류	(2.2.) 차별요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전단).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전단).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 당사국은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자유권규약 제26조). -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추구할 책임을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1항).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5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중분류	(2.2.) 차별 요인
세분류	(2.2.1.) 인종·피부색·출신국가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3항). -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추구할 책임을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1항). - 체약국은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항). - 누구든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5호).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인종, 피부, 출신국가는 다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출신 공개로 인한 차별경험: 탈북청소년이 북한 출신 공개로 학교에서 힘들어 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 → 탈북청소년 차별 경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시설에서의 차별 없는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동의정도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경험 및 이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 결혼이민자 차별경험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2.) 성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2조). -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5조 제2항).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피선거권을 갖는다(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담임하고 또한 공적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 양성평등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6호). -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제5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현재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며, 특히 남성중심의 조직에서는 필수적으로 차별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 경찰/소방/교정직: 남성 경찰/소방/교정직 대비 여성 경찰/소방/교정직 유·불리 정도에 대한 인식 → 성차별 피해 경험 - 경찰/소방/교정직: 여성 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의 성차별 피해 경험 유무 → 성별분리채용에 대한 인식: 여성 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의 성별분리채용 찬반 →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여군의 복무 환경적 특성으로서 조직문화와 관행이 여군 친화적으로 인식 정도 → 군대 내 성차별 심각성 정도: 여군이 남군과 비교하여 부문별 유·불리를 많이 느끼는 정도 → 군대 내 성차별 피해유형 및 빈도: 여군 차별 피해 유형별 발생의 빈도 → 채용과정 중 성차별 요인: 성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요인: 채용과정 중 성별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 기업 내 성차별관행 인식: 중소기업 내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문제에 대해 인사총무담당자 및 일반 근로자들은 평가 정도 → 기업 여성 등기이사 비율: 상위 100대 기업 등기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 → 공공연구기관 성별 연구원 수 및 비율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평소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가사분담 정도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3.) 경제적 지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및 기타의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3조). -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경제적 지위로 인해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 검토가 필요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과정 내 경제적 지위 차별 경험 정도: 채용과정 중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경험 정도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결손가정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4.) 나이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 -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4조 제1항). -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2항). - 노인과 장애인은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필요에 부합하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8조 제4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되는 추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 및 청소년의 자유 및 인권에 대하여도 아직 인권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기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이에 대한 차별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차별 경험 -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퇴직요구 → 연령차별 인식 정도-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차별 대우 인식 정도 → 각 채용과정 단계의 연령차별 정도: 나이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 채용과정에서 연령차별 이유: 나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5.) 용모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특히 여성에 관하여 용모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용모에 대한 언급과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 인권신장에 있어서 중요한 고찰점으로 고려되어야 함
지표	→ 외모에 대한 차별 경험: 외모관리를 요구받은 경험 여부 → 외모에 대한 차별 인식과 원인: 채용단계별 차별인식 중 용모 및 신체조건 차별원인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6.) 종교
국제법적 근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국내법적 근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종교는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강제적인 종교권유 등은 현재에도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차별 문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지표	→ 학교 내 종교차별 인식: 학생들의 종교적 차별인지 여부 → 동아리 활동에서의 종교 차별 현황: 학교유형별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 유무 → 학교 복지 및 생활에서의 종교차별 현황: 학교유형별 기숙사/장학금 배정 시 종교차별 유무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7.) 학력·학벌
국제법적 근거	- “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조건 또는 출생에 기하여, 교육상의 처우균등을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포함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1조 제1항). - 당사국은 교육상의 차별과 관련된 모든 법률조항 및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관행을 중단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3조 (a)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 -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6조 제4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학벌에 대하여 채용 시에도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불평등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한 차별 검토가 필요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별 채용과정 중 차별인식: 학력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 채용과정에서의 학력차별 요인: 학력별, 경력유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8.) 성적지향성
국제법적 근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치료감호대상자"란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 - 신체와 소지품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장이 지명하는 동성(同性)이 할 수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외국인보호규칙 제6조 제4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개인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이슈는 최근에도 종교단체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극명히 나타냄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특

	히 학교에서 이러한 성적 지향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유형: 성적소수자차별 또는 괴롭힘의 유형 → 성소수자 차별 인지: 학교에서 성적 소수자여서 또는 성적 소수자로 보여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 성소수자차별 경험에 대한 결과: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괴롭힘을 경험한 결과 →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9.) 장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장애인은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필요에 부합하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8조 제4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p>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 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 제1항). -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 제1항). -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도 아직 많은 제약이 존재하기에 장애에 대한 차별을 고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함
지표	→ 채용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인식: 장애유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 채용과정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 경험 정도 : 장애인의 채용과정 중 장애차별 경험 정도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집단구성원 포용정도

중분류	(2.2.) 차별요인
세분류	(2.2.10.) 병력
국내법적 근거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메르스, 조류독감 등의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질병 상의 이유로 직장 및 학업에 있어 차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지표	→ 질병에 대한 차별 심각성 정도 : 응답자 특성별 질병력으로 인한 차별경험 정도

중분류	(3.1.) 신체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제3조).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5조 제1항). -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법률로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당하지 아니한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6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외국인이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조). -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선원법 제25조의2).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소비자 기본법 제4조 제1호).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1.) 생명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제3조). -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자유권규약 제6조 제1호).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 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0조). -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1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외국인이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0조).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252조 제2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제1항).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권은 국가에 대해 생명의 침해행위를 방어하는 소극적 생명권(대국가적 방어권)과, 생존에 필요한 환경을 요구하는 적극적 생명권

	<p>(대국가적 보호청구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권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살인, 사형, 안락사, 낙태, 자살 등은 모두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 생명권은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되어야 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률 현황: 인구 10만 명 당 자살건수 → 살인 사건 수: 인구 10만 명 당 살인건수 → 영아 사망률: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 (1,000 분비 표시) → 모성 사망률: 가임기 여성(15-49세) 10만 명 당 모성 사망자 수 (100,000 분비 표시) → 임신중절 현황: 시술의료기관 조사를 통한 결혼상태별 연령별 인공 임신중절 추정 건수 → 군인과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일반인(20~29세 남자기준)과 비교한 10만 명당 군인 자살자 비율 → 군 사망사고 현황: 사고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군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에 국한 →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입 현황: 장애인에 대한 고지된 동의 없이 행해지는 강제불입 현황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2.) 사형의 제한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 -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 -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 (a)호).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제1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3조). -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군형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은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하여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사형제도의 폐지가 국제적인 추세이다. - 사형의 범죄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백히 증명되지 아니하여 형사 정책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 -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형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선고율 현황: 제1심 형사공판선고 중 사형선고의 비율, 이중 특정 죄목(가령, 국가보안법)에 따른 비율 → 간첩죄에 대한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비율: 간첩죄 기소자 중 제1심 형사공판선고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 → 사형 선고자 사면 비율: 사형선고 복역자 중 사형을 사면 받는 비율 → 사형제 존속 및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 사형제의 존속 혹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3.) 고문 및 비인간적처우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제5조). -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 거부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자유권규약 제7조). -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문방지협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은 이성을 가진 인간을 비굴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전면 부인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 국제인권법의 질서에서는 고문에 대해 절대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고문방지를 위한 규범을 통한 고문방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자백위주의 수사관행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제의 미비에 기인한다. -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문실태를 통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및 가혹행위 진정서 현황: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 중 폭행, 가혹행위, 폭언, 욕설에 관한 진정서 숫자(검찰, 경찰, 군,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출입국관리기관 대상) 및 처리결과 통계 → 고문 및 가혹행위 인권위 상담현황 : 인권위에 폭언, 가혹행위, 폭언, 욕설을 이유로 상담을 의뢰한 숫자(검찰, 경찰, 군,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출입국관리기관 대상) 및 처리결과 통계 →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법집행관 기소/징계 현황: 형사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 및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기소된 숫자 → 검찰 조사기간 중 피의자 및 참고인 자살률 : 피의자 및 참고인 10만 명당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 비율 → 영상녹화 실시 현황: 수사 및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실시율 →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인식: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폭행·폭언·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

<p>중분류</p>	<p>(3.1.) 신체권</p>
<p>세분류</p>	<p>(3.1.4.) 구금환경</p>
<p>국제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 -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 -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7조). - 미결 피구금자에게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시설의 안전 및 양호한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및 감독에 복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기가 구금된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통신을 하거나, 이러한 자와 접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2조).

<p>국내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신보호법 제1조). -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인신보호법 제3조).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시설 내 수용자는 구금자라는 맥락성으로 교도관에 의한 징벌, 계구사용, 외부교통(통신, 접견), 의료, 시설 내 처우, 권리구제(청원, 진정, 소송)등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을 개연성이 높다.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구금시설내의 수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특히, 구금시설의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수용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유형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상담 현황: 구금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상담을 의뢰한 숫자(폭행/가혹행위 제외), 처리결과 통계 →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진정서 현황: 구금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계 → 수감시설 내 사망자현황: 교정시설별 재소자 사망 현황 → 수감시설 내 폭력·폭행 현황: 교정시설별 폭력·폭행치 숫자 → 구금시설 의료인력 현황: 교정시설 의사 장·현원 숫자 → 외부의료시설 이용현황: 교정시설별 재소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현황 → 교정시설수용 현황: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1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감호자 등의 수용정원, 수용인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 경찰유치장 현황: 경찰 유치시설(유치장, 유치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실제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 치료감호소 현황: 치료 감호소 유치시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수용기간, 면회 기간 등을 포괄하는 통계 → 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 교정시설 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 진행

	<p>시간, 참여율 통계</p> <p>→ 대용감방구금 현황: 대용감방 현황, 대용감방별 구금자 숫자, 구금기간 통계</p> <p>→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현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유로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 현황과 체류 기간에 관한 통계</p> <p>→ 군교도소 연말 수용자 현황</p>
--	--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5.) 인신매매 금지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된다(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제3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6조). -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는 인간을 사고파는 범죄행위를 가리키며 인신매매와 아동매매 등은 인류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전 지구적인 인권침해 범죄이다. -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의 약취·유인,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 등을 인신매매의 죄로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인신매매와 성적착취 등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표	→ 인신/성매매현황: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 인신/성매매 신고현황: 접수된 신고 건수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 인신/성매매 기소·처벌건수: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6.) 안전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제3조).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5조 제1항). -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6조). - 장애인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정).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5조 제1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인은 생명과 신체, 재산과 자유의 침해, 범죄, 자연재해, 환경오염, 식생활의 안전, 운송수단의 안전, 건강과 보건의 안전 등 도처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사회를 살고 있다. - 급격이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위험환경의 증가로 인해 국가에 의한 안전 보호의 의존성이 증가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 욱 높아지고 있다. - 안전할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또는 국가로부터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 안전할 권리는 인권이자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적 기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으로서 안전할 권리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항목이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피해자 현황: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실종·이재민 수, 피해규모 등 피해 현황 통계 → 범죄 피해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절도, 강도, 폭행, 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의 숫자 → 사회안전 인식도(여성): 사회전반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 범죄두려움: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 비율 →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 → 가정폭력피해 경험률 → 아동 안전사고 현황: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 및 아동 10만 명당 비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도로교통법 제12조)하고 있음. →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임 → 학교폭력 경험 → 학교에서의 체벌 및 욕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 학대 경험률: 방임,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포함 (노인, 아동,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7.) 실종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한해에만 실종아동 등 가출인이 37,522명이 발생하였다. 실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실종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온다. - 실종아동의 경우에는 단순미아, 가출, 버려진 아이, 가족 또는 비가족에 의한 유괴, 범죄에 의한 약취와 유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 실종아동의 부모와 가정은 불안, 초조, 자책감, 죄의식 등에 시달리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늘고 있다. - 실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종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유인 현황: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범죄의 숫자와 이와 관련된 통계 → 약취·유인 검거, 입건, 기소율: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범죄에 대한 검거율, 입건율, 기소율 → 실종아동 등(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및 가출인 발생현황: 실종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가출인 발생 및 미발견 건수

중분류	(3.1.) 신체권
세분류	(3.1.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제9조). - 구금된 개인은 가장 인근에 소재하는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6조 제3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 영장주의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 제12조 제4항). - 체포이유 고지의무, 가족 등에 통지의무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5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적법절차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및 영장의 발부·제시를 통한 형사절차를 적용대상으로

	<p>하는 형사사법 절차적 보장원리 중의 하나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가 신체의 자유를 위한 절차적 보장원칙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확장하는 추세이다. -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사건 비율: 기소자 숫자 대비 구속 사건의 비율 → 경찰 구속 현황: 각급 경찰의 적발숫자, 구속 숫자, 불구속기소 → 수사기관·수소법원 구속기간 현황: 검찰·경찰의 구속기간, 소송제기를 받은 법원의 구속기간 통계 → 군 영창 구금현황: 군 영창 시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실제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 48시간 구금 후 훈방 현황: 48시간 동안 구금한 후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 → 긴급체포 후 영장현황: 긴급체포자 대비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 → 체포·구속적부 심사 처리 현황: 법원에 청구한 체포·구속 적부의 심사에 대한 처리결과 통계 →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 진정서 현황: 인권위에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가족 미통지를 이유로 제출된 진정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계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 국제연합 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사회권규약 제18조). -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자유권규약 제41조 제1항 (e)). - 계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자유를 헌법상 사회적 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사함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6조 전단).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1.) 이동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제9조). -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3조). -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12조 제1호). -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자유권 규약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 이동의 자유). -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1조 주거). -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4호). -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1호). -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당해 체약국 국경 이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를 가진다(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d)(i)(ii)). -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4조).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 -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 복지법 제24조). -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

	<p>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주거 기본법 제2조 주거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장애인 복지법 제27조 주택보급).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의 자유란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국외 이주의 자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와 국적이탈의 자유를 포함한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등이 차별 없이 이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하고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계의 구축은 국제적 인권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이주 현황: 해외이주신고자와 현지이주신고자를 합한 해외이주자 숫자 → 북한방문자 현황: 여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현황 → 체류외국인 현황: 장기, 단기, 불법 체류를 합한 체류외국인 숫자 → 국내인구 이동 현황: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의 숫자, 그리고 인구대비 이동률 →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이동편의시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 난민 인정자 현황(연도별, 성별, 국적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포함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시각장애인 택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연결률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8조).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p>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자유권규약 제18조 제2호). -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 인종, 피부색, 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호 (vii)목).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 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 종교의식의 특례). - 종교생활은 군인이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군인복무규율 제30조, 종교생활). -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거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 정신적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민주주의 질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 양심의 자유는 양심 결정의 자유, 침묵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 양심과 사상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선교와 교육의 자유를 말하며 국가 또는 제3자에 의한 침해를 거부하는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 - 현실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에서는 국가보안법, 양심의 자유에서는 입영 및 징총거부자, 종교의 자유에서는 종립학교의 예배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 기소, (불)구속, 불기소 숫자 통계 → 입영·집총 거부자 현황: 입영·집총 거부자 숫자와 이에 대한 징역부과 등 처리 숫자 → 종립학원 현황: 종교교단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숫자 → 종립학교 의무예배시간 현황: 종교교단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에서 의무 예배에 할당한 평균 시간
----	---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3.) 의견과 표현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호).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호). -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호).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모든 형태의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 (viii)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문화기본법 제4조). -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방송법 제6조 제4항)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언론자유 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인권법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개인적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 표현의 자유는 주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나 언론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언론기관의 보도 및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 등이 있다. -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 의 필수 불가결한 자유로서 이에 대한 통계의 구축은 표현의 자유를 측정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 의결 현황: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법정조치, 행정지도 등 제제조치를 의결한 숫자 → 영상물 등급분류현황: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통계 → 영상물 등급분류 위법 판결 현황: 제한상영가 등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소송과 이에 대한 위법판결 통계 →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현황: 영화제에 대한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서 발급현황 및 법적분쟁 현황 → 언론사 파업현황: 언론사 파업 숫자, 참여자 규모, 지속일수, 징계, 해고 통계 → 표현의 자유 제한 경험: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4.) 집회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공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자유권 규약 제21조).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모든 형태의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 (ix)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의 자유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달리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불가결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의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 적극적 집회와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 등 소극적 집회가 있다. - 집회의 자유에서 문제되는 것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는 헌법에 따라 금지되며, 신고제는 사전제한이 아니므로 무방하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시위 발생 현황 → 집회금지 통고 현황: 집회시회 금지통고 건수, 신고건수 대비 금지통고 건수 비율, 시위 유형별 금지통고 건수 및 비율 등 통계 →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 수 →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숫자, 유형 및 대상 별 (교사/공무원 포함) 통계 → 시위 중 부상자 비율: 집회시위 중 부상을 입은 참가자의 숫자 및 시위 참여자 대비 비율 → 야간시위 처벌 현황: 야간시위를 이유로 입건 및 기소된 숫자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5.) 결사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자유권 규약 제22조 제1호).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1호).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모든 형태의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 (ix)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ILO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외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근로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ILO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호) - 공공부문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 차별대우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ILO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에 관한 협약, 제4조 제1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당법 제22조 제1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사의 자유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 결사의 자유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 활동의 자유, 결사에 가입 또는 잔류의 자유,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 - 결사에는 정치적 결사, 경제적 결사, 학문적 결사, 예술적 결사, 사회적 결사 등이 있으나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권과 언론 등의 정당가입제한과 노조결성의 제한을 들 수 있다. - 결사의 자유가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조직 및 가입 현황: 법정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 숫자, 가입된 당원 수 통계 → 결사체/NGO 현황: 시민사회단체 숫자, 유형별 숫자 통계 → 공무원노조조직 조직 현황: 공무원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

	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 교원 노동조합 조직 현황: 교원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 언론노조조직 현황: 언론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	---

중분류	(3.2.) 기본적 자유
세분류	(3.2.6.) 사생활 보호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자유권 규약 제17조 제1항). -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24조 제2항).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7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 법원은 선정기일에서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당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있다. - 인간은 자기만의 사고와 생활영역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생활의 영역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의 침해사례를 통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침해 비율: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신고건수 통계 → 공공기관 개인정보 누출 및 유출현황: 공공기관별 주민번호 누출 및 유출 건수 →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현황: 국가기관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 건수 → CCTV 설치현황: 범죄예방, 화재예방, 고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 CCTV의 숫자

	<p>→ 권리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명예훼손, 초상권 등 권리침해 위반유형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p> <p>→ 사생활 침해 경험: 지난 3년 동안 본인, 배우자, 가족이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를 경험한 비율</p>
--	---

중분류	(3.3.) 행정·사법적 정의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에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체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b)). -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 -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 -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구별 없이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a)항).
국내법적 근거	<p>※ 행정·사법적 정의는 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나 내용은 유사함(국가의 특정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9조 제1항).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30조).

중분류	(3.3.) 행정·사법적 정의
세분류	(3.3.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0조). -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4조 제2항). -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고문방지협약 제15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후단).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 법원직원의 제척, 기파, 회피(형사소송법 제2장) -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충분한 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감사와 피고인 중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증인과의 접촉을 어느 한 편이 독점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피고인 숫자 대비 국선변호사 선정 사건 비율 → 현재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헌법소원심판 사건 수,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선임건수 및 비율, 국선대리인 인용율, 사선대리인 인용율 등 통계 → 국가소송 및 처리건수: 국가소송 접수, 처리, 승/패소 건수 및 비율

	<p>→ 즉결심판청구 현황: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청구한 심판절차의 숫자, 유형별 숫자 통계</p> <p>→ 재판 전 구금기간 현황: 법원의 승인 조치 없이 구금되는 기간을 포함한 1심 재판받기 전까지 구금되는 기간 통계</p>
--	---

중분류	(3.3.) 행정·사법적 정의
세분류	(3.3.2.) 사법적 구제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8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킨다(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b)호). -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이나 당해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설치된 여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의 청구가 심사되고 결정될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83조 (b)호). - 모든 사람은 관련국의 헌법이나 법률 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 단순하고 신속하거나 여타의 효율적인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미주인권협약 제25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5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적 구제란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행정부에 속한 행정재판이 아니라 사법부에 속한 법원의 사법재판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사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에 의하여 법치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 오늘날 3권 분립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법률에 대한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사법적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사법부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기 쉽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특히 사법부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법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 등을 통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표	<p>→ 구속영장 기각률: 구속영장 건수 대비 기각된 영장의 비율</p> <p>→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법률구조 숫자</p> <p>→ 사면실시 현황: 사면 신청자 숫자 및 사면 허용자 숫자 통계</p>

중분류	(3.3.) 행정·사법적 정의
세분류	(3.3.3.) 피해배상 청구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문방지협약 제14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30조). -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이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이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회보장의 원칙에서 국가에 대해 긴급구조를 청구하는 것이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이다. - 피해배상청구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재활을 돕는 제도로써 이에 대한 운용현황을 통계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현황 → 국가배상 접수 및 처리 현황 → 고문피해자 사법구제 현황 → 고문피해자의 국가구제조치 만족도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현황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중분류	(3.4.) 참정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2항). -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3항).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를 보장한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c)). - 모든 시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5조 (a)). -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특히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을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a)).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헌법 제8조 제1항).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8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중분류	(3.4.) 참정권
세분류	(3.4.1.) 투표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거권은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25조 (b)).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25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c) 전단)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국민투표법 제7조). - 19세 이상의 주민 중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전단). -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지방자치법 제94조)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지방자치법 제31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권제 하에서 투표할 권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결정하는 근원적 권리로서 정치적 권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원리이다. -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투표할 권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가지는 참정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행사 방법이다. - 투표할 권리에서 예외적인 것은 재외국민, 수형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들의 투표권 행사내용을 통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율: 노인,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 수형자의 투표참여 현황 → 공직자선거법위반 현황: → 재외국민 선거권자 등록 현황: 주요 국가별 선거 가능한 유권자 대비 등록자 비율

중분류	(3.4.) 참정권
세분류	(3.4.2.) 선출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자유권 규약 제25조 (b)). -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a)). -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c) 전단).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41조 제1항).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헌법 제67조 제1항).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될 권리는 피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며, 공무담임권은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단체 등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라고 해서 국민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아니고 선거에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일정 자격을 구비해야만 된다. - 선출될 권리와 인권과의 관계는 형식적 요건으로는 선출될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여성, 장애인 등 고위직에 취임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선출될 권리에서는 성별, 지역별, 장애여부 등에 대하여 고위직에서 점하는 비율이나 선출직에 당선된 비율 등을 통계적으로 추적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국회에서 여성의원이가 차지하는 비율임 → 장애인 후보자 당선 현황: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 및 당선인 통계

중분류	(3.4.) 참정권
세분류	(3.4.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2항). - 모든 시민은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5조 (c)) -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b)).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p>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5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공무원 제안규정 제6조)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는 직접 공직에 진출하거나, 민원이나 청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공위원회나 국민참여재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에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도 포함된다.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거나, 고위직에 임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의견을 공공행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에 대한 공공행정 참여정도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의 공공행정진출에 대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재판 현황: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민들 숫자, 판결 결과 통계 → 행정민원 현황: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 서비스 현황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연구직과 지도직은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가,나급)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임.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정부 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법률,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도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임 → 공무원 개방형 임용 추이: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

중분류	(3.5.) 정보인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가정, 주거, 서신 또는 기타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이주노동자와 그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8조).

중분류	(3.5.) 정보인권
세분류	(3.5.1.) 정보접근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c)항). -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7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6조). -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12조 제1항).
중요성 및 추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 시민참여의 활성화,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국민은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제도화를 통하여 행정부의 정보독점을 방지하

	<p>고 행정의 비밀주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정처리로부터 합리성을 유지하게 한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p> <p>- 국민들이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정부의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p>
지표	<p>→ 행정 정보 공개율: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현황 (기관별, 종류별)</p> <p>→ 정보격차수준: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의 격차</p> <p>→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별, 취약계층별 보유 현황</p> <p>→ 가구 인터넷 이용 현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별, 취약계층별 이용 현황</p> <p>→ 장애인 정보화격차: 일반국민 정보화수준 대비 장애인계층 정보화수준</p> <p>→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 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편성 숫자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p> <p>→ 장애인용 언어 표준화 현황: 시각 장애인용 원문DB구축, 특수 언어 표준화 작업 건수</p>

중분류	(3.5.) 정보인권
세분류	(3.5.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국제법적 근거	<p>-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를 가진다. 간섭받지 않고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p> <p>-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 및 제2항).</p>
국내법적 근거	<p>-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p> <p>- 잊혀질 권리(망각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p> <p>-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37조 제1항)</p> <p>-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p>

	<p>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표현의 자유가 주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면, 인터넷 시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온라인상에서 참여에 의한 민주적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시정요구 등이 통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심의 의결 현황: 정보통신 심의 건수, 시정요구,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 인터넷 허위사실 형사소추사건현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숫자, 기각된 숫자, 및 형사 처벌된 숫자 → 인터넷 게시판 시정 요구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심의 건수 중 결정취소와 각하 건수 비율

중분류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전단). -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 모든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중분류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세분류	(4.1.1.) 식량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전단). -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a)).할 것. -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 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b)). - 영양실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식량의 생산, 공급 및 분배 방법의 개선을 약속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관련 국내정책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동의한다(사회권규약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2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헌법 제121조 제1항).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헌법 제121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권은 식량으로의 접근과 관계된 개념으로, 식량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산적인 토지나 다른 자연자원 또는 식량을 구매하여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는 식량을 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며, 식량의 충분함을 보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식사 결식을 → 최근 1년간 가정형편으로 인한 결식 비율(%) → 아동무상급식지원 현황 → 영양섭취부족
----	--

중분류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세분류	(4.1.2.) 주거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전단). - 시골여성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4조 제2항 (h)호).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e)항 (iii)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3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에서 한 개인이나 가족이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일부이자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주택은 휴식을 취하는 곳이며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구성요소가 되며 정부정책(도시계획, 사회복지 등)의 중요한 의제(agenda)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윤지영·전지은, 2012).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 →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비율 →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 시도별 주택 자가보유율 → 출입국관리법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 주택의 강제철거로 인한 거주 자유 침해 → 1인당 주거면적(성별): 남성대비 여성가구의 주거전용 사용면적/ 가구원 수

중분류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세분류	(4.1.3.) 물과 위생에 관한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여성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4조 제2항 (h)호).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며,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 권리협약 제24조 제2항 (c)).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제3항).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헌법 제120조 제1항). - 국가의 자원관리의무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헌법 제120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먹는물 관리법 제2조 제1항). -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수도법 제2조 제1항). - 해양심층수 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전 세계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물과 위생, 특히 공중위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박진솔·이미경, 2012).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보급율 → 하수도 보급율 → BOD 발생 부하량 → 식수 안전: 식수의 안전기준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발견 → 물부족 통계: 식수 및 산업용수가 부족한 지역별 통계 → 단수경험 가구 수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9조).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 종족의 구별없이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e)항 (iv)호). - 모든 사람은 생계수단의 보장을 저해하는 노령 및 장애로부터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사회권규약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9조 제1항) -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남녀 동일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e)호). -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의 해당 법률과 양자 및 다자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국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협약 제27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2항).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세분류	(4.2.1.) 소득보장(공공부조)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2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제5항).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영유할 수 있도록 소득과 공공부조를 지원해주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기초노령 연금수급율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세분류	(4.2.2.) 빈곤/양극화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불평등과는 달리 양극화는 유사한 집단들의 집락성과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갈등 또는 사회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 장애수당 수급자 수 →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수지 →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포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지출액 분포 → 상대적 빈곤율: 총인구 중 소득빈곤선 이하의 인구수의 비율(아동, 여성가구주, 노인, 장애인 등 인구집단에 따라 제시) → 소득 5분위 배율: 하위 20% 균등화소득 대비 상위 20% 균등화소득의 비 → 지니계수 → 최저생계비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세분류	(4.2.3) 사회복지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6조). - 각 개인의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 모든 사람의 안전 및 일반복지의 정당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된다(미주인권협약 제32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4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 국가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생활인원 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가사간병 방문사업 이용자 수 →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장애인인권, 장애인 인식 개선, 이동권 보장 등 가운데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 →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 → 농어업인 복지지원 현황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

중분류	(4.2.) 사회보장권
세분류	(4.2.4) 사회보험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 -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9조). -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남녀 동일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e)호). - 시골여성에 대하여 사회보장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4조 제2항 (c)호). - 당사국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국민연금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보장체제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수 → 건강보험 가입률 → 고용보험 가입률 → 산재보험 가입률

중분류	(4.3.) 노동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 안전하게 일할 권리 :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사회권규약 제6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중분류	(4.3.) 노동권
세분류	(4.3.1.) 일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3항). - 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헌법 제32조 제6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

	<p>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1항). -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삶에 있어 가장 핵심요소, 기본적 생존과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등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 신체활동을 통해 인격발현·형성하는 인간행위의 대표적 형태이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 장기실업자의 비율(12개월 이상) → 잠재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수 → 실업대책 직업훈련 추진현황 → 경력단절 여성의 수: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 평균근속년수의 성별 차이: 산업 및 직종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평균근속연수

	→ 외국인 취업통계 →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 대규모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수
--	--

중분류	(4.3.) 노동권
세분류	(4.3.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 -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4조). - 당사국은 특히 공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공정한 임금, 특히 여성에게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한 보수,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 정기적인 유급휴일 등)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사회권규약 제7조). -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유해하고 위험한 노동에 고용을 처벌한다. 연령 미달자에 대한 유급 노동에의 고용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한다(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 -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제(e)항 (i)호). - 여성의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동일한 권리(불가침의 근로의 권리, 동일한 고용기회,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 안정, 역무에 관한 조건,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동등한 보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 유급휴가와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에 대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보호 및 생식기능을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안전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에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3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제4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2조 제5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2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3항). -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3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p>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p>	<p>- 모든 인간의 성, 연령,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p>
<p>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형태별 주 40시간 실시 비율 → 최저임금 미만을 → 산업별 성별종사자 비율 → 직종별 성별종사자 비율 → 고용형태별 성별종사자 비율 → 여성감정노동자 수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수 → 학력별 임금격차 → 성별 임금격차 → 육아휴직 사용률(성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 →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정도 →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성별, 연령) →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직무) → 산업재해율 → 비정규직 고용 동향 →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여부 및 체불기간, 금액 → 청소년 근로계약 위반
--	--

중분류	(4.3.) 노동권
세분류	(4.3.3.) 노동조합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4항). -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를 가진다(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a)). - 인종·피부색·가문·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을 가진다(인종차별 철폐협약 제5조 (e)항 (ii)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 연령, 인종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권이 제한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 노사협의회 설치 수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신청건수 및 소송 처리건수 →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 파업권 규제 → 외국인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박탈
----	---

중분류	(4.4.) 건강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2항 (a) 내지 (d)). - 당사국은 아동의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 전단). - 모든 개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걸리면 진료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원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1.) 건강서비스 접근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7조). -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 후단).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2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 -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이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의사 수 및 부족율 → 10만 명당 시도별 등록 병상 수 → 시도 및 소득별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 의료 미충족률 → 의료보장 적용인구 → 성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농어촌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2.) 아동 및 모성건강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여성의 질병, 병약, 건강,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e), (f)). -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고,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항 (a) 내지 (f)).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6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모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정도 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권리가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산전수진율 → 저체중아 발생률 → 조산율 → 모성사망률 →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 → 청소년 흡연 및 음주율 → 청소년 약물경험 비율 → 모자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청소년 유해매체 경험실태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3.) 육체적 건강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 12조 제1항). -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7조). -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5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료법 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건강한 신체활동을 지원 또는 보장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육체적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 → 건강수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 조사망률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4.) 정신적 건강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25조). - 당사국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33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신보건법 제4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은 건강권의 중요한 차원으로 이를 함께 측정하여야 한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신 질환 평생유병률 → 정신보건센터 도시지역 편중 → 청소년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 우울감 경험률 → 자살생각 경험률

중분류	(4.4.) 건강권
세분류	(4.4.5.) 건강서비스에서의 차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협약 제28조).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공중보건, 의료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제e항 (iv)호).
국내법적 근거	-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

	<p>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해 건강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소득에 따라 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 공공의료비 지출비중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중분류	(4.5.) 교육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전단).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전단).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전단). -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본문). -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중분류	(4.5.) 교육권
세분류	(4.5.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전단). -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후단). -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a)). -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자유권 규약 제13조 제2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a)). -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d)). -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3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31조 제5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1조 제6항).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8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3조).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평생교육법 제4조 제1항). -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4조 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국가가 국민들에게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지원이 미약한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 시도 및 학교급별 취학률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및 지원률 → 설립주체별(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황 → 각급 학교 장애인진학률

중분류	(4.5.) 교육권
세분류	(4.5.2.) 교육선택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3항). -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자유권규약 제18조 제4항). -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3항). - 부모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견인은 공공당국 이외의 기관을 자녀의 교육기관으로 선택할 자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아동의 종교 및 도덕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제5조 제1항(b)).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교육기본법 제11조 제2항).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인프라가 잘 지원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존재하는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참여비율 → 학업중단자 비율 →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 다문화 가구 아동 취학률 → 미혼모 학업중단율 → 대안학교 수 → 홈스쿨링 학생 수
----	--

중분류	(4.5.) 교육권
세분류	(4.5.3.) 교육의 질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후단). -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후단). -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e)). -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 - 아동교육의 목표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삶, 자연에 대한 존중의 진전 등에 두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각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41조 제4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특정 집단에게 불평등하고 낮은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 수 →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 → 기간제 교사비율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중분류	(4.5.) 교육권
세분류	(4.5.4.) 교육에서의 차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상의 차별을 불식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상의 차별과 관련된 모든 법률조항 및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관행을 중단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하여 교육기관에 입학의 차별, 학비, 장학금, 학생지원, 외국유학을 위한 편의제공의 차별, 공공기관에 의한 국민들 간의 차별, 학생들이 특정집단 간의 제한이나 특혜를 없애고,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자국민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3조). -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상의 차별을 억제하고 교육상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는 향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모든 권고에 최대한 유의할 것을 약속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6조). -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후단). -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c)). -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철폐협약 제14조 제2항(d)). - 개인 및 단체가, 국가의 설치기준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4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 국민들이 교육권을 향유함에 있어 특정 집단에게 차별을 받거나 불평등하게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 → 과도한 통학시간: 1시간 이상의 통학거리 학생 수 및 비율 →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 →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 남성 대비 여성 대학 취학률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1항). - 당사국은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2조). -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3조).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의 권리가 인정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2항). -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3조).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제1항).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세분류	(4.6.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a)호).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항 (iv)호). -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남녀 동일한 권리를 확보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 (c)호). - 당사국은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람률 → 여가활동 만족도 → GDP대비 문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 →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공공도서관 현황 → 학교 문화예술 수혜학교 비율
--	--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세분류	(4.6.2.) 과학발전을 향유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 모든 사람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b)호).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3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제2항). -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127조 제1항). -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4항) -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수 → 웹·바이러스 피해 현황(2013년도 이후) → 해킹사고 신고 건수 → 1인 1일 스팸 수신량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세분류	(4.6.3.) 창작물에 대한 보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 당사국은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

	<p>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c)호).</p>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예술인복지법 제3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조의2 제1항).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0조의2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중분류	(4.6.) 문화적 권리
세분류	(4.6.4.)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자유권규약 제27조). - 남녀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a)항). - 계약국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한다(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2항) - 소수민족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 제5조 제1항 (c)호).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문화기본법 제4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권리 증진의 기초가 되며,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국가는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 전통예술공연 연간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 총 영화 관객 수 가운데 다양성 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율 → 총 영화 관객 수 가운데 한국 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율 → 문화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시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 국가의 국제인권법적 의무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포함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A-1). - 국가는 해당 영토 및 관할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들이 사업운영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A-2). -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A-11).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헌법 제123조 제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헌법 제123조 제5항).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세분류	(4.7.1.) 국가의 보호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사회권규약 제7조). - 당사국은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e)항). - 당사국들은 특히 국제적 독점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외국의 착취를 제거시킬 것을 약속한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21조 제5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헌법 제124조). -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2항).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 관련 침해로부터 “모든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준수를 강화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인권 프레임워크에 세부 통계는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횟수 → 기간 내 지적재산권 분쟁 횟수 → 기업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 및 수용현황 → 기업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의 휴일·연차보장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세분류	(4.7.2.) 기업의 존중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26000 핵심과제: 공정운영 관행(이슈: 반부패,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공정 경쟁,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재산권 존중) - ISO 26000 핵심주제: 소비자 이슈(이슈: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는 정보 및 공정계약 관행,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 지속 가능한 소비, 소비자 서비스, 불만 및 분쟁해결,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 및 인식) - ISO 26000 핵심주제: 조직 거버넌스(이슈: 조직 거버넌스 및 사회적 책임).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A-11).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부의 인권보호와 차별 방지, 투명성 보장, 하청기업과 근로자인권 보장 등은 기업의 인권적 책무 수행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함. - 특히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평가해야 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 도입 여부 →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여부 → 공정위 기간 내 하도급법 위반 횟수 → ISO26000, UNGC 가입 여부 → 지역민 채용 규모 비율 → 지역사회 기부 규모 비율 → 기간 내 지역사회 총 투자액 규모 비율 → 뇌물·부패 방지프로그램 유무 → 업무관련 인권정책 및 절차교육 이수한 보안담당자 숫자 → 공정마케팅, 정보공개 준수 여부 → 지속 가능 지수의 가입여부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세분류	(4.7.3.) 구제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국제인권법적 의무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포함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A-1). - 국가는 해당 영토 및 관할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들이 사업운영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A-2).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활동에 의해 인권에 영향 받은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구제책의 필요성은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의 핵심적인 원칙임 - 기업의 인권책임은 조직의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타 기업, NGO 등 조직 외 주요행위자들과의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인권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시민사회와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유무 → 기간 내 소비자 관련 계류 사건 횟수 →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유무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불순응 횟수 → 기업 내 인권담당부서 유무 → 해외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시 인권영향평가 실시 → 국가인권위 기간 내 차별권고 횟수 → 기업 내 고용 등 차별 관련 상담 및 처리 현황 → 기업 내 고용 등 차별행위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 기업 내 성희롱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중분류	(4.7.) 기업과 인권
세분류	(4.7.4.) 환경보존 책임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26000 핵심주제: 환경(이슈: 오염예방,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국토기본법 제5조 제3항). -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과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 - 특히 환경에 대한 예방적 접근, 환경보존 책임 강화,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등의 원칙들이 환경영역에서의 기업의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환경 인증제도 도입 여부 → 오염측정 기록보고 유무 → 폐기물 관리계층 유무 → 탄소파트너십 성과 보고 유무 → 지속가능개발 정책 홍보 유무

중분류	(4.8.) 환경권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민은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24조). -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서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할 조치를 포함한다(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제2항 (b)호). - 모든 사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사회권규약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1조 제1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5조 제2항).

중분류	(4.8.) 환경권
세분류	(4.8.1.)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환경의 보호, 보존 및 개선을 장려한다(사회권 규약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 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5조).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방사능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인권으로 점차 대두됨 -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인간생존의 필수요건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음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 소음·진동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소음 진동 민원건수 → 시설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중분류	(4.8.) 환경권
세분류	(4.8.2.)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지향하는데 동의한다(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e)).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2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표 조사가 필요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지출액 → 자연보호지역비율: 국토면적 중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 → 유해인자 측정 및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집계 → 멸종위기종 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	---

중분류	(4.8.) 환경권
세분류	(4.8.3.)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국제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 제2항).
국내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항).
중요성 및 측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한 취약계층의 차별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필요한 지표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별 재해위험지구 현황: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 재해위험 시설의 주변지역과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7. 국가인권통계 지표 풀

1. 이행기제

근거 및 출처 열에 있는 최종견해 및 NGO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1. 최종 견해의 각 해당년도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고, 각 년도 별 최종견해의 해당 지표와 관련된 항목의 번호는 괄호 앞에 기입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견해 24,25(11)'의 경우, 2011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견해의 24번, 25번 항목임을 뜻한다.
2. NGO보고서의 경우, 각 보고서마다 통일된 양식이 아닌 각자가 채택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연도의 보고서 양식에 맞게 근거 및 출처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고문방지협약 NGO보고서 4-49~51(12)'의 경우 12년 고문방지협약 NGO보고서 4조에 49항부터 51항까지를 뜻한다.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1.1. 국제규범	1.1.1. 국제인권법 준수	국제인권조약비준현황	유엔에서 규범으로 채택한 인권조약의 서명, 비준, 유보 여부 (9개 핵심 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그리고 OHCHR에서 선정한 국제협약)	외교부	조약정보 외교부 조약정보	1년	구조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19(12);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22,10(11), 11(07); 아동권리최종견해60~61(03), 49~50(11); 고문방지NGO보고서14(06);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1-12~14(12); 사회권NGO보고서22(09); 2013 인권통계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인지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16(92)
	1.1.2. 국제인권기구 참여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 정례·특별보고 참여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의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정례보고 및 특별보고에의 참여 현황,	유엔인권최고대표부	OHCHR 온라인 공개문서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49~50(11)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 정례·특별보고 참여도 평가		정부와 시민단체의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정례보고 참여에 대한 해당국제기구의 평가	유엔인권최고대표부	OHCHR 보편적 인권지수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49~50(1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 내 한국정부 및 전문가의 활동	한국정부와 인권전문가들의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의 정례·특별보고에 대한 참여 현황	유엔인권 최고대표부	OHCHR 내부자료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49~50(11)
		조약기구 개인 청원현황	유엔인권기구 및 조약기구에 제출된 개인청원서 현황 및 처분 결과	법무부 인권국	내부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국제기구 인권보호노력 평가	UN, EU,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인권보호노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 수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6(92)
1.2. 국내법	1.2.1. 국제인권 규범의 국 내적 이행	국제조약의 법제화	국제인권기구 및 조약기구가 권고한 법제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 여부	법무부 인권국	조약기구의 정기검토 국가 최종보고서; OHCHR 보편적 인권지수	3~4년	구조	고문방지 최종견해 59(97),6(06); 고문방지NGO보고서 14~15(96),5(06)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제인권규약 원용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국제인권규약의 원용 여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22(09)
		헌법의 인권보장조항에 대한 국민의 태도	헌법의 인권보장조항에 대한 인지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6(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1.2.2. 국가인권 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평가등급	국제조정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평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 Accreditation Report	비정기	구조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8(12); 고문방지NGO보고서 16~18,46(06); 자유권NGO보고서G-1(15), 8,9,10,13,14(0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의 접수, 조사, 의결, 처리에 대한 질적 양적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3,14(06); 2013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및 인력 현황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8(12); 자유권NGO보고서 G-1(15),9,10(06); 2013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신뢰도, 효과성 평가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8(12); 고문방지 NGO보고서 16~18(06),46(06); 자유권NGO보고서 G-1(15),8,9,10,13,14(06)	
	법무부 인권국 재정 및 인력 현황	법집행기관으로서 법무부의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법무부 인권국	내부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 NGO보고서 89(96)	
	공공기관의 인권보장노력에 대한 평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인권보장노력에 대한 국민 평가 현황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비정기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8(1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1.3. 인권교육	1.3.1.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법집행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교정인력, 검찰 등 법무부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고문방지NGO보고서 67,84,85,87(96)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 인권교육	일반 국민 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인권통계 (2014)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의 학생 및 교사(교수) 대상 인권교육	각급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실시 및 참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공무원 및 인권관련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일반공무원 및 인권관련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인권국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22,23(11);
		군내 인권교육	군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 현황	국방부	내부자료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고문방지 NGO보고서 35(06)
		국민의 인권교육경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 받은 장소와 내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응답	국가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1.3.2. 기업·시 민사회 인권교육 활동	기업 내 인권교육	사업장에서의 종업원 및 고용주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시민단체(NGO)의 인권교육	시민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31(01);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22,23(1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1.4. 시민사회	1.4.1. 인권NGO 활동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인권관련 NGO 설립숫자, 규모, 활동 관련 통계	(사) 시민운동 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	3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등록된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인권관련 시민단체 현황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1.4.2. 인권NGO 거버넌스 구축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 예산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인권과 관련된 정부유관부처가 인권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한 예산 집행 규모	국가인권 위원회	자료 구축요망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정부법령 및 정책 수립 참여	인권과 관련된 정부유관부처의 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시민단체의 공청회 등 절차 참여 규모	국가인권 위원회	자료 구축요망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23(03); 아동권리NGO보고서 3-1(10)
		국민의 인권시민단체 참여 경험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 유무 및 정도	국가인권 위원회; 성균관대 학교서베 이리서치 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국민의 인권시민단체 지원 요청 경험	국민이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 위원회; 성균관대 학교서베 이리서치 센터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5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89(96)

2. 평등권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2.1. 차별 현황	2.1.1. 인권상황 평가	취약계층 인권상황 평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 및 인권관련 분야에 대한 인권존중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6,7(12),10(07),9(03),9(99),12(96),204,205,208,227(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8,2-17~23,4-49~51(12),75(07)
	2.1.2. 차별 원인	침해 및 차별 발생원인	인권침해나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6,7(12),10(07),9(03),9(99),12(96),204,205,208,227(93); 인종차별철폐 NGO 보고서8,2-17~23,4-49~51(12),75(07)
	2.1.3. 차별의 심각성	차별의 심각성 정도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차별 요인별 차별문제의 심각성정도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6,7(12),10(07),9(03),9(99),12(96),204,205,208,227(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8,2-17~23,4-49~51(12),75(07)
	2.1.4. 차별 경험	차별경험 유무	각 요인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에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5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6,7(12),10(07),9(03),9(99),12(96),204,205,208,227(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8,2-17~23,4-49~51(12),75(07)

증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2.2. 차별요인	2.2.1. 인종·피부 색·출신국가	북한 출신 공개로 인한 차별경험	탈북청소년이 북한 출신 공개로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28,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8-1(10)
		탈북청소년 차별경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시설에서의 차별 없는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동의정도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비정기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28,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8-1(10)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경험	직접적인 인권 침해에 있어서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선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2(06);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2-4(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경험 및 이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경험 및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과정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2(06);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2-4(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28,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8-1(10)
		다문화가족 자녀 차별경험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1(07),13(99),14(96), 15(96),203,208,229(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7,2-24~27,2-41~45,5-115~116(1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2.2.2. 성별		결혼이민자 차별경험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사회적 차별 경험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년	결과	여성차별철폐최종건해 26(11);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3(11)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건해 12(06);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2-4(15)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 경찰/소방/교정직	남성 경찰/소방/교정직 대비 여성 경찰/소방/교정직 유/불리 정도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건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성차별 피해 경험 - 경찰/소방/교정직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건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성별분리채용에 대한 동의여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건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건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군대 내 성차별 심각성 정도	여군이 남군과 비교하여 부문별 유·불리를 많이 느끼는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군대 내 성차별 피해 유형 및 빈도	여군 차별 피해 유형별 발생의 빈도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채용과정 중 성차별 인식	성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요인	채용과정 중 성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기업 내 성차별 관행 인식	중소기업 내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문제에 대해 인사총무담당자 및 일반 근로자들은 평가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비정기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기업 여성 등기이사 비율	상위 100대 기업 등기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공공연구기관 성별 연구원수	공공연구기관의 성별 연구원수 및 비율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자유권NGO보고서 3-2(15),43(06), 97,98,99(99),273(92)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평소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가사분담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결과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25(07)
	2.2.3. 경제적 지위	채용과정 내 경제적 지위 차별 경험 정도	채용과정 중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경험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327~330(00)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327~330(00)
	2.2.4. 나이	연령차별 경험 -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퇴직요구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445(09)
		연령차별 인식 정도-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차별 대우 인식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445(09)
		각 채용과정 단계의 연령차별 정도	나이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445(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채용과정에서 연령차별 이유	나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5(95); 사회권NGO보고서 445(09)
	2.2.5. 용모	외모에 대한 차별 경험	외모 관리 요구받은 경험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8-3(10)
		외모에 대한 차별 인식과 원인	채용단계별 차별인식 중 용모 및 신체조건 차별원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4
	2.2.6. 종교	학교 내 종교차별 인식	학생들의 종교적 차별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4(15)
		동아리 활동에서의 종교차별 현황	학교유형별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 유무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4(15)
		학교 복지 및 생활에서의 종교차별 현황	학교유형별 기숙사/장학금 배정 시 종교차별 유무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4(15)
	2.2.7. 학력·학벌	학력별 채용과정 중 차별 인식	학력별로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 15(01); 사회권NGO보고서 94,257(00)
		채용과정에서의 학력차별 요인	학력별, 경력유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 15(01); 사회권NGO보고서 94,257(00)
	2.2.8. 성적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유형	성적소수자차별 또는 괴롭힘의 유형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비정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40(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지향성	성소수자차별 인지	학교에서 성적 소수자여서 또는 성적 소수자로 보여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40(09)
		성소수자차별 경험에 대한 결과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괴롭힘을 경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40(09)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514(92); 자유권NGO보고서 2-2,23-3,26-1,20-2(15),81(06)
2.2.9. 장애		채용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 인식	장애유무별 채용과정 중 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23(14); 사회권NGO보고서 6(14)
		채용과정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 경험 정도	장애인의 채용과정 중 장애차별 경험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23(14); 사회권NGO보고서 6(14)
		장애인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장애인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KOSIS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51,52(11),31,32,33,50,51(03); 아동권리NGO보고서 3-2,6-2(10)
2.2.10. 병력		질병에 대한 차별 심각성 정도	응답자 특성별 질병력으로 인한 차별경험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3. 시민·정치적 권리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1. 신체권	3.1.1. 생명권	자살률 현황	인구 10만 명 당 자살건수 (성별, 청소년, 노인, 장애 여부 등 인구집단에 따라 제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30,31,34,55,56(11); 자유권NGO보고서 39(09),3-4(10),6-1(10); 국가인권지수(2014)
		살인 사건 수	인구 10만 명 당 살인건수	검찰청	범죄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영아 사망률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 (1,000 분비 표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모성 사망률	가임기 여성(15-49세) 10만 명 당 모성 사망자 수 (100,000 분비 표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국가인권지수(2014)
		임신중절 현황	시술의료기관 조사를 통한 결혼상태별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	보건사회 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아동보 건복지실태조사	1년	결과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58(11),59(11); 2013인권통계
		군인과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일반인(20~29세 남자기준)과 비교한 10만 명당 군인 자살자 비율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군 사망사고 현황	사고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군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에 국한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현황	장애인에 대한 고지된 동의 없이 행해지는 강제불임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구축 요망	-	결과	장애인권리 최종견해 1123(14); 장애인권리NGO보고 서 6(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1.2. 사형의 제한	사형선고율 현황	제1심 형사공판선고 중 사형선고의 비율, 이중 특정 죄목(가령, 국가보안법)에 따른 비율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과정	자유권최종건해 479(92); 자유권NGO보고서 184-187(92);	
	간첩죄에 대한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비율	간첩죄 기소자 중 제1심 형사공판선고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	법원행정처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02(92);	
	사형선고자 사면 비율	사형선고 복역자 중 사형을 사면 받는 비율	법원행정처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54-55(99);	
	사형제 존속 및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	사형제의 존속 혹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2011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5년	결과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2011)	
3.1.3.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고문 및 가혹행위 진정서 현황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 중 폭행, 가혹행위, 폭언, 욕설에 관한 진정서 숫자 및 처리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구제 통계	1년	과정	자유권최종건해 13(00); 자유권NGO보고서 61~62(06); 2013인권통계 에서 변형	
	고문 및 가혹행위 인권위 상담현황	인권위에 폭언, 가혹행위, 욕설을 이유로 상담을 의뢰한 숫자 및 처리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통계	1년	과정	자유권최종건해 13(00); 자유권NGO보고서 61~62(06); 2013인권통계에서 변형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법집행관 기소/징계 현황	형사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 및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기소된 숫자	대검찰청	국감자료(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제출)	1년	과정	고문방지최종건해 56,58(97),7(06); 고문방지NGO보고서 20(96);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검찰 조사기간 중 피의자 및 참고인 자살률	피의자 및 참고인 10만 명당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 비율	대검찰청	국감자료(이병석,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제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516(92),13(00); 자유권NGO보고서 7-3(15),61~62(06), 61(99),108,191~200,218~221(92);
		영상녹화 실시 현황	수사 및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실시율	대검찰청	국감자료(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제출)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06);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인식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폭행·폭언·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2~3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34(06); 자유권NGO보고서 53(99),16(06);
	3.1.4. 구금환경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상담 현황	구금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상담을 의뢰한 숫자 (폭행/가혹행위 제외), 처리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상담통계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06); 자유권NGO보고서 7-2,9-9,10-4(15), 246~249(92); 2013인권통계
		구금·다수인보호시설 진정서 현황	구금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구제 통계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06); 자유권NGO보고서 9-9,10-4(15),246~249(92); 2013인권통계
		수감시설 내 사망자현황	교정시설별 재소자 사망 현황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고문방지최종견해 13(06); 고문방지NGO보고서 29(06);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수감시설 내 폭력·폭행 현황	교정시설별 폭력·폭행치 숫자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고문방지최종견해 13(06); 고문방지NGO보고서 60~63(96),65~67(96),31(06);
		구금시설 의료인력 현황	교정시설 의사 정·현원 숫자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73~75(96);
		외부의료시설 이용현황	교정시설별 재소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 현황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고문방지NGO보고서 73~75(96);
		교정시설수용 현황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1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감호자 등의 수용정원, 수용인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4(00); 2013인권통계
		경찰유치장 현황	경찰 유치시설(유치장, 유치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실제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과정	2013인권통계; 수용능력과 수용인원을 정확히 제시해야함
		치료감호소 현황	치료 감호소 유치시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수용기간, 면회 기간 등을 포괄하는 통계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	치료감호수용현황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4(00); 자유권NGO보고서 227~239(92);
		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	교정시설 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 진행 시간, 참여율 통계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81,516(92); 자유권NGO보고서 70(9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대용감방구금 현황	대용감방 현황, 대용감방별 구금자 숫자, 구금기간 통계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고문방지최종건해 13(06); 고문방지NGO보고서 56~59(96),32(06),33(06)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현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유로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 현황과 체류 기간에 관한 통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년	과정	2013인권통계: 체류기간에 대한 통계가 보장 요망
		군교도소 연말 수용자 현황	전년말 남은 수형자와 당해연도 입소자를 합한 수용자에서 출소자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군교도소 수용자 현황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1년	과정	2013인권통계
	3.1.5. 인신매매 금지	인신/성매매 현황	인신/성매매 현황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법무부; 여성가족부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인신/성매매 신고현황	인신매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 접수된 신고 건수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법무부; 여성가족부	자료구축 요망	-	결과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39(11)
		인신/성매매 기소·처벌건수	인신매매 및 성매매 범죄자 기소 및 처벌 건수 (아동, 이주민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법무부; 여성가족부	자료구축 요망	-	과정	아동권리NGO보고서 5-97~104(12)
	3.1.6. 안전할 권리	자연재해피해자 현황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실종·이재민 수, 피해규모 등 피해 현황 통계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1년	결과	사회권최종건해 19(14); 사회권NGO보고서 33(14);
		범죄 피해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절도, 강도, 폭행, 성폭행 등 범죄피해자의 숫자(여성,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4~8(15),104(99),284(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사회안전 인식도	사회전반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여성 인구집단별 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4~8(15),104(99),284(92);
		범죄두려움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3-4~8(15),104(99),284(92);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흉악사범이란 살인,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강도, 보복범죄, 특수강도등을 포함한 수치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성폭력 발생(검거)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 (여성, 장애인 인구집단, 가해자 집단 특성별 통계)	대검찰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범죄분석 장애인실태조사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성희롱 가해 및 피해실태	성희롱 가해 및 피해실태 관련 통계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2015년 최초 실시로 미공개)	3년	결과	사회권 최종 견해 16(09); 사회권NGO보고서 94,257(00)
		가정폭력피해 경험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여성,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정폭력실태조사; 2011장애인실태조사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아동 안전사고 현황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 및 아동 10만 명당 비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4-2(15),115~116(9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현황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24-2(15),115~116(9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보건복지부	(각연도)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1년	결과	2013인권통계; 아동권리최종건해 40(03),41(03); 아동권리NGO보고서 138(06)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아동학대 보호 건수 통계. 이때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건해 40(03),41(03); 아동권리NGO보고서 138(06)
		학교폭력 경험	폭행/구타/따돌림/돈, 물건 갈취/협박/성희롱 및 추행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4-3(15),112(99)
		체벌 및 욕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6~38(06); 자유권NGO보고서 151(06)
		학대 경험률	방임,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포함 (노인, 아동,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포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노인학대현황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자유권NGO보고서 24-2(15),115,116(99); 사회권최종건해 21(01); 사회권NGO보고서 282(00); 장애인권리NGO보고서 17(14),45(14)
	3.1.7. 실종	약취·유인 현황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범죄의 숫자와 이와 관련된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결과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8-2(15); 국가인권지수(20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1.8.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약취·유인 검거, 입건, 기소율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범죄에 대한 검거율, 입건율, 기소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5-97~104(12);
		실종아동 등 (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및 가출인 발생현황	실종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가출인 발생 및 미발견 건수	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 처리; 경찰통계연보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4-2(15),115,116(99);
		구속사건 비율	기소자 숫자 대비 구속 사건의 비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39~42(96),71(99),72(06) ; 국가인권지수(2014) 2013인권통계
		경찰 구속 현황	각급 경찰의 적발숫자, 구속 숫자, 불구속기소, 숫자 통계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72(06), 71(99);
		수사기관·수소법원 구속기간 현황	검찰·경찰의 구속기간, 소송제기를 받은 법원의 구속기간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과정	고문방지NGO보고서 39~42(96);
		군영창 구금 현황	군 영창 시설의 규모 및 수용능력, 실제 수용자 숫자, 관리인력 규모 등을 포괄하는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1년	과정	국가인권지수(2014): 영창구금자 숫자 뿐 아니라 시설 일반에 대한 통계 필요;
		48시간 구금 후 훈방 현황	48시간 동안 구금한 후 기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	대검찰청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31,132(06), 266(99);
		긴급체포 후 영장현황	긴급체포자 대비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유대운의원 청구자료)	1년	구조	자유권NGO보고서 9-4(15),20,67,69,70(06),70(92);
		체포·구속적부 심사 처리 현황	법원에 청구한 체포·구속 적부의 심사에 대한 처리결과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구조	최종견해 481(92); 2013인권통계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 상담 현황	인권위에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가족 미통지를 이유로 상담을 의뢰한 숫자, 처리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상담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건해 480(92); 2013인권통계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 진정서 현황	인권위에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가족 미통지를 이유로 제출된 진정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구제 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건해 480(92); 2013인권통계
3.2. 기본적 자유	3.2.1. 이동의 자유	해외이주 현황	해외이주신고자와 현지이주신고자를 합한 해외이주자 숫자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59~261(92); 경제지위별 이주 현황 추가 필요
		북한방문자 현황	여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현황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건해 483(92),516(92);
		체류외국인 현황	장기, 단기, 불법 체류를 합한 체류외국인 숫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1년	결과	자유권최종건해 12(06); 자유권NGO보고서 2-4(15); 출신국가별 통계추가 필요
		국내인구 이동 현황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의 숫자, 그리고 인구대비 이동률	통계청	국내인구 이동통계	1년	결과	최종건해 11(95); 자유권NGO보고서 300(00);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건해 17(14); 아동권리NGO보고서 27(14); 국가인권지수(20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이동편의시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14); 사회권NGO보고서 27(14); 국가인권지수(2014)
		난민인정자 현황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연도별, 성별, 국적별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30(01); 사회권NGO보고서 28(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포함	고 용 노 동 부, 교육부	2013 장애인통계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28(14); 2013인권통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시각장애인 택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연결률	보건복지부	장애인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3.2.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 기소, (불)구속, 불기소 숫자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59(97),6(06); 자유권NGO보고서 14~15(96),5(06); 2013인권통계; 국가인권지수(2014)
		입영·집총 거부자 현황	입영·집총 거부자 숫자와 이에 대한 징역부과 등 처리 숫자	병무청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4(92); 자유권NGO보고서 18(15); 98, 110(06)
		종립학원현황	종교교단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숫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38, 39(11); 아동권리NGO보고서 4-3(10); 2013인권통계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종립학교 의무예배시간 현황	종교교단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에서 의무 예배에 할당된 평균 시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구축 요망	1년	과정	아동권리최종견해 38, 39(11); 아동권리NGO보고서 4-3(10);
	3.2.3. 의견과 표현의 자유	방송심의 의결 현황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법정조치, 행정지도 등 제제조치를 의결한 숫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연감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 208(99),140~152(92); 2013인권통계
		영상물 등급분류현황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통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통계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 208(99),140~152(92);
		영상물 등급분류 위법 판결 현황	제한상영가 등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소송과 이에 대한 위법판결 통계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자료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208(99),140~152(92);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 추천 현황	영화제에 대한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서 발급 현황 및 법적분쟁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208(99),140~152(92);
		언론사 파업 현황	언론사 파업 숫자, 참여자 규모, 지속일수, 징계, 해고 통계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7(92);
		표현의 자유 제한 경험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2011 대국민인권실태조사	5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3(15),123,125(06),208(99),140~152(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2.4. 집회의 자유		집회시위 발생 현황	학원, 사회·문화, 노정, 경제 관련 집회시위 숫자, 미신고집회숫자, 참여인원 등 통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5(92),150(00); 자유권NGO보고서 21-4,21-5(15); 2013인권통계
		집회금지 통고 현황	집회시회 금지통고 건수, 신고건수 대비 금지 통고 건수 비율, 시위 유형별 금지통고 건수 및 비율 등 통계	경찰청	경찰백서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85(92); 자유권NGO보고서 21-1(15),262(99),168~170(92); 국가인권지수(2014) (유형별 금지통고 건수 및 비율 추가필요)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	집회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의 숫자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79,516(92); 자유권NGO보고서 21-4,21-5(15),267,276(99),171~174(92);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숫자, 유형 및 대상 별 (교사/공무원 포함) 통계	경찰청	경찰백서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31,132(06),266(99); 인권통계(2014); 국가인권지수(2014) (유형별, 대상별 통계 추가필요)
		시위 중 부상자 비율	집회시위 중 부상을 입은 참가자의 숫자 및 시위 참여자 대비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79,516(92); 자유권NGO보고서 21-4,21-5(15),267,276(99),171~174(9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야간시위 처벌현황	야간시위를 이유로 입건 및 기소된 숫자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50(00); 자유권NGO보고서 21-2,21-3(15),5,128(06);
3.2.5. 결사의 자유	정당조직 및 가입현황	법정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 숫자, 가입된 당원수 통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7(92);	
	결사체/NGO 현황	시민사회단체 숫자, 유형별 숫자 통계	시민의신문	한국시민사회연감	2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285(92);	
	공무원노조조직 조직현황	공무원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5(92),151(00),18(09), 19(06); 자유권NGO보고서 19-6,22-1~3(15),40(06)	
	교원노동조합 조직현황	교원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5(92),151(00),18(09), 19(06), 자유권NGO보고서 19-6,22-1~3(15),40(06)	
	언론노조 조직현황	언론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통계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487(92);	
3.2.6. 사생활 보호권	개인정보침해 비율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신고건수 통계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88,90(06),82,87(99); 인권통계(2014); 국가인권지수(2014)	
	공공기관 개인정보 누출 및 유출현황	공공기관별 주민번호 누출 및 유출건수	안전행정부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90(06),87(99); 2013인권통계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현황	국가기관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 건수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40(00); 자유권NGO보고서 17-8(15),221(99); 국가인권지수(2014)
		CCTV 설치현황	범죄예방, 화재예방, 고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 CCTV의 숫자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93(06); 인권통계(2014); 국가인권지수(2014): 지역별 설치 현황 추가요망
		권리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명예훼손, 초상권 등 권리침해 위반유형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20(07); 자유권NGO보고서 4(12); 2013인권통계;
		사생활 침해 경험	지난 3년 동안 본인, 배우자, 가족이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를 경험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2011 대국민인권실태조사	5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7-5,17-9(15),85,81,84(99),163,263~271(92);
3.3. 행정·사법 적정의	3.3.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피고인 숫자 대비 국선변호사 선정 사건 비율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4(06),482(92); 자유권NGO보고서 9-3,14-2(15),63~65(06), 42,45,51,52(99),71,72,80, 82,87~92(92); 2013인권통계; 국가인권지수(20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현재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헌법소원심판 사건 수,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선임건수 및 비율, 국선대리인 인용율, 사선대리인 인용율 등 통계	헌법재판소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50(99),95(92);
		국가소송접수 및 처리건수	국가소송 접수, 처리, 승소·패소 건수 및 비율	전국 검찰청	국가소송통계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69~71(96);
		즉결심판청구 현황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청구한 심판절차의 숫자, 유형별(경범, 특별법범, 형법범) 숫자 통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82(92); 자유권NGO보고서 29,30(99),45,51,59,60,61(92)
		재판 전 구금기간 현황	법원의 승인 조치 없이 구금되는 기간을 포함한 1심 재판받기 전까지 구금되는 기간 통계	대검찰청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480(92),141(00),16(06); 자유권NGO보고서 15,71(06),258(99), 202~204(92);
	3.3.2. 사법적 구제	구속영장 기각률	구속영장 건수 대비 기각된 영장의 비율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47(00); 자유권NGO보고서 27(99),24,28,29,43(92); 국가인권지수(2014)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형사사건 법률구조 숫자	법무부 인권구조과	내부자료	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0-8(15);
		사면실시 현황	사면 신청자 숫자 및 사면 허용자 숫자 통계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년	과정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3.3. 피해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현황	무죄재판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 숫자, 이에 대한 실제 형사보상건수 및 인용율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년	과정	자유권NGO보고서 9-7(15); 국가인권지수(2014)	
	국가배상 접수 및 처리 현황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가한 각종 손해에 대해 국민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숫자, 이에 대한 처리 숫자, 인용숫자 등 통계	법무부	국가송무과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고문피해자 사법구제 현황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에 따른 재심현황, 손해배상 소송건수, 결과, 배상금액 현황	법무부	자료구축 요망	비정기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60(97); 자유권NGO보고서 113~121(96),60(06);	
	고문피해자의 국가구제조치 만족도	고문피해자의 국가기관재조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	국가인권위원회	2011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60(97); 자유권NGO보고서 113~121(96),60(06);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현황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운동심의위)'인용건수, 명예회복 건수, 보상금지급 액수 등 통계	안전행정부	자료구축 요망	비정기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21(06),213(99),116,117(9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범죄로 인한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가 구조한 건수, 구조금액 통계	법무부	검찰통계시스템	1년	결과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5-97~104(12);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3.4. 참정권	3.4.1. 투표할 권리	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의 비율(노인, 장애인 인구집단별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3)
		수형자의 투표참여 현황	투표에 참여한 교정시설별 수형자 숫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5-3(15);
		공직자선거법위반 현황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숫자의 유형별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5-2(15),152(06);
		재외국민 선거권자 등록 현황	주요 국가별 선거 가능한 유권자 대비 등록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25-2(15), 152(06);
	3.4.2. 선출될 권리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4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1(15),48(06),94,108(99); 사회권NGO보고서 64~65(09);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24(11),23(07);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23(11)
		장애인 후보자 당선 현황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 및 당선인 통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행정자료	1년	결과	장애인권리최종견해 55(14)
	3.4.3.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국민참여재판 현황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민들 숫자, 판결 결과 통계	법무부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1(15), 48(06), 94,108(99);
		행정민원 현황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 서비스 현황	행정자치부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3-1(15), 48(06), 94,108(9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연구직과 지도직은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가,나급)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임.	행정자치부	안전행정 통계연보	1년	결과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24(11),23(07);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23(11)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정부내 설치된 각종 위원회중 법률,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도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임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현황 제출 자료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64~65(09);
		공무원 개방형 임용 추이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64~65(09);
3.5. 정보인권	3.5.1. 정보접근권	행정정보 공개율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현황 (기관별, 종류별)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64(92); 2013인권통계; 국가인권지수(2014)
		정보격차수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과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의 격차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별, 취약계층별 보유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1년	결과	장애인협약최종견해 15(95); 장애인협약NGO보고서 327~330(00);
		가구 인터넷 이용 현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소득별, 취약계층별 이용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1년	결과	장애인협약최종견해 15(95); 장애인협약NGO보고서 327~330(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장애인 정보화격차	일반국민 정보화수준 대비 장애인계층 정보화 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	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편성 숫자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1년	결과	장애인협약최종견해 41(14); 장애인협약NGO보고서 56(14)
		장애인용 언어 표준화 현황	시각 장애인용 원문DB구축, 특수 언어 표준화 작업 건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장애인협약최종견해 17(14); 장애인협약NGO보고서 29(14)
	3.5.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통신심의 의결 현황	정보통신 심의 건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백서	1년	결과	인권통계(2014)
		인터넷 허위사실 형사소추사건현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숫자, 기각된 숫자, 및 형사처벌된 숫자	법무부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9-2(15);
		인터넷 게시판 시정요구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심의 건수 중 결정취소와 각하 건수 비율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4.1.1. 식량권	아침식사 결식률	만 1세 이상의 인구 중 인구학적 특성별(연령, 소득 등)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289(00)
		최근 1년간 가정형편으 로 인한 결식 비율(%)	가정형편으로 인해 결식한 학생의 비율에 대한 실태파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289(00)
		아동무상급 식지원 현황	매년 말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현황	보건복지부	1)내부행정자료 2)e-나라지표 급식은 보편화된 상황이므로 무상급식 대상 아동 현황 통계로 수정	1년	과정	아동권리 최종견해 20(11); 아동권리NGO보고서 1-5(10)
		영양섭취부족	만1세 이상의 인구 중 인구학적 특성별(연령, 소득 등)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4.1.2. 주거권	최저주거기 준 미달 가구비율(%)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 (여성, 장애인)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5(01); 국가인권지수(2014); 여성, 장애인 세부 통계 필요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비율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처(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집단 수용을 위한 구조, 건물공사장의 임시막사, 움막, 토굴 등)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통계청,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인구주택 총조사 2)사회보장통계	5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5(01);
		월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 중에서 주거비로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5(01),26(09); 국가인권지수(20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전체 가구 중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1)국토교통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임대주택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5(01),26(09);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전체 가구에서 주거급여 지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내부자료 2)사회보장통계	1개월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5(01),26(09)
		시도별 주택 자가보유율	각 시도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비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 사회권NGO보고서 300(00); 국가인권지수(2014)
		출입국관리법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주택의	등록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거주지를 변경할 때 14일 내에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문제	법무부	1)출입국관리법 2)재외동포법	비정기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259~261(92)
		강제철거로 인한 거주 자유 침해	주택의 강제철거를 당하거나 위기에 놓은 가구의 수	자료구축요망	자료구축요망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262(92)
		1인당 주거면적 (성별)	남성대비 여성가구의 주거전용 사용면적/가구원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 사회권NGO보고서 300(00)
	4.1.3.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상수도 보급율	총인구 중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도시 및 농촌지역 구분)	1)환경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상수도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9(09)
		하수도 보급율	총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1)환경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하수도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9(09)
		BOD 발생 부하량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BOD)의 정도	환경부	수질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9(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식수 안전	식수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 지역의 수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29(09)
		물부족 통계	식수 및 산업용수가 부족한 지역별 통계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9(09)
		단수경험 가구 수	가구특성별 단수경험 가구 수	자료구축 요망	(단, 2005년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 단수경험 가구 수 조사)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9(09)
4.2. 사회 보장권	4.2.1. 소득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총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의 비율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2)사회보장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3(01); 사회권NGO보고서 226,227(00)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통계로 본 기초노령연금 2)사회보장통계	1개월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4.2.2. 빈곤/ 양극화	실업급여 수급자수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수	1)한국고용 정보원	1)고용보험통계 2)사회보장통계	1개월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98,99(09)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장애인연금 지급현황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51(14)
		장애수당 수급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1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51(14); e-나라지표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수지	가구주소득, 배우자 또는 기타가구원 소득, 주거비/방송/교통/통신, 적금/보험/신용카드,육아 및 교육비, 아파트관리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매월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4(01)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	다문화가족의 월평등 가구소득의 분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3년	결과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56~59(07)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지출액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68(14)
		상대적 빈곤율	총인구 중 소득빈곤선 이하의 인구수의 비율(아동, 여성가家主, 노인, 장애인 등 인구집단에 따라 제시)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가계동향조사 2)농가경제조사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국가인권지수(2014)
		소득5분위 배율	하위20%균등화소득 대비 상위20%균등화소득의 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가계동향조사 2)농가경제조사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사회권NGO보고서 103(00),122(09)
		지니계수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가계동향조사 2)농가경제조사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사회권NGO보고서 103(00),122(09)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1년	과정	장애인권리최종견해 53(14); e-나라지표
	4.2.3. 사회복지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비+지방비 합계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예산안(재정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과정	사회권최종견해 23(01); 사회권NGO보고서 226,227(00)
		국가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국가총지출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비중	1)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예산안(재정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197(09)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생활인원수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 결핵/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수 및 생활인원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현황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197(09)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	1)한국장애 인개발원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2)사회보장통계	1)5년 2)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00)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이용자수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01),21(09); 사회권NGO보고서 94(00)
		가사간병 방문사업 이용자수	신체적/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는 수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01),21(09); 사회권NGO보고서 94(00)
		장애인 복지서비스 육구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장애인인권, 장애인인식 개선, 이동권 보장 등 가운데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현황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시설의 종류)에 의해 시.군.구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된 시설을 의미	통계청	2013 한국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01),21(09); 사회권NGO보고서 94(00); 2013 인권통계
		농어업인 복지지원현황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1인당 연간 평균지원액,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 농업인안전보험 1인당 보험료 등을 포함	건강보험공 단 등	건강보험백서 등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e-나라지표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농어촌 인구 천명당 보육시설 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e-나라지표
	4.2.4. 사회보험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수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수 대비 각 급여종류별 가입률 및 수급자의 비율 (성별)	1)국민연금 관리공단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국민연금 통계연보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건강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건강보험 가입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비율	1)고용노동부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고용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비율	1)고용노동부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산재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산재보험 가입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비율 (이주노동자)	1)고용노동부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4.3. 노동권	4.3.1. 일할 권리	경제활동참가 율 및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 및 취업자의 비율(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장애여부, 가구주 여부)	1)통계청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경제활동인구조사 2)사회보장통계 3)한국의 사회지표	1개월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29(09); 2013 인권통계
		장기실업자 의 비율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율(12개월 이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잠재경제활 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의 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구직단념자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의 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01(09)
		실업대책 직업훈련 추진현황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지역실업자 훈련, 기능사양성훈련, 우선직종훈련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114(00)
		경력단절 여성의 수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6개월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견해 32(11);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4(11) ; e-나라지표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의 현황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1년	구조	사회권최종건해 24(01)
		중앙행정기 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년	과정	장애인권리NGO보고서 81(14)
		평균근속년 수의 성별 차이	산업 및 직종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평균근속연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건해 32(11);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4(11) ; 고용노동통계
		외국인 취업통계	외국인근로자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 산업/직종별 취업자수, 월평균 임금 등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1년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건해 11(07), 13(99), 14(96), 15(96), 203(93), 208(93), 229(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7(12), 2- 24~27(12), 2-41~45(12), 5-115~ 116,(12)
		북한이탈주 민 취업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백서	1년	결과	인권상황실태조사(2013)
		대규모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	대규모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수	고용노동부	자료구축 요망	-	구조	사회권최종건해 12(01),20(01)
	4.3.2.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근로형태별 주 40시간제 실시 비율	임금근로자 중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	OECD	OECD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69(00); 국가인권지수(2014)
		최저임금 미만율	적용대상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비중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건해 9(01); 국가인권지수(2014)
		산업별 성별종사자 비율	산업별 남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건해 30(11); 성인지통계 DB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직종별 성별종사자 비율	직종별 남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건해 30(11); 성인지통계 DB
		고용형태별 성별종사자 비율	고용형태(상용직/임시직/일용직)별 남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개월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건해 30(11); 성인지통계 DB
		여성감정노 동자수	산업 및 직종별 여성감정노동자의 수 *현재 정확한 규모 추정 불가능	-	-	-	결과	여성차별철폐 최종건해 30(11)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은 당해연도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1 년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 보원	고용보험 DB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107(09); e-나라지표
		출산전 후 휴가급여 수급자수	산업별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 보원	고용보험 DB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107(09); 성인지통계 DB
		학력별 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	OECD	Education at a Glance	1년	결과	사회권최종건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190,206(00); e-나라지표
		성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의 임금 성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건해 11(95),15(01),12(09); 사회권NGO보고서 94,104(09)
		육아휴직 사용률(성별)	근로자의 육아휴직사용률	고용노동부	1)고용보험 DB 2)e-나라지표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107(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임금격차 :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	고용노동부	1)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e-나라지표	1년	구조	사회권최종건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 190,206(00)
		장애인 /비장애인 임금격차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차이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구조	장애인권리최종건해 49(14); 국가인권지수(2014)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월소득실태파악 및 상용임금근로자와의 월소득 비교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결과	장애인권리최종견해 49(14)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정도	근로감독 사업장 중에서 비정규직, 사내도급, 연소근로자관련 법 준수와 연령차별 및 최저임금관련 법 미준수 사업장 비율의 평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69(00); 국가인권지수(2014)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 (성별, 연령)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반기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여성차별철폐최종견해 32(11); 여성차별철폐NGO보고서 4(11); e-나라지표; 2013 인권통계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직무)	직무별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의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3년	결과	장애인권리NGO보고서 72(14)
		산업재해율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17(01),17(09); 사회권NGO보고서 188~190(92),125(00)
		비정규직 고용 동향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를 모두 포함	통계청	1)경제활동인구조사 2)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e-나라지표	반기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7(01),14(09); 사회권NGO보고서 190,206(00)
		외국인근로자 임금 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 여부와 체불 기간 및 금액 (업종별, 사업체규모별)	법무부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비정기	결과	인종차별철폐최종견해 11(12), 18(07),10(03),12(99),17(96),209(93); 인종차별철폐NGO보고서 5-104~114(12),26(07),30(07),45~48(07)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청소년 근로계약 위반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다 계약과 다른 초과 근무 및 일을 하였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8-2(10)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1)고용보험 DB 2)e-나라지표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107(09)
	4.3.3. 노동 조합권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중 노동조합원의 비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1년	구조	자유권NGO보고서 285(92); 국가인권지수(2014)
		노사협의회 설치수	산업별/규모별 노사협의회 설치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1년	구조	자유권NGO보고서 285(92);
		중앙노동위원 회 부당노동 행위 신청건수 및 소송 처리건수	조합활동, 고용조건, 단체교섭거부, 경비지원, 단체행동참가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 신청건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9(95); 사회권NGO보고서 253~257(92),94(00)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 중 노동조합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	한국행정연 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12(92)
		파업권 규제	근로자의 파업권 규제 여부	해당자료 부재	해당자료 부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8(95); 사회권NGO보고서 161(00),162(00)
		외국인노동 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박탈	외국인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박탈 제도 여부	해당자료 부재	해당자료 부재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4. 건강권	4.4.1. 건강 서비스 접근	시도별 의사 수 및 부족율	시도별 요양기관이 신고한 상근 전문의 및 일반의의 수	1)국민건강 보험공단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건강보험통계연보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10만 명당 시도별 등록 병상 수	시도별 등록 병상 수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보건복지통계연보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94(00)
		시도 및 소득별 일반건강검 진 수검율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1)국민건강 보험공단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건강보험통계연보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의료 미충족률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의료보장 적용인구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제공받는 인구	1)국민건강 보험공단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건강보험통계 2)의료급여통계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12(00)
		성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인구 중 1년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임.	보건복지부	1)국민건강영양조사 2)e-나라지표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농어촌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보건복지부	1)보건복지통계연보 2)e-나라지표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4.2. 아동 및 모성 건강	미혼모 산전수진율	임신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 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5~44세 기혼 여성 임신부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임신부의 비중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3년 2)1년	과정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저체중아 발생률	해당 연도의 전체 출생아 대비 출생체중 2.5kg미만 신생아의 비중	1)통계청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인구동향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조산율	전체 출생아 중 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의 비중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사회보장통계	1)3년 2)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모성사망률	모성사망 추정을 위해 개발된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의 수로 표시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	1년	결과	자유권최종견해 135(00); 국가인권지수(2014)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DPT 예방접종률	DPT예방접종률은 만 3세 대상 아동 중 3차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의 비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1)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2)e-나라지표	2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6-1(10)	
	청소년 흡연 및 음주율	청소년 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질병관리본 부·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1년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57(11),59(11),48(03),49(03)	
	청소년 약물경험 비율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물을 경험한 비율	여성가족부	1)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2)e-나라지표	2년	결과	아동권리최종견해 57(11),59(11),48(03),49(03)	
	모자보호시설 입퇴소현황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중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보호기간3년,2년 연장가능)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여성가족부	1)시도별 자료 2)e-나라지표	1년	과정	아동권리 최종견해 46(03), 47(03)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청소년 유해매체 경험 실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여성가족부	1)청소년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2)e-나라지표	2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5-1(10)
4.4.3. 육체적 건강	기대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1)통계청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생명표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건강수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WHO	World Health Statistics	5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조사망률	성별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1년 간 발생한 모든 사망자 수를 동일기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산출		1)통계청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사망원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를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 중에서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1)보건복지부 2)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국민건강영양조사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조사대상자 중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중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3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사회권NGO보고서 312(00); 국가인권지수(2014)
	4.4.4. 정신적 건강	주요정신 질환 평생유병률	평생에 한번 이상 질환에 이환되는 비율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	5년	결과
정신보건센 터 도시지역 편중		지역별 정신보건시설 수 및 각 지역별 비율		보건복지부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비정 기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6-1(1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청소년 원인 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포함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 114(99); 아동권리최종견해 62(11),63(11),52(03),53(03)
		우울감 경험률	시군구별 우울감 경험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31(09); 사회권NGO보고서 6-1(10)
		자살생각 경험율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청소년 포함)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5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31(09)
	4.4.5. 건강 서비스 에서의 차별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	국민건강보 험공단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 조사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공공의료비 지출비중	전체 의료비 중에서 정부재원, 사회보장기금의 구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년	구조	국가인권지수(201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질병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수	한국보건복 지정보개발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1(95),27(09)
4.5. 교육권	4.5.1. 교육지원 에 대한 접근	시도 및 학교급별 취학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 적령 인구 중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의 비중	1)한국교육 개발원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교육기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율 및 지원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연령의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비율	1)보건복지부 2)교육통계 연구센터 3)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어린이집 이용자통계 2)유초등통계 3)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여성차별 NGO 보고서 5(11)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설립주체별(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가정, 직장) 어린이집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년	과정	여성차별 NGO 보고서 5(11); 성인지통계 DB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각급 학교 장애인 진학률	초중고 및 대학의 장애인 진학률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년	결과	인권상황실태조사(2013)
	4.5.2. 교육 선택권	평생교육 참여비율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들 중에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 비율	한국교육개 발원	평생교육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학업 중단자 비율	전체 초·중고학생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학교급 및 성별 구분)	1)한국교육 개발원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교육기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북한이탈학 생 학업중단 현황	북한이탈학생의 학업중단자수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다문화 가구 아동 취학률	결혼이주자 자녀의 취학률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아동권리 최종견해 28(11), 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10), 8-1(10)
		미혼모 학업중단을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의 비율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3-2(10)
		대안학교 수	대안학교의 수	최근자료 없음	최근자료 없음	1년	구조	아동권리 최종견해 40(03), 41(03)
		홈스쿨링 학생 수	홈스쿨링 학생의 수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구조	아동권리 최종견해 40(03), 41(03)
	4.5.3. 교육의 질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전체 학급 수 가운데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 수의 비중	1)한국교육 개발원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교육기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의 수	한국교육개 발원	교육기본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기간제 교사비율	초중고교 전체교원 중 기간제교사의 비율	한국교육개 발원	교육기본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용	교육기관에 정부가 직접투자한 공교육비와 가계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장학금, 학비지원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GDP 대비 비중	1)OECD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Education at a Glance 2)사회보장통계	비정 기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365(00)
		학생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학교교육)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한국교육개 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사립대학 등 등록금 의존율	사립대학에서 운영수입 또는 총수입 대비 등록금의 비중	한국사학진 흥재단	사립대학재정통계	1년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364(00)
	4.5.4. 교육차별 및 불평등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전체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	1)교육부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고등교육기 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총입학자 중 기회균형선발학생의 비율	1)교육부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	저소득층 학생 중 장학금 수혜를 받는 비율	1)한국장학 재단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국가장학금 지급현황 2)사회보장통계	1)6개월 2)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과도한 통학시간	1시간 이상의 통학거리 학생수 및 비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학비지원금액 규모	1)한국보건 복지정보개 발원 2)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27(01); 사회권NGO보고서 341(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 대비 교원의 비율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1년	구조	국가인권지수(2014)
		남성 대비 여성 대학 취학률	(대학교 재적 학생 수)/(고졸 직후 연령부터 5세 연령구간 인구)×100	여성가족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0(95),15(01); 사회권NGO보고서 428(09)
4.6. 문화적 권리	4.6.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예술 관람률	지난 1년간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매우 만족+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GDP대비 문화예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GDP로 나눈 값	1)기획재정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문화체육관광 예산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여가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실질 가계지출최종소비 중에서 오락, 문화 등의 실질 여가문화비 사용 비중	1)문화체육관광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여가문화비 대비 가계지출비중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1)문화체육관광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및 등록사립 대학박물관/미술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공공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1인당 장서(인쇄)수, 방문자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학교 문화예술 수혜학교 비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비율	1)문화체육관광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보고 2)사회보장통계	1년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4.6.2.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사업자 보고자료	1년	구조	자유권NGO보고서17-2,17-3,17-5(15),82(06), 91(99)
		웬·바이러스 피해 현황	국내 주요 백신업체가 개인이용자용 백신제품을 통해 확인한 웬·바이러스 탐지 건 수(2013년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반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17-2,17-3,17-5(15),82(06), 91(99)
		해킹사고 신고 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해킹신고 가운데 국내소재 시스템의 해킹 피해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반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17-2,17-3,17-5(15),82(06), 91(99)
		1인 1일 스팸 수신량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가 하루에 수신하는 스팸 문자 메시지 및 음성광고의 평균량 및 국내 이메일 이용자가 하루에 수신하는 이메일 스팸의 평균량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수신량 조사	반년	결과	자유권NGO보고서17-2,17-3,17-5(15),82(06), 91(99)
	4.6.3. 창작물 에 대한 보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건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의 불법복제물 유통량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1년	결과	사회권최종견해 12(01), 13(01)
	4.6.4. 문화적 다양성 의 보호	예술 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예술 교육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자료 구축 필요	자료 구축 필요	비정기	구조	사회권최종견해 32(09)
		전통예술공연 관람률	전통예술공연 연간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85~387(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다양성영화 접유율 현황	총 영화 관객 수 가운데 다양성 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율	영화진흥위 원회	한국영화연감,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85~387(00)
		자국영화 접유율 현황	총 영화 관객 수 가운데 한국 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율	영화진흥위 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385~387(00)
		문화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시	문화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시	자료 구축 필요	자료 구축 필요	비정기	구조	사회권NGO보고서 385~387(00)
4.7. 기업과 인권	4.7.1. 국가의 보호	공정거래 법률 준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반 횡수	공정거래위 원회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1년	결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B. 18. 19. 20; ISO 26000 - 6.6.6절; GRI G3 HR 1.2
		지적재산권 분쟁	기간 내 지적재산권 분쟁 횡수	문화체육관 광부	저작권법 위반 건수	1년	결과	ISO 26000 - 6.6.7절; GRI G3 SO 8
		인권위 정책권고 및 수용	기업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 및 수용현황	국가인권위 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I. B. 26
		인권위 직권 및 방문조사	기업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국가인권위 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I. B. 26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1년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23조; ISO 26000 - 6.4.7절
		휴일 연차보장	근로기준법의 휴일·연차보장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	매월	구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18~20; ESCR 제7조; ISO 26000 - 6.4.4.2절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7.2. 기업의 존중	근로자 재교육	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 도입 여부	각 기업	연간 보고서	1년	구조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 ESCR 제13조 1항; ISO 26000 - 6.4.7절; GRI G3 LA10, 11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여부	공정거래위 원회	동반성장지수	1년	구조	ISO 26000 - 6.6.6절;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A. 14	
	하도급법 준수	공정위 기간 내 하도급법 위반 횟수	공정거래위 원회	통계연보	1년	결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B. 18. 19. 20; ISO 26000 - 6.6.6절; GRI G3 HR 1.2	
	국제기준 준수	ISO26000, UNGC 가입 여부	ISO ,UNGC	ISO 26000, UNGC	1년	과정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A. 12; UNGC 10대 원칙 1항; ISO 26000 6.4.4.2절	
	지역민 채용	지역민 채용 규모 비율	각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1년	결과	ISO 26000 - 6.8.5절; GRI G3 EC7	
	지역사회 기부	지역사회 기부 규모 비율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1년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 ESCR 제13조 1항; ICCPR 제18조 4항; ISO 26000 - 6.8.9절	
	지역사회 투자	기간 내 지역사회 총 투자액 규모 비율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1년	결과	ISO 26000 - 6.8.7절; GRI G3 EC1	
	뇌물·부패 방지	뇌물·부패 방지프로그램 유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년	구조	ISO 26000 - 6.6.3절; GRI G3 SO1, SO4	
	업무관련 교육 이수	업무관련 인권정책 및 절차교육 이수 한 보안담당자 숫자	각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1년	구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ICCPR 17조; ISO 26000 - 6.7.7절;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B. 21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7.3. 구제		공정마케팅	공정마케팅, 정보공개 준수 여부	산업자원부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1년	결과	ISO 26000 - 6.7.3절; GRI G3 PR 6,7;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21
		지속가능 지수	지속 가능 지수의 가입여부	한국표준협회	대한민국 지속가능지수	1년	구조	ISO 26000 - 6.7.5절
		노사민정 협의체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유무	고용노동부	노사 브라보	1년	구조	ISO 26000 - 6.8.3절; GRI G3 SO 1;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A13, B22, III B29
		소비자 관련 계류 사건	기간 내 소비자 관련 계류 사건 횟수	공정거래위 원회	통계연보	1년	결과	ISO 26000 - 6.7.4절; GRI G3 PR2, 8.9
		내부고발자 보호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유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년	구조	UNGC 10대 원칙 10항
		소비자 분쟁조정위 원회 협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불순응 횟수	한국소비자 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년	결과	UN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II. B. 22, III. B. 29; ISO 26000 - 6.7.6절
		인권담당부서	기업 내 인권담당부서 유무	각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1년	구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16; UNGC 10대 원칙 2항
		인권영향평 가 실시	해외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시 인권영향평가 실시	국가인권위 원회	국내 100대 기업의 인권정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1년	구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16; UNGC 10대 원칙 2항
		차별 방지	국가인권위 기간 내 차별권고 횟수	국가인권위 원회	기업 노동자 차별 권고	1년	결과	ILO 제111호(1958); ICCPR 제2조, 제3조; UNGC 10대 원칙 6항
		차별 상담	기업 내 고용 등 차별 관련 상담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 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세계인권선언 제23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I. B. 18. 19. 20; ILO 제100호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차별 진정	기업 내 고용 등 차별행위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ILO 제111호(1958); ICCPR 제2조, 제3조; UNGC 10대 원칙 6항
		성희롱 진정	기업 내 성희롱 진정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1년	과정	ILO 제111호(1958); ICCPR 제2조, 제3조; UNGC 10대 원칙 6항
	4.7.4. 환경보 존 책임	환경 인증제 도입	각 환경 인증제도 도입 여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년	구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II. A. 13; UNGC 10대 원칙 8항; ISO26000-6.5.6절
		오염측정	오염측정기록보고 유무	환경부	환경종합정보서비스	1년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25조; ISO 26000 - 6.5.3절; GRI G3 EN 21
		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리계층 유무	환경부	환경종합정보서비스	1년	구조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원칙 15
		탄소파트너십	탄소파트너십 성과 보고 유무	지식경제부	대중소탄소파트너십 사업	1년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 UNGC 10대 원칙 9항; 기후변화협약 제4조; ISO 26000 - 6.5.5절; GRI G3 EN 3~7, 16~20
		관련 정책 홍보	지속가능개발 정책 홍보 유무	각 기업	기업별 지속 가능 보고서	1년	과정	UNGC 10대 원칙 8항; ISO 26000 - 6.5.4절; GRI G3 EN 3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4.8. 환경권	4.8.1. 건강한 자연환 경을 누릴 권리	대기배출시 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환경부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분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소음·진동 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소음·진동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환경부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분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폐수배출시 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환경부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분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1인당 도시공원면적	1인당 도시공원면적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소음 진동 민원건수	소음 진동 민원건수	환경부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시설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시설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4.8.2. 자연환 경을 보호할 권리	환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환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환경보호 활동별 환경부 문 매출액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환경보호지 출액	환경보호지출액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1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 주기	지표 유형	
		자연보호지역 비율	국토면적 중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 자연환경보호지역: 생태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유해인자 측정 및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집계	노동부	작업환경관리 현황	반기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94(00)
		멸종위기 종 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년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4.8.3. 환경사고 및 재해에 대응할 권리	행정구역별 재해위험지구 현황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과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안전행정부 자료	국가재난정보센터	비정기	과정	사회권NGO보고서 94(00)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인쇄일 | 2015년 12월 31일

|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우)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기획재정담당관 02)2125-9793

| F A X | 02)2125-9713

| 제작 | (주)삼일기획 (044) 866-3011

ISBN : 978-89-6114-473-5 93310 비매품